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032-01

2022. 3.

# 국제기구 농업협력사업 발전방안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림축산식품부

## 연구 담당

---

**차원규** | 부연구위원 | 연구 총괄

**주경훈** | 연구원 | 제3장 집필

**장혜진** | 연구원 | 제2장 통계정리, 제4장 집필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국제기구 농업협력사업 발전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3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차 원 규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주 경 훈 (연구원)

장 혜 진 (연구원)



## 연구 목적

- COVID-19 팬데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각국 정부뿐만 아닌 국제기구, 시민단체, 기업 등 개발협력 주체 간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함. 이에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 또는 다자성양자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ODA 고도화 전략으로 수립, 이 중 WHO, UNICEF, WFP, UNDP, UNHCR 등을 UN 중점협력기구로 선정하고 기구별 전문성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강화를 도모함. 또한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전략적이고 효과적 협력을 위해 다자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함.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전략적 추진 방향의 부재 및 비전문적 운영체제로 인해 개발효과성 및 수행 효율성이 미흡함. 따라서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국제기구 농업협력사업(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방법

- OECD DAC 회원국 및 국내 ODA 수행기관의 지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OECD의 ODA 통계, 국내 ODA 통계, 다자성양자 원조 관련 보고서 및 논문 등 연구자료를 분석함.
- 다자성양자 원조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농업 ODA에서 다자개발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 및 특징점, 농식품부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식품부, 외교부(KOICA), 국조실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담당자, 학계 및 연구계 ODA 전문가 등 면담을 시행함.

- 해외 선진 공여국의 다자 협력사업 수행체계 조사를 위해 국별 국제기구 협력사업 성과관리 정책, 지침 등 방안 조사 및 주요 공여국과 협력 경험이 풍부한 국제기구 담당자 인터뷰를 시행함.

## 연구 결과

- 제2장에서는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검토함. 최근 주요 공여국은 국제기구의 본질 및 우선순위 왜곡, 행정부담 가중 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의 전문성, 현지 접근성, 원조 가시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다자성양자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음. OECD DAC 개발원조 규모 상위 10개국의 다자 개발협력 비중은 51.5%로 한국 다자 개발협력 비중보다 14% 높음.
- 우리나라의 다자 개발협력 규모 또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다자성양자 개발협력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 출자, 양허성 차관으로 지원하며 외교부는 UN 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에 정규 및 보충 재원으로 지원함. 이 외 국제개발협력 주무 부처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등은 다자성양자 형태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제3장에서는 농업 관련 주요 다자기구인 FAO, WFP, IFAD, UNDP, WB(IDB), ADB, CGIAR의 주요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함.
- FAO는 농업과 식량을 통한 인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더 나은 생산, 더 나은 영양, 더 나은 삶 등 세 가지 중점분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행함. WFP는 기아 해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긴급구호(자연재해, 분쟁지역 식량원조), 재건사업(식량 생산 및 생활 여건 개선), 개발사업(건강관리, 교육 및 기술 습득), 특별사업(식량 지원 인프

라 구축) 등을 전략으로 함. IFAD는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농촌 빈곤 계층의 생산능력 증대, 농촌 빈곤 계층의 시장 참여를 통한 이익 증대, 농촌경제 활동의 환경 지속성 및 기후 탄력성 강화 등을 전략적 목표로 함. CGIAR은 글로벌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영양, 건강 및 식량안보, △빈곤 감소, 생계 및 직업 지원, △성평등, 청년과 사회 통합,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환경,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을 전략으로 수립함.

- UNDP는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구조적 변화(친환경, 통합적, 디지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역량 강화, 사회 통합, 인간 개발), 탄력성 강화(위기, 갈등, 자연재해, 기후 및 사회경제적 대응 강화) 등을 전략으로 함. WB(IDA)는 국가 재건 및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극빈과 취약계층 지원, △위기 대비 및 미래 충격 완화를 위한 복원력 구축,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등 친환경 개발, △불평등 해소 및 인적 자본 투자를 전략으로 함. ADB는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변형, 통합, 탄력성, 지속가능성 등을 전략으로 수립함. 농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빈곤 해결과 불평등 감소, 기후 및 환경 지속가능성 등이 있음.
- 제4장에서는 농업 분야 다자기구별 개발협력 사업의 수행 적합성을 검토함. 수행 적합성 분석은 개발 협력에서 공여국과 국제사회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개발효과성 및 효율성의 제고, SDGs 와 UN 푸드시스템 전환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또 유례없는 경제성장 및 농업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검토 대상인 모든 국제기구는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 실천계획에 적합성을 지니며 특히 FAO, WFP, CGIAR과 같은 농업 전문기구의 적합성이 높았음. “자연 기반 생산술

루션 촉진”은 IFAD, ADB, CGIAR 등이 적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FAO는 지속 가능한 축산, UNDP는 농생태학 및 재생적 농업, WB는 글로벌 토양 허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 중 로컬푸드 공급망 실천계획에는 FAO, WFP, IFAD가 적합하였으며 기후회복력 개발경로에는 UNDP, WB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제5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영국, 미국, 호주 등 주요 공여국의 농업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운영체계를 검토함.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기구에 사업제안서 요청 시 정책 및 전략 방향, 중점 추진 분야, 한국기업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한국인 채용 등 사업 내용적 측면과 사업 형식을 포함한 지침을 송부함. 또한 사업관리를 위해 월별, 반기별 모니터링과 착수보고회, 워크숍,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며 사업 종료 단계에서 필요시 한국 측의 전문가와 사업 수행기구 측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종료평가를 수행함.
- 영국, 호주, 미국은 다자 개발협력 협정문 내 공여국의 기여 명시, 사업비 횡령, 계약위반 및 불이행 등 국제기구의 실책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함. 특히 호주는 다자 개발협력 사업에도 성과관리, 재정관리, 공여국의 감사 및 평가 권리 등 매우 엄격한 기준과 체계를 구축함. 위 세 국가는 모두 사업 종료 후 독자적인 기구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정책 제언

- 첫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양자 사업의 보완 차원에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식량 생산 증대, 기아 종식뿐만 아니라 비교적 목표 달성이 어려웠던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SDGs에의 기여 및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다자성양자 농업 중점 추진 분야와 UN 푸드시스템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함.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푸드시스템 전환의 실천계획 중 △기아 종식, △건강한 식생활, △보편적 학교급식,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축, △로컬푸드 공급망, △원 헬스 접근법, △글로벌 토양 허브 등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중점으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자성양자는 정치적 또는 지리적으로 공여국 차원에서 사업수행 및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다자기구의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음. 따라서 잦은 분쟁, 테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운 중동 및 CIS 지역과 거리로 인해 접근성이 낮은 중남미지역을 대상으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외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이나 정부 부처의 현지사무소가 부재한 지역에도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두 번째로, 정책목표 및 방향성 설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행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사업발굴 및 기획, 집행, 종료 및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공여국의 사업관리를 위한 개입권리, 각 측의 역할 분담, 국제기구의 책무 및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협정문 내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수행기구에 대한 평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마지막으로, 다자성양자 사업의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KAPEX 등의 정책컨설팅 사업을 도입하여 기존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프로젝트형 다자성양자 사업을 직접 양자 사업과 연계,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기획을 고도화할 수 있음. 또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및 기관을 마련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3. 선행연구 검토 ..... 5

**제2장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검토**

1.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정의 및 의의 ..... 9  
 2.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국내외 현황 ..... 13  
 3. 요약 및 시사점 ..... 40

**제3장 농업 관련 주요 다자기구별 현황과 특징**

1.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43  
 2. 세계식량계획(WFP) ..... 52  
 3. 유엔 개발계획(UNDP) ..... 62  
 4.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70  
 5. 세계은행(WB) ..... 79  
 6. 아시아개발은행(ADB) ..... 88  
 7.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 98  
 8. 요약 ..... 111

**제4장 농업 관련 다자기구별 개발협력 사업의 수행 적합성 검토**

1. 농업 분야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수행 적합성 분석 방향 ..... 113  
 2. 농업 ODA의 다자 개발협력 중점 추진 분야검토 ..... 115  
 3. UN 푸드시스템(Food Systems) 전환과의 연계 ..... 121  
 4. UN 푸드시스템 실천계획의 수행 적합성 ..... 137

---

## 제5장 주요 공여국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운영체계

1. 영국 .....	139
2. 호주 .....	155
3. 미국 .....	166
4. 한국(KOICA) .....	176
5. 요약 및 시사점 .....	191

## 제6장 농림축산식품부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발전방안

1. 추진 방향 및 중점협력 분야 .....	201
2.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 .....	209
3. 성과제고 방안 .....	218

참고문헌 .....	223
------------	-----

제2장

〈표 2-1〉 개발 재원에 따른 원조 유형 분류 ..... 10

〈표 2-2〉 다자 개발협력의 구분 ..... 11

〈표 2-3〉 DAC 회원국 전체 개발원조 예산 규모 추이 ..... 14

〈표 2-4〉 DAC 회원국의 부문별 양자 지원액 추이 ..... 14

〈표 2-5〉 2019년 DAC 상위 10개국 및 한국의 원조 형태별 규모 ..... 15

〈표 2-6〉 2019년 UN 국제기구별 다자 개발협력 지원 현황 ..... 16

〈표 2-7〉 DAC 회원국의 농업 개발원조 예산 추이 ..... 16

〈표 2-8〉 DAC 회원국의 농업 부문별 양자 지원액 추이 ..... 17

〈표 2-9〉 DAC 회원국의 농업 부문별 다자성양자 지원액 추이 ..... 18

〈표 2-10〉 2019년 DAC 회원국-국제기구 농업 다자성양자 지원 현황(상위 10개) ..... 18

〈표 2-11〉 우리나라 ODA 지원 현황 추이 ..... 19

〈표 2-12〉 2022년 양자 원조 분야별 지원 현황 ..... 20

〈표 2-13〉 다자 개발협력 지원 형태별 현황(2021~2022년) ..... 20

〈표 2-14〉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별 전체 예산 추이 ..... 21

〈표 2-15〉 국제기구별 다자사업(분담금) 예산 추이 ..... 22

〈표 2-16〉 국제기구별 다자성양자(프로젝트) 예산 추이 ..... 23

〈표 2-17〉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다자 개발협력 사업목록 ..... 24

〈표 2-18〉 기획재정부의 원조 형태별 전체 예산 추이 ..... 25

〈표 2-19〉 2020~2022년 기획재정부 다자 개발협력 현황 ..... 25

〈표 2-20〉 2016~2022년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금융기구 출연금 추이 ..... 26

〈표 2-21〉 2022년 기획재정부 다자 개발협력 사업목록 ..... 27

〈표 2-22〉 외교부 원조 형태별 전체 예산 추이 ..... 28

〈표 2-23〉 2020~2022년 외교부 다자 개발협력 현황 ..... 29

〈표 2-24〉 2022년 외교부 다자 개발협력 사업목록 ..... 31

〈표 2-25〉 교육부 원조 형태별 전체 예산 추이 ..... 35

〈표 2-26〉 2022년 교육부 다자 개발협력 사업목록 .....	35
〈표 2-27〉 보건복지부 원조 형태별 전체 예산 추이 .....	36
〈표 2-28〉 보건복지부 다자 개발협력 예산 추이 .....	36
〈표 2-29〉 2022년 보건복지부 다자 개발협력 사업목록 .....	37
〈표 2-30〉 산업통상자원부 원조 형태별 전체 예산 추이 .....	38
〈표 2-31〉 산업통상부의 주요 지원기구(다자) 예산 추이 .....	38
〈표 2-32〉 산업통상부의 주요 지원기구 다자성양자(프로젝트) 지원 추이 .....	39
〈표 2-33〉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다자 개발협력 사업목록 .....	39

### 제3장

〈표 3-1〉 2022~2023년 FAO 예산구성 .....	45
〈표 3-2〉 2022~2023년 FAO 대륙별 예산실적 .....	45
〈표 3-3〉 FAO 전략목표 및 중점프로그램 .....	47
〈표 3-4〉 연도 및 유형별 FAO 사업의 수 .....	50
〈표 3-5〉 2017~2018년 FAO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결과 .....	51
〈표 3-6〉 WFP의 국가전략계획별 예산 추이 .....	55
〈표 3-7〉 WFP의 프로그램과 세부 사업내용 .....	57
〈표 3-8〉 2017~2018년 WFP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결과 .....	61
〈표 3-9〉 SDG 2 달성 목표와 UNDP 예산 현황 .....	67
〈표 3-10〉 SDG 1 달성 목표와 UNDP 예산 현황 .....	68
〈표 3-11〉 2020년 UNDP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결과 .....	69
〈표 3-12〉 지역별 IFAD 지출 현황 .....	72
〈표 3-13〉 사업 부문별 포트폴리오 분포(2019년 기준) .....	73
〈표 3-14〉 2018/2019년 Pilar 별 정기예산 현황 .....	73
〈표 3-15〉 2017~2018년 IFAD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결과 .....	78
〈표 3-16〉 World Bank 5개 기관별 주요 현황 .....	80
〈표 3-17〉 World Bank 자금 지원기관별 역할 .....	80

〈표 3-18〉 IDA의 지역별 약정액(Commitments) .....	83
〈표 3-19〉 IDA의 분야별 약정액(Commitments) .....	83
〈표 3-20〉 IDA의 주제별 약정액(Commitments) .....	84
〈표 3-21〉 IDA 주제별 정책 이행방안 .....	85
〈표 3-22〉 2015~2016년 World Bank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결과 .....	87
〈표 3-23〉 지역별 약정(Commitments)금액 추이 .....	92
〈표 3-24〉 분야별 ADB 약정액(Commitments) 사용현황 .....	92
〈표 3-25〉 “전략 2030”과 운영계획 .....	96
〈표 3-26〉 2017~2018년 ADB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결과 .....	98
〈표 3-27〉 CGIAR 연구센터 및 정보 .....	100
〈표 3-28〉 CGIAR 도전과제 및 지역별 연계성 .....	109
〈표 3-29〉 2019 CGIAR 다자기구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결과 .....	110
〈표 3-30〉 다자기구별 주요 현황 및 특징 요약 .....	111

## 제4장

〈표 4-1〉 한국형 ODA 모델 중 농업 분야 프로그램 목록 .....	117
〈표 4-2〉 다자성양자 원조의 중점 추진 분야 설정을 위한 농업 ODA 분야 .....	118
〈표 4-3〉 다자성양자 원조의 중점협력 분야 설정을 위한 기준 .....	119
〈표 4-4〉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 .....	120
〈표 4-5〉 UN 푸드시스템 실천 분야 및 실천계획 .....	122
〈표 4-6〉 SDGs 세부 목표별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 실천계획 분류 .....	128
〈표 4-7〉 SDGs 세부 목표별 “자연 기반 생산솔루션 촉진” 실천계획 분류 .....	132
〈표 4-8〉 SDGs 세부 목표별 “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 실천계획 분류 .....	135
〈표 4-9〉 UN 푸드시스템 실천계획과 SDGs 세부 목표 .....	136
〈표 4-10〉 다자기구별 UN 푸드시스템 전환의 실천계획 수행 적합성 .....	138

## 제5장

〈표 5-1〉 2016~2020년 영국 양자-다자별 ODA 지원 현황	139
〈표 5-2〉 2019년 영국 분야별 다자 개발협력 지원 규모	140
〈표 5-3〉 2015~2019년 영국 ODA 농업 분야 지원 현황	141
〈표 5-4〉 2015~2019년 영국 농업 분야 다자성양자 원조 수행 상위 5개 기관	141
〈표 5-5〉 2012~2019년 영국 농업 분야 지원유형별 다자성양자 협력 추이	142
〈표 5-6〉 2022년 FCDO에서 시행 중인 농업 분야 다자사업 목록	142
〈표 5-7〉 FCDO 기본지침 중 다자협력에 대한 세부 사항 명시 내용	144
〈표 5-8〉 FCDO의 다자사업 협력 기관 유형별 사업 실사 평가 항목	147
〈표 5-9〉 다자기구 실사 평가 예시 질문	148
〈표 5-10〉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협력기구별 협의서 형식	152
〈표 5-11〉 FCDO의 다자성양자 사업 기여 약정 주요 내용 정리	153
〈표 5-12〉 2016~2020년 호주 양자-다자별 ODA 지원 현황	155
〈표 5-13〉 2019년 호주 분야별 다자 개발협력 지원 규모	156
〈표 5-14〉 호주의 농업 ODA 중점협력 분야 및 목표	156
〈표 5-15〉 2015~2019년 호주 ODA 농업 분야 지원 현황	157
〈표 5-16〉 2015~2019년 호주 농업 분야 다자성양자 원조 수행 상위 5개 기관	158
〈표 5-17〉 2012~2019년 호주 농업 분야 지원유형별 다자성양자 협력 추이	158
〈표 5-18〉 사업 규모에 따른 품질보증 평가	162
〈표 5-19〉 품질보증 평가 기준 및 내용	162
〈표 5-20〉 DFAT의 다자성양자 사업 증여약정 주요 내용	164
〈표 5-21〉 DFAT의 사업수행단계별 위험관리 활동	165
〈표 5-22〉 2016~2020년 미국 양자-다자 지원 규모	167
〈표 5-23〉 2019년 미국 분야별 다자 개발협력 지원 규모	167
〈표 5-24〉 2015~2019년 미국 ODA 농업 분야 지원 현황	170
〈표 5-25〉 최근 5년간 미국 농업 분야 다자성양자 원조 수행 상위 5개 기관	170

〈표 5-26〉 2012~2019년 미국 농업 분야 지원유형별 다자성양자 협력 추이 .....	171
〈표 5-27〉 USAID 표준약정서(Program contribution agreement) 내용 .....	174
〈표 5-28〉 2016~2020년 KOICA의 국제기구 협력사업 결산예산 현황 .....	176
〈표 5-29〉 KOICA 농업 분야 국제기구 다자 협력사업 현황(2020년 기준) .....	177
〈표 5-30〉 KOICA 다자성양자 사업 발굴단계 절차 및 내용 .....	178
〈표 5-31〉 KOICA의 국제기구 다자사업 형성지침 주요 내용 .....	178
〈표 5-32〉 다자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보고서 내용 .....	179
〈표 5-33〉 KOICA 국제기구사업 (PCP) 예비검토 및 사업심사 기준표 .....	180
〈표 5-34〉 사업착수 세부 단계별 일정 및 주요 내용 .....	182
〈표 5-35〉 KOICA 국제기구 협력사업 표준 약정안 세부 내용 .....	184
〈표 5-36〉 KOICA의 다자사업 관리방안 및 내용 .....	185
〈표 5-37〉 사업관리를 위한 보고서별 목적 및 구성 내용 .....	186
〈표 5-38〉 KOICA의 다자사업 관리체계 요약 .....	190
〈표 5-39〉 국별 기금협정문 구성 내용 요약 .....	193

## 제6장

〈표 6-1〉 다자 개발협력 분류 .....	200
〈표 6-2〉 농식품부 ODA 사업구성 .....	202
〈표 6-3〉 농업 ODA 추진 분야와 UN 푸드시스템 실천계획과의 연계성 .....	204
〈표 6-4〉 중점 지원 실천계획별 수행 적합 기구 .....	207
〈표 6-5〉 농림축산식품부 프로젝트형 ODA 사업지역별 사업비 비중 .....	208
〈표 6-6〉 농업 관련 주요 다자기구별 지역별 사무소 현황 .....	209
〈표 6-7〉 다자성양자 사업의 심사 및 평가 기준 예시 .....	213

**제3장**

<그림 3-1> FAO의 전략 및 목표 변화 ..... 46

<그림 3-2> WFP 조직도 ..... 52

<그림 3-3> WFP의 전략구조 ..... 54

<그림 3-4> WFP 연도별 예산 규모 ..... 54

<그림 3-5> WFP 대륙별 예산 비율 및 상위 사업국 ..... 55

<그림 3-6> UNDP 조직도 ..... 63

<그림 3-7> UNDP 3 × 6 × 3 프레임워크 ..... 64

<그림 3-8> IFAD 조직도 ..... 71

<그림 3-9> IFAD 전략구성 ..... 75

<그림 3-10> World Bank 조직도 ..... 81

<그림 3-11> ADB 조직도 ..... 89

<그림 3-12> 연도별 ADB 약정(Commitments)금액 추이 ..... 91

<그림 3-13> 2019/2020년 지역별 상위 5개 사업 분야 및 비중 ..... 94

<그림 3-14> CGIAR 조직도 ..... 100

<그림 3-15> CGIAR 채널별 예산 비중 추이 ..... 101

<그림 3-16> CGIAR 프로그램별 예산 비중 ..... 102

<그림 3-17> CGIAR 연구기관별 예산 비중 ..... 103

<그림 3-18> CGIAR 전략 프레임워크 ..... 104

**제5장**

<그림 5-1> FCDO의 중앙접근평가 절차 과정 ..... 147

<그림 5-2> FCDO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절차 ..... 151

<그림 5-3> 원조 규모별 사업 설계 및 수행 절차(DFAT, 호주) ..... 160

<그림 5-4> 사업 규모에 따른 사업발굴 및 설계 절차도(DFAT, 호주) ..... 163

<그림 5-5> 미국 정부의 세계 식량안보 전략 주요 목표 및 활동 결과 ..... 169

---

〈그림 5-6〉 USAID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단계 ..... 173

**제6장**

〈그림 6-1〉 정부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 비전 및 목표 ..... 199

〈그림 6-2〉 농업 ODA 다자성양자의 중점 추진 분야 ..... 204

# 1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연구 필요성

○ 최근 COVID-19 팬데믹, 기후변화 등으로 기아 발생, 빈곤 위기 심화로 인한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후퇴로 다양한 개발협력의 시급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제사회는 각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시민단체, 기업 등 개발협력 주체 간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1).

-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국가사무소 통폐합, 본부 차원의 조정 및 역할 강화 등 유엔개발시스템(UNDS) 활동의 효과성·일관성·통합성을 개선하고자 함.
- OECD DAC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HDP) 간 연계를 강조하며, 다수의 공여국과 국제기구 간 합의를 통해 개발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추진 중임.

○ 이에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서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 등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까지 2019

년 대비 ODA 규모 2배 확대 및 국제적 공동이슈 대응 선도 등의 계획을 발표함(관계부처 합동, 2021).

- 특히, “함께하는 ODA”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ODA 고도화 전략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5대 UN 중점협력기구(WHO, UNICEF, WFP, UNDP, UNHCR)와 기구별 전문성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다자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우리 정부 차원의 다자기구와의 협력 성과제고 및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기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다자원조 또는 다자성양자와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한 개발협력사업의 추진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차원규 외, 2020).

- 2019년 기준 OECD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 총지원액인 1조 5천억 달러 중 다자원조는 28.3%, 다자성양자 원조는 16.2%임. 즉 국제기구에 지원되는 다자 개발협력 사업은 전체의 개발원조의 44.5%를 차지함.

- 특히, 전체 개발원조 규모는 2012년 대비 2019년에 20.9% 증가한 반면, 다자성양자는 동 기간 37.2%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동 기간 양자는 22.5%, 다자는 16.9% 성장함.

○ 그러나 한국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 비중은 37.2%로, OECD DAC 회원국의 평균 44.5%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특히,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상위 10개국의 평균 51.5%와 비교하면 더욱 낮아 한국 정부도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면서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의 예산 규모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임. 2006년 4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 기준 1,055억 원으로 매우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음.

- ('06년) 4억 원 → ('13년) 128억 원 → ('20년) 889.5억 원 → ('22년) 1054.4억 원  
(확정액 기준)

- 2022년 기준, 양자 896.4억 원, 다자 158억 원, 다자성양자는 630.7억 원으로 농식품부 전체 ODA 재원의 75% 정도가 국제기구 협력사업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자성양자 사업은 2011년 FAO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간 사업 규모는 지속해서 확대됨. 특히 2018년부터 WFP에 460억 원의 식량원조 사업으로 매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11) 5억 원 → ('14) 25억 원 → ('18) 483.6억 원 → ('22) 623억 원

○ 그러나 농식품부 내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전략적 추진 방향이 부재하며, 비전문적인 운영체제로 인해 개발효과성 및 수행 효율성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개발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가 필요함.

## 1.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국제기구 농업협력사업(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전략적 추진 방향과 효율적 운영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1. 연구내용

- 제1장에서는 연구 필요성,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 및 내용을 기술하였음.
- 제2장에서는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정의 및 목적, 의의, 유형 등 이론적 배경에 대해 파악하였음. 또한 국내외의 농업 분야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검토하였음.
- 제3장에서는 주요 다자기구별 농업 분야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전략, 중점분야, 주요 우선순위 프로그램 등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였음. 주요 다자기구는 FAO, WFP, UNDP, IFAD, WB, ADB, CGIAR 등 총 7개 기구를 대상으로 함.
- 제4장에서는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수행 적합성 분석을 수행하였음.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협력 분야를 검토하였음. 또한 UN 푸드시스템 전환의 실천 연합과 그에 따른 실천계획을 바탕으로 기구별 수행 적합 분야를 선정하였음.
- 제5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공여국 다자 개발협력의 운영체계검토를 통해 효율적 사업수행체계 및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음. 조사 대상 국가는 영국, 호주, 미국, 일본으로 국별 다자 개발협력 현황과 운영체계에서 농식품부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제6장에서는 모든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자개발 협력사업의 전략적 추진 방향과 효율적 사업수행체계를 제시하였음.

## 2.2. 연구 방법

### ○ 국내외 ODA 통계자료 분석 및 문헌자료 조사

- OECD DAC 회원국 ODA 지원 현황 분석
- 국내 ODA 지원 현황 분석
- 다자성양자 원조 관련 보고서 및 논문 등 연구자료 검토

### ○ ODA 관계기관과 전문가 면담

- 주요 면담 대상: 농식품부, 외교부(KOICA), 국조실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담당자, 학계 및 연구계 ODA 전문가 등
- 다자성양자 원조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농업 분야 ODA에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 및 특징
- 농식품부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 등

### ○ 해외 사례조사

- 주요 공여국의 국제기구 협력사업 성과관리 방안 조사
- 주요 공여국과 협력 경험이 풍부한 국제기구 담당자 인터뷰 조사 등

## 3. 선행연구 검토

○ 김종섭 외(2013, 2015), 박재영(2008), 정현주 외(2017) 등 국내 선행연구는 다자성양자 원조에 관한 본질적 연구보다는 현재 KOICA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자성양자 사업의 추진체계 구축 및 효과성 제고 측면을 중점으로 다룸.

- 박재영(2008)은 다자원조 형태와 장단점, 한국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일관된 다자

정책 마련, △질적 제고, △평가 기준에 따른 다자원조의 집중적 지원 등을 한국 다자원조의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

- 김종섭 외(2013)는 KOICA의 중점협력 다자기구를 분석하여 다자협력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원칙 및 목표 구축, 가이드라인 통합,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도입, 현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음. 또한 김종섭 외(2015)는 32개 다자기구에 대한 다자기구 성과 네트워크(MOPAN)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원조 정책 수립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자체적인 평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 주장함.
- 손혁상 외(2013)는 주요 공여국(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호주)의 다자원조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다자원조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주요 제언으로 다자원조 가이드라인 또는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통해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체계 마련, 적정 수준의 다자원조 비중 책정, 우선순위에 기반한 지원,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을 제시하였음.

○ 위의 선행연구는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원칙 및 사업추진, 평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함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다자성양자 사업추진을 위한 기구별 특성, 중점 추진 분야 제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차원규 외(2020)는 농업 분야 다자성양자 원조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를 통해 농업 분야 다자성양자 원조의 중점 추진 분야 및 기구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자 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식량원조와 같은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국제적 공동이슈 대응으로 원조의 가시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프로젝트 형태로 개발효과성도 제고할 수 있는 두 가지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음.

○ Eichenauer et al.(2017), Reinsberg et al.(2015), Tortora and Steensen(2014) 등 국외 선행연구의 경우 다자성양자 사업의 정당성, 장단점, 공여국 및 수원국의 다자성양자 사업의 특징이나 양상 등을 주로 연구함.

- Tortora and Steensen(2014)은 다자기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공여국, 회원국, 민간부문 등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투명한 성과 보고 체계 마련을 주장하였음. OECD/DAC 회원국 또한 지정 기여에 대한 정책의 부재, 공여 채널의 분산 등의 문제는 다자기구의 일관적인 사업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공여국의 전략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음.
- Reingsberg et al.(2015)는 다자성양자 원조가 부가적인 거래비용을 발생시키고 다자체제를 압박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통적 다자원조를 보완하여 공여국 간의 원조 조화와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를 이끄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을 주장함.
- Eichenauer and Reinsverg(2017)는 OECD 23개 공여국의 다자성양자 사업 자료를 토대로 지정 기여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공여국의 역량 부족과 위험 회피적 전략을 다자성양자 원조 지원의 주된 이유로 지목함. 또한 지정 기여 원조와 직접 양자 원조의 효과가 수원국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며, 다자성양자 원조가 공여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양자 사업의 보완적인 요소임을 주장함.

○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공여국이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특정 분야나 지역에 전문성을 갖춘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원조 효과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다자성양자 원조는 공여국의 지정기여금으로 인한 다자기구 본질 및 우선순위 왜곡, 행정부담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순수 다자보다 공여국의 목적과 의도가 잘 반영될 수 있으므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선호되고 있음. 또한 국제기구도 지정기여금 형태의 사업을 확대 중임.



# 2

##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검토

### 1. 다자 개발협력의 정의 및 의의

#### 1.1. 개발협력 재원의 구분

- 개발협력 재원은 크게 한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적 재원과 해외직접 투자, 수출 신용, 국제기관 용자 등 민간자본 흐름과 NGO 등과 같은 시민단체 및 조직에 의한 증여 등을 포함하는 민간재원으로 분류됨.
  - 공적 재원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협력 대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으로 구분됨.
  - 공적개발원조는 지원 방식에 따라 크게 양자(Bilateral)와 다자(Multilateral)로 구분되는데, 양자원조는 ‘국가 대 국가’라는 개념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양국 간 직접적인 협력관계에 기반을 두는 것임. 다자원조는 UN 기구 등과 같은 다자기구 또는 국제기구로 일컫는 조직 및 단체를 지원하여 다자기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간접적인 형태임.

〈표 2-1〉 개발 재원에 따른 원조 유형 분류

구분		지원 방식	내용
공적재원	공적개발원조 (ODA)	양자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양허성 공공차관, NGO를 통한 지원 등
		다자성양자	지정기여금으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등
		다자	의무분담금, 자발적 기여금 등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기타공적자금 (OOF)	양자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다자	국제기관 용자 등
민간재원	민간자본흐름	-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 신용, 국제기관 용자, 증권투자 등
	민간증여	-	NGO에 의한 증여 등

자료: 차원규 외(2020).

○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다자성양자(Multi-bi)는 양자와 다자의 성격을 모두 지닌 제3의 원조 형태임. 양자 성격의 개발 재원을 다자기구를 통해 수행하는 것을 일컬음.

- 다자성양자는 공여국이 개발 재원을 다자기구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상 국가, 지역, 분야 및 지원 목적 등을 지정(earmarked)하는 것이 특징임.

## 1.2. 다자 개발협력의 정의

○ 다자개발협력은 다자(순수다자)와 다자성양자 등 다자기구에 유입되는 개발 자원 및 사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국제기구 협력사업, 다자협력 등으로도 표현됨. 따라서 다자개발협력은 다자와 다자성양자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OECD의 기준에 따르면 다자원조(Multilateral aid)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첫째, 활동의 전부 혹은 일부가 개발을 위해 추진되며,
- 둘째,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적인 조직이거나 이러한 조직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기금(Fund)이면서,

- 셋째, 기여금의 출처나 특정 조건과 관계없이 총체적으로 기여금을 운영하는 조직에 제공되는 원조임(차원규 외 2020 재인용, 박재영 2008).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다자원조는 공여국 정부가 수원국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연금, 분담금, 기여금, 신탁기금 등)·출자(신규가입, 지분 확대, 정규재원 보충 등 자본금 형태의 출자금),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해 개도국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임(조한슬 2013).
- 분담금, 기여금, 출자금, 양허성 차관 등 형태의 순수 다자는 재원의 운용 및 활용에 대해 전적으로 다자기구 임의로 집행함. 이러한 다자를 비지정 기여(Unearmarked contribution), 핵심 기여(Core-contribution)라고도 하며, OECD DAC 통계상 다자원조(multilateral)로 분류됨.

〈표 2-2〉 다자 개발협력의 구분

구분		지원 방식	내용
다자 개발협력	다자 (Multilateral)	출연	다자기구에 대한 출연금, 분담금, 기여금, 신탁기금 등으로 해당 기구의 회원 탈퇴 시에도 상환이 불가능
		출자	다자기구의 신규 가입, 지분 확대, 정규재원 보충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자금으로 회원 탈퇴 시 상환 가능
		양허성 차관	ODA 조건으로 양허 공여된 차관 등
다자성양자 (Multi-bi)	프로그램	주제별 기금, 기구 간 공동기금 등 협력 대상국의 지정 없이 기여 분야를 지정하여 기여	
	프로젝트	공여국이 특정 분야, 국가 및 지역, 지원 목적 등을 지정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국제기구를 수행기관으로 위탁	

자료: 저자 작성.

- 한편, 다자성양자는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하지만 위의 세 가지 다자(순수다자)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을 다자성양자로 분류하고 있음.
- 다자성양자는 공여국이 기여금을 국제기구에 제공하면서 해당 재원의 운용, 용처, 목적, 대상국 등을 선택 지정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지정 기여(Earmarked contribution), 비핵심 기여(Non-core contribution)라고도 함. OECD DAC 통계상으로는 양자원조(bilateral)로 분류됨.

- 다자성양자의 지원 방식은 크게 프로그램 지원과 프로젝트 지원으로 구분됨. 프로그램 지원은 협력 대상국을 지정하지 않고 기여 분야만 지정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주제별 기금(Thematic fund), 기구 간 공동기금(Pooled-fund)이 이에 속함. 프로젝트 지원은 공여국이 국제기구에 재원을 지원하면서 국가 및 지역, 분야, 지원 목적 등을 지정하여 사업 활동을 위탁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음.

### 1.3. 다자성양자의 의의

- 다자성양자는 최근 대두된 개념으로 국제사회 및 학계에서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음. 그런데도 다자성양자가 지닌 많은 장점 때문에 최근 주요 공여국에서 다자성양자의 활용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다자성 양자는 특정 분야 및 지역에 전문성을 갖춘 국제기구가 공여국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및 과제에 집중하여 효과성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다자성양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차원규 외 2020).
- 또한 국가 간, 민족 간 분쟁 등 국제적 정세 및 이해관계 때문에 공여국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국제기구의 중립성을 바탕으로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아울러 세계은행그룹, UN 산하 기구 등 오랜 전통과 명성을 지닌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공여국의 원조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다자원조와 같은 분담금에 비해 지정 기여는 자금추적이 쉬우므로 공여국의 브랜딩 및 가시성이 명확함.
- 마지막으로 현지 접근성 및 관리 측면에서 공여국보다 국제기구가 비교우위에 있는 경우 다자성양자를 활용할 수 있음. 예컨대 물리적 거리 또는 공여국의 해외공관 또는 지역사무소의 부재로 인해 사업관리가 어려운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성양자가 활용

될 수 있음. 그뿐만 아니라 수원국 차원에서도 오랜 기간 국제기구와의 신뢰성 및 사업 수행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반면, 공여국의 지정기여금으로 인해 다자기구 특유의 본질이나 우선순위를 왜곡하며, 또 기구의 행정부담 가중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음.

## 2. 다자 개발협력의 국내외 현황

### 2.1. OECD DAC 회원국의 다자 개발협력 지원 현황

- OECD DAC 회원국의 개발원조 예산 규모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에는 2012년 대비 26.4% 증가한 1조 5,000억 달러를 기록함.
  - 2019년 기준 양자 원조 규모는 2012년 대비 30% 증가한 1조 8백억 달러로 전체 개발협력 예산의 71.7%를 차지하였으며, 다자원조 규모는 4,300억 달러로 28.3%를 차지함.
  - 2019년 다자 개발협력 원조의 규모, 즉 다자기구에 유입된 예산 규모(다자+다자성양자)는 2012년 대비 32% 증가한 약 6,748억 달러로 전체 개발원조의 44.5%의 비중을 차지함.
  - 한편, 2019년 다자성양자와 다자원조 규모의 성장률은 2012년 대비 각각 59.3%, 20.4%로 나타남. 이는 곧 다자 개발협력 원조 규모가 최근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인 것은 다자성양자 원조 규모의 성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표 2-3〉 DAC 회원국 전체 개발원조 예산 규모 추이<sup>1)</sup>

단위: 천만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120,007	126,381	128,381	136,180	151,045	150,737	150,762	151,721
양자	84,325	88,408	89,382	97,847	107,596	108,227	107,719	108,761
다자성양자	15,387	16,843	18,360	18,672	21,543	23,148	22,828	24,519
다자	35,682	37,973	38,999	38,333	43,450	42,510	43,043	42,960
다자개발협력	51,069	54,816	57,359	57,005	64,993	65,658	65,871	67,479
다자개발협력률(%)	42.6%	43.4%	44.7%	41.9%	43.0%	43.6%	43.7%	44.5%

자료: OECD Stats.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작성.

주: 2020년의 다자성양자 관련 자료는 현재 업데이트되지 않음.

○ 2019년 DAC 회원국의 부문별 양자 지원액 중 가장 높은 부문으로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465억 달러)이며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217억 달러), 인도적 지원(179억 달러), 다 부문(114억 달러), 생산 부문(90억 달러)이 그 뒤를 따름.

〈표 2-4〉 DAC 회원국의 부문별 양자 지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Current Prices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46,169	44,562	41,891	411,28	406,77	42,021	43,229	46,590	46,501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16,998	17,974	20,836	22,160	22,234	22,040	21,770	21,744	21,729
생산 부문	8,390	7,829	7,595	7,786	7,601	6,080	8,752	7,949	9,015
다부문	11,441	10,466	10,339	10,960	11,776	12,123	10,078	10,255	11,370
소비재/ 일반프로그램	3,896	3,490	5,358	2,421	2,550	2,363	3,664	2,848	2,327
부채 관련 지원	4,391	3,068	3,549	643	417	2,379	670	202	43
인도적 지원	9,580	8,849	10,747	13,987	13,262	15,405	16,853	14,805	17,852

자료: OECD Stats.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작성.

○ 2019년 DAC 회원국별 개발원조 지원은 미국이 329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독일(241억 달러), 영국(194억 달러), 프랑스(120억 달러), 일본(117억 달러)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한국의 개발원조 지원 규모는 25억 달러에 달함.

<sup>1)</sup> 2017년까지는 순 지출(Net Disbursements), 2018년 이후는 증여증가액(grant equivalent) 기준

〈표 2-5〉 2019년 DAC 상위 10개국 및 한국의 원조 형태별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전체 ODA	양자	양자(%)	다자성양자	다자	다자(%)	다자개발협력(%)
미국	32,980.72	28,814.12	87.4	7,468.35	4,166.60	12.6	35.3
독일	24,122.38	18,505.78	76.7	3,568.21	5,616.60	23.3	38.1
영국	19,354.22	13,052.21	67.4	3,971.63	6,302.01	32.6	53.1
프랑스	11,984.15	7,443.95	62.1	306.21	4,540.20	37.9	40.4
일본	11,720.19	7,477.44	63.8	1,139.19	4,242.75	36.2	45.9
네덜란드	5,292.00	3,425.04	64.7	767.26	1,866.96	35.3	49.8
스웨덴	5,204.71	3,468.37	66.6	1,346.07	1,736.34	33.4	59.2
캐나다	4,534.51	3,040.24	67.0	1,092.87	1,494.28	33.0	57.1
이탈리아	4,298.17	1,322.78	30.8	381.95	2,975.39	69.2	78.1
노르웨이	4,297.83	3,315.32	77.1	1,494.39	982.51	22.9	57.6
<b>한국</b>	<b>2,517.13</b>	<b>1,910.99</b>	<b>75.9</b>	<b>330.14</b>	<b>606.14</b>	<b>24.1</b>	<b>37.2</b>

자료: OECD Stats.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작성.

주: 다자개발협력은 다자와 양자를 합한 수치

○ 회원국별 개발협력 지원 규모를 지원 형태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양자원조 비중) 회원국별 전체 지원 규모 중 양자 원조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87.4%), 노르웨이(77.1%), 독일(76.7%), 한국(75.9%), 영국(67.4%) 순임.
- (다자원조 비중) 다자원조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69.2%), 프랑스(37.9%), 일본(36.2%), 네덜란드(35.3%), 스웨덴(33.4%) 순임. 한국의 다자원조 비중은 24.1%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
- (다자 개발협력 비중) 다자와 다자성양자를 합한 금액으로 다자기구에 지원이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78.1%), 스웨덴(59.2%), 노르웨이(57.6%), 캐나다(57.1%), 영국(53.1%) 순임. 한국은 37.2%로 매우 낮은 수준임.

○ UN 산하 국제기구는 다자원조로 중앙비상대응기금, 유엔평화유지부,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 순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 이 중 농업 분야 관련 기구인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식량계획(WFP), 세계식량농업기구(FAO)도 상위권에 속함.

○ 다자성양자의 경우에는 세계식량계획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 유엔아동기금, 국제이주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난민기구, 세계식량농업기구가 그 뒤를 따름.

〈표 2-6〉 2019년 UN 국제기구별 다자개발협력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Current Prices

구분 순위	다자원조		다자성양자	
	다자기구명	금액	다자기구명	금액
1	중앙비상대응기금(CERF)	708.36	세계식량계획(WFP)	4543.2
2	유엔평화유지부(DPO)	702.75	유엔마약범죄사무소	2619.43
3	유엔개발계획(UNDP)	669.55	유엔아동기금 (UNICEF)	2295.01
4	유엔아동기금 (UNICEF)	566.40	국제이주기구(IOM)	710.44
5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533.86	세계보건기구(WHO)	661.18
6	유엔난민기구(UHCHR)	435.05	유엔난민기구(UHCHR)	639.81
7	세계보건기구(WHO)	369.42	세계식량농업기구(FAO)	347.86
8	유엔인구기금(UNPF)	360.34	유엔환경계획(UNEP)	162.06
9	세계식량계획(WFP)	353.85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139.03
10	세계식량농업기구(FAO)	293.59	국제노동기구(ILO)	136.63

자료: OECD Stats.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작성.

주: 세계은행그룹, UN 본부, EU 본부,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사업기구 제외.

○ 2019년 DAC 회원국의 농업 부문 ODA 예산은 약 49억 달러로 DAC 회원국의 전체 ODA 예산(1,517억 달러)의 3%에 불과함(표 2-3 참조). 이 중 농업 부문 다자성양자는 전체 농업 개발원조에서 15~20%를 차지함.

〈표 2-7〉 DAC 회원국의 농업<sup>2)</sup>개발원조 예산 추이

단위: 지출총액, 백만 달러, Current Prices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업 전체(A)	4,964.2	5,021.3	5,080.2	4,876.7	5,046	4,997.2	5,098.2	4,731.2
농업	4,033.4	4,202.4	4,211.5	4,263.9	4,448.1	4,287.5	4,113.6	4,069.8
농촌개발	930.8	818.9	868.7	612.8	597.9	709.7	984.6	661.4
다자성양자(B)	755.2	917.9	790	796.8	902.3	1,079.2	721.8	733.4
농업	711.4	862.9	734.5	758.2	853.8	1,017.0	654.0	634.4
농촌개발	43.8	55.0	55.5	38.59	48.5	62.22	67.82	98.97
B/A(%)	15	18	16	16	18	22	14	16

자료: OECD Stats.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작성.

2) CRS 코드 중 311: Agriculture, 43040: Rural Development 합산(식량원조 등은 세부 내역 없어 정확히 분류할 수 없으므로 제외)

○ 2019년 DAC 회원국의 농업 분야별 양자 ODA 지원액은 농업개발 분야가 12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업정책/행정(8.7억 달러), 농촌개발(6.6억 달러), 농업연구(4.6억 달러), 농업용 수자원(3.7억 달러), 식량작물 생산(2억 달러), 농업재정서비스(1.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 농업 대안 개발, 가축/수의학 분야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산업/수출작물은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표 2-8〉 DAC 회원국의 농업 부문별 양자 지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Current prices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업정책/행정	606.32	549.07	473.32	689.26	721.37	780.45	687.43	868.82
농업개발	1,407.6	1,431.6	1,869.91	1,831.9	1,981.2	1,678.9	1,486.0	1,235.44
농경지자원	105.13	102.23	76.29	143.55	120.14	171.86	153.52	92.30
농업용 수자원	412.42	500.99	434.45	434.59	376.43	322.49	348.54	370.57
농업 투입물	97.37	59.56	51.24	48.79	40.79	50.81	42.47	53.42
식량작물 생산	197.18	230.17	100.72	109.05	112.87	132.20	164.11	201.81
산업/수출작물	28.91	27.04	38.79	25.47	23.70	32.40	37.32	124.86
축산	49.55	48.18	42.37	49.12	65.67	50.21	56.91	49.19
농업개혁	44.94	46.50	31.19	19.68	23.87	23.13	13.12	14.47
대체농업개발	189.79	151.78	145.11	137.19	119.52	133.17	140.82	109.21
농업지도	54.15	53.52	55.72	55.87	41.66	47.70	58.37	43.62
농업 교육훈련	80.57	93.15	95.74	87.80	94.04	83.32	111.34	101.58
농업연구	437.59	530.67	489.22	396.46	417.35	445.07	464.91	458.77
농업 서비스	116.26	107.15	94.61	67.91	64.17	66.27	96.68	105.12
병해충예방	14.03	13.01	16.52	15.32	10.20	10.83	10.93	9.48
농업재정서비스	120.56	174.64	71.07	73.10	128.35	150.70	152.57	136.94
농업 협동조합	44.96	56.30	66.15	62.84	66.49	65.95	72.73	76.58
가축/수의학	26.03	26.83	59.08	16.12	40.27	42.07	15.82	17.60
농촌개발	930.84	818.91	868.73	612.77	597.89	709.70	984.57	661.43

자료: OECD Stats.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작성.

○ 다자성양자 ODA 또한 양자 ODA와 마찬가지로 농업개발, 농업정책/행정 분야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농업연구, 농촌개발, 농업 서비스, 식량작물 분야가 그 뒤를 따름.

〈표 2-9〉 DAC 회원국의 농업 부문별 다자성양자 지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Current prices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농업정책/행정</b>	<b>152.09</b>	<b>134.48</b>	<b>106.48</b>	<b>185.04</b>	<b>232.64</b>	<b>291.48</b>	<b>179.77</b>	<b>177.51</b>
<b>농업개발</b>	<b>247.21</b>	<b>269.75</b>	<b>392.27</b>	<b>406.46</b>	<b>421.58</b>	<b>206.98</b>	<b>203.51</b>	<b>204.58</b>
농경지자원	18.24	15.43	8.34	14.80	14.95	36.74	27.76	5.47
농업용 수자원	13.97	17.78	8.51	7.87	12.61	8.88	8.36	9.59
농업 투입물	13.70	16.23	13.28	7.67	1.35	1.01	0.99	2.85
<b>식량작물 생산</b>	<b>13.27</b>	<b>16.66</b>	<b>11.93</b>	<b>7.86</b>	<b>14.98</b>	<b>15.74</b>	<b>30.01</b>	<b>27.29</b>
산업/수출작물	0.95	0.44	1.39	0.00	0.60	1.58	1.64	0.53
축산	3.38	1.42	4.11	0.70	4.61	3.14	5.53	6.71
농업개혁	0.00	2.66	2.65	0.00	0.00	0.00	0.35	8.17
대체농업개발	10.88	6.72	2.56	0.95	1.64	3.86	40.71	7.10
농업지도	3.12	5.81	2.23	2.82	1.80	1.90	2.66	2.84
농업 교육훈련	4.96	8.28	7.76	4.57	10.56	7.47	11.86	19.02
<b>농업연구</b>	<b>100.89</b>	<b>198.66</b>	<b>129.15</b>	<b>100.80</b>	<b>88.40</b>	<b>62.20</b>	<b>80.99</b>	<b>89.14</b>
<b>농업 서비스</b>	<b>47.56</b>	<b>56.26</b>	<b>16.20</b>	<b>3.59</b>	<b>6.11</b>	<b>15.73</b>	<b>24.41</b>	<b>33.31</b>
병해충예방	0.86	2.44	4.57	5.62	2.82	3.86	3.65	3.87
농업재정서비스	71.89	97.63	14.29	2.99	33.35	10.23	20.89	25.76
농업 협동조합	1.96	4.91	2.14	1.89	2.44	1.34	2.70	8.77
가축/수의학	7.28	7.90	7.23	4.78	3.65	2.83	8.88	3.40
<b>농촌개발</b>	<b>43.78</b>	<b>55.00</b>	<b>55.49</b>	<b>38.59</b>	<b>48.50</b>	<b>62.22</b>	<b>67.82</b>	<b>82.26</b>

자료: OECD Stats.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9년 농업 부문에 대한 다자기구 지원 현황을 보면, IDA, MIGA 등 세계은행그룹이 1억 5,3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1.3억 달러), 국제부흥은행(1억 달러), 유엔개발계획(3,900만 달러), 유엔식량계획, 국제농업개발기금 등이 지원을 받았음.

- 농촌개발 분야만 따로 보면, 유엔식량계획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

〈표 2-10〉 2019년 DAC 회원국-국제기구 농업 다자성양자 지원 현황(상위 10개)

단위: 백만 달러, Current prices

순위	다자기구명	농업 전체	농촌개발	합계
1	세계은행그룹(IDA, MIGA)	145.67	7.4	153.07
2	세계식량농업기구(FAO)	128.32	2.17	130.49
3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07.481	1.52	109.0
4	유엔개발계획(UNDP)	20.482	19.23	39.71

순위	다자기구명	농업 전체	농촌개발	합계
5	유엔식량계획(WFP)	38.491	0.47	38.96
6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28.321	0.99	29.31
7	국제금융공사(IFC)	17.484	3.63	21.11
8	태평양공동체(Pacific Community)	0.610	9.73	10.34
9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10.191	-	10.19
10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8.496	0.14	8.63

자료: OECD Stats.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2. 한국의 다자 개발협력 지원 현황

○ 한국의 개발협력 지원 총액은 2016년 2조 4천억 원 수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4조 원에 달하였음.

- 2022년 기준 양자 원조는 약 3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79.7%를 차지하고 있음. 양자 원조를 다시 유상, 무상으로 나누어 보면 무상원조는 약 1조 3천억 원, 유상 원조는 1조 9천억으로 양자 유상이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다자원조 또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약 8,200억 원에 달함.

〈표 2-11〉 우리나라 ODA 지원 현황 추이

단위: 십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ODA	2439.4	2635.9	3048.2	3200.3	3427.0	3,154.3	4,042.5
양자 원조	1949.9	2130.0	2387.7	2493.8	2775.0	2,926.1	3,219.9
무상원조	1054.2	1175.5	1329.6	1352.6	1590.7	1,667.9	1,333.4
유상원조	893.7	954.5	1058.1	1141.2	1184.9	1,258.2	1,886.5
다자원조	491.5	505.9	660.5	706.5	651.9	828.2	822.6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2022년 한국의 분야별 양자 원조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보건 분야가 4,25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교통(4,224억 원), 인도적 지원(3,163억 원), 교육(2,933억 원), 수자원 위생(2,486억 원), 공공행정(2,472억 원), 농림수산(2,398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림수산 분야는 양자 원조 총 ODA 지원액 대비 7.4%를 차지하고 있음.
- 양자 원조 중 유상원조의 지원액은 교통, 보건, 수자원 위생, 에너지, 공공행정 등 분야가 지원이 높았음.
- 반면 무상원조의 경우, 인도적 지원이 가장 높은 지원액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교육, 수자원 위생, 농림수산, 보건 분야가 뒤따름.

〈표 2-12〉 2022년 양자 원조 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구분	보건	교통	인도적 지원	교육	수자원 위생	공공 행정	농림 수산	에너지	환경 보호	산업	통신	기타
유상	2,470	3,776	-	571	2,242	891	610	1,470	394	-	200	710
무상	1,780	448	3,163	2,362	244	1,581	1,788	425	441	820	34	5,779
계	4,250	4,224	3,163	2,933	2,486	2,472	2,398	1,894	836	820	234	6,489
%	13.2	13.1	9.8	9.1	7.7	7.7	7.4	5.9	2.6	2.5	0.7	20.2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우리나라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2년 기준 1조 1천 4백억 원 수준임.

- 다자원조는 크게 국제금융기구에 내는 출자금, 출연금, 양허성 기금과 UN 및 기타기구에 지원하는 분담금이 있음. 2022년 국제금융기구 납부금액은 5,800억 원으로 다자원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다자성양자의 지원 규모는 3,149억 원이며 프로젝트 지원이 전체의 57.8%를 차지하고 있음. 이 외에도 프로그램, 기타 기술협력, 개발 컨설팅, 연수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최근 개발 컨설팅 형태의 지원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임.

〈표 2-13〉 다자 개발협력 지원 형태별 현황(2021~2022년)

단위: 억 원

구분	2021년	2022년
다자개발협력	11,163.17	11,375.14
다자원조	8,282	8,226
국제금융기구 전체	6,050	5,800
출자금	1,190	1,052
양허성 기금	2,969	2,695

구분	2021년	2022년
출연금	1,890	2,051
UN 및 기타기구	2,233	2,428
다자성양자	2,881.17	3,149.14
개발 컨설팅	59.36	113.27
기타	679.26	523.23
기타기술협력	146.86	148.22
연수사업	31.44	29.45
프로그램	331.38	515.08
프로젝트	1,632.87	1,820.09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2021, 2022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2.2.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ODA) 예산 규모는 2016년 225억 원 수준에서 2022년 약 1,053억 원으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했음. 이러한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2018년부터 WFP에 식량원조로 연간 약 500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임.

- 2022년 전체 ODA 지원액 중 양자 ODA가 895억 원으로 85.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자 ODA는 약 158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14.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함.
- 한편, 다자성양자와 다자 지원액의 합계인 다자 개발협력, 즉 국제기구로 유입되는 지원액은 2018년 이전 40%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 이후 WFP 식량원조로 인해 급격히 상승하여 전체 지원액의 74.9%를 차지함.

〈표 2-14〉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별 전체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225.1	269.9	748.7	768.7	889.5	1005.8	1052.7
양자	164.5	180.9	655.3	668.5	725.1	839.8	894.7
다자성양자	28	21.6	483.7	485.5	505.8	561.4	630.7
다자	60.7	89.0	93.3	100.2	164.4	166.0	158.0
다자개발협력	88.7	110.6	577	585.7	670.2	727.4	788.7
다자개발협력(%)	39.4%	41.0%	77.1%	76.2%	75.3%	72.3%	74.9%

주: 다자개발협력은 다자성양자와 다자를 합한 금액.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2022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자개발 협력사업 중 다자(순수다자)의 예산 추이를 보면 2016년 약 60억 원에서 2022년 약 158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UN 산하 농업 전문기구인 FAO, IFAD, WFP 등 3개 기구에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FAO에 약 100억 원, IFAD에 50억 원, WFP에 1억 원을 지원함.
- 이러한 분담금은 의무분담금과 자발적 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FAO에 매년 8억 원 수준의 자발적 분담금을 제외하면, 모두 의무분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 FAO에 대한 자발적 분담금은 2019년 FAO 한국사무소가 설립되면서 지원이 시작되었음. 2019~2020년 기간에는 다자사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021년부터 다자성양자 사업으로 분류됨.

〈표 2-15〉 국제기구별 다자사업(분담금)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IFAD(의무분담금)	30.9	30.71	34.6	38.39	46.96	54.81	51.12
FAO(의무분담금)	28.76	112.08	57.63	56.21	108.4	109.98	105.78
FAO(자발적 분담금)	-	-	-	4.49	7.89	-	-
WFP(의무분담금)	1.03	1.15	1.10	1.10	1.13	1.21	1.13
<b>총합계</b>	<b>60.7</b>	<b>89.0</b>	<b>93.3</b>	<b>100.2</b>	<b>164.4</b>	<b>166.0</b>	<b>158.0</b>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2022년) 바탕으로 재구성.

주: 2021년부터 FAO 자발적 분담금은 다자성양자로 분류.

○ 농식품부는 2011년 FAO에 5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IFAD, ADB, UNDP, GGGI, IRRI, IFPRI, ILRI, WFP 등 총 9개 국제기구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2022년 농식품부의 다자협력은 약 623억 원을 지원할 정도의 규모로 성장함.

- 또한 농식품부는 2020년 이후 UNDP, GGGI, WFP, IRRI, IFPRI, ILRI 등 농업개발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구와의 협력을 다양화하며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농식품부는 국제기구와 총 18개의 다자성양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11개 사업을 진행 중임. 가장 많은 협력사업을 수행한 기구는 FAO로 총 7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IFAD 4개, 그 외 기구는 각 하나씩 협력사업을 수행함.

〈표 2-16〉 국제기구별 다자성양자(프로젝트)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FAO(7)	5	5	13	20	18	17.9	11.6	8.6	15.5	25.78	20.44	38.15
IFAD(4)	-	5	5	5	10	10	10	10	5	-	-	9
ADB(1)	-	-	-	-	-	-	-	5	5	5	5	0
UNDP(1)	-	-	-	-	-	-	-	-	-	15	24.71	21.69
GGGI(1)	-	-	-	-	-	-	-	-	-	-	-	10.43
IRRI(1)	-	-	-	-	-	-	-	-	-	-	-	11.14
IFPRI(1)	-	-	-	-	-	-	-	-	-	-	-	5
ILRI(1)	-	-	-	-	-	-	-	-	-	-	-	9.11
WFP(1)	-	-	-	-	-	-	-	460	460	460	503.2	518.6
합계	5	10	18	25	28	27.9	21.6	483.6	485.5	505.9	553.4	623.1
FAO*	-	-	-	-	-	-	-	-	-	-	8	7.56

주 1: ( )괄호는 해당 기구와 추진한 사업 수.

2: FAO\*는 한국사무소 지원인 자발적 기여금으로 2021년부터 다자성양자로 분류.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1~2022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표 2-17〉은 2022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다자개발 협력사업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음. 다자사업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FAO, IFAD, WFP 등의 기구에 납부하는 국제기구 분담금임.

○ 다자성양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이 프로젝트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음. 통상 사업 기간은 3~4년이며 예산은 사업 당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로 집행됨.

- 주로 농업 가치사슬, 축산, 식량원조, 농업생산 정보시스템 구축, 농촌개발, 기후 스마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최근에는 ICT, 스마트팜,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농업 부문의 기후대응 강화를 위한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다자성양자의 사업유형을 보면 FAO 한국사무소 운영에 지원하는 자발적 분담금 외에 모두 프로젝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WFP에 약 520억 원가량 지원하는 식량원조 사업 또한 단 년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2-17〉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다자개발협력 사업목록

단위: 억 원

구분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22년 예산	사업 기간
다자	국제기구 분담금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의무분담금	-	105.78	1949~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의무분담금	-	51.12	1978~
		(WFP) 세계식량계획 의무분담금	-	1.13	'02~
다자성 양자	국제 농업협력	(FAO) 수원국 쌀 가치사슬 발전을 위한 남남 및 삼각협력 사업	프로젝트	7.0	'19~'24
		(FAO) 아시아 개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영향 초국경 돼지 질병 통제 예방 역량 강화 기술지원 사업	프로젝트	14.15	'20~'23
		(FAO) 미래세대 스마트팜 지원사업	프로젝트	17.0	'19~'24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자발적 분담금	기타	-	-
		(WFP)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	프로젝트	518.57	'18~
		(IRRI) 인도네시아 내 쌀 생산과 농가소득 및 환경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토양 영양 관리 디지털 도구(Rice Crop Manager: RCM) 보급	프로젝트	11.14	'22~'24
		(IFPRI) 모잠비크의 식량안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차세대 농업 생산정보 시스템구축	프로젝트	5.0	'22~'24
		(UNDP) 태양광발전 기술을 활용한 캄보디아/미얀마 농업 및 농촌 개발사업	프로젝트	21.69	'20~'23
		(ADB) 아태지역 농업 및 가치사슬 발전 사업	프로젝트	-	'18~'22
		(ILRI) ICT 기반 인간·동물·환경의 공생관계 구축을 통한 베트남 건강증진사업	프로젝트	9.11	'22~'25
		(GGGI) 세네갈의 기후 스마트농업 및 지속 가능한 가치사슬	프로젝트	10.43	'22~'24
(IFAD/GrowAsia) 디지털 솔루션을 통한 소농의 경제력 강화	프로젝트	9.0	'22~'24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2.2.2. 기획재정부(EDCF 포함)

○ 기획재정부의 개발협력 예산 규모는 2015년 9,729억 원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1조 6천억 원을 기록함.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기재부 전체 ODA 예산의 82.9%인 1조 3천억 원(2022년 기준)을 유상원조에 투입하고 있음.

- 양자 무상원조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2년에는 83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다자성양자로 127.6억 원을 지원함.

- 기획재정부의 다자원조 예산은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923억 원을 지원함. 출연금은 출자금과 양허성 차관과는 달리 해당 기구의 회원 탈퇴 시에도 상환받을 수 없으므로 다자원조로 분류됨.
- 2022년 기획재정부의 다자 개발협력 규모는 2,051억 원으로 기재부 전체 ODA의 12.8%를 차지함. 이는 2015년(9.8%)보다 3%가량 증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제기구의 협력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18〉 기획재정부의 원조 형태별 전체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9,729.1	10,295	11,113	12,256	13,314	14,223	15,935	16,090
양자	8773.2	9,358	9,950	11,067	11,982	12,633	13,374	14.17
무상	393.2	421	405	486	569.5	783.9	792.4	831.4
다자성양자	-	-	119.6	55.3	163.2	75.49	62.2	127.6
유상	8,380	8,937	9,545	10,581	11,412	11,849	12,582	13,334.6
다자	955.9	937	1,163	1,189	1,332	1,590	2,559.7	1,923.9
다자개발협력	955.9	937	1,282.6	1,244.3	1,495.2	1,665.5	2,621.9	2,051.5
다자개발(%)	9.8%	9.1%	11.5%	10.2%	11.2%	11.7%	16.5%	12.8%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2022년) 바탕으로 재구성.

\* 다자: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양허성 기금을 제외한 순수다자 금액.

\*\* 양자: 양자 무상+양자 유상(EDCF).

○ 기획재정부의 다자개발협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전체 다자원조 중 다자성양자는 주로 개발 컨설팅사업인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로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수행 또는 위탁하는 컨설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음.

〈표 2-19〉 2020~2022년 기획재정부 다자개발협력 현황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다자원조	4962.4	6,720	5,941
출자(증자)금	848.2	1,191	1,052
양허성 기금	2,524.2	2,969	2,964.7
출연금(기금 및 분담금)	1,590	2,559.7	1,923.9
다자성양자	75.49	62.19	127.64
개발 컨설팅(KSP 등)	62.92	49.01	105.13
기타	12.57	13.18	22.51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2022)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기획재정부가 가장 많은 출연금을 지원한 국제금융기구는 세계은행그룹(WB)으로 2022년 680억 원에 달하였음. 그다음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순으로 출연금을 지원함.

- 중미경제통합은행 출연금은 2020년에 119억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00억 원에 달하며 매우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
- 기재부는 국제금융기구 이외 UN 및 기타기구에도 출연금(기금 및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표 2-20〉 2016~2022년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금융기구 출연금 추이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기구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세계은행그룹(WB)	501.7	567.18	622.5	636.9	736.6	1,007	680
아시아개발은행(ADB)	171.0	172.5	169.5	198.0	178.5	310	430.8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91.2	103.5	101.7	132.0	107.1	170	101.8
미주개발은행(IDB)	92.9	103.5	93.8	160.6	134.5	203	139.1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45.6	49.45	45.2	25.2	27.25	33	32.1
국제통화기금(IMF)	34.2	34.5	33.9	55.0	47.6	48	548.1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	-	-	-	119	119	500.4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2022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표 2-21〉을 보면 기재부의 다자원조 사업은 모두 국제금융기구 출연금이며 대표적으로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세계은행 협력기금, GCF 녹색기후기금 등을 비롯하여 신탁기금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 다자성양자는 수출입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KSP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 중 직접 양자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이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다자성양자 사업은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음.
- 이 외 GGGI 그린뉴딜펀드(신탁기금), 관세협력기구 출연금, UNDP 신탁기금 등의 출연금은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표 2-21〉 2022년 기획재정부 다자 개발협력 사업목록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구분	국내 담당 기관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유형	'22년 예산	사업 기간
다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출연	(ADB) ADF 13차 재원 보충	-	238.49	'21-'24
			(ADB) e-Asia 지식협력기금	-	192.27	2022
			(AfDB)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기금	-	101.79	2022
			(CABEI) 한-CABEI 협력기금	-	119.0	'20-'24
			(EBRD) 기술자문협력기금	-	4.86	2022
			(EBRD) JPO 및 인턴파견	-	15.88	2022
			(EBRD) 초기체제전환국 지원기금	-	11.31	2022
			(IDB) 빈곤 감축 기금	-	45.24	'17-'22
			(IDB) 재정혁신 협력기금	-	45.24	'12-'17
			(IDB) 지식협력기금	-	48.63	'17-'22
			(IMF) 한-IMF 기술협력기금	-	45.24	'18-'22
			(WB) IFC 기술협력기금	-	33.93	'21-'23
			(WB) 녹색성장기금	-	135.72	'20-'23
			(WB) 빈곤 감축 사회개발기금	-	56.55	'20-'22
			(WB) 초급전문가 JPO 파견	-	23.98	2022
			(WB) 한-WB 협력기금	-	429.78	'19-'22
			(GCF)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	375.99	'12-
다자성 양자	기획재정부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KSP)	KSP-ADB 카자흐스탄 난방 분야의 녹색성장 로드맵 수립지원	개발컨설팅	2.91	'22-'23
			KSP-IDB 콜롬비아 군소 공항 투자 및 관리를 위한 항공교통 정책	개발컨설팅	3.75	'22-'23
			KSP-IDB 브라질 상파울루주 수도권 이동량 관측소 설계 및 대중교통 관리 개선	개발컨설팅	3.90	'22-'23
			KSP-EBRD 우크라이나 전기자동차 도입 추진방안 지원	개발컨설팅	3.32	'22-'23
			KSP-EBRD 요르단 산업재산 국가전략 및 자동화시스템 설립 지원	개발컨설팅	3.05	'22-'23
			KSP-ADB 인도네시아 고등교육의 기술혁신 지원	개발컨설팅	2.74	'22-'23
			(협력국 긴급요청 사업) 메콩강 위원회 빅데이터·AI 기반의 홍수 및 가뭄 관리 개선 방안	개발컨설팅	3.09	'22-'23
			KSP-IDB 아르헨티나 필코마요 강 유역의 수자원 관리 투자 계획	개발컨설팅	3.55	'22-'23
			KSP-AfDB 케냐 송·변전 선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추진전략 수립지원	개발컨설팅	3.63	'22-'23
			한-GGGI 신탁기금 출연	한-GGGI 그린뉴딜펀드	기타	60.0
		관세협력 기구 출연	WCO 개발도상국 관세 공무원 능력배양 사업	기타	6.63	'12-

구분	국내 담당 기관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유형	'22년 예산	사업 기간
		한-UNDP 신탁기금 출연	한-UNDP 신탁기금 출연	기타	6.79	'14-'22
		관세협력 기구 출연	UN ESCAP 개발도상국 간 무역협정(APTA) 발전 및 개도국 무역·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기금 출연	기타	2.49	'13-
	한국개발연구원	유엔기후 변화협약 협력사업 출연	유엔기후변화협약 개도국 수요 기반 기후재원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10.0	'22-
한국 수출입 은행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KSP)	KSP-IDB 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개발컨설팅	149	'21-'22	
		KSP-IDB 코스타리카 중소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지원	개발컨설팅	152	'21-'22	
		KSP-EBRD 모로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	개발컨설팅	143	'21-'22	
		KSP-ITC 이집트 중소기업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조달 시스템구축 지원	개발컨설팅	134	'21-'22	
		KSP-IDB 엘살바도르 브로드밴드 인프라 효율화 방안 지원	개발컨설팅	149	'21-'22	
		KSP-IDB 과테말라 정보격차 극복을 위한 공공인터넷 접근성 강화	개발컨설팅	149	'21-'22	
		KSP-CAF 파라과이 산림 분야 공공 관리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지원	개발컨설팅	149	'21-'22	
		KSP-ADB 우즈베키스탄 무수수량 감소 지원	개발컨설팅	122	'21-'22	
		KSP-ADB 몽골 경제자유구역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효율화 방안 지원	개발컨설팅	113	'21-'22	
		KSP-ADB 모잠비크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관리역량 강화 지원	개발컨설팅	143	'21-'22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바탕으로 재구성.

### 2.2.3. 외교부(KOICA 포함)

○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무상원조의 주무 부처로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외교부의 ODA 예산 집행액은 2016년 8,563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1조 4,460억 원에 달함.

- 이 중 양자 협력은 전체 지원금액의 87.3%인 1조 2,600억 원이며, 다자성양자는 2016년 812억 원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여 2022년에는 1,732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외교부는 UN 산하 기구 또는 기타 국제기구에 의무분담금, 사업 분담금 등을 다자협력으로 지원하고 있음. 2022년 외교부 다자사업 예산은 총 1,843억 원으로 외교부 전체 ODA 금액의 12.7%의 비중을 차지함.
- 다자와 다자성양자를 모두 포함한 다자 개발협력사업의 규모는 2022년 기준 3,576억 원 수준으로 외교부 전체 ODA 지원금액의 24.7%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16년 다자 개발협력 예산 비중 18.6%에서 6.1% 증가한 것으로 외교부가 국제기구를 활용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2-22〉 외교부 원조 형태별 전체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8,562.9	9,318.4	10,233.3	10,071.3	11,980.9	12,323.9	14,460.7
양자	7,786.6	8387.2	9,177.8	9,048.0	10,733.3	10,668.2	12,617.5
다자성양자	812.8	827.49	1,701.56	1,368.15	1,796.8	1,403.53	1,732.7
다자	776.3	931.3	1,055.5	1,023.3	1,247.6	1,655.7	1,843.2
다자개발협력	1,589.1	1,758.79	2,757.06	2,391.45	3,044.4	3,059.23	3,575.9
다자개발협력(%)	18.6%	18.9%	26.9%	23.7%	25.4%	24.8%	24.7%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2022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최근 외교부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자와 다자성양자의 예산 비중은 매년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다자원조는 UN 산하 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의무분담금과 사업 분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음. 2020~2022년간 다자원조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통상 사업 분담금의 규모가 의무분담금보다 2배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함. 2022년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은 585억 원, 사업 분담금은 1,258억 원으로 총 1,843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한편 다자성양자 사업은 프로그램, 프로젝트, 기타 등의 형태로 시행됨. 2022년 외교부는 다자성양자 지원 총액인 1,733억 원 중 프로젝트로 779억 원(45%), 프로그램으로 438억 원(25.3%)을 지원함.

〈표 2-23〉 2020~2022년 외교부 다자개발협력 현황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다자원조	1,247.6	1,665.7	1,843.2
의무분담금	431.35	537.66	584.74
사업 분담금	816.22	1,128.04	1,258.46
다자성양자	1,796.8	1,403.5	1,732.7
프로그램	203.23	291.4	437.89
프로젝트	834.13	685.62	778.87
기타*	759.46	426.5	489.52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2022)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주 \*: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 기타 분담금 납부 등.

○ 〈표 2-24〉는 2022년 기준 외교부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목록임.

- 외교부의 다자사업은 대표적으로 글로벌 질병 퇴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GGGI 자발적 기여금 등이 있음. 이러한 분담금은 국제기구가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며 주로 비지정(non-earmarked) 기여금, 핵심(core) 기여금이라 함.
- 다자성양자는 크게 프로젝트, 프로그램, 기타로 구성되어 있음.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다자성양자 사업은 총 29개(아세안사무국, 한-아세안센터, 메콩 연구소, KIOST 포함)이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추진하는 다자성양자 사업은 총 35개임.

○ 프로젝트 유형의 경우, 외교부는 UNDP, SICA, UNIDO 등의 기구와 총 7개의 사업(아세안사무국 1 포함)을 종료 시점이 없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함.

- 한국국제협력단은 특정 지역, 국가 또는 분야를 지정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에는 총 34개의 사업을 운영 중임. 사업 기간은 통상 3~4년임.

○ 프로그램 사업은 외교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는 아프간 경제사회 분야 지원, 아세안 협력기금, 유엔개발시스템 선진화 기금 등 총 9개의 사업을 지원 중임. 프로그램 지원 또한 사업 종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속사업임.

- 한국국제협력단도 프로그램 사업으로 UNICEF(교육 및 보건 개선을 통한 소녀들의 더 나은 삶 지원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있으나 외교부와 달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그 외 기타(13개)로 분류된 다자성양자 또한 모두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탁기금 및 협력, 자발적 기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리해보면, 외교부가 지원하는 다자협력사업은 사업 종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 사업으로, 기금, 기여금 등 다자사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반면 한국국제협력단은 특정 국가, 지역, 분야를 지정하는 프로젝트형의 다자성양자 사업을 주로 추진함.

〈표 2-24〉 2022년 외교부 다자 개발협력 사업목록

단위: 억 원, 순 지출액 기준

구분	국내 담당 기관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22년 예산	사업 기간
다자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유엔개발계획 정규재원 기여금	-	96.14	2006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볼어겐 국제기구(OIF) 지원	-	0.15	2017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납부(ODA)	유엔자원봉사단(UNV) 사업 분담금	-	44.15	1990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자발적 기여금	-	113.10	2013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OECD 개발센터 의무분담금	-	6.70	1991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유엔난민기구	-	34.68	-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국제원자력기구 의무분담금	-	37.82	1957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유엔공업개발기구 의무분담금	-	41.06	1967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글로벌 국제질병 퇴치사업	-	486.82	2017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세계식량계획(WFP) 정규재원 기여금	-	45.24	2020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협력사업 기여금(GTF)	-	3.39	2002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유엔아동기금 정규재원 기여금	-	39.59	1988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의무분담금	-	59.01	1950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금(UNRWA) 사업 분담금	-	2.00	1999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유엔평화구축기금(PBF)	-	25.16	2015
		유엔 PKO 예산 분담금 납부(ODA)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금	-	278.50	1992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파트너십 기금	-	0.83	2009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분담금	-	2.59	2000

구분	국내 담당 기관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22년 예산	사업 기간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APEC 지원 기금(ASF)	-	7.92	2019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콜롬보 플랜 의무분담금	-	0.18	1963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국제원자력기구 기술협력기금	-	27.02	1957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19.90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유엔 정부 평화구축국(UNDP) 분쟁 예방기금	-	28.28	2015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ODA)	유엔(UN) 정규예산 분담금	-	424.01	1992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몬트리올의정서 신탁기금	-	1.40	2022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유엔마약범죄사무소	-	1.58	-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국제이주기구(IOM) 의무분담금	-	15.96	-
다자성 양자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한-UNFPA 분쟁 하성폭력 대응 기여금	프로젝트	9.39	2019
	아세안 사무국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 퇴치사업	프로젝트	96	2017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한-PIF(태평양 도서국 포럼) 협력기금	프로젝트	16.97	'20-'24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한-UNDP 지속가능개발(SDG) 신탁기금	프로젝트	84.83	2016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한-SICA 협력기금	프로젝트	14.93	2022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한-카리브공동체 협력기금	프로젝트	5.66	2021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UNIDO 공업개발기금(IDF)	프로젝트	3.96	2006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한-유엔 중남미 카리브경제위원회 협력기금	프로그램	4.2	2007
	외교부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비엔나협약 신탁기금	프로그램	0.24	2022
	외교부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중앙아시아국제학술연구소 의무분담금	프로그램	0.99	1996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군축 분야 인도적 지원 신탁기금	프로그램	9.05	1993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ECCC) 사업분담금	프로그램	5.66	2006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대(對) 아프간 경제·사회 분야 지원 강화	프로그램	395.85	2013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한-미주기구 협력기금	프로그램	2.27	2002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프로그램	0.85	2022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유엔개발시스템 선진화 기금	프로그램	18.78	2020
	KIOST 등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한-ASEAN 협력기금	기타	180.96	1990
	외교부	국제기구 진출 지원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	기타	52.38	1996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UNIDO 서울 투자기술진흥사무소(ITPO)	기타	3.18	1987
	외교부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국제원조 투명성 기구(IATI)	기타	0.96	2016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4G) 자발적 기여금	기타	45.24	'22-'23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 신탁기금	기타	42.42	'21-'23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한-ESCAP 협력기금	기타	2.83	1987
	외교부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다자기구성과평가 네트워크 (MOPAN)	기타	2.7	'16-'22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한-아프리카 연합(AU) 협력기금	기타	16.97	2013

구분	국내 담당 기관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22년 예산	사업 기간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OECD DAC 자발적 기여금	기타	3.39	2011
	한-아세안 센터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기금	기타	5.66	2009
	메콩 연구소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한-아세안센터	기타	76	2009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한-메콩 협력기금	기타	56.83	2013
	KOICA	국제기구협력(ODA)	UNDP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여성 및 청소년의 거버넌스 활동 참여 지원사업	프로젝트	-	'18-'22
		국제기구협력(ODA)	UNFPA 차드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 및 분쟁 예방 활동을 통한 취약 여성 및 청년 삶의 질 개선 사업	프로젝트	29.09	'21-'24
		국제기구협력(ODA)	WHO 키리바시 보건 분야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사업	프로젝트	17.60	'21-'25
		국제기구협력(ODA)	GGGI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의 지역사회 주도 친환경 재건을 통한 아랄해 위기 대응 사업	프로젝트	21.38	'21-'24
		국제기구협력(ODA)	IOM 피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재난과 이주 위험성 회복력 강화사업	프로젝트	14.70	'22-'25
		국제기구협력(ODA)	WFP 탄자니아 난민 호스트 커뮤니티 내 영세농 농업 가치사슬, 양성평등, 평화 강화사업	프로젝트	13.70	'22-'26
		국제기구협력(ODA)	UN-HABITAT 이라크 지속가능한 귀환 촉진을 통한 평화 및 안정화 사업	프로젝트	12.70	'22-'24
		국제기구협력(ODA)	WFP 르완다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와 성 역할 변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시장 동맹과 자산 창출 사업(SMART Project)	프로젝트	30.54	'20-'23
		국제기구협력(ODA)	ILO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무역 및 경제적 다양성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프로젝트	16.42	'19-'23
		국제기구협력(ODA)	WFP 부탄 지역농산물 활용한 학교급식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및 영양교육 증진사업	프로젝트	12.59	'19-'23
		국제기구협력(ODA)	UNHCR 파키스탄 내 아프가니스탄 난민 및 수용 공동체 지원사업	프로젝트	17.50	'22-'25
		국제기구협력(ODA)	UNFPA 부르키나파소 및 사헬 북부 지역 인권, 평화, 성평등 구축 지원사업	프로젝트	20.10	'22-'25
		국제기구협력(ODA)	UNHCR 소말리아 난민, 국내 피난민 및 수용 공동체 통합 및 자립성 강화사업	프로젝트	2.08	'19-'22
		국제기구협력(ODA)	WFP 방글라데시 취약계층 복원력 구축 및 지속 가능 식량 시스템 강화사업	프로젝트	1.83	'18-'22
		국제기구협력(ODA)	UNICEF 카메룬 동부의 복원력 강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결핍 문제 해소 사업	프로젝트	21.67	'20-'24
		국제기구협력(ODA)	UNHCR 케냐 인도적 지원-개발 연계 지역공동체 기반 통합사업	프로젝트	33.14	'20-'23
	국제기구협력(ODA)	UNDP 모잠비크 중북부 지역 재해 복원 및 사회통합 증진사업	프로젝트	14.19	'22-'25	

구분	국내 담당 기관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22년 예산	사업 기간
		국제기구협력(ODA)	ITC 우간다 농업인 및 소상공인의 생계개선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자연재해 회복력 강화사업	프로젝트	14.50	'22-'26
		국제기구협력(ODA)	UNICEF 요르단 취약 청년 및 지역사회를 위한 평등한 기회, 사회통합, 기후 복원력 지원사업	프로젝트	20.37	'22-'25
		국제기구협력(ODA)	UNMAS 콩고민주공화국 분쟁 피해 난민, 국내 피난민 및 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뢰 제거 사업	프로젝트	18.87	'22-'24
		국제기구협력(ODA)	IOM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외 공동체 복원력 증진사업	프로젝트	-	'19-'22
		국제기구협력(ODA)	UNICEF 온두라스 여성·청소년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학교 교육 및 보건 증진사업	프로젝트	-	'19-'22
		국제기구협력(ODA)	FAO 농촌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녹색 일자리 지원사업	프로젝트	14.73	'19-'24
		국제기구협력(ODA)	ITC 서부 아프리카 여성 농업인 경제 역량 향상 지원사업	프로젝트	10.18	'19-'23
		국제기구협력(ODA)	UNDP 아랍국가 공공행정 효율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지역협력 강화사업	프로젝트	21.34	'19-'23
		국제기구협력(ODA)	UNICEF 에티오피아 분쟁 및 난민 지역 아동을 위한 복원력 강화, 평화 구축 및 아동보호 사업	프로젝트	20.36	'21-'24
		국제기구협력(ODA)	UNHCR 에콰도르 난민, 수용 공동체 및 취약계층 대상 지속가능한 통합 및 보호 사업	프로젝트	23.23	'21-'24
		국제기구협력(ODA)	WFP 모잠비크 통합위험 관리를 통한 소농민의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및 식량 안보 지원사업	프로젝트	17.97	'21-'25
		국제기구협력(ODA)	UNDP 태평양 도서국 개발 프로젝트 내 기후변화 적응 및 젠더 주류화 사업	프로젝트	20.12	'19-'24
		국제기구협력(ODA)	UNHCR 남수단 평화를 위한 소녀교육 사업	프로젝트	-	'18-'22
		국제기구협력(ODA)	GGI 네팔 테라이 홍수평가 기후 스마트농업을 통한 기후 복원력 제고 및 경제적 실항민 재통합 사업	프로젝트	13.27	'22-'25
		국제기구협력(ODA)	UNFPA 르완다 청소년 및 청년들의 권한 강화를 위한 성생식보건 지원사업	프로젝트	19.80	'20-'23
		국제기구협력(ODA)	ILO 카메룬 난민 영향지역 여성 지위 및 경제회복력 강화사업	프로젝트	23.75	'20-'24
		국제기구협력(ODA)	IOM 차드 호수 지역 귀환, 거버넌스, 생활 개선을 통한 지역 안정화 사업	프로젝트	29.41	'20-'23
		국제기구협력(ODA)	UNICEF 교육 및 보건 개선을 통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	'17-'22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2.2.4. 교육부

○ 교육부의 ODA 규모는 2015년 582억 원에서 2022년 93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교육부는 2015년 이후 다자사업은 지원하지 않으며, 다자성양자 원조 예산은 2022년 41억 원으로 교육부 전체 ODA 예산 중 4.4%를 차지함.

〈표 2-25〉 교육부 원조 형태별 전체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581.8	632.9	697.6	678.9	699.7	742.1	765.0	931.9
양자	487.5	632.9	697.6	678.9	699.7	742.1	765.0	931.9
다자성양자	-	61.21	61.37	50.45	33.94	45.52	27.71	41.18
다자	94.3	-	-	-	-	-	-	-
다자개발협력률(%)	16.2%	9.7%	8.8%	7.4%	4.9%	6.1%	3.6%	4.4%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2022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교육부의 다자협력사업은 신탁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이나, 지역, 주제, 기간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다자성양자로 분류됨. 교육부는 다자 개발협력으로 유네스코 협력사업 5개, 세계 시민교육 1개 등 총 6개의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 중임.

- 유네스코 지원사업은 한-유네스코 교육 발전기금을 통한 아프리카 및 아태지역의 저개발국가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2차, 3차 등 동일 사업의 후속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개발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

〈표 2-26〉 2022년 교육부 다자개발협력 사업목록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22년 예산	사업 기간
글로벌교육 지원사업 (ODA)	유네스코 저개발국 교육 발전기금-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 교육지원사업(2차)	121	'16-'22
	유네스코 저개발국 교육 발전기금- 아태지역 저개발국 ICT 활용 교육지원	-	'17-'23
	유네스코 저개발국 교육 발전기금- 아태지역 소통과 통합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	5.96	'19-'23
	유네스코 저개발국 교육 발전기금- UNESCO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23.90	'19-'23
	세계시민 교육 (GCED) 역량 강화 지원	48.96	'22-'24
	유네스코 저개발국 교육 발전기금-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 교육지원사업(3차)	113.0	'22-'26

주: 6개 사업 모두 프로젝트 유형으로 지원되고 있음.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2.2.5.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ODA 규모는 2016년 416억 원에서 2022년 620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2022년 양자협력 예산은 512억 원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다자성 양자는 147억 원으로 전체 ODA의 28.7%를 차지함.

○ 다자사업 예산은 증감을 반복하여 2022년에는 108억 원이 집행됨. 다자개발 협력사업은 2016년에는 251억 원으로 전체 ODA의 60.3%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에는 전체 ODA 대비 41.1%로 예산 자체는 증가하였으나(255억 원) 비중은 감소하였음.

〈표 2-27〉 보건복지부 원조 형태별 전체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416.2	493.3	508.6	542.8	584.5	677.4	619.7
양자	246.7	295.0	357.2	392.6	417.0	571.0	511.9
다자성양자	81.59	89.61	142.3	136.04	134.36	164	146.8
다자	169.5	198.3	151.3	150.2	167.5	106.4	107.8
다자개발협력	251.09	287.91	293.6	286.24	301.86	270.4	254.6
다자개발협력(%)	60.3%	58.4%	57.7%	52.7%	51.6%	39.9%	41.1%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2022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보건복지부의 다자사업 중 사업 분담금은 2016년 88억 원에서 2022년 14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다자성양자 사업 지원예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다자성양자는 프로젝트, 민관협력, 기타 기술협력 형태로 지원됨. 이 중 프로젝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2021년부터 기타 기술협력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표 2-28〉 보건복지부 다자개발협력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다자	169.5	198.3	151.3	150.2	167.5	106.4	107.8
의무분담금	81.46	112.52	83.78	84.30	100.25	100.98	93.52
사업분담금	88.04	85.78	67.52	65.9	67.25	5.42	14.28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다자성양자	81.59	89.61	142.3	136.04	134.36	164	146.8
프로젝트	77.17	80.13	78.28	85.16	71.68	64	46.82
민관협력	4.42	-	0.89	0.88	-	-	-
기타기술협력	-	9.48	64.02	50	52.53	100	100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2022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2022년 보건복지부는 다자 개발협력 사업으로 WHO, 국제백신연구소, 국제암연구소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 담당 기관이 UNFPA, 국립암센터,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다양한 것이 특징임.

- 다자성양자 사업은 대부분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음. 프로젝트 사업 중 국제 인구 보건복지 연맹에 지원하는 부담금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또한 202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글로벌 헬스 기술 연구기금은 국제백신연구소에서 담당하며 기타 기술협력으로 분류됨.

〈표 2-29〉 2022년 보건복지부 다자 개발협력 사업목록

단위: 억 원

구분	국내 담당 기관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22년 예산	사업 기간
다자	UNFPA 한국사무소	인구개발 국제부담금	유엔인구개발 활동기금 분담금	-	2.05	1974~
	보건복지부	WHO 의무분담금 납부	WHO 의무분담금 납부	-	123.1	2006~
	국립암센터	국제암연구소 분담금 납부(ODA)	국제암연구소 분담금	-	12.93	2022~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위원회 분담금(ODA)	국제적십자위원회 분담금(ODA)	-	2.99	2006~
	보건복지부	WHO FCTC 국제분담금	WHO FCTC 국제분담금	-	3.49	2007~
다자성 양자	보건복지부	WHO 사업분담금 지원	WHO 사업분담금 지원	프로젝트	20.70	'22~'23
	보건복지부	WHO 전통의약 활성화 지원	WHO 전통의약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5.63	2005~
	보건복지부	WPRO 전략사업 추진	WPRO 전략사업 추진	프로젝트	18.84	'22~'23
	국제백신연구소	글로벌 헬스기술 연구기금	글로벌 헬스기술 연구기금	기타기술협력	100	'18~'25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개발 국제부담금	국제 인구 보건복지연맹 부담금	프로젝트	1.65	1976~

자료: 관계부처합동(2022)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2.2.6.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의 ODA 규모는 2015년 166억 원에서 2022년에는 700억 원으로 매우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

- 2022년 ODA 지원 총액에서 양자협력이 대부분(97.8%)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자원조 16억 원, 다자성양자 원조로는 10억 원이 집행됨.
- 다자 및 다자성양자를 통해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금액은 26억 원 정도이며 전체 산업통상부 ODA 총액에서 3.6%를 차지함.

〈표 2-30〉 산업통상자원부 원조 형태별 전체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166	173.1	267.1	309.2	423.6	454.6	521.1	698.8
양자	124.6	158.5	252.7	295.1	409.4	441.1	502.4	683.3
다자성양자	-	-	4	8	6.5	7.27	10.17	10
다자	41.4	14.6	14.4	14.1	14.2	13.5	18.8	15.5
다자개발협력	41.4	14.6	18.4	22.1	20.7	20.77	28.97	25.5
다자개발협력(%)	24.9%	8.4%	6.9%	7.1%	4.9%	4.6%	5.6%	3.6%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2022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산업통상부는 2016년 이후 다자사업으로 매년 국제면화자문위원회에 약 0.6억 원, 아시아생산성기구에 15억 원의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표 2-31〉 산업통상부의 주요 지원기구(다자)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기구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제면화자문위원회	0.51	0.68	0.61	0.48	0.46	0.58	0.51
아시아생산성기구	14.12	13.69	13.53	13.74	13.05	18.19	14.94
합계	14.6	14.4	14.1	14.2	13.5	18.8	15.5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2022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2017년 이후 다자성양자로 아세안,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그룹(WB IFC), 미주개발은행(IDB),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지원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임.

〈표 2-32〉 산업통상부의 주요 지원기구 다자성양자(프로젝트) 지원 추이

단위: 억 원, 확정액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아세안(ASEAN)	1.68	2.50	2.30
아시아개발은행(ADB)	2.23	2.67	2.70
세계은행그룹(WB, IFC)	1.68	1.50	1.50
미주개발은행(IDB)	1.68	1.50	1.50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	2.00	2.00
총합계	7.27	10.17	10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2022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2022년 산업통상부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목록을 보면, 다자사업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와 산업통상부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다자성양자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함. 프로젝트 사업은 산업통상부가 아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5년임.

〈표 2-33〉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다자개발협력 사업목록

구분	국내 담당 기관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2년 예산	사업 기간
다자	한국생산성본부	아시아생산성기구 분담금	아시아생산성기구 분담금	14.94	1961~
	산업통상자원부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	0.51	1954~
다자성양자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변화협약 대응 한-개도국 협력 (ODA)	ADB 공동 동남아시아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2.7	'21~'25
			ACE 공동 아세안 국가 산업/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2.3	'21~'25
			UNIDO 공동 동남아시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지원	2.0	'21~'25
			IDB 공동 중남미 전력 보급 및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1.5	'21~'25
			IFC 공동 개도국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1.5	'21~'25

자료: 관계부처합동(2022)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3. 요약 및 시사점

- 다자성양자는 비교적 최근 대두된 개념으로 국제사회 및 학계에서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음. 그럼에도, 다자성양자가 지닌 많은 장점 때문에 최근 주요 공여국에서 다자성양자의 활용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다자성양자가 지닌 국제기구의 전문성, 현지 접근성, 원조가시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국제기구의 본질 및 우선순위 왜곡, 행정부담 가중 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여국에서 다자성양자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음.
  
- OECD DAC 회원국의 다자기구를 활용한 개발협력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중에서도 다자성양자 원조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음.
  - 2019년 OECD DAC 회원국의 개발 협력 재원 규모는 2012년 대비 26.4% 증가하였으며 양자원조는 29%, 다자원조는 20.4% 증가함. 특히, 다자성 양자 원조는 59.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OECD DAC 개발원조 규모 상위 10개국의 다자 개발협력의 비중은 51.5%이며, 이탈리아(78.1%), 스웨덴(59.2), 노르웨이(57.6%), 캐나다(57.1%), 영국(53.1%) 순으로 다자 개발 협력 비중이 높았음.
  - 한국의 다자 개발협력 비중은 37.2%로 위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임. 유럽 국가들이 다자 개발협력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이유를 고려하면, 한국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지원 총액은 2022년 기준 약 4조 원에 달하였으며 양자원조는 3조 2천억 원으로 전체 ODA 중 약 80%를 차지함.
  - 양자원조(유상, 무상 포함)의 분야별 지원 현황을 보면, 보건(13.2%), 교통(13.1%), 인도적 지원(9.8%), 교육(9.1%), 수자원 위생(7.7%), 공공행정(7.7%) 순이며, 농업 수산 분야는 7.4%를 차지함.

- 그러나 무상원조에서 농림수산은 교육, 수자원 위생에 이어 상위 3번째(인도적 지원 제외)로 지원 규모가 큰 분야임.

○ 국제사회의 동향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다자 개발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다자성양자 개발협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22년 다자 개발협력 예산은 1조 1,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 성장하였음. 이 중 다자원조는 전년 대비 0.7% 감소하였으나, 다자성양자는 9.3% 증가함.

- 다자성양자의 유형별 지원 규모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기타 기술협력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 최근 개발 컨설팅의 유형이 확대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90.8% 증가함.

○ 한국의 기재부, 외교부 등 주요 부처의 다자 개발협력을 보면, 기재부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 출자, 양허성 차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UN 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에 정규 및 보충 재원 등으로 다자원조를 수행 중임. 이러한 재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국제위상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공여국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특히, 기재부 및 외교부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주무 부처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등의 부처에서는 전략적 접근 및 활용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다자개발 협력사업 중 다자성양자는 비지정 기여금으로 공여국의 목적 및 의도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함. 우리나라 주요 부처별 다자성양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기재부의 다자성양자는 대부분 개발컨설팅 형태(KSP 사업)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IDB, ADB, EBRD 등의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함.

- KSP 중 직접 양자로 진행되는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음. 그 외에도 기타로 분류된 국제기구에 신탁기금 출연사업이 있음.

- 외교부의 다자성양자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외교

부에서, 프로젝트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프로그램 지원은 국가, 주제, 사업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다자 성격의 사업으로, 협력기금 및 자발적 기여금을 통해 지원함. 반면, 프로젝트는 지역 및 국가, 주제 및 목적, 사업 기간을 특정하는 지정 기여로써 다자보다는 양자 사업에 가까움.

- 교육부의 경우, 분담금과 같은 다자원조는 2015년 이후 지원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다자성양자로 한-유네스코 교육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아프리카 및 아태지역의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신탁기금 형태의 지원을 하지만, 지역 및 주제,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분류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는 WHO, 국제암연구소, 국제백신연구소, 국제적십자,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에 다자 및 다자성양자로 지원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다자협력사업은 국립암센터, 국제적십자위원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다양한 국내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특징임.
- 산업통상부의 다자성양자는 모두 에너지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ADB, ACF, UNIDO, IDB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 3

## 농업 관련 주요 다자기구별 현황과 특징

### 1.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1.1. 기구 정보 및 현황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43년 7월 식량과 농업을 위한 유엔 임시위원회 설립 및 FAO 헌장 제정 후 1945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1946년 12월 최초의 UN 상설전문 기구로 등록됨.
- FAO는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황 속에서 식량과 농업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 기아와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됨. 이러한 비전은 다음의 목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함(김종섭 외 2015).
  - 인류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 확보를 점진적으로 보장, 기아, 식량 불안정 및 영양실조 근절
  - 식량 생산 증대, 농촌개발과 지속 가능한 생계증진,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
  - 토지, 수자원, 대기, 기후, 유전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관리

- FAO 사무총장(Director-General)의 임기는 4년이며 현 사무총장은 Qu Dongyu(중국, 2019~2023년)임. 49개국 회원국 정부 대표가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홀수 연도에는 3회, 짝수 연도에는 2회 개최함.
  - 이사회 아래 제한위원회(프로그램위원회, 재정위원회, 헌장 및 법률 문제위원회), 개방위원회(품목문제위원회, 수산위원회, 산림위원회, 농업위원회, 세계식량안보위원회)가 있음.
  - FAO 직원 수는 FAO 본부 사무국과 국가사무소에 각각 1,484명, 1,483명으로, 총 2,967명이 FAO에 근무하고 있음.
  
- 사무국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으며 농업 및 소비자보호부(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기후·생물다양성·토지 및 수자원부(Climate, Biodiversity, Land and Water), 사업서비스부(Corporate Services), 경제사회개발부(Economics and Social Development), 어업수산업부(Fisheries and Aquaculture), 산림부(Forestry), 기술협력 및 사업관리부(Technical Cooperation and Programme Management)의 7개 부서로 구성됨.
  
- FAO 사무소는 지역사무소 5개, 소지역사무소 10개, 연락사무소 6개, 협력연락사무소 7개, 국가사무소 133개가 있으며 위치는 아래와 같음.
  - 지역사무소: 가나(아크라), 태국(방콕), 헝가리(부다페스트), 칠레(산티아고), 이집트(카이로)
  - 소지역사무소: 가봉(리브르빌), 레바논(베이루트), 파나마(파나마시티), 터키(앙카라),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튀니지(튀니스), 짐바브웨(하라레), 바베이도스(브리짓타운),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 사모아(아피아)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미국(워싱턴, 뉴욕), 일본(요코하마), 벨기에(브뤼셀), 러시아(모스크바), 스위스(제네바).
  - 협력연락사무소(Partnership and Liaison Office)<sup>3)</sup>: 아제르바이잔(바쿠), 카메룬(야운데), 코트디부아르(아비장), 적도기니(말라보), 카자흐스탄(누르술탄), 멕시코(멕시코)

시코시터), 한국(서울)

○ FAO의 예산은 크게 회원국의 의무분담금(Assessed Contributions)과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s)으로 이뤄짐. 2022~2023년 예산의 80% 이상은 더 나은 생산, 더 나은 영양,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삶 등 총 4개 전략실행에 집행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기술협력 프로그램 지원, 행정, 기타 지원활동 순으로 책정됨.

〈표 3-1〉 2022~2023년 FAO 예산구성

단위: 천 달러

예산 구분	2022-2023(AC)	2022-2023(VC)	합계	비중
FAO 4개 전략실행	528,518	2,193,968	2,722,486	83.6%
기술지원, 통계, 법 분야 이슈, 가속화 요인	70,312	20,427	90,739	2.8%
기술협력 프로그램	140,788	0	140,788	4.3%
지원활동	71,348	6,064	77,412	2.3%
ICT	35,696	0	35,696	1.0%
FAO 거버넌스	59,398	10,512	69,910	2.1%
행정	62,553	19,153	81,706	2.5%
예비비	600	0	600	0.0%
자본지출	14,000	0	14,000	0.4%
보안 지출	22,421	0	22,421	0.7%
합계	1,005,635	2,250,125	3,255,760	100%

자료: FAO(2021a)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FAO의 2022~2023년 지역별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본부를 제외하고 아프리카에 약 9억 6,0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 4,500만 달러, 중남미·카리브해 3,320만 달러, 근동지역 3,230만 달러, 유럽·중앙아시아 1,010만 달러가 배정됨.

〈표 3-2〉 2022~2023년 FAO 대륙별 예산실적

단위: 천 달러

지역	순 책정액	추가예산	합계(천 달러)	비중
본부·전 세계	580,706	507,628	1,088,334	33%
아프리카	149,726	809,987	959,713	29%
아시아·태평양	93,892	355,985	449,877	14%

3) 협력연락사무소는 국가, 지역 또는 지역 간 FAO의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별 참여를 강화하고, 단독신탁기금(unilateral trust fund)과 남남협력을 통한 협력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설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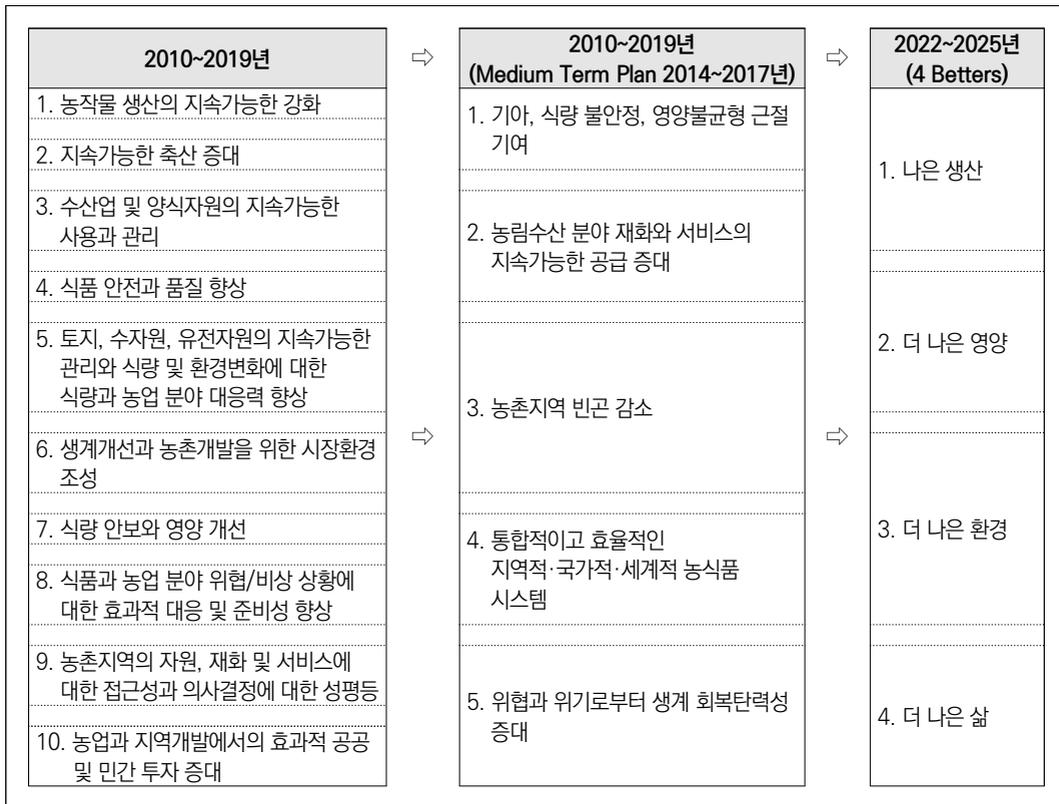
지역	순 책정액	추가예산	합계(천 달러)	비중
유럽·중앙아시아	43,973	57,075	101,048	3%
중남미·카리브해	88,413	244,393	332,806	10%
근동	48,925	275,056	323,981	10%
합계(천 달러)	1,005,635	2,250,125	3,255,760	100%

자료: FAO(2021a)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1.2. 전략 및 중점분야

○ (중점분야) FAO의 중점분야는 2010~2019년의 10가지 전략에서, 2014~2017년 중기계획 5개 전략, 2022~2025년 4개의 전략으로 축소되었음. 이는 과거 FAO가 전략의 세분화를 추구하였다면 최근에는 부문별 통합적 접근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3-1〉 FAO의 전략 및 목표 변화



자료: FAO(2009)와 FAO(2021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2~2025년 전략인 ‘4 Better’s’는 SDG 1(빈곤퇴치), SDG 2(기아 종식), SDG 10(불평등 감소)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의 SDGs와 FAO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4개의 전략목표와 20개의 중점프로그램을 선정함.
- “더 나은 생산(Better Production)”은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식품과 농업 공급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회복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보장하고자 함(FAO 2021b)
- 더 나은 영양(Better Nutrition)은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가 있는 음식과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포함한 모든 방면의 영양 개선을 목표로 함.
- 더 나은 환경(Better Environment)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육상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활용, 복원 및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달성하고자 함.
- 더 나은 삶(Better Life)은 도시와 농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을 감소하여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 4개의 전략목표의 20개의 중점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3-3〉 FAO 전략목표 및 중점프로그램

1. 더 나은 생산	
중점분야	중점프로그램 세부 내용
1. 녹색 혁신	소규모 또는 위험에 취약한 생산자의 사업 기회, 지속 가능한 작물·가축·임업 생산시스템 개발, 기술, 정책, 혁신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2. 지속가능한 해양 식품 시스템	통합적 과학기반 관리, 기술적 혁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효율적, 포용적, 기후 탄력적, 지속 가능한 블루푸드 시스템 달성
3. 원 헬스	항생제 내성균(Anti Microbial Resistance)을 포함한 국가 및 세계보건 위험 요소 관리 및 조기경보, 해충 및 질병 예방을 강화하여 인간·동물·식물·환경의 건강과 국가적·세계적 원 헬스 시스템 향상
4. 소규모 생산자의 공평한 자원 접근성	정책, 전략,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소규모 생산자 또는 농가의 경제자원, 천연자원, 시장, 서비스, 정보, 교육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5. 디지털 농업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사회의 접근성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시스템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 시장기회, 생산성 및 기후 탄력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ICT 기술의 접근성 향상

2. 더 나은 영양	
중점분야	중점프로그램 세부 내용
1. 건강한 식단	소비자와 민간 부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법적 환경, 건강한 식품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장 및 건강한 식단으로의 전환
2. 취약계층의 영양	취약계층의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 근절을 위한 정책, 전략, 프로그램 중점
3. 안전한 식품	정부가 채택 및 시행하는 국가 농식품 시스템 전반에 걸친 통합적이고, 다분야에 걸친 식품 안전 정책 및 법률 제정, 가치사슬 이해관계자나 소비자의 역량 인식 향상
4. 식량 손실과 낭비 감소	정부와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축 노력에 식품 가치사슬 또는 환경 내 모든 행위자나 소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5. 투명한 시장과 거래	정책조정과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의 강화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국제 가치사슬과 무역, 시장에 공평한 참여 촉진
3. 더 나은 환경	
중점분야	중점프로그램 세부 내용
1.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형 농식품 시스템	기후 스마트농업 관행,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가능한 지속가능성과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기후회복력 및 변화 달성
2. 지속 가능한 식품과 농업을 위한 바이오경제	기술, 조직, 사회혁신을 활용한 미시/거시적 통합적 증거 기반 정책 제정과 시행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가치와 사회복지의 균형을 이루는 바이오경제 실현
3. 식품과 농업 분야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정책 실천을 통한 식품과 농업을 위한 생물다양성 유지, 지속 가능한 활용, 해양과 육상 및 담수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4. 더 나은 삶	
중점분야	중점프로그램 세부 내용
1. 성평등과 농촌 여성의 역량 증진	여성의 평등한 권리, 자원·서비스·기술·제도·경제적 기회·의사결정에 대한 접근성 및 통제권 보장, 차별적 법률 및 관행 폐지
2. 포용적 농촌으로의 전환	빈곤 가구 및 취약 및 소외 계층의 평등한 참여와 혜택을 보장하는 포용적 변화 및 활성화
3. 지속가능한 도시 식량 시스템	국가 또는 지역 이해관계자에 의한 투자 확대, 적극적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빈곤, 식량 불안정,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포용적, 기후 탄력적,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 식품 시스템 마련. 이를 통한 건강한 식단 제공,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촉진
4. 농업 및 식량 위기 대응	인도주의적 개발 연계 및 평화적 접근, 긴급생계 및 영양지원은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한 국가의 위험관리 능력 강화에 기여
5. 기후 탄력적 농식품 시스템	다양한 위험에 대한 이해, 위험감소 조치를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적 위험에 대한 농식품 시스템 및 생계의 회복력 강화
6. Hand-in-Hand (HIH) 이니셔티브	빈곤퇴치, 기아 종식,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과 농업 변화를 달성하고자 하며 1) 데이터 및 분석 향상, 2) 정책 및 기술지원의 통합, 3)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4) 공공 및 민간금융과 투자 확대의 네 가지 주요 서비스제공을 목표
7. 투자 확대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와 미래 투자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해 불평등 감소, 빈곤과 기아 근절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

자료: FAO(2021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0년 지역총회를 통해 수립된 지역별 이니셔티브는 아래와 같음.

- 아프리카: ① 2025년까지 기아 종식 기여 ② 지속 가능한 생산력 강화와 가치사슬 개발 ③ 농경지 회복탄력성 강화
- 아태지역: ① 기아와 영양불균형의 종식을 위한 농업 식량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②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및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③ 원 헬스 및 초 국경 동식물 병해충과 질병 통제 ④ 군소 도서 개발국의 식량안보, 영양 및 기후회복력에 관한 지역 간 이니셔티브 제시
- 유럽 및 중앙아시아: ① 소농, 가족농, 청년의 역량 강화와 농촌 생계개선 및 빈곤 감소 ② 푸드시스템의 변화 및 시장 접근성 개선과 통합 ③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존
- 중남미와 카리브해: ① 건강한 식단을 위한 지속 가능한 푸드시스템 ② 번영과 포용적 농촌사회를 위한 Hand-in-Hand 이니셔티브 ③ 지속 가능하며 회복 탄력적인 농업 활성화
- 근동 및 북부 아프리카: ① 수자원 부족 해결 ② 소규모가족농 지원 ③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회복탄력성 채택

○ FAO는 AID monitor를 통해 연도별/분야별로 농업 분야에서 수행한 사업을 OECD CRS Codebook 기준에 따라 분류함.

- 2018년 FAO 사업 수는 약 12,000개로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음. 전 분야에서 사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 농업생산 기반 구축사업임. 2000년에 농업정책사업은 1,117개, 농업생산 기반 구축사업 1,037개, 농촌종합개발 사업 701개였으나 2018년 농업정책사업은 3,176개, 농업생산 기반 구축사업은 3,822개로 증가함.

〈표 3-4〉 연도 및 유형별 FAO 사업 수 추이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	2018년
농업정책	1,117	1,568	2,430	2,322	3,176
농업생산 기반 구축	1,039	1,571	3,148	3,686	3,822
농촌종합개발	701	1,413	2,024	1,893	1,836
영농기술 교육 보급	303	436	994	761	766
농산물가공*	286	447	933	998	1,088
축산	271	372	504	543	572
농산물 유통체계	161	163	345	299	387
영농 기계화	119	141	230	207	202
농업협동조합육성	73	216	384	315	407
농식품 안전	67	102	98	81	135
총 사업 수	4,137	6,429	11,090	11,105	12,391

주: (\*) 농산물가공 분야는 FAO 사업 코드 31161(식량 생산), 31162(경제작물)에 해당하며, OECD CRS Codebook의 설명에 따라 32161(농산업)로 분류될 수 있어 농산물가공으로 간주하였음.

주: FAO 사업 중 31165(마약대체 소득원 개발)로 분류된 사업은 OECD CRS Codebook에 따라 43,050(비농업 분야 마약 대체 개발)도 고려되어 농업사업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Aidmonitor 자료(<https://www.fao.org/aid-monitor/en/>, 검색일: 2022.01.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1.3. MOPAN 평가 검토

○ 2017~2018년도에 수행된 MOPAN 평가에 따르면 FAO는 △명확한 전략적 비전 설정, △파트너십, △재무 관리 시스템 등에 강점이 있음. 그러나 △결과 기반의 예산 편성, △운영상의 위험관리에만 초점을 둔 접근방식, △관리 및 운영과정의 효율성 등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MOPAN, 2019a).

○ 전략 관리(strategic management), 운영 관리(operational management), 파트너십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결과(results)의 총 다섯 가지 평가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만족(satisfactory) 이상의 평가를 받았음.

- (전략 관리) 강점으로 제시된 장기적 전략 비전은 '매우 만족'으로 평가되었으며, 재정 프레임워크, 범 분야 이슈 등 대부분의 세부 영역에서 '만족'으로 나타남. 다만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2.0을 기록하여 '불만족' 수준으로 지적됨.

- (운영 관리)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영역은 “결과 기반의 예산 편성”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매우 만족’을 받았으며, 운영의 민첩성 및 적절성 부문에서는 ‘만족’으로 평가됨.
- (파트너십 관리) 주요 강점으로 파악된 만큼 높은 전 세부 영역에서 ‘만족’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제도적 절차(인력 참여, 프로젝트 투입물 조달, 물류 준비 등) 영역에서는 ‘불만족’을 받음.
- (성과관리) 근거에 기반한 수혜 대상 선정에서는 ‘불만족’ 평가를 받았으나 근거에 기반한 사업계획과 모니터링 시스템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평가 결과) 수원국의 개발목적과 매우 부합한다고 평가되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음. 특히 성평등, 인권, 영양, 효율적인 결과 전달(시기 적절성), 수혜 대상 영역은 ‘불만족’으로 평가됨.

〈표 3-5〉 2017~2018년 FAO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결과

평가영역			점수(4점 만점)
Strategic management	1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framework	3.04
	2	Structures for cross-cutting issues	2.54
Operational management	3	Relevance and agility	2.85
	4	Cost effective and transparent systems	3.08
Relationship management	5	Relevance and agility in partnership	2.66
	6	Partnerships and resources	3.19
Performance management	7	Results focus	2.56
	8	Evidence-based planning	2.97
Results	9	Achievement of results	2.13
	10	Relevance to partners	2.50
	11	Result delivered efficiently	2.00
	12	Sustainability of results	2.50

자료: MOPAN(2019a)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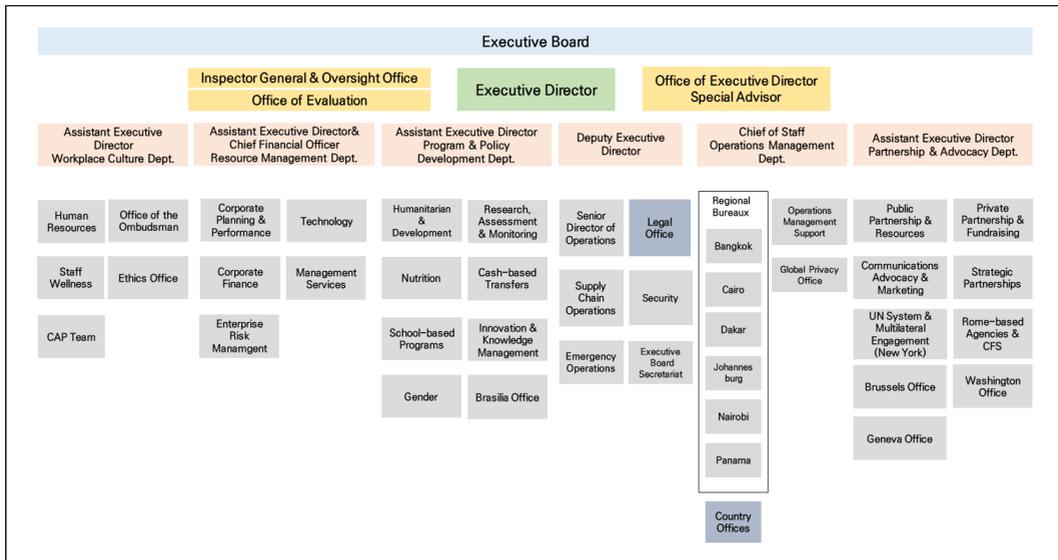
주: ‘0.00-1: Highly unsatisfactory’, ‘1.01-2: Unsatisfactory’, ‘2.01-3: Satisfactory’, ‘3.01-4: Highly Satisfactory’

## 2. 세계식량계획(WFP)

### 2.1. 기구 정보 및 현황

- 세계식량계획(WFP)은 개도국의 기아 해방을 위한 잉여 농산물 원조를 목적으로 1961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산하 기구로 설립되었음. 이후 1963년 제1회 식량 원조 회의를 개최하여 FAO로부터 독립함.
-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며 2022년 기준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2017-22년)가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집행이사회는 36개국의 회원국 대표가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재선 가능함.

〈그림 3-2〉 WFP 조직도



자료: WFP 홈페이지(<https://www.wfp.org/>, 검색일: 2022.02.01)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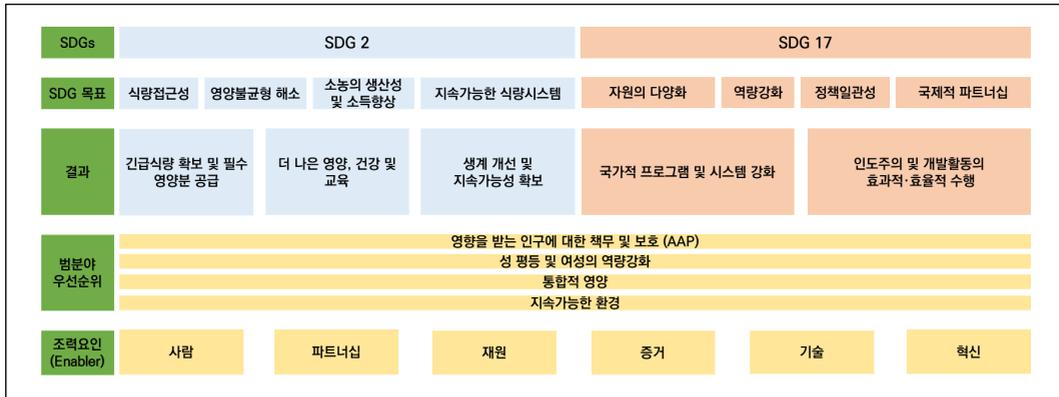
- 조직은 크게 3개의 독립부서(Office)와 6개의 일반부서로 구성됨. 먼저 상위부서로 감독부, 평가부, 사무총장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총장 아래에 사내문화부, 자원관리부,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부, 부총재, 운영관리부, 협력부 등 총 6개 부서로 구성됨.

- 협력부는 뉴욕, 로마, 브뤼셀, 워싱턴, 제네바를 기점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디스아바바와 베이징 사무소는 전략적 협력 분야, 베를린, 두바이, 런던, 오타와, 서울, 도쿄 사무소는 자원 및 공공 협력 분야, 코펜하겐 사무소는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분야를 중점으로 담당하고 있음.
- WFP 본부는 로마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체 근무 인원은 20,600여 명 이상으로 이 중 87% 이상은 지역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음. 현재 88개 국가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WFP의 주요 비전은 식량 불안정, 영양 불균형 근절(SDG 2)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파트너십 구축(SDG 17)이며 이 외 SDGs 달성을 위해 긴급구호 및 재건, 개발사업을 주로 수행함. WFP는 8개의 목표(target)를 통해 위 비전을 달성하고자 함.

- (SDG 2.1) 기아를 종식하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 접근성 확보를 보장
- (SDG 2.2)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종식하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 수유 여성 및 노인층의 영양 문제를 해결
- (SDG 2.3) 여성 소작농과 취약계층의 농업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향상
- (SDG 2.4)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보장
- (SDG 17.3)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자원 활용방안을 모색
- (SDG 17.9)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
- (SDG 17.14) 정책의 일관성 유지
- (SDG 17.16) 세계적인 파트너십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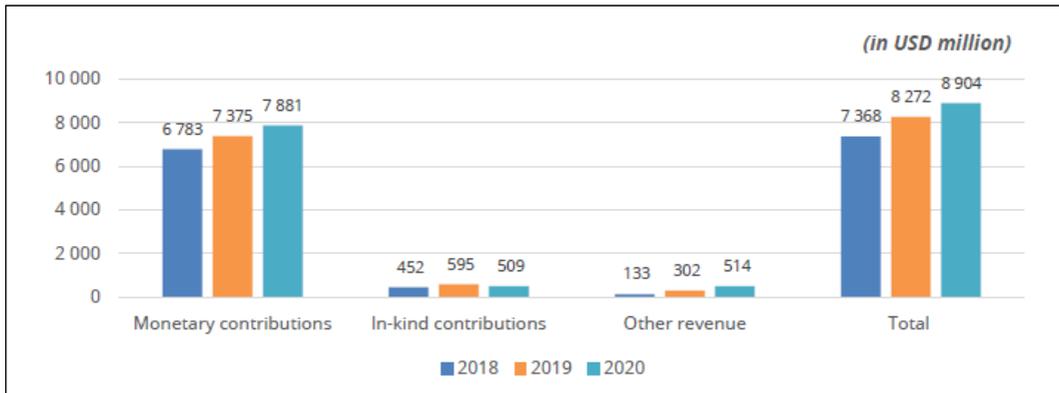
〈그림 3-3〉 WFP의 전략구조



자료: WFP(2021a)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2020년 WFP의 예산은 89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88.5%는 재정지원, 나머지는 현물지원으로 충당되고 있음. WFP 주요 과제는 긴급구호인 만큼, 융통성 있는 재원 활용을 통해 우선순위의 지역에 식량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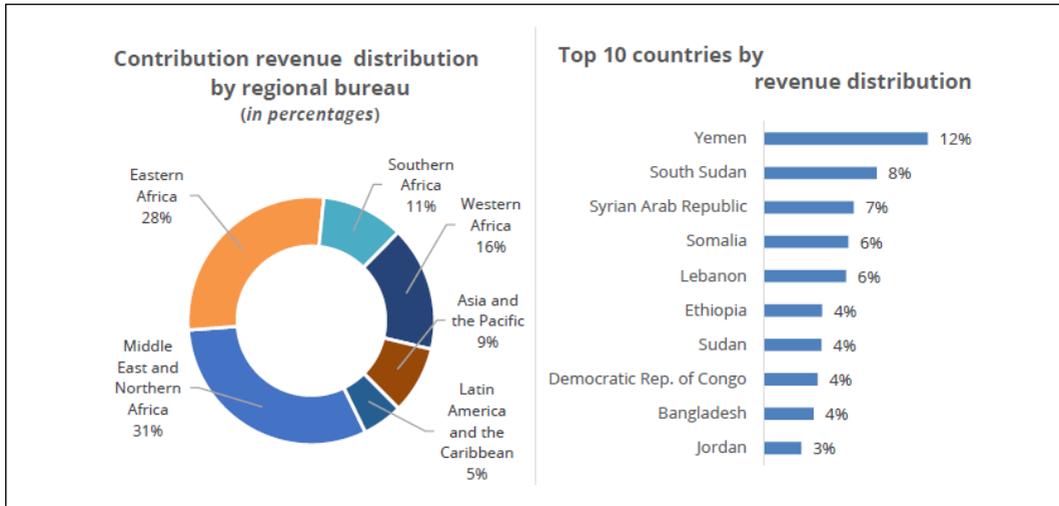
〈그림 3-4〉 WFP 연도별 예산 규모



자료: WFP(2021b).

○ 2020년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지역은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이며 그 뒤로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남미 지역 순으로 지원함. 개별 국가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예멘(12%)이며 남수단 8%, 시리아 7%, 소말리아 6% 등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를 주로 지원함.

〈그림 3-5〉 WFP 대륙별 예산 비율 및 상위 사업국



자료: WFP(2021b).

○ WFP의 국가전략계획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식량 접근성에 대한 예산이 전체의 77%로, 식량지원 및 긴급구호 사업이 여전히 WF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이 외 영양불균형 해소와 국제파트너십 구축에 각 8% 정도의 사업예산을 사용하였음.

○ 최근에는 원조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후 조치에 높은 관심을 가져 식량원조 관련 개발 사업에도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2020년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과 SDGs 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예산은 2018년 대비 약 3배가량 증가하여 긴급구호 이외에도 교육 및 농산물 유통체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 WFP의 국가전략계획별 예산 추이

국가전략계획(CSP) 분류	(기준: 백만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1. 식량 접근성	4,248.6	7,848.8	9,495.5
2. 영양불균형 해소	535.3	998.6	981.9
3. 소농의 생산성 및 소득 향상	236.6	248.7	213.8
4.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133.8	349.6	377.0
5.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	72.6	133.4	257.1

국가전략계획(CSP) 분류	(기준: 백만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6. 정책 일관성	2.8	3.9	3.6
7. 자원 다양화	0.2	0.6	0.6
8. 국제적 파트너십(지식, 경험, 기술의 공유)	930.9	1545.9	982.7
CSP 총비용	6.160.8	11.129.5	12.312.2

자료: WFP(2019, 2020, 2021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2. 전략 및 중점분야

○ WFP는 2022~2025 전략계획을 통해 SDG 2와 SDG 17 관련한 다섯 가지 성과(outcome)를 달성하고자 함. SDG 2는 취약계층의 질 좋은 식품 접근성 개선과 본질적 필요(Essential needs)<sup>4)</sup> 충족을 위해 필수적임. WFP는 SDG 2 달성을 통해 ① 긴급 식량 확보 및 필요한 영양분 공급, ② 더 나은 영양, 건강 및 교육 관련 목표 달성, ③ 생계 개선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성과를 이루고자 함(WFP, 2021a).

- 또한, 식량안보 및 건강한 식단 제공을 위해서는 SDG 17인 국제사회의 효과적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 이에 WFP는 SDG 17 달성을 통해 ④ 국가적 프로그램과 시스템 강화, ⑤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주의 및 개발협력 활동 강화 등의 성과를 이루고자 함.

○ WFP는 긴급성 및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사업을 긴급구호(Emergency Operations, EMOP), 재건사업(Protracted Relief and Recovery Operations, PRRO), 개발사업(Development Operations, DEV), 특별사업(Special Operations, SO)으로 구분함(김종섭 2013).

- (긴급구호, EMOP) EMOP 사업은 재해로 인해 식량 접근성 제한, 재해 난민 발생, 분쟁 등 복합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 대응 기금 사용기간인 3개월 이후에 1년 주기로 사업을 실행함.

4) 본질적 필요는 인간의 건강, 존엄성 또는 필수 생계 자산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생존 및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 또는 계절마다 필요로 하는 필수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함.

- (재건사업, PRRO) 긴급구호 사업 이후에 수원국 주민의 식량 생산환경, 생활 여건 개선, 식량안보 확보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4년간 재건사업을 수행함. 사업 활동은 관개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 재건, 식량 지원 등으로 구성됨.
- (개발사업, DEV) 주민들의 일상 복귀 이후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장기사업으로 최대 5년간 수행함. DEV는 기근의 악순환 근절을 목적으로 하며 주택개선, 건강관리, 기술 습득 교육 등 향후 안정적 식량 확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위주로 수행함.
- (특별사업, SO) 원활한 식량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로, 다리 및 철로의 복구와 공항 및 항만의 수리가 이에 해당함. 식량 지원을 위해 단기간에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긴급구호나 재건사업을 보조하는 형태로 수행하고 있음.

○ WFP 2022-2025 전략문서에 따른 주요 프로그램은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3-7>과 같음.

<표 3-7> WFP의 프로그램과 세부 사업내용

구분	내용
식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인도적 긴급구호 및 다년도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국의 영양 프로그램과 지표를 향상하고 수혜자들의 발언권 및 식량 결정권을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 현물 식량 지원 및 현금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물: 1인 적정 영양분 및 열량을 고려한 식품 바스켓 지원</li> <li>- 현금: 통화, 쿠폰, 전자지원금 등을 WFP와 협의가 이뤄진 현지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수혜자 결정권 및 접근성 강화(현금성 지원은 2000년대 중반 시작, 현재 전체 WFP 지원의 1/3은 현금성 지원으로 운영 중)</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국 및 규모: 2019년 현금지원 21억 불</li> </ul>
학교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모든 학생이 학교급식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고 교육 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 조언 및 기술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정부의 학교급식 프로그램 가속화</li> <li>- 학교급식 꾸러미 제공(여학생과 그 가정 지원)</li> <li>- 고학년 여학생 지원으로 여성의 진학·출석률 제고</li> <li>- 가정재배 학교급식 프로그램(Home Grown School Feeding)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 역량 강화</li> <li>- 소규모 농가들의 학교급식 원료 공급 확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국 및 규모: 60년간 100개 이상 국가와 협력, 48개 국가에 학교급식 체계 이관 완료, 2020년 기준 1천 5백만 명 학생 지원으로 학교급식 협의체(School Meals Coalition)의 선도기구</li> </ul>
자산 구축 최로사업 (FFA, Food Assistance for As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즉각적인 식량 지원과 동시에 지역의 자산 구축 및 복구를 촉진하여 환경의 개선, 기후충격의 위험감소, 식량 생산성 증대,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통한 장기적인 식량안보와 회복력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자산(생산, 시장, 기후 대응, 환경보호 구조물)의 생성 및 복구에 기술과 자재 지원</li> </ul> </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생성 및 복구 참여자에게 식량 및 현금지원</li> <li>- 수혜자에게 영양 관리에 대한 교육 제공</li> <li>- 양성평등(SDG5), 식수 위생관리(SDG12), 기후 대응(SDG15) 등의 기타 SDGs에 기여</li> </ul> <p>• 참여국 및 규모: 2013년 이후 50여 개 국가에서 운영, 매년 1천만 명 이상 지원, 2019년 127,000ha 개간, 2019년 7천ha 산림 조성</p>
소농 대상 구매 (P4P, Purchase for Progress)	<p>• 목적: WFP의 구매력을 활용, 소규모 농가 중심 조달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생산성과 회복력 향상.</p> <p>•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협동조합 등에 품질향상, 금융 접근성 증대, 제품 마케팅 관련 교육 제공</li> <li>- 소외되고 차별받는 여성 노동력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및 경제적 이익 확보 지원</li> <li>- WFP 식량 10% 이상을 소규모 농가로부터 구매</li> <li>- 현지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소규모 농가로부터 구매하도록 권장.</li> </ul> <p>• 참여국 및 규모: 35개국 참여,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지역의 1백만 소규모 농가 참여, 80% 개도국 조달, 10억 불</p>
소농의 시장 활동 지원	<p>• 목적: 아시아-아프리카 식량 생산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대 및 삶의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식량안보 강화 및 기아 종식 달성.</p> <p>•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농가 및 생산자 조합에 기술 및 금융 지원</li> <li>- 수확 후 관리 및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농가 및 생산자 조합 지원</li> <li>- 농가의 시장 접근성, 회복력, 재난 대응력 지원</li> <li>- FFA, 학교급식과 연계한 소규모 농가 지원</li> <li>- P4P 등을 통해 농가와 시장을 연결하는 투자를 촉진하여 작물 다양화 및 사업성 확대</li> <li>- 품목 다양화, 기후변화 적응 농업 촉진</li> </ul> <p>• 참여국 및 규모: 40여 개 국가 참여, 29개국에서 소규모 농가를 통해 WFP 식량 조달, 2019년 기준 37.2백만 불(약 446억 원) 식량을 소규모 농가로부터 조달</p>
기후변화 대응	<p>• 목적: 반복되는 기후충격으로 인한 식량 위기에서 지역사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미래의 충격을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대응력 구축</p> <p>• 방법: 예측, 회복, 안전망, 에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 및 지진 예측 조기경보 체계구축(ADAM, PRISM 등) 및 라디오 보급 등</li> <li>- 예방 조치를 위한 사전 자금지원(FbF, Forecast-based Financing)</li> <li>- 악화된 생태계를 기후 위험에 대한 자연 완충 체계로 복원</li> <li>- 극한 기후에 대비한 안전망과 보험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li> <li>- 학교와 지역 마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공급으로 식량의 생산 및 수확후관리 향상</li> </ul> <p>• 참여국 및 규모: 2009년 이래 약 3억 불(3.6천억 원)을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함. 현재 39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참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기준 13개국 2백만 명 이상이 기후 대응 보험 혜택</li> <li>- 2020년 기준, 1.6백만 명 이상 지속가능 에너지 사용</li> </ul>
국가역량 강화	<p>• 목적: 협력국의 강력한 운영에 근간한 식량 안보·영양 정책으로 기아 종식(SDG 2) 달성을 저해하는 각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p> <p>•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국 정부가 주도하고 WFP가 실행하는 평가과정을 통해 역량 부족 분야 발굴</li> <li>- 해당 국가 맞춤형 기술지원 및 역량 개발 활동 제공: 긴급대응력, 물류 및 공급망 관리, 사회안전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력, 지역 시장 개발, 영양 및 HIV/AIDS 프로그램 운영 능력</li> <li>-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통한 협력 국가 간 각종 정책(식량안보, 사회안전망, 지역개발, 재난 대응, 기후변화 대응) 교류, 지식과 정보 공유</li> </ul> <p>• 참여국 및 규모: 2015년 기준 54개국 정부 정책 지원, 모든 WFP 국가사무소는 협력국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CSP를 기반으로 운영</p>

구분	내용
영양실조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긴급상황에서의 급성 영양실조 방지 및 만성 영양불균형에 따른 성장 저하 및 미량 영양 결핍 등 감춰진 기아(hidden hunger) 문제 해결</li> <li>•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상황에서 영양지원 및 중장기 영양치료 제공</li> <li>- 임신부터 아이의 생후 첫 1,000일간 영양지원</li> <li>- 미량영양 보충제 제공 및 식습관·영양 교육 시행</li> <li>- 지역사회나 현지 정부 영양 전문가 육성</li> </ul> </li> <li>• 참여국 및 규모: 1억 300만 명 5세 이하 영유아 영양치료, 6.3백만 명 임신·수유부 영양치료, 1천 4백만 명 행동 변화 영양교육 참여</li> </ul>
UN 인도주의 항공 서비스 (UNH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안전하고, 안정적인, 저비용·고효율의 항공 승객 화물 서비스를 통해 모든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평등한 접근을 보장</li> <li>•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FP가 직접 90개 이상의 항공기(여객기, 화물기, 헬리콥터 등) 운영</li> <li>- 민간서비스가 닿지 않는 오지, 보안 불안 지역에 항공 서비스 제공</li> <li>- 긴급상황에서 유일한 교통 채널 제공</li> <li>- 국제 민간항공 운영기준(ICAO) 및 UN 기준(UNAVSTADS) 준수</li> </ul> </li> <li>• 참여국 및 규모: 2019년 기준 20개 국가 연결, 310개 목적지, 400,400명 승객</li> </ul>
UN 인도주의 물류기지 (UNH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의료, 식량, 기기 등의 조달, 비축, 신속한 운송을 지원</li> <li>•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FP가 운영하는 6개 물류허브에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활용하는 물품 사전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탈리아, 가나, 말레이시아, 파나마, 스페인, UAE</li> </ul> </li> <li>- 긴급상황 시 48시간 안에 물품 공급</li> <li>- 재고 대여, 대출 등 효율적 운영 옵션 제공</li> <li>- 4곳의 물류허브에서 교육훈련 시설 제공</li> </ul> </li> <li>• 참여국 및 규모: 6개의 글로벌 물류허브, 80개 이상의 협력 기관 및 9 공여자, 2018년 기준 575건의 운송, 93개국 운송</li> </ul>
혁신 및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혁신과 기술을 통해 더 신속한 긴급구호, 더 규모화된 지원을 도모하고 사람들의 삶에 동력을 제공하고 선택권을 부여</li> <li>•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센터(Innovation Accelerator) 운영 (독일 뮌헨)</li> <li>- 발굴된 혁신 기술 및 프로젝트 시범사업 운영 및 WFP 현장 사업에 도입: 디지털 금융, 수경재배, 식량안보 모니터링, 예측 시스템, 자율 운행 차량 등</li> <li>- 혁신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정책 등 인도주의 중심의 강력한 운영정책 적용</li> </ul> </li> <li>• 참여국 및 규모: 2015년 이래 46개국 100개 프로젝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기준 규모화된 14개의 프로젝트로 5.5백만 명 지원</li> <li>- 혁신으로 인한 비용 절약으로 2백만 명 이상 지원</li> </ul> </li> </ul>

자료: WFP(2019~2021)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WFP는 원칙적으로 본부에서 파견된 인력을 통해 각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함. 국별 사무소 내에는 모니터링 및 평가 담당자가 상주하여 월별 보고서와 반기별 절차 및 품질 모니터링, 연도별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WFP가 수행하는 평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김종섭 2013).

- 전략 평가(Strategy Evaluations):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평가
- 정책 평가(Policy Evaluations): 정책의 목표 달성 현황 평가
-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Country Portfolio Evaluations): 국별 사무소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통한 사업 달성 정도 파악
- 영향력 평가(Impact Evaluations): 사업을 통해 수혜자에 미친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
- 연례 평가보고서(AER: Annual Evaluation Report): 연간 수행한 평가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 2.3. MOPAN 평가 검토

○ 2017~2018년에 수행된 MOPAN 평가에 따르면 WFP의 주요 강점으로는 △명확하고 전략적인 비전 설정, △폭넓은 물류 역량과 심층적 현장 배치, △필요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운영 결정을 내리고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역량, △리스크관리 및 부정행위 탐지를 위한 강력한 관리 감독 시스템, △결과 기반의 성과제시 능력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자금조달 전략, △국가 정책개발 및 제도 개혁에 대한 기여, △사업계획 단계에서 평가 결과의 체계적인 적용, △비용 효율성 달성을 위한 공고한 데이터 구축 등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MOPAN 2019b).

○ 전략 관리(strategic management), 운영 관리(operational management), 파트너십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결과(results)의 총 다섯 가지 평가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결과, '결과(results)'를 제외한 네 분야에서 만족(satisfactory) 이상의 평가를 받았음.

- (전략 관리) 강점으로 제시된 장기적 전략 비전과 재정 프레임워크 등은 '매우 만족'

으로 평가되었으나 환경, 거버넌스 인권 분야에서는 모두 2.0을 받아 ‘불만족’ 수준으로 나타남.

- (운영 관리) 자원 동원, 분권화된 의사결정, 투명한 시스템 등이 강점으로 평가된 만큼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모든 세부 영역에서 ‘만족’ 이상의 평가를 받음. 평가와 후속 조치 시스템 영역에서는 ‘매우 만족’으로 우수성을 입증함.
- (파트너십 관리)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영역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지만, 모든 세부 영역에서 ‘만족’ 이상의 결과를 받았음. 특히 사업수행 속도, 민첩성, 파트너기관 간의 합동 성과 리뷰 및 평가 등에서는 ‘매우 만족’을 획득함.
- (성과관리) 성과관리를 위한 데이터 영역은 ‘불만족’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근거에 기반한 계획, 결과지향 등에서는 모두 ‘만족’ 이상의 점수를 얻음.
- (평가 결과) 명시된 목적과 예상 결과의 달성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결과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정책, 성평등, 인권, 환경, 지속가능성 등의 영역에서는 ‘불만족’으로 나타나 범 분야 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3-8〉 2017~2018년 WFP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결과

평가영역			점수(4점 만점)
Strategic management	1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framework	3.38
	2	Structures for cross-cutting issues	2.20
Operational management	3	Relevance and agility	3.16
	4	Cost effective and transparent systems	3.24
Relationship management	5	Relevance and agility in partnership	2.78
	6	Partnerships and resources	2.93
Performance management	7	Results focus	2.48
	8	Evidence-based planning	3.15
Results	9	Achievement of results	2.00
	10	Relevance to partners	2.50
	11	Result delivered efficiently	2.50
	12	Sustainability of results	1.83

자료: MOPAN(2019b)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0.00-1: Highly unsatisfactory’, ‘1.01-2: Unsatisfactory’, ‘2.01-3: Satisfactory’, ‘3.01-4: Highly Satisfactory’

### 3. 유엔개발계획(UNDP)

#### 3.1. 기구 정보 및 현황

○ 유엔개발계획(UNDP)은 국제연합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활동을 조정 및 총괄하는 기구로서 개도국의 경제적·정치적 자립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함(외교부 홈페이지<sup>5)</sup>)

- 1965년에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한 국제연합 기술원조확대계획(UNEPTA)과 용자제공 목적의 유엔특별기금(UNSF)이 통합되어 유엔 산하 기구로 설립되었음.
- 유엔현장 정신에 입각한 개도국의 경제적·정치적 자립과 경제·사회 발전 달성을 목표로 하며, 개도국의 국가개발 목표에 일치하는 원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 촉진에 이바지함.
- 세계 최대의 다자간 기술 원조 공여 기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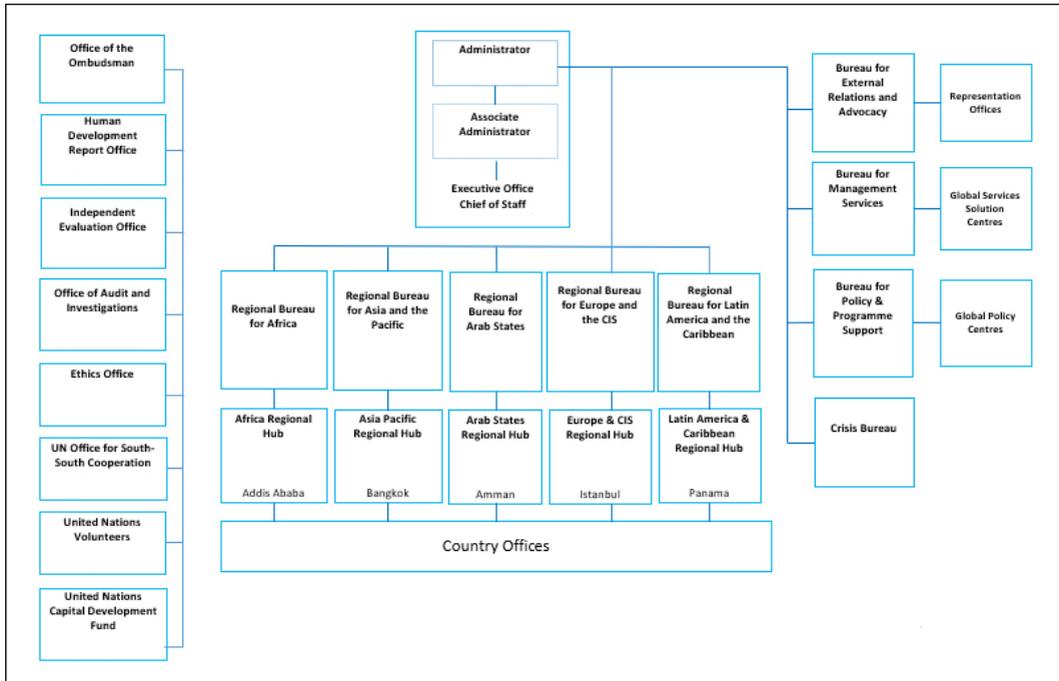
○ UNDP는 크게 집행이사회와 사무국(총재와 부총재)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집행이사회는 정책 결정 및 운영, 국가계획 검토 및 승인, UNDP 자원 분배 및 관리를 수행하며 매년 5월 경제사회이사회(ECOSCO)가 이사국을 선출함. 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며 재선 가능.
- 이사국은 5개 그룹에서 선출된 총 36개국(아프리카 8개국, 아시아 7개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5개국, 동유럽 4개국, 서유럽 및 기타 12개국)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1명의 총재와 4명의 부총재를 선출함.
- 사무국의 총재는 UN 시스템 내 서열 3위에 해당하며, 집행이사회가 위임한 임무 수행 및 사업 집행을 총괄, 관리함. 임기는 4년으로 Mr. Achim Steiner(아킴 스타이너)가 현 총재직을 수행하고 있음.

---

<sup>5)</sup>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mofa.go.kr/www/brd/m\\_3861/view.do?seq=2990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titleNm=](https://www.mofa.go.kr/www/brd/m_3861/view.do?seq=2990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titleNm=), 검색일: 2022.02.10.)

〈그림 3-6〉 UNDP 조직도



자료: UNDP 홈페이지(<https://www.undp.org/>, 검색일: 2022.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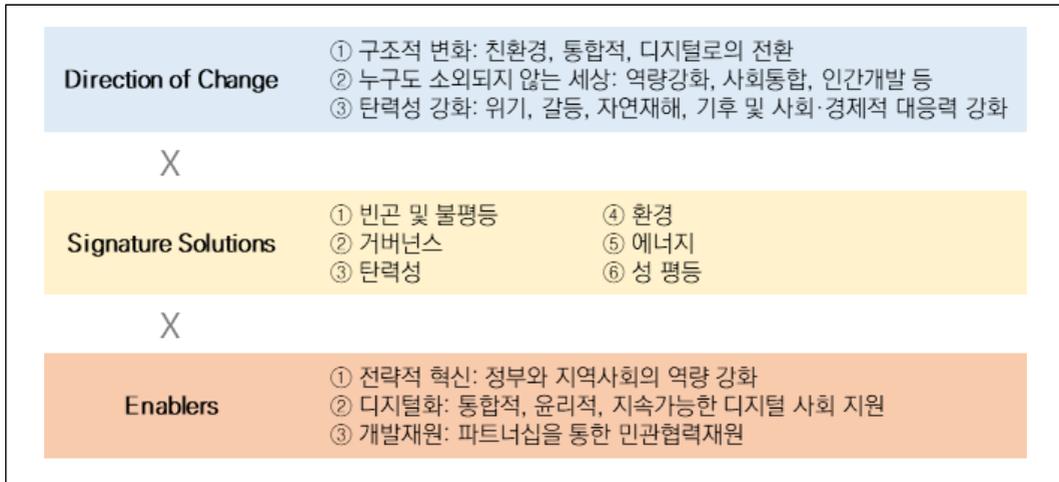
○ UNDP 사무국의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5개의 지역국과 4개의 행정 담당국, 기타 특수 부서 등을 운영함. UNDP의 산하기관으로는 유엔 자본개발기금(UNCDF), 유엔자원봉사단(UNV) 등이 있음.

- 약 170개국에서 국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주 대표는 소재국 내 유엔 개발 활동을 조정하고 국가계획 수립 시 주재국 정부 권고, 사업 집행과 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함.
- 벨기에, 일본, 미국, 덴마크, 스위스에 총 5개의 연락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한국, 싱가포르, 케냐, 터키, 노르웨이, 브라질에서 글로벌 정책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정책센터는 개발 의제에 관한 연구, 정책담화, 지식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개발 협력, 남남협력 및 양질의 사업계획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함.

### 3.2. 전략 및 중점분야

- UNDP는 “전략 2022-2025”를 통해 3x6x3 프레임워크를 구상하였으며 3개의 전략 방향(구조적 변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탄력성 강화)을 제시함(차원규 외, 2020).
  - 세 가지 전략 방향은 ① 빈곤 및 불평등 해소 ② 평화·공정·포용적 사회를 위한 거버넌스 ③ 위기 예방과 탄력성 향상 ④ 환경 ⑤ 친환경적이고 풍부한 에너지 ⑥ 성평등 6 가지 핵심 분야(6 Signature Solutions)로 나누어 사업을 체계화함.

〈그림 3-7〉 UNDP 3 x 6 x 3 프레임워크



자료: UNDP(20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빈곤 및 불평등 해소) SDG 1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인류의 빈곤 탈출을 돕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역의 정부, 지역사회 및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력하고자 함.
  - UNDP는 생계유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사회안전망 구축, 정치 참여 증대, 물·에너지·의료·신용·생산 기반과 같은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등 빈곤 종식을 위한 여러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빈곤 종식을 위한 농업 분야의 주요 과제로는 농민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소농의 소득향상, 사회적 기업 지원과 소규모 자금지원과 같은 혁신적 지원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평화·공정·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거버넌스) 국회, 법원, 지역 및 지방 행정 등 다양한 기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운영방식을 개선하며 모든 사람이 번영, 평화, 정의 및 안전의 가치를 향유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이와 관련된 농업 분야의 과제로는 농촌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농촌지역의 차별과 격차 해소, 혁신적인 농업 시스템 구축 등이 될 수 있음.
  
- (위기 예방과 탄력성 향상) 수원국과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갈등관리, 위기와 외부충격에 대비, 사후적으로는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며 위험관리를 개발계획 및 투자 결정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탄력성은 위기 예방, 예측, 흡수, 대응 및 복구할 수 있는 인적 역량, 커뮤니티, 기관 및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말함. 이는 근본적인 분쟁의 원인 해결,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및 위험과 영향 최소화,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음.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전략 수립과 가뭄 및 홍수 등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 등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음.
  
- (환경) 수원국이 육상 및 해상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연 기반 솔루션을 제공함. 이를 통해 수원국은 적절한 식량과 수자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및 재난에 대한 적응력과 대응력을 강화하며, 농촌관광 등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
  - UNDP는 글로벌 환경금융(GEF)과 유엔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서 국가개발 우선순위에 파리협약 등 모든 환경 협정을 먼저 포함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음식, 쉼터, 깨끗한 공기, 교육 기회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자 함.
  - 또한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농촌 및 농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와 농촌폐기물 감소, 친환경농업의 확산, 온실가스 흡수 기능과 생태적 기능의 확장, 농업을 위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보호 등의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음.
  
- (친환경적이고 풍부한 에너지) UNDP는 화석 연료의 사용 대신 저렴하고 깨끗하며 재

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국가 에너지 전략에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태양에너지에 대한 접근 강화, 운송 산업의 연료 시스템 전환과 재생 가능한 방법을 통한 전력 제공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업 전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농촌지역 재생 에너지 보급, 태양광 관개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농촌지역 조리도구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성평등) 여성은 기아, 폭력, 재난 및 기후변화의 영향에 더욱 취약하고 법적 권리 및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므로 빈곤층의 대다수를 차지함. 이에 UNDP는 전 분야에 걸쳐 성평등 고려를 위한 역량을 높이고 책임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음.

-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는 모든 활동에 적용하며, 성폭력 종식, 여성 농민의 삶과 권익의 향상, 기후변화, 비즈니스 및 정치 문제에서의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는 원칙을 관철해 나가고 있음.

○ UNDP의 사업 영역은 2018-2021 전략계획 중 세부 분야 및 SDG 목표별 세부 사업에서 볼 수 있음. 농업 분야 사업은 SDG 1(빈곤 종식), SDG 12(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등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며, UNDP 사업 중에서 농업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들은 17개 SDG 목표 중 두 번째 「기아 종식(Zero Hunger)」과 직접적으로 관련됨.

- 「Zero Hunger」를 위한 사업 집행예산은 2018년 6,146만 달러로 67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72개(6,668만 달러), 2020년도에는 75개(6,065만 달러) 사업이 추진되었음.
- 기아 종식 사업예산은 매년 6천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나, UNDP 전체 예산인 60억 달러에서 2018년 1.1%, 2019년 1.5%, 2020년 0.7%를 차지하는 정도로 비중이 큰 편은 아님.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SDG 1인 빈곤퇴치로 2020년에는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SDG 16(평화, 정의, 제도)이 19.3%, SDG 3(보건과 웰빙)이 9.9%, SDG 13(기후변화)이 8.6% 순임.

〈표 3-9〉 SDG 2 달성 목표와 UNDP 예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목표	세부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상태 개선의 달성 및 지속 가능 농업 강화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고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 및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일 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17.37	18.87	20.07
	2.2.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부족을 종식하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 여성 또는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	15.29	18.43	19.92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 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을 통해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등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 증가	9.52	9.26	5.40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 증가, 생태계 유지, 기후변화, 가뭄, 홍수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체계를 보장하며, 회복력 있는 농업경영 이행	15.44	15.30	10.65
	2.5.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개선	-	-	-
	2. 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농촌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개발, 식물과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3.79	4.23	3.80
	2. b. 모든 형태의 농업 수출보조금과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모든 수출 조치에 대한 병행적 제거를 통해 전 세계 농산물 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시정하고 예방	-	-	-
	2. c. 식료품 시장과 시장 파생상품의 적절한 기능을 확보하고 식량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식량 비축분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	0.043	0.594	0.805

자료: 차원규, 박차미 외(2020) 인용.

○ 그러나 농업·농촌 관련 사업은 SDG 2 외 다른 목표에서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규모가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예를 들면 아프간 공동체 기반의 농업 및 농촌 개발사업(2,407만 달러), 예멘의 식량안보 및 생활 회복력 지원사업(8백만 달러), 시리아 농업 생활 개선 및 농촌 개발(5.8백만 달러) 등은 목표1(빈곤 종식)에 해당하는 사업이지만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표 3-10〉 SDG 1 달성 목표와 UNDP 예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목표	세부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 2030년까지 현재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등 모두를 위해 모든 곳에서 극심한 빈곤을 종식	286.74	184.29	218.33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 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금융서비스에 접근 보장	481.82	473.98	411.17
5. 양성평등,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	5. a.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주고, 토지나 다른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 및 천연자원에 접근을 위한 개혁	0.525	0.328	0.466
11. 지속 가능 도시	11. 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근교 도시 그리고 농촌 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 지원	10.55	15.44	14.49
12.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식량 낭비를 1/2로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식량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량 손실 감소	0.043	0.594	0.805
15. 육상생태계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황폐해진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 중립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597.08	561.15	531.91

자료: 차원규, 박차미 외(2020) 인용.

### 3.3. MOPAN 평가 검토

○ 2020년도에 수행된 MOPAN 평가에 따르면, UNDP는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중요성 강조, △효과적인 파트너십, △디지털 적용, △국가지원 플랫폼, △운영 관리와 사업체계의 향상 등에 장점을 보임.

- 그러나 △통합, 개발, 6가지 핵심 분야(6 Signature Solutions), 혁신 등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 △인도주의-평화-개발 간의 연계에서 UNDP의 포지셔닝, △충분한 재정 및 인적자원 부족, △글로벌 정책센터와 외부 파트너의 일관된 접근방식과 적극적 참여, △국가지원 프로그램의 비즈니스 계획 부재 등에 개선이 필요함(MOPAN 2021).

○ 전략 관리(strategic management), 운영 관리(operational management), 파트너십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결과(results)의 다섯 가지 평가영역에서 대부분 만족(satisfactory)을 받았지만 ‘매우 만족’으로 특별히 평가가 좋은 영역은 없었음.

- (전략 관리) 제도 및 재정 프레임워크와 범 분야 이슈 전반에 걸쳐 대체로 '만족'으로 평가되었으나 우선순위별 자금배치를 위한 정책 및 조치 마련 영역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음.
- (운영 관리) 감사, 통제 메커니즘, 부정행위 탐지 영역에서는 '매우 만족'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 영역에서 대체로 '만족'으로 평가되었음. 다만, 결과 기반의 예산 수립과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은 각각 '매우 불만족', '불만족'인 것으로 평가됨.
- (파트너십 관리) 파트너십은 UNDP의 강점으로 제시된 만큼, 수혜자에 대한 책임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만족' 이상의 평가를 받았음. 특히 민첩성, 정보 공유, 공동 평가영역에서는 '매우 만족'을 받음.
- (성과관리) 전반적인 성과관리 영역에서는 '만족'으로 나타났으나, 증거 기반 계획,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성과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는 '불만족'을 받음.
- (평가 결과) 효율적인 결과 전달과 지속 가능한 결과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불만족'으로 평가되었지만, 결과의 달성과 파트너와의 연관성은 '만족'으로 평가영역 간 다소 차이가 존재함.

〈표 3-11〉 2020년 UNDP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결과

평가영역			점수(4점 만점)
Strategic management	1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framework	2.64
	2	Structures for cross-cutting issues	2.89
Operational management	3	Relevance and agility	2.87
	4	Cost effective and transparent systems	3.00
Relationship management	5	Planning design support, relevance and agility	3.09
	6	Work in coherent partnerships	3.20
Performance management	7	Transparent results focus	2.57
	8	Evidence-based planning	3.02
Results	9	Achievement of results	2.67
	10	Relevance to partners	3.00
	11	Result delivered efficiently	2.50
	12	Sustainability of results	2.00

자료: MOPAN(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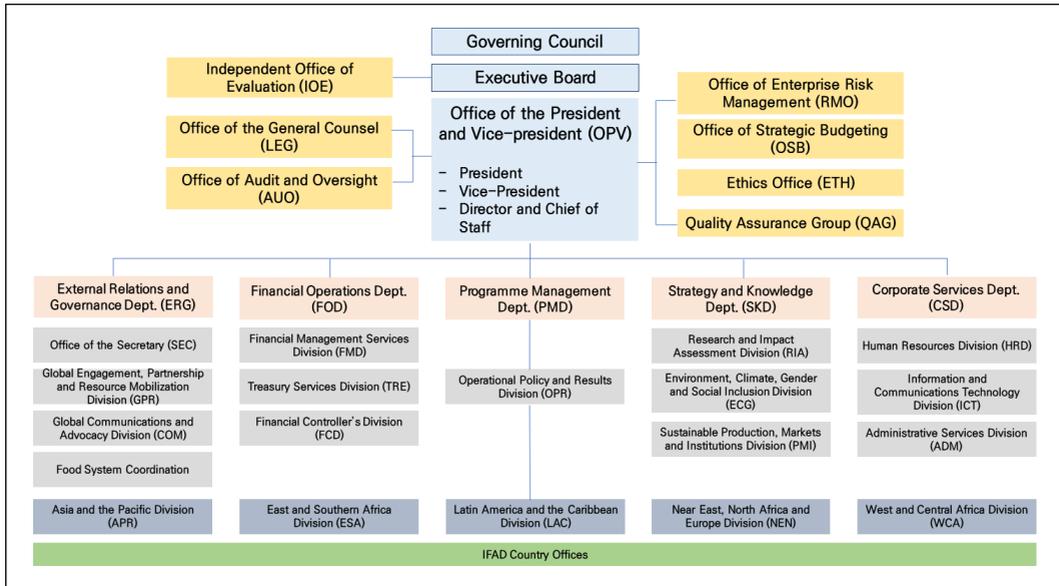
주: '0.00-1.50: Highly unsatisfactory', '1.51-2.50: Unsatisfactory', '2.51-3.50: Satisfactory', '3.51-4.00: Highly Satisfactory'로 2018년까지 수행된 평가척도 구간과 다소 상이함.

## 4.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4.1. 기구 정보 및 현황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UN 특별 기구로서 1974년 개최된 세계식량회의의 주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1977년에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며, 개발도상국 농촌지역의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금융서비스, 마케팅, 기술, 토지와 기타 자연 자원에 대한 농촌 빈곤층의 접근성 강화에 주안을 두고 있음(지성태 2014).
  
- IFAD의 비전은 소규모 농업 중심의 농촌개발임.
  - 소규모 농업은 대다수 취약 농민 계층의 주요 소득원이자 영양분의 주요 공급원임. 즉 소규모 농업이 경제성장과 식량안보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실효성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소규모 농업을 통해 빈곤 탈출에 이바지할 수 있음.
  - 농업의 가치사슬과 연계하여 생산재 공급, 가공, 마케팅, 운송과 같은 비농업 부문과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소상공업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IFAD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집행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며, 그 아래 일반 운영에 대한 감독과 사업 승인 등을 담당하는 상임이사회가 존재함. 상임이사회는 집행이사회를 통해 회원국 유형별 이사 정원에 따라 결정됨.
  - IFAD 회원국은 173개국이며 OECD 회원국은 A그룹, OPEC 회원국은 B그룹, 개발도상국은 C그룹으로 구분함. C그룹은 아프리카가 C1, 유럽·아시아 및 태평양은 C2, 남미와 카리브해는 C3 등 대륙별로 나뉨.
  - 조직은 실무를 총괄하는 총재, 부총재실, 재정 운영, 기업서비스, 전략 및 지식관리부, 프로그램관리부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륙별 사무소와 국가별 사무소 등이 있음.

〈그림 3-8〉 IFAD 조직도



자료: IFAD 홈페이지(<https://www.ifad.org/en/>, 검색일: 2022.01.10.).

○ IFAD 지역사무소는 총 40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 동·남아프리카 9개,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5개, 극동·북아프리카·유럽 4개, 중앙 및 서아프리카 11개를 운영 중임.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 동·남아프리카: 브룬디,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볼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아이티, 페루.
- 극동·북아프리카·유럽: 이집트, 모로코, 수단, 예멘.
- 중앙 및 서아프리카: 브루키나파소,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기니,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 2020년 IFAD 연간보고서 기준 직원 수는 총 620명이며 전문직은 422명, 행정직원은 198명임. 전체 직원의 31%는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IFAD, 2021).

- 2020년 5개 지역별 프로젝트, 프로그램 수 및 집행예산은 7억 8,290만 달러로 18개의 사업을 수행하였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총 3억 6,580만 달러로 6개 사업이 집행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3억 3,200만 달러가 집행됨.
  - 1978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중앙 및 서아프리카, 동·남아프리카, 극동·북아프리카·유럽, 남미·카리브해 순으로 사업의 수가 많았음.
  - 사업비용은 사업 수와 전반적으로 비례하지만 동·남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중앙 및 서아프리카 지역보다 사업 수가 40여 건 적었지만, 사업비용은 2억 4,000만 달러가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표 3-12〉 지역별 IFAD 지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3~2015년	2016~2019년	2020년	1978~2020년
<b>중앙 및 서아프리카</b>				
총비용	587.1	1,193.5	164.6	4,463.6
프로젝트/프로그램 수	18	25	6	257
<b>동·남아프리카</b>				
총비용	602.4	1,183	167.4	4,703.9
프로젝트/프로그램 수	15	26	3	216
<b>아시아·태평양</b>				
총비용	989.7	1,454.8	365.8	7,269.9
프로젝트/프로그램 수	26	28	6	290
<b>남미·카리브해</b>				
총비용	220.1	287.4	23.5	2,466.1
프로젝트/프로그램 수	12	16	1	184
<b>극동, 북아프리카, 유럽</b>				
총비용	349.2	661.7	61.6	3,273.7
프로젝트/프로그램 수	15	21	2	201
IFAD financing	2,748.4	4,780.4	782.9	22,177.3
총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	86	116	18	1,142

자료: IFAD(202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19년에는 농업 및 천연자원 관리가 전체 사업 분야의 33%를 차지하여 가장 활발히 수행되었으며, 시장 및 관련 사회기반시설 18%, 금융서비스 및 기타(자연재해, 에너지, 지식관리, 모니터링 등)가 각 13%의 비중을 보임. 소규모 기업지원,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지

역사회 주도사업과 인간 개발 분야는 각 10% 이하로 타 분야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3〉 사업 부문별 포트폴리오 분포(2019년 기준)

분야(부문)	비율
농업 및 천연자원 관리	33%
시장 및 관련 사회기반시설	18%
농촌 금융서비스	13%
기타(자연재해 완화, 에너지 생산, 지식관리, M&E 등)	13%
소규모 기업지원	9%
정책 및 제도적 지원	8%
지역사회 주도사업 및 인간 개발	7%
총계	100%

자료: IFAD(2020a)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4가지 중점분야(Pillars) 중 국가프로그램 제공 분야는 2019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2021년에 7,75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됨.

- 기관의 기능·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지원(Pillar 2)이 29%를 차지하며 국가프로그램 제공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Pillar 2와 3은 Pillar 1과 4와 비교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3-14〉 2018/2019년 Pillar 별 정기예산 현황

Pillar	2019년		2020년		2021년	
	백만 달러	%	백만 달러	%	백만 달러	%
Pillar 1. 국가프로그램 제공	83.6	52	80.17	51	77.5	49
Pillar 2. 지식구축·보급 및 정책 참여	18.39	11	19.41	12	19.63	12
Pillar 3. 재정 능력 및 금융상품	14.43	9	15.54	10	16.74	11
Pillar 4. 기관의 기능·서비스 및 시스템	45.22	28	42.78	27	45.55	29
소계	161.6	100	157.9	100	159.41	100
차감액	-3.43					
총계	158.2	100	157.9	100	159.41	100

자료: IFAD(2020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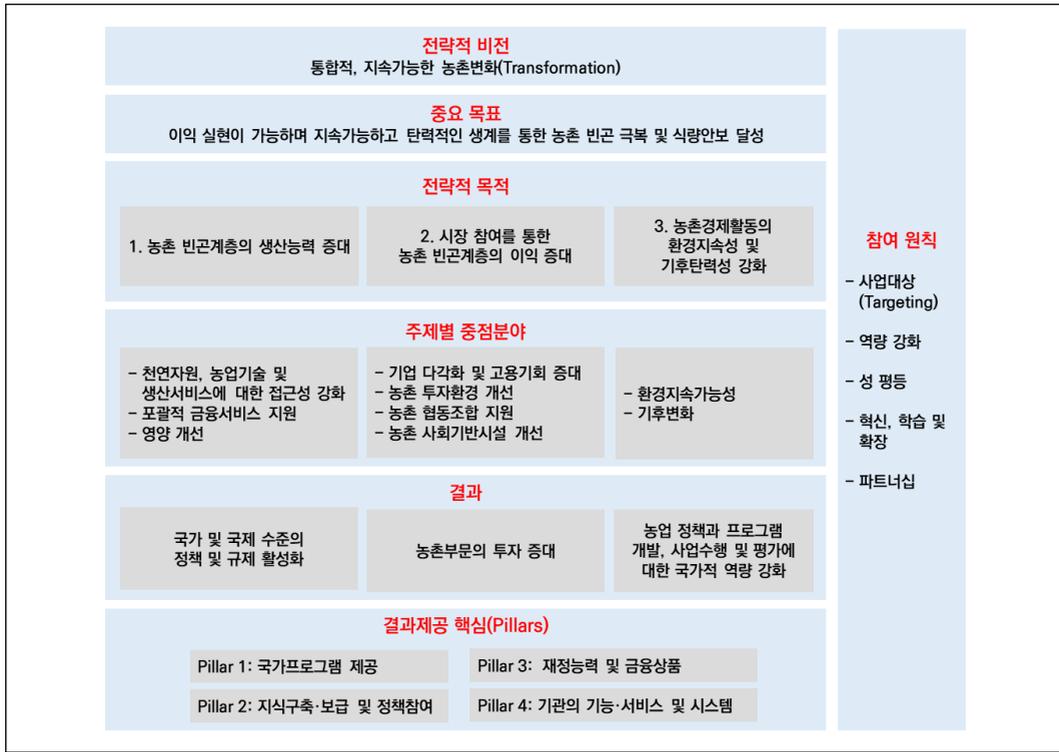
## 4.2. 전략 및 중점분야

○ IFAD의 다섯 번째 전략 프레임워크(2016~2025)는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으로의 변화를 전략적 비전으로 함. (IFAD 2016). IFAD의 다섯 번째 전략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은 <그림 3-9>와 같음.

○ IFAD는 최대한 많은 빈곤층이 혜택을 받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기술 및 자산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사업 대상) 파트너와 협력하여 “성 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빈곤 및 생계 문제 분석, 사업 대상 집단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함.
- (역량강화) IFAD는 이전부터 농민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를 중요시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역량강화로는 협동조합 활동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천연자원 및 생산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IFAD는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협동조합 및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 (성평등)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정책을 통해 농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의 노동 부담 경감, 의사결정 참여 강화 노력을 이어나갈 것임. 또한 여성이 자산 및 고용, 시장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사회 규범, 시스템 등)을 해결해나가고자 함.
- (혁신, 학습 및 확장) SDGs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IFAD는 △지역사회, 농민조직, 재정자원과 기술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직 등과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 구축,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농촌개발 모델을 개발, 다수에게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파트너십) IFAD 재원 및 지식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고 빈곤 감소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임.

〈그림 3-9〉 IFAD 전략 프레임워크 2016~2025



자료: IFAD(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첫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 빈곤 계층의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3가지 중점분야를 다음과 같이 선정함.

- (천연자원, 농업 기술 및 생산서비스 접근성 향상) 빈곤 계층은 농작물 생산을 위한 공동 자원 접근이 제한적임. 이에 토지, 수자원 등에 대한 안전한 거주권 및 사용권리를 증진하여 투자 및 농업생산성 증대를 달성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임. 또한 농업 기술의 개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을 위한 연구 및 농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
- (포괄적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서비스의 제한적 접근은 농촌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임. 장기적으로는 지방 금융시스템 관리정책 환경개선, 중기적으로는 신용조회, 모바일 결제 플랫폼, 송금 결제 시스템 등 인적·제도적 역량구축,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서비스 공급자 지원 등을 진행할 것임.

- (영양 개선) 농업 주류화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하고 영양가 높은 작물의 가용성, 접근성, 가격 및 소비를 체계적으로 촉진하고자 함. 또한 영양 지식 교육을 시행하고, 연중 건강한 식단을 위해 농산물 선택, 저장, 판매 등의 가치사슬 체계 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임. 아울러 영양성과의 중요한 요소인 식품생산, 마케팅, 가정에서의 여성의 주요 역할을 고려한 사업도 진행할 계획임.
  
-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 확보는 농촌 빈곤 감소에 중요함. 위험 및 거래비용 절감, 가치사슬 확대, 소농의 시장참여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시장에 참가하는 농촌 빈곤 계층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두 번째 전략목표로 설정함.
  - (다각적인 농촌기업 및 고용 기회 확대) 농업과 비농업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농업종사자뿐만 아니라 농업 기자재 제공자, 가공처리자, 운송 및 장비 유지보수 종사자 간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가치사슬 비즈니스 모델 개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체 금융 및 비금융상품의 개발 등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농촌 투자환경 개선) 소농 및 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 간 농촌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
  - (농업 협동조합 지원) 농업 협동조합을 통해 농업 투입물, 기술 및 서비스 조달, 거래비용 절감, 부가가치 향상 등 가치사슬 단계에서 비대칭적인 관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농촌 사회기반시설 개선) 열악한 농촌 인프라 개선으로 투자 및 생산 증진, 운송 및 거래비용 절감, 생산자의 경쟁력 향상, 농촌-도시 간 시너지 효과 창출 등 농촌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함.
  
-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환경 지속성 및 기후 탄력성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과 관행의 개발 및 적용을 지원함. 또한 기후 모형화, 지리정보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기후 위험 및 취약성의 정확한 분석 수행, 개별 국가가 직면한 환경 위험성에 대한 인식 및 분석 능력 향상, 저 투입 영농 지원, 자연재해 보험 등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해나가고자 함.

○ 전략적 목적 달성 및 중점분야의 수행을 통해 △국가 및 국제 수준의 정책 및 규제 활성화, △농촌 부문의 투자 증대, △농업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사업수행 및 평가에 대한 국가적 역량 강화를 달성하고자 함. 이를 위해 △국가프로그램 제공, △지식구축·보급 및 정책 참여, △재정 능력 및 금융상품, △기관의 기능·서비스 및 시스템이라는 4가지 핵심(Pillars)을 제시함.

① 국가프로그램 제공: IFAD는 사업 설계 간소화 및 수행 준비성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사무소 확대(향후 국가사무소가 IFAD 총자금의 80% 이상 사용), 사업운영의 탈중앙화, 적극적인 모니터링에 더욱 중점을 둘 예정임. 더불어 수원국 전략 및 필요에 맞춘 국가 맞춤형 접근방식을 채택함.

② 지식구축·보급 및 정책 참여: 사업 운영 결과 및 교훈의 심층적 분석, 체계적인 데이터 생산 및 증거수집, 파트너의 지식 활용 및 지식공유 등을 포함함. 또한 정책 입안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지식과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함.

③ 재정 능력 및 금융상품: 수원국의 사회적, 경제적 기준을 고려한 자금조달 모델 개발, 재무 관리 능력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혁신적이고 효율적 임무 수행을 지원함. 프로젝트나 기업에 직접 투자(직접 지분투자)하여 민간부문 투자의 촉매 임무를 수행하고 소농과 중소기업이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하고자 함.

④ 기관의 기능·서비스 및 시스템: 회원국의 거버넌스 활동, 파트너십, 인적자원 관리, 정보통신 기술, 내부 자문 서비스, 시설 및 행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IFAD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4.3. MOPAN 평가 검토

○ 2017~2018년도에 수행된 MOPAN 평가에 따르면 IFAD는 △전략적 프레임워크에 지원되는 명확한 권한과 기금의 방향 및 접근방식의 세부적 제시, △회원국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협의 과정, △투명하고 명확한 재원 활용방식(성과·결과 기반의 배분 시스템), △결과에 대한 제도적 집중 등에 강점이 있음.

- 개선사항으로는 △자금의 지출 속도, △제도적 역량분석, △Targeting 전략(특정 수혜집단에 대한 명확성 결여), △모니터링과 평가, △성과 데이터와 사업수행 교훈의 통합 등이 지적됨(MOPAN 2019c).

○ 전략 관리(strategic management), 운영 관리(operational management), 파트너십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결과(results)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satisfactory) 이상의 평가를 받았음.

- (전략 관리) IFAD의 강점으로 제시된 재정 프레임워크, 비전 및 전략과 범 분야 이슈 등은 '매우 만족'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거버넌스와 인권 분야에서 영역에서 '불만족'으로 지적됨.
- (운영 관리) 재원의 활용방식이 투명하고 정확한 것과 비례하여 모든 운영 관리 영역에서 '만족' 이상의 평가를 받았음.
- (파트너십 관리) 파트너 간 조정, 정보 공유, 책무, 공동 평가, 지식 배포 등에서 '매우 만족'을 받았으며 이외 세부 영역에서도 모두 '만족'으로 나타나 파트너십 관리 또한 운영 관리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것으로 보임.
- (성과관리) 개선사항으로 모니터링과 평가, 성과 데이터 등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분야 모두 '만족'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평가의 질, 사후 조치 시스템, 근거 기반의 수혜 대상 등은 '매우 만족'으로 조사됨.
- (평가 결과) 다른 영역과 달리 결과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지만, 범 분야 이슈, 지속가능성 등 대부분 영역에서 '만족'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효과적인 결과 전달 영역에서만 '불만족'을 받음.

〈표 3-15〉 2017~2018년 IFAD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결과

평가영역			점수(4점 만점)
Strategic management	1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framework	3.65
	2	Structures for cross-cutting issues	2.46
Operational management	3	Relevance and agility	3.05
	4	Cost effective and transparent systems	3.50

평가영역			점수(4점 만점)
Relationship management	5	Relevance and agility in partnership	3.00
	6	Partnerships and resources	3.34
Performance management	7	Results focus	3.24
	8	Evidence-based planning	3.60
Results	9	Achievement of results	2.64
	10	Relevance to partners	2.83
	11	Result delivered efficiently	2.00
	12	Sustainability of results	2.50

자료: MOPAN(2019c)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 '0.00-1: Highly unsatisfactory', '1.01-2: Unsatisfactory', '2.01-3: Satisfactory', '3.01-4: Highly Satisfactory'

## 5. 세계은행(WB)

### 5.1. 기구 정보 및 현황

○ 1944년 설립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세계 2차대전으로 황폐해진 국가의 재건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었으나, 댐, 전력망, 관개시설,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강조되면서 은행의 역할은 개발지원으로 변화했음. 1956년 국제금융공사(IFC), 1960년 국제개발협회(IDA)가 설립되었고 이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의 출범으로 오늘날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 세계은행 그룹의 업무는 빈곤퇴치, 경제성장 지원, 지속 가능한 이익 보장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지원함. 세계은행 그룹의 성공에는 효과적인 제도, 건전한 정책, 평가와 지식공유를 위한 지속적인 학습,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등이 작용하고 있음.

○ 세계은행 그룹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가장 큰 자금 제공자 중 하나로서 빈곤 감소, 인류 번영,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다음의 5개 기관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윤경수 2016).

〈표 3-16〉 World Bank 5개 기관별 주요 현황

기관	IBRD	IDA	IFC	MIGA	ICSID
설립목적	전후 복구 및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지원	저소득 개발도상국 양허성 자금지원	개도국 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對 개도국 투자 시 비상업적 위험 보증	국제투자 분쟁 조정·중재로 국제 민간 투자 촉진
기관특징	개발자금 지원기관		보증 기관		조정·중재기관
설립연도	1945	1960	1956	1988	1966
회원국 수	189	173	184	181	153
조직	5개 기관의 대표(총재)는 동일인이며, IFC와 MIGA는 총재 이하 부총재 겸 CEO 존재				

자료: 윤경수(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세계은행 내 IBRD, IDA, IFC 총 3개 기관이 개발도상국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요 자금 지원 원칙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함.

- IBRD는 경제적 목적만 고려하기 때문에 자금지원 조건으로 차입자의 상환능력, 사업의 효율성 평가를 원칙으로 함. IDA는 민간부문을 통해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나 IBRD의 용자 대상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IFC는 민간영역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 IBRD는 개발도상국 정부에 용자를 중심으로 보증 및 자문을 제공하며, IDA는 무이자·저리 용자, 무상공여를, IFC는 민간 기업 대상 대출, 지분투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표 3-17〉 World Bank 자금 지원기관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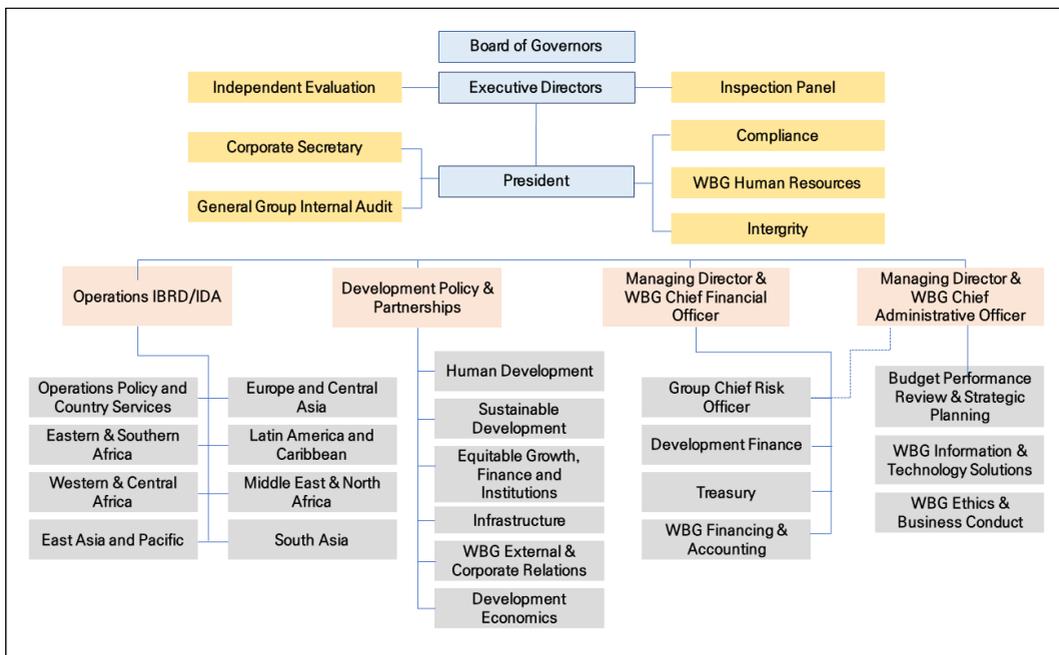
구분	IBRD	IDA	IFC
역할	개발도상국 및 신용도가 높은 저소득국가 자금지원	저소득 개발도상국 양허성 자금지원	개발도상국 민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자금지원 원칙	경제적 목적을 전제로 차입자 상환능력 요구	저개발지역 회원국 발전, 민간·IBRD 지원 대상 배제	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 시 경영권 미취득
사업 분야	용자·보증, 자문	무이자·저리 용자, 무상공여, 외채경감	대출, 지분투자, 보증, Loan Mobilization, 자산관리회사

자료: 윤경수(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세계은행은 총회(Board of Governors),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총재(President) 아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부서는 개발 정책 및 파트너십, 재정 및 행정 등으로 나뉨.

- 사업수행 부서는 동·남아프리카, 중앙 및 서아프리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유럽 및 중앙아시아,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지역별로 구성됨.
- 2015년 기준 가장 많은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대륙은 북미 대륙으로 약 3,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럽 및 중앙아시아 3,050여 명, 남아시아 2,390여 명, 아프리카 2,230여 명, 동아시아 및 태평양 2,200여 명,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2,100여 명, 중동 및 북아프리카 837명임.

〈그림 3-10〉 World Bank 조직도



자료: World Bank 홈페이지(<https://www.worldbank.org/en/home>, 검색일: 2022.01.31.).

○ 세계은행은 전 분야를 망라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기관별 역할, 사업 분야, 전략이 매우 다양하므로 세계은행의 5개 기관 중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용자를 지원하거나 무상공여를 수행하는 IDA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IDA는 최대 규모의 최빈국 원조기구 중 하나로 사무소 중 39개국은 아프리카에 소재하고 있음. 기초 사회복지에 대한 원조 기금 중 단일재원 규모는 IDA가 가장 큼.

- IDA는 위기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위기 대응 창구 등을 통해 주요한 파트너로서 임무를 수행함. 이 외 자문을 수행하거나, 부채 및 채무상환 부담 관리능력이 없는 빈곤국들에 대한 구제사업을 조율하고 국가의 채무 건전성을 확립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
- 주로 회원국 정부의 출연금으로 자금을 충당하며, 원조국들은 3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여 IDA 재원에 대한 정책들을 검토함.

○ IDA를 통한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가들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1인당 국민 총소득(GNI)으로 규정되는 상대적 빈곤 수준이 1,205달러 이하(2020년 기준)여야 함(World Bank 2021a).
- 신용도가 낮아 국가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양허성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함.
- IDB는 국가별 실적등급을 부여하여 기금을 지원함. 실적등급은 지원국의 경제성장 및 빈곤 감축 정책의 시행 여부와 포트폴리오(인구 및 1인당 소득 포함) 실적을 합산함.
- IDA가 지원 중인 국가는 2021년 기준 아프리카 39개국, 동아시아 14개국, 남아시아 6개국, 유럽 및 중앙아시아 4개국, 남미 및 카리브해 8개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 3개국으로 총 74개국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IDA의 약정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약 36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7년 대비 2021년 동아프리카·남아프리카, 중앙 및 서아프리카 남아시아 약정액은 2배 이상 증대하였으나 동아시아·태평양,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감소하였음.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프리카·남아프리카가 약 448억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그다음으로 중앙 및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순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미·카리브해는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8〉 IDA의 지역별 약정액(Commitments)

단위: 백만 달러

지역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동아프리카·남아프리카	5,612	8,067	7,512	9,581	14,089	44,861
중앙 및 서아프리카	5,067	7,344	6,675	9,514	10,955	39,555
동아시아·태평양	2,703	631	1,272	2,500	1,115	8,221
유럽 및 중앙아시아	739	957	583	1,497	1,315	5,091
남미·카리브해	503	428	430	978	769	3,108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11	430	611	203	658	2,913
남아시아	3,828	6,153	4,849	6,092	7,127	28,049
총계	19,463	24,010	21,932	30,365	36,028	131,798

자료: World Bank(2021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 분야를 제외한 농림수산, 교육, 에너지, 금융 등 전 분야의 약정 규모는 증가하였으며, 5년 동안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분야는 공공행정, 사회 보호, 에너지, 교육, 보건 등임.

- 2017년 대비 2021년의 공공행정 및 사회 보호 지원금액은 약 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그 외 교육, 에너지, ICT 분야는 약 2배가량 규모가 확대되었음. 교통 분야 지원액은 2017년~2018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보다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2021년 지원액은 2017년보다 낮은 수준임.

〈표 3-19〉 IDA의 분야별 약정액(Commitments)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농림수산	2,025	1,442	2,796	1,978	2,912	11,153
교육	1,773	2,836	1,767	4,037	3,585	13,998
에너지	1,891	4,028	3,468	3,218	3,801	16,406
금융	1,227	546	870	534	1,910	5,087
보건	1,246	2,062	1,736	4,295	3,840	13,179
산업/무역	1,541	1,991	1,963	2,712	2,174	10,381
ICT	519	419	779	1,202	1,151	4,070
공공행정	1,954	5,013	3,109	4,252	5,572	19,900
사회 보호	1,913	2,112	2,163	4,185	6,352	16,725
교통	3,271	1,455	1,709	2,132	2,367	10,934
수자원/위생/폐기물	2,102	2,105	1,572	1,820	2,365	9,964
총계	19,463	24,010	21,932	30,365	36,028	131,798

자료: World Bank(2021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21년에는 인간 개발 및 젠더,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를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 사회개발 및 보호 주제 순으로 나타남.

〈표 3-20〉 IDA의 주제별 약정액(Commitments)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경제 정책	1,791	468	1,073	1,192	1,972
환경/천연자원 관리	5,766	9,491	9,680	11,141	13,019
금융	1,507	1,642	2,418	2,680	6,161
인간 개발 및 젠더	6,471	7,509	7,860	15,974	26,353
민간부문 개발	4,837	4,240	5,145	7,232	8,523
공공부문 관리	1,936	3,827	2,513	4,158	4,698
사회개발 및 보호	2,544	2,980	2,722	4,738	8,114
도시 및 지역개발	8,352	8,654	7,866	8,899	11,647

자료: World Bank(2021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 주제별 약정액은 여러 주제에 걸쳐 중복으로 적용되어 수치를 합산하지는 않음.

## 5.2. 전략 및 중점분야

- IDA는 경제성장, 평등,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초등교육, 기초 의료서비스, 식수 및 위생, 농업, 사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개발 활동을 지원함. 2014년부터 2017년까지 IDA는 기후변화, 취약국 및 분쟁 피해국, 양성평등 및 포용적 성장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함.
- 2022년부터 2025년(IDA 20)까지 3년간 수행될 정책 프레임워크는 지속성과 혁신의 균형을 목표로 함. 목표는 IDA 19의 주제인 △기후변화 △취약성, 갈등, 폭력, △성평등, △일자리와 경제혁신에 추가로 인적자본을 다섯 번째 주제로 지정함(World Bank 2021c).
- IDA 20의 전략 프레임워크는 “위기에서 더 나은 회복: 친환경, 탄력적, 포괄적 미래를 향하여”라는 세계은행 그룹의 접근방식에 부합함.

- 특히 IDA 20은 △극빈층과 취약계층의 증점적 지원, △위기 대비 및 미래의 충격에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한 복원력 구축,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강화 등 친환경 개발의 가속화, △불평등 해소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함.

○ IDA 20은 △인적자원, △기후변화, △성평등 개발, △취약성, △갈등 및 폭력(FCV), △일자리와 경제혁신(JET)을 중요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위기 준비, 거버넌스, 부채, 기술을 4가지 범 분야 이슈로 제시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 이행방안은 다음과 같음.

〈표 3-21〉 IDA 주제별 정책 이행방안

인적자원	
해당 범 분야 이슈	정책 이행
위기 준비	코로나 백신 보급 및 대유행 대비 강화: 광범위한 의료 시스템 강화
-	영양과 여성의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생육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모성 및 생식건강, 영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	핵심적 사회서비스 제공 시스템 지원: 도시의 비공식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청소년의 학교 복귀, 학습손실에 대한 회복 가속화, 어린이 예방접종을 지원
위기 준비와 기술	적응형 사회 보호 확대 및 충격에 대한 탄력성 구축: 디지털 기술 사용을 포함한 적응형 사회 보호 시스템을 구축
-	학습 빈곤과 생산성 문제 해결: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 능력을 측정하고, 문해 능력교육 등을 지원
기술	장애인 핵심 서비스 접근성 확대: 포용적 사회를 위해 교육, 보건, 사회, 물, 도시 분야 등의 사업을 통해 보편적 접근 원칙을 구현
위기 준비	미래 유행병 예방 및 대비: 동물성 질병을 예방하고자 원 헬스 접근법 지원
거버넌스	인적자본을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공공재정 강화
기후변화	
-	기후 공동이익 증대: 기후 공동이익은 '23-'25년까지 평균 35% 증가하고 적응에 대한 비율은 최소 50% 증대
-	파리협약과의 연계: 모든 업무를 파리협약과 연계하여 최소 30개 국가에서 기후 및 개발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천을 위해 최소 40개국에 지원 제공
-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주요 시스템 전환: 최소 40개국에 하나의 핵심 전환 분야(에너지, 농업, 식량, 물/토지, 도시, 교통, 제조업)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기후 적응 및 완화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도록 지원
-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최소 20개국에 저탄소 에너지 부문 개발전략 수립 및 최소 15개국 대상 배터리 저장소 개발 촉진 등
-	친환경 금융 확대: 국가가 기후 위험성을 관리하고 저탄소 경제로 위해 민간자본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강화: 자연 기반 솔루션 구현 지원 등
-	담수, 연안 및 해양생태계 관리 강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포함하여 해양생태계의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위기 준비	위기 대비 및 대응 능력 향상: 제도 및 계획 프레임워크 또는 인프라 강화로 위기 대비 및 대응 능력 강화, 기후 데이터와 정보서비스의 개선 지원 등

성평등 개발	
-	생산적인 경제통합 확대: 사회 보호, 일자리, 농업, 도시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 내 여성을 위한 경제적 구성요소(생산자 협동조합, 디지털 금융, 기업가정신 지원 등)를 통합
-	육아 확대: 합리적이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여성을 위한 중·고숙련 고용 기회 지원: 인프라 운영(교통, 에너지, 수자원)의 최소 35%는 중고등 여성을 위한 고용 기회 창출 활동을 포함
기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개발, 통합금융, 농업 분야에서 여성의 디지털 기술 접근과 사용을 확대하여 성 격차를 해소
-	토지 권리 강화: 토지 행정, 재난 후 재건과 복원력 회복, 여성의 토지 권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 방안이 도시개발에 포함되도록 함
-	성 기반 폭력(GBV) 예방 및 대응 지원 확대: 성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보건 시스템에서의 GBV 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통합적인 교육기관의 한 부분으로 GBV 예방 및 대응 프로토콜을 구현
거버넌스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정책 및 예산 시행: 통합적이고 보다 평등한 재정 정책과 예산 시스템 구축
취약성, 갈등 및 폭력(FCV)	
-	맞춤형 FCV 전략 운영: 모든 국가에서 FCV 전략의 구현을 강화
-	난민 및 난민수용국가의 결과 레버리지: 최소 50% 이상의 국가가 난민 정책 검토 프레임워크를 통해 정책개혁을 이행
거버넌스	핵심 거버넌스 기관 강화: 효과적이고 뛰어난 공공서비스를 촉진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탄력성을 촉진하는 핵심 정부 기능을 수립하도록 지원
-	경계를 초월하는 요인 해결 및 위기로부터의 회복: 사헬, 차드 호수 등 지역적 이니셔티브를 구현하여 국경을 초월한 FCV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 대비 및 완화력을 강화
일자리와 경제혁신(JET)	
위기 준비	회복을 위한 탄력적 금융시스템 지원: 금융시스템의 탄력성, 통합성, 공고성을 강화
-	민간 투자 확대: IDA 20을 수행하는 동안 IFC 약정 제공 비율을 12~17%까지 향상, 중소기업 지원, 성평등, 기후 친화적 투자 등의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
거버넌스	인프라 투자 제공: 투명성, 책임성, 부패 등 기관 평가에서 3.0 이하의 점수를 받은 10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인프라 투자 개발지원
-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혁신: 더 나은 일자리 및 경제혁신 추진 가능성이 큰 분야 또는 여성 및 청년이 불균형적으로 일하는 국가의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자 지원
-	농업 생산성 향상, 가치사슬 및 식량 안보 증대: 성장 가능성이 큰 지속가능한 농업-비즈니스 가치사슬을 강화, 식량 안보 개선, 민간부문의 기회 장려 등
기술	광대역 서비스 확대: 인터넷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광대역 서비스 접근 및 사용 확대
기술	디지털 기술 채택 기업 포지셔닝: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는 민간부문의 회복과 변화를 지원
거버넌스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향상 및 기관역량 강화: 데이터 가용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및 역량구축, 통계 시스템 향상 등

자료: World Bank(2021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5.3. MOPAN 평가 검토

○ World Bank가 받은 가장 최근의 평가는 2015~2016년도임. 평가 결과 World Bank는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개발 데이터 및 자료를 제공하며, 수요 중심의 모델을 통한 국가 차원의 참여, 글로벌 환경 예측 및 적응 능력, 재무 건전성, 사회 및 환경보호 규정 준수, 위험관리, 거버넌스 및 내부 절차, 개발 결과에 대한 기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 중 하나로 평가함(MOPAN 2017).

- 갈등과 폭력, 취약성이 우선순위 의제로 떠오르는 상황을 반영하여 해당 의제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지식의 공유 및 사용에 대한 개선과 이를 위한 계획 및 예산 수립, 운영의 간소화, 결과와 성과 보고의 강화 등은 향후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함.

○ 전략 관리(strategic management), 운영 관리(operational management), 파트너십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결과(results)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satisfactory)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유일하게 ‘불만족’을 받은 영역은 결과 영역 내 시의성(Timelines)으로 나타남.

- 정성적 평가에서 전략 관리, 운영 관리, 파트너십 관리, 성과관리의 전 분야에서 ‘만족’ 이상의 평가를 받음.
- 결과: 정성적 평가에서 결과 영역에 대해 ‘매우 만족’을 받은 세부 영역은 없었지만, 시의성 부문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만족’을 받아 기관의 우수성을 시사함.

〈표 3-22〉 2015~2016년 World Bank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결과

평가영역			점수(4점 만점)
Strategic management	1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framework	3.75
	2	Structures for cross-cutting issues	2.98
Operational management	3	Relevance and agility	3.59
	4	Cost effective and transparent systems	3.51
Relationship management	5	Relevance and agility in partnership	3.60
	6	Partnerships and resources	3.31

평가영역			점수(4점 만점)
Performance management	7	Results focus	2.80
	8	Evidence-based planning	3.47
Results	9	Achievement of results	-
	10	Relevance to partners	-
	11	Result delivered efficiently	-
	12	Sustainability of results	-

자료: MOPAN(201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0.00-1: Highly unsatisfactory', '1.01-2: Unsatisfactory', '2.01-3: Satisfactory', '3.01-4: Highly Satisfactory'

## 6. 아시아개발은행(ADB)

### 6.1. 기구 정보 및 현황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지역 경제성장 및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음.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DB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Agreement Establishing the Asian Development Bank”에 명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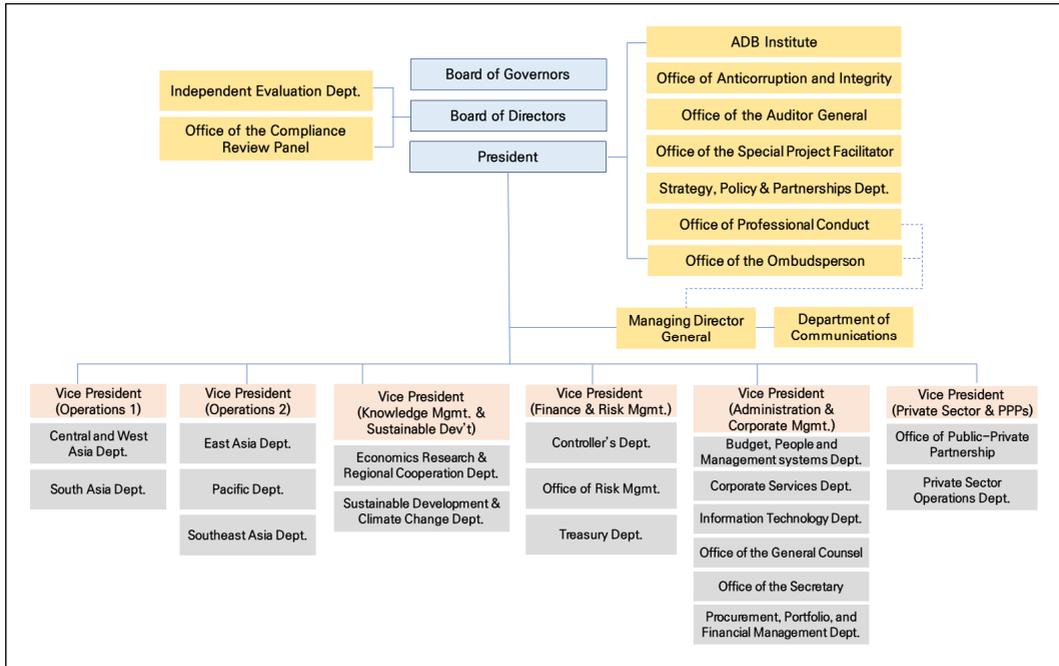
- ① 개발목적의 공공 및 민간자본의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② 개발자금의 활용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우선순위 선정 ③ 상호보완적인 경제 및 무역 확장을 촉진하고, 더 나은 자원 활용을 위해 회원국의 정책 및 계획 수립 ④ 사업 제안서 작성을 포함하여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준비, 자금조달 및 실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제공 ⑤ 개발자금의 투자와 관련된 국제연합, 민간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 투자와 원조의 기회에 관심을 유도 ⑥ 기타 필요 서비스 제공

○ ADB는 총회(Board of Governors),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총재(President) 아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부서는 지식 지원부서와 행정, 재정 등을 지원하는 부서 등으로 나뉘어 있음.

- 사업수행 부서는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 등 5개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며, 지식 지원부서로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부(SDCC)와 경제연구 및 지역통합부(ERCD)가 있음.

- 2020년 기준 전체 근무자 수는 3,646명으로 이중 국제직원 및 이사회 소속 인원은 1,317명으로 전체 인원의 36%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 64%인 2,329명은 국내 직원 990명 및 행정직원 1,339명으로 구성됨.

〈그림 3-11〉 ADB 조직도



자료: ADB 홈페이지(<https://www.adb.org/>, 검색일: 2022.01.10.).

○ ADB는 다자개발은행으로서 민간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사업비의 50%까지는 전쟁 또는 폭동과 같은 정치적 위험을 보증하여 운영함. 따라서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와의 관련성과 필요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ADB의 지원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금융 조달계획과 모델 구축이 요구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 ADB는 68개 회원국의 기부금 및 주식 할당에 따른 자기자본금과 특별준비금 또는 자본시장에 채권발행을 통한 금융 조달과 차관 공여, 투자를 통한 이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조달된 자금은 각종 차관 제공과 기술지원을 시행하는 데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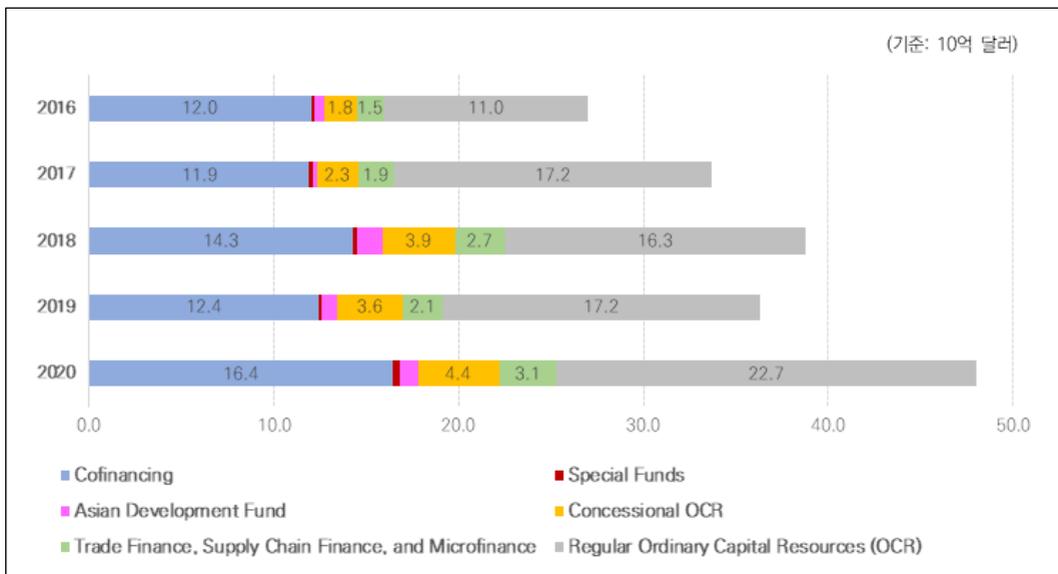
- ADB 자금지원은 차관(Loan) 제공, 무상공여(Grant),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등의 형태로 구성되며, 모든 자금은 ADB 본부가 직접 통제하고 집행함.

○ ADB의 주요 자원 구성은 다음과 같음.

- ① 일반자금(Ordinary Capital Resources, OCR): 국제 금융시장 조달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금으로 OCR 대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 및 국내 자본 시장에 채무증권을 발행함. ADB의 채무증권은 국제 신용 평가 기관으로부터 가장 높은 투자 등급을 받음.
  - OCR 대출은 어느 정도 경제발전 수준을 달성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양허성(Concessional) OCR은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제공됨.
- ② 특별기금(Special Funds): 아시아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 ADF), 기술지원 특별기금(Technical Assistance Special Fund), 일본특별기금(Japan Special Fund),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지역협력 통합기금(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Fund), 기후변화기금(Climate Change Fund), 아시아태평양재해 대응 기금(Asia Pacific Disaster Response Fund) 등이 있음.
  - 아시아개발기금(ADF)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ADB 기준에 미달하고 신용도가 제한적인 개발도상국을 위한 양허 금융 창구로 설립되었음. 하지만 2017년 ADF 차관 운영이 종료되고 OCR로 이관되면서 무상원조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 일본특별기금(JSF)은 1988년 일본과의 재정협약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주로 기술지원 운영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 재건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함.
- ③ 협조융자(Co-financing): 금융 파트너십은 ADB 회원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거나(sovareign), 민간 기업이 제안한 사업이 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거나 소액금융, 디지털 보건과 같이 지역적 관심 또는 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용됨(non-sovareign).

- Sovereign 협조용자는 ADB의 사업 결과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동원되며,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ADB의 양자 및 다자간 파트너로부터 공동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모든 ADB 프로젝트와 기술지원은 협조용자로 수행될 수 있으나, ADB의 사업 관여 정도, 조건, 특정 프로젝트 또는 주제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달라질 수 있음.
- Non sovereign 협조용자(또는 민간부문 금융)는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민간 금융시장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함.

〈그림 3-12〉 연도별 ADB 약정(Commitments)금액 추이



자료: ADB(202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16년 이후 ADB의 약정액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20년의 규모는 2016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음.

- 2020년 가장 많은 약정액을 지원하는 지역은 동남아시아이며 다음으로 남아시아, 중앙 및 서아시아 순으로 나타남. 투발루, 통가, 팔라우 등 도서국으로 이루어진 태평양 지역이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음.

〈표 3-23〉 지역별 약정(Commitments)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지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앙 및 서아시아	4,237	6,067	5,700	6,111	6,577
동아시아	2,022	2,810	3,162	2,663	2,893
태평양	266	740	369	461	1,150
남아시아	3,925	7,238	7,623	7,307	9,034
동남아시아	4,326	4,668	7,141	7,181	11,629
기타(Regional)	154	265	523	294	310
총액	14,930	21,788	24,518	24,017	31,594

자료: ADB(202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약정액의 분야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농업, 천연자원, 지역개발 분야와 교육 분야는 2016년부터 꾸준히 규모가 증대하였으나 2018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건과 공공부문 관리 분야는 2019년 이후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이 외 에너지, 금융, 산업 및 무역, 교통 등은 연도에 따라 증감 추세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4〉 분야별 ADB 약정액(Commitments) 사용현황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업, 천연자원, 지역개발	997	1,546	2,375	2,309	1,281
교육	631	723	1,643	1,138	1,066
에너지	3,010	6,230	5,095	2,660	4,292
금융	2,414	3,787	3,430	3,325	4,608
보건	231	219	524	644	3,512
산업 및 무역	1,279	1,261	1,899	1,592	2,221
ICT	26	73	62	579	32
다분야	3	4	5	3	12
공공부문 관리	1,792	1,293	2,307	2,985	9,561
교통	2,870	5,058	4,957	7,536	3,147
수자원 및 기타 도시 인프라/서비스	1,678	1,594	2,220	1,245	1,862
총액	14,930	21,788	24,518	24,017	31,594

자료: ADB(202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14년 ADB의 프로젝트 분류시스템(Project Classification System)에 따라 분야별 세부 분야가 명시됨(ADB 2014).

- 농업, 천연자원, 지역개발: 관개, 농촌지역 홍수 예방, 수자원 공급 서비스, 위생시설, 농촌폐기물 관리, 농업생산, 농공산업, 마케팅, 무역, 축산, 어업 및 임업 등
- 교육: 유치원,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 기술 직업교육훈련(TVET), 비정규교육, 교육 분야개발 등
- 에너지: 전통적 에너지 생산, 대규모 수력발전,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송배전,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개발 등
- 금융: 중앙은행 시스템, 주택 금융, 중소기업 금융 및 대출, 통합금융,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금융 등
- 보건: 모자보건, 영양, 보건 시스템 개발, 질병 관리 건강보험, 건강 개발 및 개혁 등
- ICT: ICT 사회기반시설, ICT 산업 지원, 전략, 정책 및 역량 개발
- 산업 및 무역: 중소기업 개발, 무역 및 서비스, 산업 및 무역 부문 개발 등
- 공공부문 관리: 공공행정, 공공지출 및 재정관리, 정부 소유기업 개혁, 사회 보호 프로그램 등
- 교통: 지방의 도로, 수상 운송, 및 철도 건설, 공항, 복합수송, 도시 대중교통 등
- 수자원 및 기타 도시 인프라/서비스: 도시 수자원 공급, 홍수 예방, 하수시설, (위험) 폐기물 관리, 주택, 빈민가 개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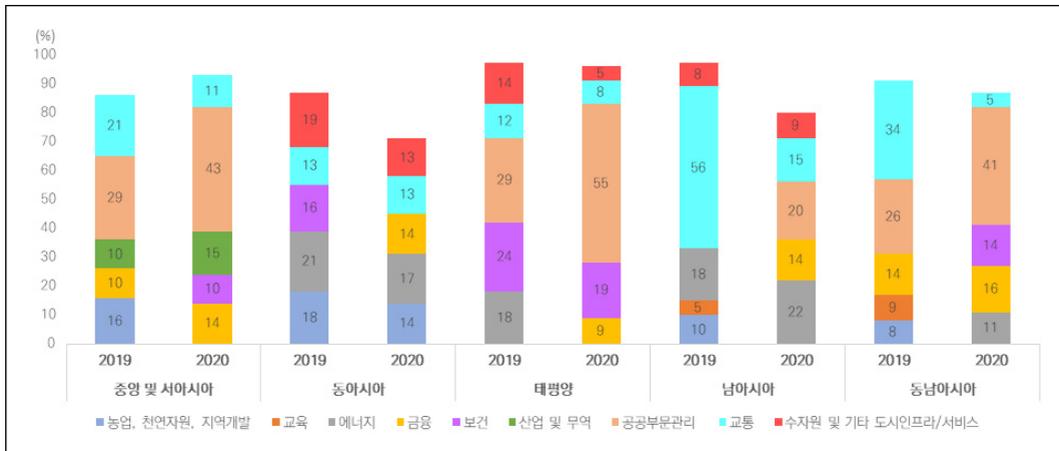
○ 2019/2020년 ADB 사업지역별 상위 사업 분야 및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공공부문 관리에 대한 사업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외 산업 및 무역, 에너지, 금융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앙 및 서아시아는 2019~2020년간 공공부문 관리의 비중이 14%P 증가하였으며, 2019년 대비 2020년의 산업 및 무역, 금융 분야의 사업은 4~5%P가량 확대되었음. 2019년에 16%를 차지하던 농업 분야 사업을 대신하여 2020년에는 보건사업을 수행함.
- 동아시아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농업, 에너지, 교통, 수자원 및 인프라/서비스 분

야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비중이 작았던 금융 분야가 전체 사업의 14%로 확대됨.

- 태평양의 5대 중점분야는 공공부문 관리를 제외하고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에너지 사업 비중의 감소를 대신해 금융 분야의 비중이 증가함.
-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2019년에 농업 및 교육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20년 들어 이들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고 각각 수자원과 에너지 분야의 비중이 늘어남. 남아시아는 2020년에는 교통 분야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공공부문 관리가 증가함.

〈그림 3-13〉 2019/2020년 지역별 상위 5개 사업 분야 및 비중



자료: ADB(2020, 2021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6.2. 전략 및 중점분야

○ ADB는 2018년 ‘전략 2030’을 발표하고 빈곤 극복을 넘어서 “통합적이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번영하는 아시아 및 태평양”을 구현하고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음. 더불어 ADB는 지식공급자, 협력조정자, 프로젝트 개발자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음.

○ 해당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7가지 전략과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권영중, 2019)

- ① 빈곤 해결과 불평등 감소: 인간 개발과 사회 통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 보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세부 전략으로 △인간 개발 및 사회포용 강조, △양질의 일자리 공급, △교육 및 훈련 개선, △건강증진 및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을 포함함.
- ② 성평등 가속화: 성평등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 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2030년까지 전체 사업의 75%는 성평등 제고 방안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 △성평등에 대한 지지 강화와 목표 설정, △여성의 경제적 권한 향상, △인간 발달 단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추구, △여성의 충분한 휴식 및 여가 확보(Reducing time poverty<sup>6)</sup>), △외부충격에 대한 여성의 탄력성 강화 등이 제시됨.
- ③ 기후변화 해결, 기후 및 재난에 대한 탄력성 구축, 환경의 지속가능성 향상: 2030년까지 전체 사업의 75%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하도록 함. 2019년부터 2030년까지 ADB의 자체 예산을 통해 기후 분야에 800억 달러를 투자하고자 함. 세부 전략으로는 △기후변화, 재난위험, 환경악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확대, △기후 운영 목표(Climate operations target) △저탄소 배출 가속화, △기후 및 재난복원력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 마련,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물-식품-에너지 보안에 관한 관심 증대를 포함함.
- ④ 살기 좋은 도시, 친환경적이고 경쟁력을 가진 도시, 기후 탄력적이며 통합적인 도시 건설: 도시 이동 및 건강, 성평등,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 기후 탄력적, 통합적인 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솔루션 제공, △도시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도시 계획 강화, △기후 복원력 및 재난 관리 강화 등의 세부 전략을 마련함.

---

<sup>6)</sup> Time poverty는 노동시장과 가사에서 여성이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음을 의미함. 10세~14세 사이의 소녀들은 같은 나이대의 소년들보다 50% 많은 시간을 집안일에 사용하며, 성년이 된 이후에도 무급노동에 남성들보다 하루 평균 2~3.4시간을 더 소비함(Elizabeth Hyde et al. 2020, Time poverty: Obstacle to women's human rights,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⑤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시장 접근성, 농업생산과 식품 안전, 비농업 부문의 소득증대, 첨단기술의 활용, 스마트 영농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시장 접근성 및 농업 가치사슬 간 연계성 향상, △농업생산성과 식량안보 증대, △식품 안전 강화를 세부 전략으로 제시함.
- ⑥ 거버넌스 및 제도적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향상과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충격을 회복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세부 전략을 △공공부문 관리 개혁과 재정안정, △서비스 제공 강화, △역량 및 질적 정책적 표준(기준) 강화 등으로 제시함.
- ⑦ 지역협력 및 통합 장려: 지역 간 연결성을 향상해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후변화, 오염, 에너지, 물, 전염병 등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의 완화를 위해 협력을 지원함. 이에 따른 세부 전략으로 △연결성 및 경쟁력 강화, △지역적 공공재 장려,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소지역(subregional) 이니셔티브 강화 등이 있음.

○ ADB는 앞서 설명한 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한 사업 운영계획을 2019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사업의 운영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음(ADB, 2019).

〈표 3-25〉 “전략 2030”과 운영계획

운영계획	전략 2030에 대한 기여			
	번영	통합	탄력성	지속가능성
1. 빈곤 해결과 불평등 감소	인적자원 및 양질의 일자리	중소기업지원, 통합적 비즈니스 및 금융	사회적 보호	평생 건강 평생 교육
2. 성평등 가속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time poverty 감소	교육, 보건, 사회 보호, 의사결정에서의 성평등	위기 대응 및 준비를 위한 지원	성평등 가속화를 위한 국가역량
3. 기후 및 환경 지속가능성	자연자원, 저탄소, 탄력적 개발	빈곤층이나 지역사회 취약성 감소	사회적, 생태학적, 재정적, 물리적 측면의 통합	SDGs 내 최적의 이익 극대화
4. 살기 좋은 도시	도시경쟁력 향상	평등한 기회	위험감소를 위한 적응	효율적 자원 사용 및 재사용
5. 농촌개발 및 식량 안보	농업 가치사슬 향상	시장 연결성 강화	기후 탄력적 농업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 자원 사용
6. 거버넌스 및 제도적 역량 강화	더 나은 공공재정 및 자본시장	효과적 서비스 전달	외부충격 대응을 위한 충분한 재정	통합을 위한 강력한 국가 시스템
7. 지역협력 및 통합	무역거래량 및 총액 증가	연결성 및 다양한 기회	표준 마련을 위한 집단행동	공공재 관리

자료: ADB(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6.3. MOPAN 평가 검토

- ADB는 2017~2018년도에 MOPAN의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 결과, 자금조달과 지식 결합 능력에 기초한 전략과 권한 간의 명확성, 강력한 협의 절차, 건전한 재무 상태와 대출의 유연성, 결과 기반 관리 시스템, 변화와 개선에 대한 노력 등이 주요 강점으로 분석되었음. 반면, 젠더 주류화를 촉진하는 선구적인 기관이지만 일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 지출과 이행 속도, 지속가능성, 명확한 평가 정책의 부재 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음(MOPAN, 2019d).
  
- 전략 관리(strategic management), 운영 관리(operational management), 파트너십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결과(results) 중 결과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대부분 '만족' 이상으로 평가됨.
  - 전략 관리: 비전, 성평등, 거버넌스, 재정 프레임워크 등 전략 관리 내 세부 영역에서 모두 '매우 만족' 등급을 받아 매우 우수한 전략 관리 역량을 가진 것으로 보임.
  - 운영 관리: 비용 효과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영역에서 모두 '매우 만족'으로 나타났으며, 연관성 및 민첩성 영역 내 성과 중심의 인력관리,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매우 만족'으로 평가됨.
  - 파트너십 관리: 전 영역에서 '만족' 이상을 받았으며, 파트너 간 조정, 정보 공유, 공동 평가, 위험관리, 범 분야 이슈를 포함한 설계는 '매우 만족'
  - 성과관리: 근거에 기반한 설계 부문에서 '불만족'으로 평가된 영역을 제외하고, 전 영역에서 '만족' 이상으로 평가됨.
  - 결과: 위의 네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결과 달성과 파트너 간의 연관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효율적인 결과 전달 영역에서 '불만족'을 받음.

〈표 3-26〉 2017~2018년 ADB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결과

		평가영역	점수(4점 만점)
Strategic management	1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framework	3.41
	2	Structures for cross-cutting issues	3.48
Operational management	3	Relevance and agility	3.21
	4	Cost effective and transparent systems	3.81
Relationship management	5	Relevance and agility in partnership	3.15
	6	Partnerships and resources	3.31
Performance management	7	Results focus	3.38
	8	Evidence-based planning	3.01
Results	9	Achievement of results	2.83
	10	Relevance to partners	2.83
	11	Result delivered efficiently	2.00
	12	Sustainability of results	2.17

자료: MOPAN(2019d)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 '0.00-1: Highly unsatisfactory', '1.01-2: Unsatisfactory', '2.01-3: Satisfactory', '3.01-4: Highly Satisfactory'

## 7.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 7.1. 기구 정보 및 현황

○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은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연구 활동 조정, 연구센터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 확대, 자금지원 안정화를 위해 2009년에 기구를 개혁함.

○ CGIAR은 과학과 혁신적 방안을 통해 다양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충분하고, 이용 가능한 식단을 제공하고 생계 향상과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하고 기후 탄력적인 식량, 토지, 물 시스템을 구축한 세계를 만들고자 함. 이를 위해 5가지 Impact Area를 지정하고 SDG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CGIAR, 2021a).

- ① 영양, 건강 및 식량안보: 현재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없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량 영양소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20억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기초 위생시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 식생활과 관련된 비전염성

질환(심혈관질환, 암, 당뇨병)이 모든 대륙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푸드시스템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음식 섭취로 인한 질병과 동물성 질병의 발생 사례를 1/3 감소시키고자 함.

- ② 빈곤 감소, 생계와 직업: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하루에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음. 식품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용 창출 분야이지만, 관련된 대부분 직업은 보수가 낮고 불안정하여 농업이 주된 생계 활동인 농촌지역에서 빈곤이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빈곤층의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③ 성평등, 청년과 사회 통합: 여성은 평균적으로 농업 노동력의 43%를 차지하지만, 그들에 대한 권리, 자원 및 서비스 접근성은 제한적임. 또한 세계 12억 청년의 85% 이상이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가에 살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취업이나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되는 실정임. 성별에 따른 격차를 좁히고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2억 6,700만 명의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④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농업 및 푸드시스템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는 이상고온,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농업과 식량 생산에 위협을 초래함. 2030년까지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연간 1 Gt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는 연간 5 Gt까지 감소시킴.
- ⑤ 환경 보전과 생물 다양성: 세계 토양의 1/3이 황폐해졌으며 농업으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손실되었음. 식량 생산 시 연간 2,500km<sup>3</sup> 미만으로 물을 소비하고, 탄소중립 산림벌채, 연간 10Tg의 인(Phosphorus) 활용방안 등을 적용하고 유전자은행을 통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함.

○ Common Board는 역량, 성별, 나이 및 지역 경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8명~10명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Executive Management Team(EMT)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 참석 및 성과평가를 위한 보고를 수행함. EMT는 Center Directors General에 적절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새로운 연구 양식 및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보장함.

〈그림 3-14〉 CGIAR 조직도



자료: 저자 작성.

○ CGIAR 연구센터는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으로 혁신적인 농업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9,000여 명 이상의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행정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정한 정책과 연구 방향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CGIAR 산하 15개 연구소 및 센터는 각자 독립적인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2021년 One CGIAR로 전환하며 15개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이 통합·조정되었음.

〈표 3-27〉 CGIAR 연구센터 및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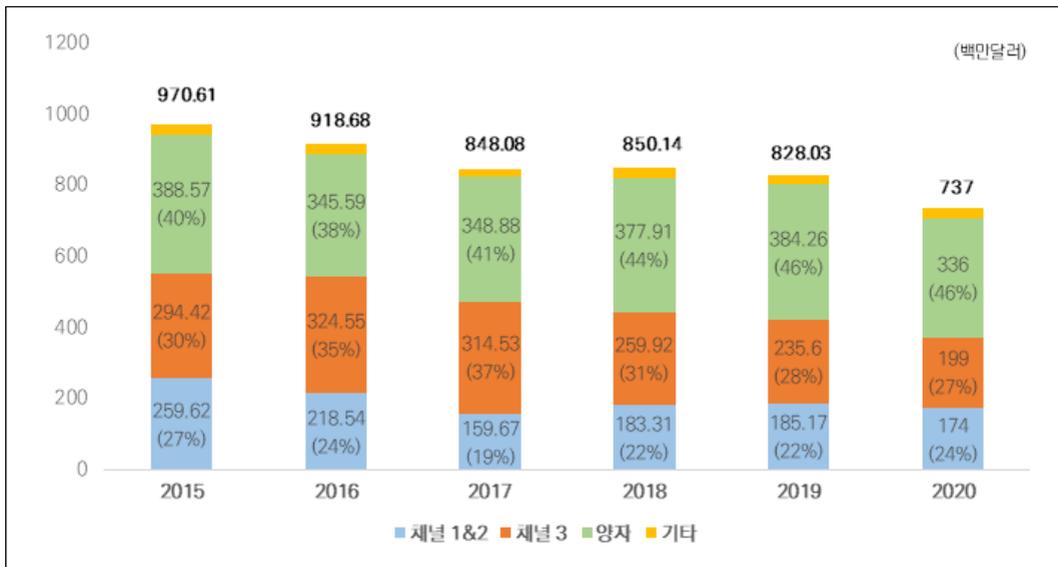
	영문명	한글명	소재지	직원 수
1	Africa Rice Center (AfricaRice)	아프리카 쌀 센터	코트디부아르	171
2	International Potato Center (CIP)	국제감자센터	페루	216
3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ILRI)	국제축산연구소	케냐	909
4	International Center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he Dry Areas (ICARDA)	국제건조지역 농업연구센터	레바논	179
5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	국제미작연구소	필리핀	1,176
6	International Center for Tropical Agriculture (CIAT)	국제열대농업센터	이탈리아	530
7	International Crops Research Institute for the Semi-Arid Tropics (ICRISAT)	국제 반건조 열대작물 연구소	인도	210
8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IWMI)	국제물관리연구소	스리랑카	551
9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CIFOR)	국제임업 연구센터	인도네시아	1,080
10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국제식량정책연구소	미국	559
11	World Agroforestry Centre (ICRAF)	세계 혼농임업 센터	케냐	1,445
12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er (CIMMYT)	국제 옥수수 밀 연구소	멕시코	674
13	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 (IITA)	국제열대농업센터	나이지리아	948
14	WorldFish	세계어류센터	말레이시아	242
15	Biodiversity International	생물다양성 연구소	이탈리아	449

자료: 저자 작성.

○ CGIAR의 자금은 크게 Trust Fund와 Bilateral Funding으로 구분됨.

- Trust Fund는 세 가지 채널로 구성되며 채널1(Window 1: Portfolio Investments)은 전체 CGIAR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으로 분담금의 성격임. 채널 2(Window 2: Program Investments)는 특정 프로그램, 플랫폼, 이니셔티브에 개별적으로 배분하는 자금이며, 채널 3(Window 3: Project Investments)은 공여국이 개별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의 성격을 띠.
- 2020년 CGIAR은 7억 3,6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채널 1과 채널 2를 합친 비중은 24%, 채널 3은 27%, 양자 지원은 46%, 기타 수입은 3%를 차지하였음.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CGIAR의 전체 예산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원 형식 별로 살펴보면 양자 사업지원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2015년 대비 2020년의 Trust Fund 비중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5〉 CGIAR 채널별 예산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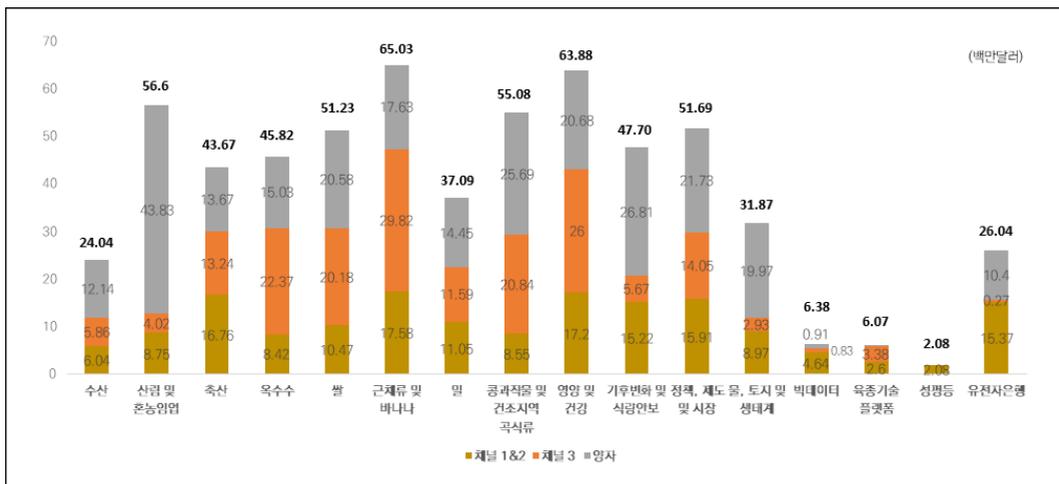
자료: CGIAR Financial Report Dashboards<sup>7)</sup>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7) CGIAR Financial Report Dashboards 홈페이지(<https://www.cgiar.org/food-security-impact/finance-reports/dashboard/>, 검색일: 2022.02.10.).

○ 2020년 프로그램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뿌리채소류 및 바나나(Roots, Tubers and Bananas) 프로그램이 6,5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영양 및 건강(Agriculture for nutrition and health), 산림 및 혼농임업(Forests, Trees and Agroforestry), 정책, 제도 및 시장(Policies, Institution and Markets) 순으로 나타남.

- 채널 1과 2를 활용한 프로그램 중 뿌리채소류 및 바나나, 영양 및 건강, 축산, 정책·제도 및 시장, 유전자은행 등의 예산 비중이 컸으며, 뿌리채소류 및 바나나, 영양 및 건강, 옥수수, 쌀 프로그램은 채널 3을 통해 예산의 20% 이상을 마련하였음.
- 산림 및 혼농임업 프로그램의 경우 양자 지원을 통해 43%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대부분 프로그램은 10~20% 내외로 양자 지원을 받고 있음.

〈그림 3-16〉 CGIAR 프로그램별 예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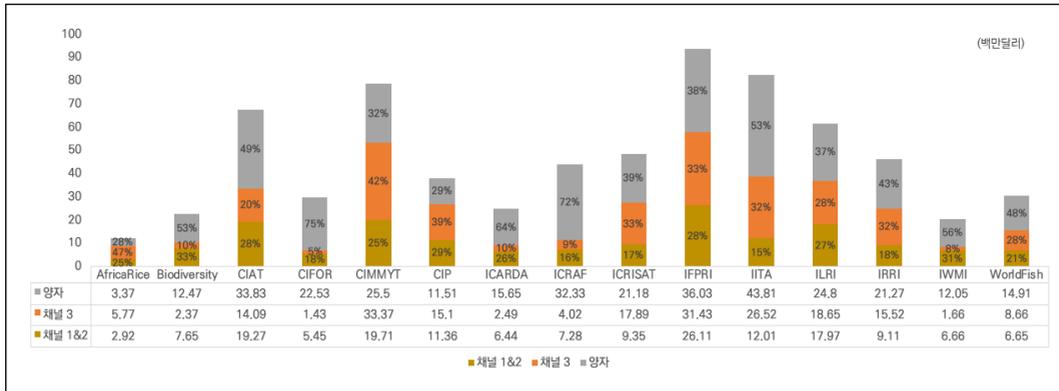
자료: CGIAR Financial Report Dashboard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각 연구센터 자체 예산(Center Fund)은 포함하지 않음.

○ 2020년 연구기관별 예산구성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상위 3개 기관은 IFPRI, IITA, CIMMYT이며 채널 1&2 예산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채널3의 경우 CIMMYT가 40% 이상, IFPRI, IITA, IRRI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자 지원의 비중은 CIFOR과 ICRAF가 각각 75%, 72%로 가장 높았으며 Biodiversity, IITA, IWMI가 50% 이상으로 절반 이상을 양자 지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그림 3-17〉 CGIAR 연구기관별 예산 비중



자료: CGIAR Financial Report Dashboard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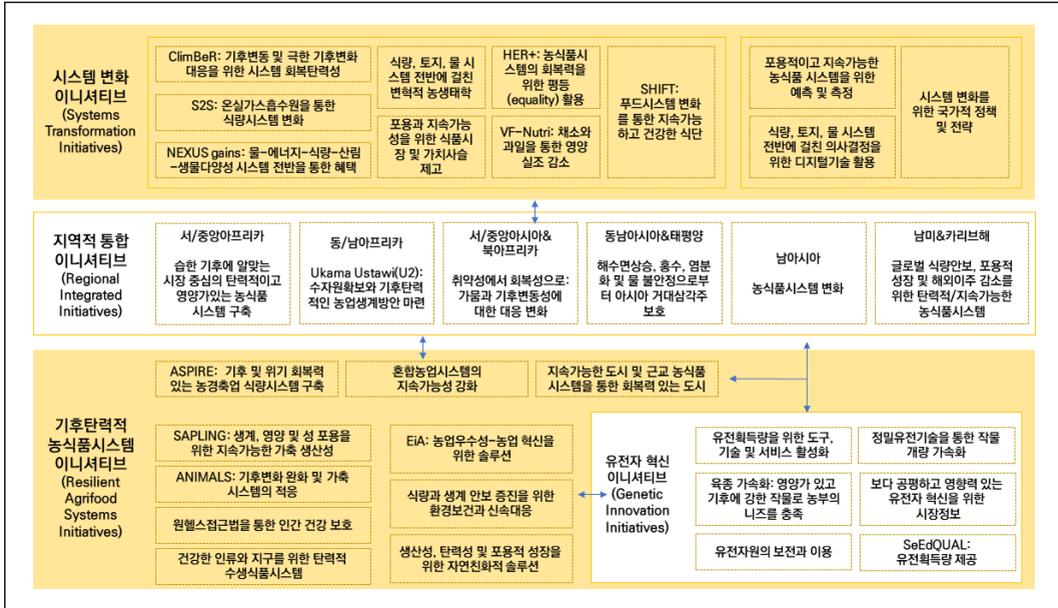
주: 기타 자원(others)은 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 비율은 100%가 아닐 수 있음.

## 7.2. 전략 및 중점분야

○ CGIAR은 기구의 강점인 유전학 및 농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식량, 토지, 물 시스템 분야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Action Area (시스템 변화 이니셔티브, 기후 탄력적 농식품 이니셔티브, 지역적 통합 이니셔티브)를 구상하였음.

- Action Area는 One CGIAR로의 전환 과정에서 향후 집중해야 할 분야를 제시하고 있음.

〈그림 3-18〉 CGIAR 전략 프레임워크



자료: CGIAR(2021b)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CGIAR은 시스템 변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식량, 토지, 물에 대한 다 부문 정책 및 전략을 6개 대륙 50개국에 실시하며 기술혁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함.

- ClimBeR: 2024년까지 기후 탄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변동성과 극한 기후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후 안보에 대한 지식, 혁신 및 제도 등이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실질적인 과제에 반영하여 2,000만 농가에 사업효과를 전달하고자 함.
- S2S: 식품 시스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흡수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회 기술혁신과 사업모델, 정책과 온실가스 완화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소비자 수요, 생태계 보전, 효율적 공급망, 식량 손실 및 폐기물 감축이 기후 행동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원함.
- NEXUS gain: 생물다양성, 산림, 물, 에너지, 토지, 생태계의 통합관리를 활성화하여 하천 횡단구역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민간부문 행위자와의 통합된 생태계를 통해 물 생산성 개선을 위한 혁신적 접근방식을 개발하고,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
- 변혁적 농생태학: 생태학적 농업 접근법이 식품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환경에 대

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생산자-소비자 간 연결성 개선, 식품 시스템 행위자 간의 포괄적인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함. 다양한 기술, 사회·경제·정책적 경로를 통해 소규모 농업인과 기타 농식품 시스템 행위자를 위한 농업 생태학적 혁신을 달성하고자 함.

- 식품시장 및 가치사슬 제고: 포괄적인 부가가치 공유, 대규모 보상형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 식품 가치사슬에 따른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유통 관행 채택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행태와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HER+: 농업고도화시스템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과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수행을 목표로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 강화, 기술 결합을 통한 생계 보안 및 더 나은 기술 적용, 대규모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한 복원력 구축,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및 공공투자를 지원함.
- VF-Nutri: 채소재배 및 종자 시스템, 마케팅, 공공 조달, 소비자 인식 및 식품 환경 등 전 범위에 걸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저소득계층이 더 많은 채소를 소비하여 영양 실조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SHIFT: 생계 및 소득향상, 성평등 및 사회적 포괄성을 개선하면서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식단 소비를 지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식품 시스템 마련, 의사결정을 이끌 수 있는 전환 정책과 혁신방안 창출, 역량 강화, 측정기준 및 도구 개발을 목표로 함.
- 농식품 시스템을 위한 예측 및 측정: 식량, 토지 및 물 시스템 자료 확보를 위해 엄격한 분석 및 의사결정자 간의 긴밀한 연계를 목표로 함. 국가 정부, 지역 정부 및 참여 기관과 적절한 측정기준, 학제 간 분석 도구 개발, 결과공유 등을 수행할 계획임.
- 디지털 기술 활용: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적시성 있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가공하도록 함으로써 포용적 농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식수체계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디지털 기술은 정보의 제약과 불평등을 해결하여 정책 입안자, 생산자, 소비자, 기업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통찰력을 제공하여 천연자원 관리를 개선할 수 있음.
- 국가 정책 및 전략: 국가 차원에서 식량, 토지, 물 시스템의 변화에 투자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정책개혁을 지원하고자 함.

- 기후 탄력적 농식품 시스템 이니셔티브는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전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의 가용성 증대, 인간 건강에 대한 위협 감소, 탄소발자국 개선, 소농의 기후 탄력성 증대, 사회적 불평등 감소를 위해 추진되었음. 해당 이니셔티브는 3개의 농작물 이니셔티브, 4개의 가축과 수산 식품 이니셔티브, 3개의 농업 시스템 이니셔티브로 이루어졌으며 10개의 이니셔티브를 유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농작물 이니셔티브는 △농업 우수성-농업혁신을 위한 솔루션(EiA) △ 식량과 생계 안보 증진을 위한 환경보건과 신속 대응 △ 생산성, 탄력성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연 친화적 솔루션으로 구성됨.
  - EiA: 2030년까지 소농, 여성, 청년이 안정적으로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량, 영양 안보, 농가소득, 수자원 사용, 토양 상태, 기후 탄력성에 대해 측정 가능한 영향 (Measurable impact)을 강조함.
  - 생태계 건강과 신속 대응: 식량안보와 생계 보호를 위해 기후변화에 직면한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생태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핵심 목적은 지역 및 글로벌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충 및 질병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생태계 건강 위협을 파악, 예측 및 관리하고자 분석 틀을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함.
  - 자연 친화적 솔루션: 생물 다양성 관리, 토양 개선, 물 관리 등 농업 생태학적 방안으로 식량 수요에 맞는 생산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농업생산으로 인한 환경악화의 원인을 해결하고 생산성 및 생태계 복원력을 높여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4개의 가축·수산 식품 이니셔티브는 △생계, 영양 및 성 포용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가축 생산성(SAPLING), △기후변화 완화 및 가축 시스템의 적용(ANIMALS), △ 원 헬스접근법을 통한 인간 건강 보호, △건강한 인류와 지구를 위한 탄력적 수생 식품 시스템으로 구성됨.
  - SAPLING: 기존 및 신규 수요 주도 건강, 유전학, 사료 및 시장 시스템 혁신을 위한 경로를 개발하여 생산성과 가치사슬 경쟁력 격차를 줄임. 안전한 농식품을 소비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식 촉진, 잠재 가능성이 큰 가치사슬 분야 지원, 혁신적인 패키지(기술, 시장구조, 정책 등) 구성 등을 지원함.

- ANIMALS: 생산자, 공급자, 소비자 등에게 유익한 지원방안 강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을 발굴함. 탄소발자국 경감, 민간 축산기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 유도, 여성이나 청년층의 사업 기회 확대, 기후정보 제공, 보험 및 신용서비스에 접근성 개선을 달성하고자 함.
- 원 헬스접근법: 인수공통감염병 연구를 통해 식품 안전과 항생제 저항성 문제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다루고자 함.
- 수생 식품 시스템: 재생 가능한 수생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4년까지 내륙 담수 시스템(저수지, 하천 등)과 연안 양식장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수생 식품 생산량의 30%를 공급하고자 함. 청년층의 고용과 더불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10% 증가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임.

○ 3개의 농업 시스템 이니셔티브는 △ASPIRE, △혼합농업 시스템 지속가능성 강화, △회복력 있는 도시로 구성됨.

- ASPIRE: 기후변화 등의 위기에 대응하여 농식품 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면서 수자원이 중요한 건조 토양 조건에서 농식품 시스템이 생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둬.
- 혼합농업 시스템 지속가능성 강화: 인구증가에 대응하여 식량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함. 이는 현재 및 미래 혼합농업 시스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더욱더 생산적이고 공평한 생계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5천만 가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며,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자 함.
- 회복력 있는 도시: 농식품 시스템 강화를 통해 빠르게 확장하는 도시의 복원력을 높이고자 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기술을 통해 공공부문 계획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및 적응 전략을 공동개발 및 보급하여 ① 채소, 가축 및 수산물의 지속가능성 강화, ② 공정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시장 시스템, ③ 식품생산, 마케팅 및 소비환경과 인간 건강 개선, ④ 식품 환경개선, 소비자 선택 및 여성의 역량 강화, ⑤ 농식품 부문의 성장을 위한 포괄적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함.

- 유전자 혁신 이니셔티브는 △유전획득량을 위한 도구, 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 △유전획득량 증대를 위한 육종연구 가속화, △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 △정밀유전 기술을 통한 작물 개량 가속화, △더욱 공평하고 영향력 있는 유전자 혁신을 위한 시장정보 제공, △개선된 품종을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제공하여 유전획득량 증대(SeEdQUAL)를 목표로 함.
  
- CGIAR은 기후변화, 농업 및 식량안보 연구프로그램(CCAFS)을 통해 기후 스마트농업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함. CCAFS는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기후 스마트 미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들과 ‘Two Degree Initiative(2DI)’를 결성하였으며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1,0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50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여 변화이론을 적용한 6개의 주제를 선정하였음.
  - 6개의 주제로는 ①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 구축, ② 기후 행동을 위한 재원을 1억 달러 마련하여 소규모 농가의 지속 가능한 금융연구 및 사업수행, ③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그룹(여성, 청년, 소규모 농가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수행, ④ 위험관리, 소득 및 노동 기회 증대를 위해 적절한 기후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⑤정책 및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및 사업수행, ⑥ 저탄소 가치사슬의 주류화를 선정함.
  
- CGIAR은 2DI 이니셔티브를 통해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을 정립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를 위한 시장 강화, 식량안보, 적응 및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Rice Agri-Food System(RAFS)-One CGIAR Investment Advisory Groups (IAGs)은 새로운 One CGIAR의 지역통합 이니셔티브를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2021년 2월에 6개 지역에 걸쳐 식품, 육상 및 물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음. 지역통합 이니셔티브와 5가지 Impact Area와의 연계성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함.

〈표 3-28〉 CGIAR 도전과제 및 지역별 연계성

2DI 지역별 도전과제	영양, 건강 및 식량안보	빈곤 감소, 생계와 직업	성평등, 청년과 사회 통합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환경보전과 생물 다양성
남아프리카 건조지역: 기후 탄력성 및 물로부터 안전한 생계	낮음	높음	높음	높음	중간
남미: 저탄소 육류 및 유제품 생산환경	중간	중간	낮음	중간	높음
해수면 상승, 홍수, 염분화로부터 아시아 거대삼각주 보호	중간	중간	높음	높음	중간
사헬지역: 기후 탄력적 푸드시스템	높음	중간	높음	중간	중간
중앙, 열대 안데스 및 중앙아메리카: 기후 탄력적 농가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소말리아 반도	높음	중간	높음	중간	높음
중동 및 북아프리카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서아프리카: 원 헬스	높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블루경제: 기후 탄력적 어업 및 양식업	중간	중간	높음	높음	중간

자료: Jarvis et al. (202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역별 도전과제를 대륙별로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앙아시아/서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 가뭄과 기후변동성에 중점을 둔 지역통합 이니셔티브 개발
- 서/중앙아프리카: 숲 기반과 뿌리작물의 혼합 시스템 집중. 사헬 지대의 경우 agro-pastoral dry system을 고려할 수 있음.
- 동/남아프리카: 건조지역을 중심으로 옥수수 혼합 시스템과 목축 시스템에 중점을 둠.
- 아시아: 홍수와 염화 현상에 초점을 맞춰 지역통합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mixed upland intensive system의 관련 정도를 파악함.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농업 기술, 정보 및 금융 접근성 제공, 가축 기반 농업 시스템과 산림과 농업 분야의 토지이용에 대한 변화를 조사하여 탄소 저감에 기여

### 7.3. MOPAN 평가 검토

○ MOPAN은 2019년 CGIAR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함. 시스템의 다양성과 유연성, 전략 및 결과 프레임워크, 사업계획 및 재정 계획을 하나의 CGIAR로 통합할 수 있

는 잠재력, 성과 및 결과에 대한 시스템, 효과적인 프로그램 및 플랫폼 등을 강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달리 의사결정과 제도 변화는 빠르지 않아 유연성 및 다양성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거버넌스와 조직 구조, 일관적이지 못한 인적 및 기타자원 관리, 파트너십과 역량 개발에 대한 전략적 위치 부족, 성평등 노력 등 또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음(MOPAN, 2020).

○ 전략 관리(strategic management), 운영 관리(operational management), 파트너십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결과(results) 영역에서 ‘만족’ 또는 ‘불만족’ 평가를 받았음.

- 전략 관리: 인권 영역은 ‘매우 불만족’, 거버넌스, 성평등, 조직 구조는 ‘불만족’ 이외 비전, 재정 프레임워크, 환경 등의 분야는 ‘만족’으로 평가됨.
- 운영 관리: 의사결정, 결과 기반의 예산, 성과 중심의 인적 관리, 자원 조달 등의 세부 영역에서 ‘만족’ 등급을 받음.
- 파트너십 관리: 대부분 영역에서 ‘만족’으로 나타났으나 역량분석, 범 분야 이슈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설계 영역에서는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됨.
- 성과관리: 평가의 기능, 평가범위 및 질, 증거에 기반한 설계, 사후관리 등의 세부 영역에서 모두 ‘매우 불만족’이라는 점수를 획득하여 5개의 영역 중에서는 성과관리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 결과: 대체로 ‘만족’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에 관한 결과는 ‘매우 만족’으로 조사됨. 성평등 결과, 수혜 대상, 지속 가능한 역량 영역에서는 ‘불만족’으로 평가됨.

〈표 3-29〉 2019 CGIAR 다자기구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결과

평가영역			점수(4점 만점)
Strategic management	1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framework	2.81
	2	Structures for cross-cutting issues	2.13
Operational management	3	Relevance and agility	2.59
	4	Cost effective and transparent systems	3.07

평가영역			점수(4점 만점)
Relationship management	5	Relevance and agility in partnership	2.62
	6	Partnerships and resources	2.92
Performance management	7	Results focus	2.35
	8	Evidence-based planning	1.14
Results	9	Achievement of results	3.00
	10	Relevance to partners	2.67
	11	Result delivered efficiently	3.00
	12	Sustainability of results	2.67

자료: MOPAN(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0.00-1.50: Highly unsatisfactory', '1.51-2.50: Unsatisfactory', '2.51-3.50: Satisfactory', '3.51-4.00: Highly Satisfactory'로 2018년까지 수행된 평가척도 구간과 다소 상이함.

## 8. 요약

○ 앞서 살펴본 7개 국제기구의 목표, 전략 방향, 중점 추진 분야 등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아시아개발은행 등 농업 분야의 전문기구가 아닌 기구는 농업 분야와 연관성 있는 전략 및 중점 추진 분야 위주로 정리하였음.

〈표 3-30〉 다자기구별 주요 현황 및 특징 요약

구분	설립목적	전략목표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	주요 지원 지역
FAO	농업과 식량이 인류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아, 식량 불안정 및 영양실조 근절</li> <li>• 식량 생산 증대, 농촌개발,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li> <li>•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나은 생산(녹색 혁신, 해양 식품 시스템, 원 헬스, 공평한 자원 접근성, 디지털 농업)</li> <li>• 더 나은 영양(건강한 식단, 취약계층의 영양, 안전 식품, 식량 손실 감소, 투명한 시장)</li> <li>• 더 나은 삶(성평등 및 여성 역량, 포용적 농촌, 도시 식량 시스템, 식량 위기 대응, 기후 탄력적 식품 시스템)</li> </ul>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근동 순
WFP	기아 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구호(자연재해, 분쟁 등에 식량원조)</li> <li>• 재건사업(식량 생산 및 생활 여건 개선)</li> <li>• 개발사업(건강관리, 교육 및 기술 습득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지원</li> <li>• 학교급식</li> <li>• 자산 구축, 취로</li> <li>• 소농 시장 활동</li> <li>• 기후변화</li> <li>• 영양실조 감소</li> </ul>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남미 순

구분	설립목적	전략목표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	주요 지원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사업(긴급구호나 재건사업의 보조역할로 식량 지원 인프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 및 디지털</li> </ul>	
IFAD	빈곤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빈곤 계층의 생산능력 증대</li> <li>• 농촌 빈곤 계층의 시장참여를 통한 이익 증대</li> <li>• 농촌경제 활동의 환경 지속성 및 기후 탄력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접근성 강화(자원, 기술, 생산 등)</li> <li>• 포괄적 금융서비스</li> <li>• 영양</li> <li>• 고용 기회</li> <li>• 농촌투자환경</li> <li>• 농업 협동조합</li> <li>• 농촌 사회기반시설</li> <li>• 환경 지속가능성</li> <li>• 기후변화</li> </ul>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순
UNDP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적 변화(친환경, 통합적, 디지털)</li> <li>•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역량 강화, 사회통합, 인간 개발)</li> <li>• 탄력성 강화(위기, 갈등, 자연재해, 기후 및 사회경제적 대응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 및 불평등 해소(농가소득 향상)</li> <li>• 평화/공정/포용적 사회를 위한 거버넌스(농촌개발)</li> <li>• 위기 예방과 탄력성 강화(생태 활성화)</li> <li>• 친환경적이고 풍부한 에너지</li> <li>• 성평등</li> </ul>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태평양 순
WB (IDA)	국가 재건 및 개발지원 (양허성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빈과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 지원</li> <li>• 위기 대비 및 미래 충격 완화를 위한 복원력 구축</li> <li>•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등 친환경 개발</li> <li>• 불평등 해소 및 인적자본 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자원(보건, 영양, 교육 사회서비스)</li> <li>•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생물 다양성, 기후회복력)</li> <li>• 성평등 개발(여성 역량, 일자리, 성폭력, 토지 권리)</li> <li>• 취약성, 갈등 및 폭력(난민, 정부 역량 등)</li> <li>• 일자리와 경제혁신(민간 투자, 일자리, 경제혁신, 농업생산성, 가치사슬 강화)</li> </ul>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남미, 중동 순
ADB	아시아지역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영</li> <li>• 통합</li> <li>• 탄력성</li> <li>• 지속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 해결과 불평등 감소</li> <li>• 성평등 가속화</li> <li>• 기후 및 환경 지속가능성(저탄소, 생태학적 접근)</li> <li>• 살기 좋은 도시</li> <li>•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농업 가치사슬, 기후 대응 농업)</li> <li>• 거버넌스 및 제도적 역량 강화</li> <li>• 지역협력 및 통합</li> </ul>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서아시아 순
CGIAR	글로벌 농업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 건강 및 식량안보</li> <li>• 빈곤 감소, 생계 및 직업</li> <li>• 성평등, 청년과 사회 통합</li> <li>•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li> <li>• 환경, 생물 다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변화 이니셔티브(기후회복력, 온실 가스 감축, 식품 사슬 향상,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농생태학, 건강한 식단, 디지털 등)</li> <li>• 기후 탄력적 농식품 이니셔티브(지속 가능 가축 생산, 기후변화완화, 수생 식품, 농업 혁신, 환경, 자연 친화적 솔루션, 유전자 이니셔티브 등)</li> </ul>	

자료: 저자 작성.

# 4

## 농업 관련 다자기구별 개발협력 사업의 수행 적합성 검토

### 1. 농업 분야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수행 적합성 분석 방향

- 다자 개발협력 사업 중 다자성양자는 공여국이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형태임.
  - 따라서 공여국은 다자성양자로 개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 목적 및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에 따라 어떠한 기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본 장에서는 농식품부의 효과적 다자성양자 사업추진을 위해 직접 양자와의 차별성, 보완 및 연계를 고려한 중점협력 분야, 기구별 전문성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수행 적합성을 분석하고자 함.
  
- 먼저, 공여국이 다자성양자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개발협력 사업에서 공여국이 수원국과 직접 협력하는 것보다 국제기구가 동일한 사업을 수행했을 때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 이에 농업 부문의 다양한 분야 중, 어떠한 사업 분야에서 다자성양자를 활용해야 하

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즉, 다자성양자와 직접 양자와의 차별성이 확보되어야 함. 직접 양자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대적으로 공여국의 전문성이 낮고, 물리적 여건으로 사업의 모니터링 및 관리가 힘든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 한편, 직접 양자와의 연계 및 보완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조건 없는 차별화보다는 공여국과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협력했을 때, 더 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도 있음. 또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공여국과 국제기구 각각의 전문성과 경험 공유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중점협력 분야의 검토는 위에서 기술한 원조의 필요성, 직접 양자와의 차별성, 보완성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농업 ODA 프로그램 중 국제기구와의 협력 시, 적합한 분야 및 그 시사점을 도출함.

○ 다음으로는 어떠한 기구와의 협력이 공여국이 원하는 성과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는 다양한 국제기구의 기능과 역할, 중점 추진 분야 등에 정보를 바탕으로 기구별 전문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기구별 전문성 분석을 통해 지원사업의 유형별로 사업수행에 가장 적합한 기구를 선별하는 것은 개발효과성 및 효율성의 제고로 이어질 것임.

○ 이러한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분야 및 유형별 구분과 선정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유엔 푸드시스템 전환 (UN Food Systems Transformation)'의 5대 실천 분야(Action Area)와 그에 따른 이행계획(initiatives)을 적용하였음.

- 우리나라 농업 ODA의 다양한 분야 중 국제기구와 협력이 적합한 분야를 유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과 비교·검토하여 협력 가능성이 큰 이행계획을 선정하였음.
- 또한 나아가 이행계획의 협력 가능성과 국제기구의 사업수행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구별 사업수행 적합성 분석을 하였음.
- 따라서 농업 ODA 중점 추진 분야, 국제기구의 전문성, 유엔 푸드시스템 전환 계획 등 세 가지 측면의 검토를 통해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인 SDGs의 달성을 도모하

고자 하였음. 즉, UN 푸드시스템 실천계획의 이행을 통해 농식품부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이 SDGs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함.

## 2. 농업 ODA의 다자 개발협력 중점 추진 분야검토<sup>8)</sup>

○ 차원규 외(2020)는 농식품부 다자성양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중점협력 분야를 제시하였음.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한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다자성양자는 다자(순수다자) 또는 직접 양자 특성의 반영 정도에 따라 ‘다자원조의 양자화(Multilateralization of bilateral aid)’와 ‘양자원조의 다자화(Multilateralization of bilateral aid)’로 구분할 수 있음.
- ‘다자원조의 양자화’는 공여국이 특정 다자기구에 신탁기금을 설립하거나 국제기구의 특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이는 기금 설립 및 재원 사용에 공여국의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수행과정에서 비교적 기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발적 분담금과 유사함.
- ‘양자원조의 다자화’는 통상 공여국 개발협력 기관의 현지사무소(가령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전문성 있는 국제기구에 위탁 및 위임하는 형태임. 이 경우 국제기구는 공여국이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자율성이 제한됨.
- 농식품부는 별도 해외사무소가 부재하므로 사업 대상 국가의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개입하거나, 기획재정부나 외교부와 같이 대규모 기금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국제기구(본부 및 지역사무소)에서 제안한 협력사업이 농식품부의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방향성,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부합할 때 다자성양자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함.

<sup>8)</sup> 본 절은 차원규 외(2020)를 요약함.

- 이러한 방식에서 제안사업과 우리 정책 및 전략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국제기구 전문성에 따라 어떠한 농업 분야, 지역, 주제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1. 농업 ODA 추진 분야

- ‘한국형 ODA 모델’은 2012년 국무총리실 한국형 ODA TF 주관 아래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간사를 맡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관들과 대학 등 총 18개 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해 수립됨(주동주 외 2012).
  - 경제, 사회, 거버넌스, 미래 이슈 등 4개 영역 11개 분야에서 159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음. 한국형 ODA 개념은 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준수하는 가치 지향성 ② 한국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개발사업 콘텐츠 ③ 수원국의 여건을 존중하는 추진전략과 형태 등으로 구성됨.
  - 이에 따라 프로그램은 △(한국의 발전 경험) 한국의 발전 경험상 경험이 풍부하며 효과가 높았던 사업, △(비교우위) 한국의 독자적 우위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 △(ODA 수행역량) 관련 기관, 인적 역량이 충분하며 수원국 사업 수요가 있는 분야 등 3대 선정기준 아래 분야별로 선정되었음.
  - 경제 분야에 속한 농림업 분야는 선정 당시 “농어업 분야”로 구분되었으나,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해양·수산 분야 프로그램이 산림, 임업 분야 프로그램으로 교체되며 현재 농림업 분야로 변경됨.
- 농림업 분야 프로그램은 관개배수 시스템 등 농업생산 기반 구축부터 농촌종합개발, 농산물가공, 영농 기계화, 농업정책, 축산, 검역 등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원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까지 대부분의 농업 ODA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표 4-1〉 한국형 ODA 모델 중 농업 분야 프로그램 목록

번호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
1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11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예
2	농업생산기반 구축	12	농촌특화사업 개발
3	농촌종합개발	13	영농 기계화
4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 지도 지원 시스템	14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5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15	가축사육 및 관리
6	농산물가공	16	가축 질병 관리
7	농업 협동조합	17	농식품 안전·위생 관리
8	친환경농업	18	농축산물 검역
9	농지제도 및 관리	19	임산자원 개발
10	농업인력 육성	20	산림복화

자료: 이대섭 외(2015).

○ 차원규 외(2020)는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형 ODA 농업업 프로그램 중에서 개념이 중복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산림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하여 농업 ODA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농업생산 기반 구축) 관개·배수 시스템 구축, 농업용 저수·댐 건설, 경지정리, 농업용 도로포장 등 농업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 첨단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현장 지도, 농업인력 육성, 경제작물 보급 등
- (농촌종합개발) 마을회관 건립, 식수 개발, 전기 인입, 마을 안길 정비, 보건시설 건립 등 사업목표가 농촌의 주거 및 환경 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영농 기계화) 시설원예, 스마트팜, ICT 농업, 농기계 등 관련 기자재 지원사업
- (농산물가공) 생산 이후 단계에서 농산물 전처리 및 저장시설, 가공시설 등의 지원
- (농업 협동조합 육성) 작목반, 생산자그룹, 협동조합 등 농민의 조직화 지원
- (친환경농업) 유기농, 우수농산물 등의 재배 및 보급
- (농업정책) 농지제도, 농업보험, 농업정보 시스템 등 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기술협력, 컨설팅

- (농산물 유통체계) 농산물 생산 이후의 단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센터 건립 등 생산과 소비 연계 지원
- (농식품 안전) 식품위생 관리, 식생활 및 영양교육, 농산물 검역 등
- (축산) 사육 및 관리, 질병 관리 등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이 축산인 모든 경우를 포함

〈표 4-2〉 다자성양자 원조의 중점 추진 분야 선정을 위한 농업 ODA 분야

번호	분야	내용
1	농업생산 기반 구축	관개·배수 시스템 구축, 농업용 저수지·댐 건설 등
2	영농기술 교육 보급	농업 기술 개발, 현장 지도, 농업인력육성, 경제작물 보급 등
3	농촌종합개발	마을회관, 식수 개발, 농촌 도로, 농촌특화사업 개발 등
4	영농 기계화	시설원예, 스마트팜, ICT 농업, 농기계 및 기자재 지원 등
5	농산물가공	농산물 전처리 및 가공시설 구축 등
6	농업협동조합육성	작목반, 협동조합 등 농민조직 육성 지원
7	친환경농업	유기농, 우수농산물 등 재배 및 보급
8	농업정책	농지제도, 농업보험, GAP, 농업정보 시스템 등 정책 수립지원
9	농산물 유통체계	도매시장, 유통센터 등 생산과 소비의 연결 지원
10	축산	사육 및 관리, 질병 관리 등
11	농식품 안전	식품위생 관리, 식생활 및 영양교육, 검역 등

자료: 차원규 외(2020)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2.2.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 선정

○ 위에서 제시한 11가지 농업 ODA 추진 분야를 바탕으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특징을 고려한 4가지 기준을 선정하였음.

- 첫째, 원조의 필요성임. 해당 분야의 사업이 개도국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또한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임.
- 둘째, 국제기구의 전문성임. 농업 ODA 사업 중점 추진 분야 중 다자기구와 협력할 때 양자 원조보다 효과성 및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 즉 직접 양자협력과의 차별성 있는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임.

- 셋째, 직접 양자와의 연계 및 보완성임. 양자 원조보다 다자기구와 공동으로 협력할 때 효율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임.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임.
-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임. 공여국의 물리적 여건(지역사무소 부재)이 어렵거나 수원국과 거리가 멀어 사업관리가 어려운 경우 현지 내 위치한 다자기구를 통해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일수록 다자 개발협력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음.

〈표 4-3〉 다자성양자 원조의 중점협력 분야 설정을 위한 기준

기준	내용
원조 필요성	개도국 농업·농촌에 우선으로 필요한 유형의 원조인가?
국제기구의 전문성	공여국보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직접 양자와의 연계 및 보완성	공여국의 단독 지원보다 국제기구와 공동협력 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사업 수행과정이나 종료 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중요한가?

자료: 차원규, 허장 외(2020)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농업 ODA 중점 추진 분야 선정을 위해 계층화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기법과 TOPSIS(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an Ideal Solution) 기법을 활용한 전문가(농업 개발협력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을 시행, 위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함.

○ 그 결과,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농식품 안전,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 △농업정책 개발, △농촌종합개발, △농산물가공 등을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농업 ODA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함.

- 농업 ODA 분야 중 △마케팅 및 농산물 수요처 발굴 등 유통체계 구축, △식품위생, 식생활 및 영양교육 등 농식품 안전,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이 다자 협력사업 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 나타남.
- 이러한 인적 역량 제고 및 인식개선 분야는 사업의 효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정책, 농촌종합개발, 농산물가공 등은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양자 원조로 수행되어온 분야이나, 다자 개발협력 시 직접 양자 원조의 상호보완 및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관개시설, 경지정리, 농업용 저수지 등을 지원하는 농업생산 기반 구축, 시설원예, ICT, 스마트팜 등을 포함하는 영농 기계화는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되지 못함. 위 분야는 한국이 국제기구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 및 경험이 있어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양자 ODA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 선정한 중점 추진 분야는 다자 개발협력 농업 ODA 사업추진 시 기타 추진 분야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 외 기타협력 분야가 다자 개발협력으로 추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님.

〈표 4-4〉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

구분			
중점 추진 분야	농산물 유통체계	기타협력 분야	농업협동조합육성
	농식품 안전		농업생산 기반 구축
	영농기술 교육 보급		축산
	농업정책		영농 기계화
	농촌종합개발		친환경농업
	농산물가공		

자료: 차원규, 허장 외(2020).

### 3. UN 푸드시스템(Food Systems) 전환과의 연계

#### 3.1. UN 푸드시스템 전환 개요

○ 안토니오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2019년 10월 UN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함(농식품부 보도자료, '21.9.27).

- 2030년 SDGs, 파리기후변화협약, 아디스아바바 행동 계획의 재확인 및 COVID-19의 전 세계적 팬데믹 대응에서 푸드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기아 증가, 일자리 감소, 기후변화, 식량안보 위기로부터 기본 인권의 보장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푸드시스템 전환 참여를 촉구함.

○ UN은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앞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8가지 실천 연합(Coliations of Action)”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논의 초기에는 ①영양 개선과 기아 종식, ②학교급식, ③식품 손실·폐기물, ④농생태학·지속 가능 축산, ⑤블루푸드(수산식품), ⑥생계소득·일자리, ⑦회복력, ⑧이행 수단 등이 8가지 실천 연합으로 제시됨.
- 2021년 7월에 장관급 사전회의에서 각료급 연설, 라운드테이블, 분야별 논의를 통해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 및 행동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실천 연합을 구체화함.
- 115개국이 참석한 각료급 연설에서 각국은 푸드시스템 전환 논의 경과를 소개하고, 국내 및 국제협력 사항을 공유하였음. 62개국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개도국의 푸드시스템 전환 노력을 설명하였고, 선진국은 국제협력의 동참 의지를 확인함. 또한 분야별 논의에서는 여성·청년·소농·토착민의 참여 확대, 과학 기반의 전략 및 정책, 국제사회의 공조 등이 강조되었음.

○ 2021년 9월에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150여 개 유엔 회원국 대표, 유엔 사무총장 및 국제기구 대표, 청년·토착민·여성·민간분야 등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석하였음.

- UN 회원국, 국제기구는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계획을 발표, 유엔 차원에서의 이행점검 방안을 제시하였음. 특히 사람, 지구, 번영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강조하면서 국제공조가 필요한 다양한 실천계획(Initiatives)을 제안하고 구체화할 것을 약속함.
- 또한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매년 경과보고서 제출 및 격년 점검 회의 개최를 계획함.

○ 이를 바탕으로 유엔은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SDGs 달성을 위한 5개의 실천 분야(Action Areas) 및 그에 따른 실천계획(Initiatives)을 발표함.

- 실천 연합은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Nourish All People), △자연 기반 생산솔루션 촉진(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공평한 삶, 좋은 일자리 및 향상된 공동체(Advanced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and Empowered Communities), △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실행지원(Support Means of Implementation)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 4-5〉 UN 푸드시스템 실천 분야 및 실천계획

실천 분야(Action Areas)	실천계획(Initiatives)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 (Nourish All Peo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아 종식(Zero hunger)</li> <li>• 건강한 식생활(Healthy diets)</li> <li>• 보편적 학교급식(Universal school meals)</li> <li>•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축(Food is never waste)</li> <li>• 원 헬스 접근법(One health Tripartite arrangement)</li> </ul>
자연 기반 생산솔루션 촉진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생태학 및 재생적 농업(Agro-ecology and regenerative Ag)</li> <li>• 수산 식품(Blue and aquatic foods)</li> <li>• 지속 가능한 축산(Sustainable livestock)</li> <li>• 환경에 긍정적인 생산 혁신(AIMs for climate)</li> <li>• 글로벌 토양 허브(Global soil hub)</li> <li>• 환경과 생물 다양성(Climate and biodiversity)</li> </ul>

실천 분야(Action Areas)	실천계획(Initiatives)
공평한 삶, 좋은 일자리 및 향상된 공동체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 일자리와 생계소득(Decent work and living incomes)</li> <li>• 청년을 위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 for youth)</li> <li>• 여성과 소녀를 위한 푸드시스템(Making food systems for women and girls)</li> <li>• 토착민들을 위한 푸드시스템(indigenous people's food systems)</li> </ul>
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공급망(Local food supply chain)</li> <li>• 기후회복력 개발 경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li> <li>• 인권·개발·평화 연계(HDP Nexus)</li> <li>• 사회보장망(Safety nets)</li> </ul>
실행지원 (Support means of Implem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Finance efforts)</li> <li>• 거버넌스(Governance efforts)</li> <li>• 지식 및 과학(Science and knowledge)</li> <li>• 혁신 및 기술(Innovation, tech, and data)</li> <li>• 역량(Capacity)</li> <li>• 인권(Human rights)</li> </ul>

자료: 저자 작성

- 한국 정부(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또한 정상회의 영상 발언을 통해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지지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식량 계획의 3대 전략 과제인 식량안보 강화, 환경부담을 줄이는 농수산물 생산과 소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였음.<sup>9)</sup>
  - 또한 기아 감소, 학교급식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협력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밝힘.
- 이러한 UN 푸드시스템 전환의 실천계획에 대한 기여는 국제사회 및 한국의 SDGs 달성과 직결되어 있음. 따라서 농식품부는 다자 개발 협력사업 추진 시 UN 푸드시스템 실천 계획 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9)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9.27.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전환 추진.”

### 3.2. UN 푸드시스템 실천 분야 및 실천계획 검토

○ 본 절에서는 <표 4-5>인 UN 푸드시스템의 실천 분야와 계획 중 농업농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실천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SDGs 달성 목표 및 세부 목적과의 부합성을 파악하고자 함. 분석 대상 실천계획은 아래와 같음.

-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 ① 기아 종식 ② 건강한 식생활 ③ 보편적 학교급식 ④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축 ⑤ 원 헬스 접근법
- (자연 기반 생산솔루션 촉진) ⑥ 농생태학 및 재생적 농업 ⑦ 지속 가능한 축산 ⑧ 환경에 긍정적인 생산 혁신 ⑨ 글로벌 토양 허브 ⑩ 환경과 생물 다양성
- (취약성, 충격,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 ⑪ 로컬푸드 공급망 ⑫ 기후회복력 개발 경로

○ “공평한 삶, 좋은 일자리 및 향상된 공동체”의 네 가지 실천계획, “자연 기반 생산솔루션 촉진” 실천계획 중 수산 식품, “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 분야의 인권·개발·평화 연계, 사회 보장망, “실행지원” 분야의 실천계획은 농업 ODA 사업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위 실천계획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서가 주관하여 ODA 사업 활동 중 하나로 농업 분야를 기획할 경우, 관련 부처와 농식품부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임.

#### 3.2.1.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Nourish All People)

##### ① 기아 종식(Zero hunger)

○ 기아 종식은 지속 가능하고 영양 있는 방식으로 기아 종식을 목표로 하며, CERES 2030의 제시된 10개의 중점 투자영역에 지원 및 협력을 강조함.

- CERES 2030: Sustainable Solutions to End Hunger는 미국 코넬대학교, 국제식량 정책연구소(IFPRI), 국제지속가능개발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임.

○ 특히, CERES 2030에서 제안한 연간 330~400억 달러의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COVID-19 팬데믹, 지역적 분쟁으로 인한 식품, 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CERES 2030의 10개 투자영역은 다음과 같음.

- 농업 협동조합, 농업작목반 등 농민 조직화의 참여 강화
- 농촌지역 청년들을 위한 통합된 직업훈련 교육 투자
-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 여성의 지위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농촌지도 프로그램에 투자
- 농민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향상 및 지원을 위한 농업정책
-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 도입 지원
- 소농을 위한 효율적 농업용수 관리 및 연구 지원
- 중소 축산농민을 위한 축산사료의 품질향상과 생산 증대
- 곡물의 저장 및 가공 등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수확 후 손실 감소
- 농업 가치사슬에서 중소기업의 인프라, 제도, 서비스, 기술지원에 투자

○ 기아 종식 실천계획에는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중국, 에티오피아, 가나, 독일,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케냐,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아프리카개발은행, FAO, IFAD, WFP, IFPRI, 25개 민간부문 등의 회원국 및 기관이 참여 및 지지를 하였음.

## ② 건강한 식생활(Healthy diets)

○ 건강한 식생활은 모든 사람(특히 여성, 아동, 노년층, 전통적 소외 계층)이 지속 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부터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는 세상을 공동 비전으로 하며 적정가격의 건강한 식품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함.

○ 스웨덴, 덴마크, FAO, UNEP, UNICEF, WFP, WHO, GAIN, CGIAR 등이 본 실천계

획에 참여 및 지지함.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 비전을 향해 일관성 있는 행동을 조정, 동원 및 지원할 것이며, 다음 3가지 영역에 중점 지원함.

- (식품공급) 식품 공급사슬 내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영양 가치에 초점을 맞추도록 식품공급의 방향을 전환
- (식품 환경) 영양가 있는 식품의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 및 가격 적정성 개선, 불량식품에 대한 접근 제한
- (식품의 가치 인식) 교육, 정보, 수요 창출 및 행동 변화 지원을 통해, 개인, 가정, 지역 사회가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동기 부여

### ③ 보편적 학교급식(Universal school meals)

○ 보편적 학교급식 실천계획은 2030년까지 학교에서 모든 아동에게 더 영양가 있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의 지역사회 내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함.

-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아동과 학생들의 단순한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농업과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학교는 지역사회와 시장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보편적 학교급식 실천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제시함.

- 복원(restore what we had): 2023년까지 COVID-19로 무너진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복원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모든 국가지원
- 사각지대 도달(reach those what we missed): 2030년까지 학교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던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자립성 강화
- 효율성 강화(improve our approach):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되도록 학교급식 품질·효과 제고, 로컬푸드와 연계, 영양교육 및 보건 조치 추진

○ 본 실천계획에는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일본, 중국, EU, WFP 등 40 개 이상의 회원국 및 국제기구가 참여 및 지지함.

④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축(Food is never waste)

○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축 실천계획은 2030년까지 식품 폐기량을 절반으로, 식량 손실은 최소 2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식품 손실 및 폐기를 줄이기 위한 증거 기반 체계적 접근법 채택, 식품 손실 및 폐기 수준을 평가하고 국가 목표 설정, 우선순위 식별 및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 교훈 공유 등에 대한 협력을 강조함.

○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축 실천계획에는 미국, 브라질, 이탈리아, 에콰도르, 네덜란드의 국가와 FAO, UNEP,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참여 및 지지함.

⑤ 원 헬스 접근법(One health Tripartite arrangement)

○ 본 실천계획은 생태계의 유해 질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적, 국제적, 다 부문별, 학제적 메커니즘으로 사람, 동물, 환경에 공동으로 발생하는 위험 및 위기의 영향 완화를 목표로 함.

- 원 헬스(One Health)는 인간의 건강, 동물의 건강, 환경의 건강 사이의 상호 의존성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 감염병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의학, 수의학, 환경과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학계의 전문가 간 협동이 필요함.

○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 분야의 실천계획 목적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SDGs 세부 목표에 부합하는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4-6〉 SDGs 세부 목표별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 실천계획 분류

SDGs 세부 목표	UN 푸드시스템 실천계획				
	기아 종식	건강한 식생활	보편적 학교급식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축	원 헬스 접근법
<b>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의 달성 및 지속 가능 농업강화</b>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	○	○	○	○	
2.2. 2025년까지 5세 미만인 아동의 발육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 수유 여성과 노년층의 영양 필요성을 설명하며,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앴.	○	○	○	○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 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영세한 농산물 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인 및 어업인의 농업생산 성과 소득을 두 배로 증대				○	○
2.4.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하는 회복력 있는 농업 원칙을 이행				○	
<b>목표 3. 건강 및 웰빙</b>					
3.2. 2030년까지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하고, 모든 국가는 신생아 사망 1,000건을 생존 출산이 12건 이하, 1,000건의 생존 출산당 25건 이하로 감축					○
3.8. 재무 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					○
<b>목표 6.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에 대한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권리를 보장</b>					
6.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정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달성		○			
6.3. 2030년까지 오염 저감, 유해 물질의 투기 근절과 배출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용 반감, 전 세계에서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의 대폭 증진을 통해 수질 개선				○	
<b>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b>					
12.3.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 감소				○	

자료: SDGs 세부 목표 출처는 UN Global Compact 공식 웹사이트(<http://unglobalcompact.kr>, 검색일: 2022.01.10), 이 외 저자 작성.

### 3.2.2. 자연 기반 생산솔루션 촉진(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 ⑥ 농생태학 및 재생적 농업

○ 본 실천계획은 세계 식량안보 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 고위급패널(HLPE) 보고서에 명시된 13대 농생태학 원칙에 따른 농생태학 및 재생농업 접근법으로 푸드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생태학의 13대 원칙) △재활용, △투입재 사용량 감소, △토양 건강, △동물 보건 및 복지, △생물 다양성, △시너지, △경제적 다각화, △지식의 공동 창조, △사회적 가치와 식단, △공정성, △연계, △토지 및 천연자원 거버넌스, △참여

○ 농생태학 및 재생적 농업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생태학 및 기타 혁신적 접근법에 대한 CFS 정책 권고사항 이행
- 농업 생태학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강화
- 농림수산, 환경, 물, 에너지, 보건, 무역 정책 등 푸드시스템의 농생태학적 전환을 목표로 하는 분야별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
- 공공 및 민간 투자가 농생태학적 관행의 채택과 대규모 이행을 촉진하도록 보장

○ 본 실천계획에는 CFS, 녹색 만리장성 이니셔티브(프랑스 주도의 농생태학 활용 생태계 보호 협력사업) 등 이미 가입한 22개국 외 세네갈, 스위스, 스리랑카, 앙골라, UNDP, WFP, IFAD, UNEP 등의 회원국 및 국제기구가 참여함.

#### ⑦ 지속 가능한 축산(Sustainable livestock)

○ 지속 가능한 축산은 농업인과 가치사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축산시스템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의사결정 지원 전략은 아래와 같음.

- SDGs 달성을 위한 축산의 역할·조치 관련 과학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정부, 투자자, 다자기구 등과 공유

- 기존 이해관계자 논의(FAO 축산소위원회, 식량안보위원회(CFS), 지속 가능 축산 글로벌 아젠다(GASL) 등의 활성화

○ 주요 내용으로 가치사슬 내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 생산 최적화, 협업을 통한 생산성 및 축산시스템의 사회 경제성·지속가능성 향상 추진을 포함. 특히 ‘지속 가능 축산’ 솔루션 클러스터의 논의 내용을 강조함.

- (솔루션 클러스터 논의) 미래의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변화 수단으로, ①축산물, 관련 지식, 생산시스템의 다양화, ② 혁신 가속화, ③ 모니터링 및 보고 등 평가 시스템 개선, ④ 농업인 중심, 가치사슬에 바탕, 증거 기반 및 각국 특성을 반영한 로드맵 마련

○ 본 실천계획에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일본, 미국, 브라질, 호주, 인도,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케냐, 아일랜드, 덴마크, 스위스, 세계농업인기구(WFO), 국제축산연구소(ILRI) 등이 참여 및 지지를 표명함.

#### ⑧ 환경에 긍정적인 생산 혁신(AIMs for climate)

○ AIM for Climate(The agricultural Innovation Mission for climate)는 2021년 영국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 콘퍼런스(COP26)에서 발족하였으며,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식량 수요 증대 등에 대응을 위해 농업과 푸드시스템에서의 과학과 혁신 강화 추진을 목표로 함.

○ AIM for Climate의 주요 활동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투자 증대) 2025년까지 기후 스마트농업과 푸드시스템의 농업혁신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대

- (조정과 연계 강화) 국내 및 국제사회의 농업혁신 참여자들의 전문성 및 지식에 대한 공유 및 논의를 통한 투자 효과를 극대화. 이를 위한 협력구조와 프레임워크를 지원

- (협력 증대) 농업혁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틀 마련, 기후 관련 농업혁신 연구, 개발 등 지원

⑨ 글로벌 토양 허브(Global soil hub)

○ 본 실천계획은 건강한 토양이 푸드시스템의 근간으로 간주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토양 역할 인식 제고, 토양관리 관행 개선 및 전 세계적 개선방안 도입을 목표로 함. 실천계획의 가속화를 위해, 토양 건강을 위한 관행을 개선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평한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을 지원함. 주요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민관협력을 통한 과학에 기반한 토양 건강에 투자
- 우호적인 환경 조성
- 혁신, 지식 및 자원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개선

⑩ 환경과 생물 다양성(Climates and biodiversity)

○ 모든 SDGs 및 푸드시스템은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고품질 종자의 지속적인 혁신 및 접근성 증가, 식량·영양 안보에 기여하고 생계 및 환경을 개선하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보호함.

○ 식량과 농업에 대한 유전적 자원의 활용과 재생산, 효율적 사용이 중요함. 특히, 종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수립하기 위해 종자 부문 내 다중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추진함.

- (네트워크 및 신규 이니셔티브 수립) 종자 가치사슬 구축 또는 강화
- (지식공유) 민간 및 공공부문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및 파트너 국가 내 기술·전문성 이전 확대
- (역량 강화) 종자선택과 다양한 형태의 경작·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역량 및 이해 강화, 종자 관리 훈련 및 정보 제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민에 대한 재난·위험관리 선제 조치 지원
- (이행환경 개발지원) 종자법 입법, 식물품종 보호, 식물 위생 규정, 종자 수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이행 가능한 환경 개발을 지원

- 다중이해관계자 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토의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등 농민의 다양할 필요와 선호에 부응하는 선택을 지원

○ “자연 기반 생산솔루션 촉진” 분야의 실천계획 목적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SDGs 세부 목표에 부합하는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4-7〉 SDGs 세부 목표별 “자연 기반 생산솔루션 촉진” 실천계획 분류

SDGs 세부 목표	UN 푸드시스템 실천계획				
	농생태학 및 재생적 농업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긍정적인 생산 혁신	글로벌 토양 허브	환경과 생물다양성
<b>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의 달성 및 지속 가능 농업강화</b>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		○			
2.2. 2025년까지 5세 미만인 아동의 발육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 수유 여성과 노년층의 영양 필요성을 설명하며,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앴.		○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 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영세한 농산물 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업인의 농업생산 성과 소득을 두 배로 증대		○			
2.4.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하는 회복력 있는 농업 원칙을 이행	○		○	○	
2.5. 2020년까지 국가별, 지역별, 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히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종자 및 식물은행을 포함하여 씨앗,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 지원과 전통 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	○	○			○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 분야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농촌 사회기반시설, 농업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개발, 식물·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에 대한 투자 확대	○		○		○
<b>목표 8. 모두를 위해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b>					
8.2. 고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의 중점 포함한 산업 다변화, 기술 발전 및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 달성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대응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		
목표 15. 육상생태계					
15.1. 2020년까지 국제협정 의무에 따라 육지 내륙 담수 생태계 및 관련 서비스, 특히 산림, 습지, 산지 및 건조지 보존,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보장	○			○	○
15.2.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 이행 도모, 개발을 위한 산림파괴 중단, 훼손 산림 복원, 신규 조림 및 재조림 확대	○				
15.3. 2030년까지 사막화 방지, 가뭄 및 홍수에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한 훼손 토지 및 토양 복원, 토지 훼손에 중립적인 세계 달성을 위한 노력	○			○	
15.4.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 혜택 제공하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산지 생태계 보전	○				○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자원 동원 및 증대	○				○

자료: SDGs 세부 목표 출처는 UN Global Compact 공식 웹사이트(<http://unglobalcompact.kr>, 검색일: 2022.01.10), 이 외 저자 작성.

### 3.2.3. 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

####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

##### ① 로컬푸드 공급망(Local food supply chain)

○ 푸드시스템에 사회적, 경제적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역적 식품 공급망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충격 및 붕괴를 견딜 수 있게 지역 푸드시스템 변화, 장기적으로는 회복력 있고 포괄적인 경제 및 사회 지원을 목표로 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회경제적 회복력 강화 및 취약성 최소화를 통한 포괄적 경제 및 사회 구성
- 시스템 및 국가 간 지식, 경험 공유 활성화
- 국가 및 지역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촉진
- 가치사슬을 따라 존재하는 시장 비효율성과 불평등, 취약한 푸드시스템 내에 있는 소외 계층의 상황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AU-NEPAD, 콩고민주공화국, 방글라데시(공동 리더십), WFP, UNCDF, NGO, 민간 부문, 학계 등이 참여 및 지지함.

⑫ 기후회복력 개발 경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

○ 장기적 복원력을 달성하기 위해 다 부문·다중시스템 통합솔루션을 통한 기후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복원력을 제공, 빈곤 감소, 사회, 젠더, 세대 간 균등성과 정의를 강화함.

- (구체적 목표) △ 기후 적응, 완화 및 복원력 △ 물-식량-에너지 넥서스 접근법 △ 기후 위험감소 및 위험관리 △ 국제 및 국가 정책계획 및 이니셔티브에 복원력을 통합

○ 기후 복원력 있는 개발을 위한 총체적이며 패러다임 전환을 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함. 이를 위해 다음의 8가지 이행 메커니즘을 제시함.

- CRDP 관련 국가 및 지역 활동 계획 시 수평적·수직적 조정 촉진

-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역량 개발을 우선순위로 설정

- CRDP 요소 관련 국가 의사결정자의 역량 강화

- 통합 기후 복원력 경로를 수용하는 중소 농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역할과 책임을 식별하기 위해 부문과 관계자를 포함하는 지역, 국가 및 다중이해관계자 대화를 촉진

- 지식 격차의 보완

- 관계자 간 권한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젠더·사회 포용성 및 참여적이고 계획적인 접근 강화

- 다중지표(multi-metric) 기후 복원력 개발경로 지표의 개발

○ 방글라데시(공동 리더십), 피지, 뉴질랜드, 독일, 미국, 터키, UAE, 일본 등(관심국), UNFCCC, WFP, FAO, UNDP, WMO 등 국제기구, 연구기관, 시민사회, 농민단체, 민간부문 등이 참여함.

○ “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 분야의 실천계획 목적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SDGs 세부 목표에 부합하는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4-8〉 SDGs 세부 목표별 “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 실천계획 분류

SDGs 세부 목표	UN 푸드시스템 실천계획	
	로컬푸드 공급망	기후회복력 개발경로
<b>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의 달성 및 지속 가능 농업강화</b>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	○	
2.2. 2025년까지 5세 미만인 아동의 발육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 수유 여성과 노년층의 영양 필요성을 설명하며,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앴.	○	
2.4.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하는 회복력 있는 농업 원칙을 이행		○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할 방안을 채택하고, 과도한 식량 가격의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식량 저장과 같은 시장정보에의 적시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를 채택	○	
<b>목표 11. 지속 가능 도시</b>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재난 회복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계획을 채택 이행하는 도시와 정주지의 수를 증대하고 2015-2030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난위험 관리를 개발 이행		○
<b>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대응</b>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

자료: SDGs 세부 목표 출처는 UN Global Compact 공식 웹사이트(<http://unglobalcompact.kr>, 검색일: 2022.01.10), 이 외 저자 작성.

### 3.4. SDGs 달성 목표와 푸드시스템 실천계획 요약

○ 다음의 표는 위에서 살펴본 UN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실천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SDGs의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SDGs 목표 2인 ‘기아 종식, 안전하고 영양이 개선된 식량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장려’는 대부분 실천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 외 아래와 같은 목표에도 부합함.

- 목표 3(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 목표 6(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 목표 8(지속적·포용적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 목표 12(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 목표 13(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 목표 15(생태계보호,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방지와 회복, 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에 기여)

〈표 4-9〉 UN 푸드시스템 실천계획과 SDGs 세부 목표

실천 분야 (Action Areas)	실천계획(Initiatives)	SDGs 목표와 부합성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 (Nourish All People)	기아 종식(Zero hunger)	2.1/2.2
	건강한 식생활(Healthy diets)	2.1/2.2
	보편적 학교급식(Universal school meals)	2.1/2.2/6.1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축(Food is never waste)	2.1/2.2/2.3/2.4/6.3/12.3
	원 헬스 접근법(One health Tripartite arrangement)	2.3/3.2/3.8
자연 기반 생산 솔루션 촉진 (Boost Nature-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농생태학 및 재생적 농업(Agroecology and regenerative Ag)	2.4/2.5/2.a/15.1/15.2/15.3/15.4/15.a
	지속 가능한 축산(Sustainable livestock)	2.1/2.2/2.3/2.5
	환경에 긍정적인 생산 혁신(AIMs for climate)	2.4/2.a/8.2/13.1
	글로벌 토양 허브(Global soil hub)	2.4/15.1/15.3
	환경과 생물 다양성(Climate and biodiversity)	2.5/2.a/15.1/15.4/15.a
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 (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로컬 푸드 공급망(Local food supply chain)	2.1/2.2/2.c
	기후회복력 개발 경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	2.4/11.b/13.1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농업 ODA 추진과정에서 여성, 청년, 토착민 등 소외 계층에 대한 고려를 통해 SDGs 목표 5(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 목표 10(불평등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

## 4. UN 푸드시스템 실천계획의 수행 적합성

- 본 절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주요 다자기구별 농업 분야 개발협력의 전략 및 중점 추진 분야를 바탕으로 UN 푸드시스템의 실천계획 추진을 위한 기구별 수행 적합성 분석을 하고자 함.
- 국제기구는 농업 분야 ODA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왔으므로 대부분 영역에서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음. 또한 국제기구는 우리나라보다 국제개발협력 역사가 오래되어, 모든 분야에서 경험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음. 그러므로 기구별 UN 푸드시스템의 실천 분야 및 계획의 수행 적합성을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 적합성 분석은 개발협력에서 공여국과 국제사회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개발효과성 및 효율성의 제고, SDGs와 UN 푸드시스템 전환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또 유례없는 경제성장 및 농업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여국의 역할과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국제기구별 전략목표,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과 UN 푸드시스템 실천계획의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다자기구별로 UN 푸드시스템의 실천계획과 매칭하였음. 또한 기구별 특정 실천 분야 및 계획에 참여 및 지지 의사 표명도 기구별 실천 연합 매칭에 참고하였음. 그러나 매칭 결과는 우선순위를 나타낼 뿐 절대적으로 이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행해야 하거나, 특정 기구가 매칭되지 않은 실천계획에 전문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님.

〈표 4-10〉 다자기구별 UN 푸드시스템 전환의 실천계획 수행 적합성

실천계획 \ 다자기구	FAO	WFP	IFAD	UNDP	WB	ADB	CGIAR
<b>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b>							
기아 종식	○	○	○				○
건강한 식생활	○	○					○
보편적 학교급식		○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축	○			○	○	○	
원 헬스 접근법	○						○
<b>자연 기반 생산솔루션 촉진</b>							
농생태학 및 재생적 농업			○	○		○	○
지속 가능한 축산	○						○
환경에 긍정적인 생산 혁신			○			○	○
글로벌 토양 허브			○		○	○	○
환경과 생물 다양성			○				○
<b>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b>							
로컬 푸드 공급망	○	○	○				
기후회복력 개발경로				○	○		

자료: 저자 작성.

# 5

## 주요 공여국의 농업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운영체계

### 1. 영국

#### 1.1. 영국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 현황

##### 1.1.1. 영국 다자 개발협력 사업 개요

○ 영국 전체원조는 2016년 180억 달러에서 2020년 192억 달러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양자와 다자 비중은 매년 달라지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예산 추이(2018~2020)를 보면 양자 비중을 줄이고 다자협력 비중을 늘리고 있음. 또한 다자성양자 원조도 2016년 약 35억 달러(19%)에서 2019년 39억(21%)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5-1〉 2016~2020년 영국 양자-다자별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지출총액, %

항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합계	금액	18,052.8	18,103.4	19,462.2	19,354.2	19,244.9
양자	금액	11,517.10	11,335.20	12,307.47	13,052.21	12,158.66
	비율	64%	63%	63%	67%	63%

항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다자	금액	6,535.73	6,768.18	7,154.74	6,302.01	7,086.19
	비율	36%	37%	37%	33%	37%
다자성 양자	금액	3,510.64	3,390.88	3,716.46	3,971.63	-
	비율	19%	19%	19%	21%	

자료: OECD Stats.[DAC1](<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20년은 추정치 (2020년 다자성양자 자료 없음)

○ 영국은 주로 긴급구호, 정부, 시민사회, 교육 등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일반보건 및 모자보건 분야에서 다자 개발협력을 실시함. 이는 다자 개발협력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로, 영국 외 다른 공여국에서도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음.

〈표 5-2〉 2019년 영국 분야별 다자 개발협력 지원 규모

순위	분야	지출액	비중
	분야 전체	3,622.8	100%
1	긴급구호	1,262.3	35%
2	정부 및 시민사회 지원	390.2	11%
3	보건 인프라 및 서비스	345.8	10%
4	교육 인프라 및 서비스	323.0	9%
5	인구정책 및 프로그램, 재생산 보건	275.3	8%

자료: OECD Stats. [DAC1](<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저자 작성.

### 1.1.2. 농업 분야 다자 개발협력 사업 정책 및 현황

○ 농업 분야의 다자성양자 지원금액은 2019년 1억 1,300만 달러로, 전체 농업 ODA 예산 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국은 농업 분야에서 다자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

- 영국의 농업 분야 다자성양자 지원금액이 높은 것은 농업 분야만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후변화 및 빈곤 감소 등 다른 개발협력 부문 및 사업 분야의 연계를 통한 농촌 발전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표 5-3〉 2015~2019년 영국 ODA 농업 분야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Current Prices,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551.54	424.16	422.94	428.68	459.95
양자	341.63	267.99	351.81	539.22	347.1
다자성양자	209.91	156.17	71.13	69.46	112.85
다자성양자(%)	38%	37%	17%	16%	25%

자료: OECD Stats. [DAC1](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영국은 다양한 다자기구와 연평균 7~8개의 농업 분야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주요 협력기구는 IBRD, FAO이며 최근에는 IFC, 중미개발은행과 협력을 늘리고 있음. 또한 기구별로 영양 신탁기금(IBRD), 기후 변화 대응 생계 및 식량안보 구축 기금(UN), 농업생산성 향상(FAO) 등과 같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표 5-4〉 2015~2019년 영국 농업 분야 다자성양자 원조 수행 상위 5개 기관

단위: 백만 달러, 지출총액, %

수행기구(농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제개발부흥은행(IBRD)	46.8	37.2	4.09	5.13	72.98
	22.3%	23.8%	3.9%	4.3%	42.0%
세계식량농업기구(FAO)	18.3	24.0	9.10	6.17	13.15
	8.7%	15.4%	8.6%	5.1%	7.6%
국제금융공사(IFC)	39.7	29.0	-	10.77	12.12
	18.9%	18.6%	-	9%	7%
국제개발협회(IDA)	33.8	14.3	8.02	-	-
	16.1%	9.2%	7.6%	-	-
중미개발은행	-	-	16.21	19.63	-
	-	-	15.4%	16.3%	-

자료: OECD Stats. CRS(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영국은 프로그램이나 기금을 통한 다자협력을 선호하며, 프로젝트의 경우 2010년대부터 거의 지원하지 않음. 이는 영국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 추진 중인 중인 국제기구의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가 효과적이라는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타 분야의 경우 프로젝트 유형의 비중이 약 17%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대부분 국제기구의 특정 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표 5-5〉 2012~2019년 영국 농업 분야 지원유형별 다자성양자 협력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지출총액, %

지원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다자성양자 전체	141.4	130.0	102.2	209.9	156.2	71.1	69.5	112.9
국제기구의 특정 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B03)	58.96	71.22	93.26	201.28	149.51	70.0	69.05	112.31
	41.7%	54.7%	91.3%	95.9%	95.7%	98.5%	99.4%	99.7%
합동 기금 지원(B04)	0.16	6.72	6.92	7.36	3.72	0.97	-	-
	0.1%	5.2%	6.8%	3.5%	2.4%	1.4%	-	-
프로젝트 원조(C03)	82.3	52.07	1.98	1.26	2.94	0.16	0.41	0.54
	58.2%	40.0%	1.9%	0.6%	1.9%	0.2%	0.6%	0.5%

자료: OECD Stats. CRS(<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영국은 개도국의 경제성장, 빈곤 감소, 식량안보, 영양 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구축을 목표로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음. 영국 외무·영연방부(Foreign Common Wealth and Development Office, FCDO)의 원조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농업 혁신을 통한 농산업 발전과 상업화 달성으로 농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기여, △농촌 전환(Rural transition)을 통한 농외 일자리 및 소득 확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의 발전 도모 등으로 구성됨.

- 영국은 △농업이 포용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농촌 생계에 미치는 영향, △세부 분야별 농업생산성 증진 장애 요소, △농업 개발원조 사업추진 지역과 분야검토, △기후변화 등 환경적 위험 요소,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확장 가능성 등의 기준을 통해 사업지원 대상 및 방식을 검토함(DFID, 2015).
- 2022년 기준 영국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목록은 〈표 5-6〉과 같음.

〈표 5-6〉 2022년 FCDO에서 시행 중인 농업 분야 다자사업 목록

사업명 및 내용	기간	조달기관	수행기관	수원국
산림 및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 투자	'14~'23	FCDO (DFID), 노르웨이 기후환경부	World Resources Institute, Palladium International Ltd (UK), IBRD 외	미지정
르완다 농업 미래 프로그램	'19~'22	FCDO (DFID)	Oxford Policy Management, DAI Europe, IBRD	르완다

사업명 및 내용	기간	조달기관	수행기관	수원국
자산 창출 및 향상을 통한 복원력 구축 II - 남수단 (IFC 프로그램)	'15~'23	FCDO (DFID)	FAO, WFP, IMC Worldwid, World Vision Australia	남수단
삼림벌채 방지 및 빈곤 감소를 위한 저탄소 농업 II	'16~'24	환경식품 농촌부(영국)	IDB	브라질
소규모 농가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 (Adaptation)	'12~'23	FCDO (DFID)	IFAD, DAI Europe, Harewelle International Limited,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미지정

자료:FCDO 웹사이트(<https://devtracker.fcdo.gov.uk/projects/>, 검색일: 2022.01.21.).

## 1.2. 다자 개발협력 사업 운영체계분석

### 1.2.1. 운영 규정 및 수행지침

○ 영국은 다자협력사업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두지는 않으나, 각 지침에 별도로 다자협력 시 주의해야 할 점 또는 예외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본 장에서는 FCDO의 전체 사업 운영 규정 및 수행지침인 프로그램 운영 프레임워크(Program Operation Framework, POF), 사업수행기관 실사 가이드(Due Dilligence Guide) 등을 살펴보고 다자협력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부분을 비교함.

가) 프로그램 운영 프레임워크(Program Operation Framework)<sup>10)</sup>

○ 2021년에 발표한 FCDO의 프로그램 운영체계(Program Operation Framework, POF)는 국제프로그램, 협력기금 등 FCDO의 회계기준에 따라 자금이 조달된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상위 가이드라인임.

<sup>10)</sup> 본 절은 FCDO(2021)를 바탕으로 작성함.

○ POF는 이전 FCO의 지침인 “Policy Portfolio Framework”와 DFID의 “Smart Rules”의 강점을 결합하여 수립한 “최소 적용 가능한 지침(Minimum viable product)”으로서, 계속해서 발전시킬 예정이며, 잠정기간 동안 DFID에서 기존 수행 중인 사업은 DFID의 이전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관리에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함.

○ POF는 △사업수행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사업 유형의 △수행과정에서의 결정권자의 책임 및 역할 △필수 프로세스 설정 △역량구축을 위한 학습과 개발 제안 관련 링크 등의 내용으로 이뤄짐. POF는 증거 기반 프로그래밍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뀔 수 있음.

- POF의 모든 규칙은 다자사업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나, 일부 항목에 다르게 적용 또는 해당하지 않을 때는 각 규칙을 기술한 장에 별도로 명시함.

〈표 5-7〉 FCDO 기본지침 중 다자협력에 대한 세부 사항 명시 내용

기본지침(양자)	다자협력 지침
Rule 1: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 모든 국제활동은 영국법을 및 규제사항과 일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금융기관 및 기타 다자간 거래는 각 주의 법률이 아닌 국제법에 따라 운영됨</li> </ul>
Rule 3: 모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는 FCDO/HMG 정책 우선순위 및 사업목표와 일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기구 핵심 자금 조달은 개별사업 수준이 아닌 FCDO 우선순위 및 전략 단계에서 평가가 필요함</li> <li>• 다자성양자 프로그램의 경우, 정책모순을 피하도록 전략을 조정하고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자기구의 임무 수행에 관해 영국 측의 지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공해야 함(Senior Responsible Owners, Head of Directors, DIFD 등)</li> </ul>
Rule 8: 사업 설계 초기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활동 내용, 예산, 리스크관리, 사업성과 등의 개요를 컨셉노트에 설정, 승인되어야 함(5백만 파운드 이상의 모든 컨셉노트는 수석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FS의 경우 7천만 파운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사업의 경우 컨셉노트는 Post의 개발 이사 또는 이에 따르는 관리자가 확인하며 사업내용은 분야별 위원회 또는 HQ Regional Board에서 승인해야 함</li> <li>• 핵심 기금팀은 Aid Management Platform(AMP)에서 신규사업을 기획할 때 컨셉노트 내 양식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판단은 사업책임자의 재량에 따름</li> <li>• 컨셉노트를 작성할 경우, 사업예산확보 및 승인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데 유용하나, 일반적으로 핵심 자금 조달계획은 장관급에서 논의되며, 사업팀은 이를 기록하여 컨셉노트로 대체할 수 있음.</li> </ul>
Rule 12: 모든 프로그램은 FCDO의 브랜드 지침을 따라야 하며, 외부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방식을 적절하게 문서화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브랜딩 계약이 다자간 기관과 합의된바, SRO는 FCDO의 가시성 제고 등, 이를 숙지하고 적절히 적용해야 함</li> <li>• 핵심 기금의 경우 타 기관의 기여도와 구분할 수 없으므로 브랜드 지침을 적용하지 않으나, 모든 자금 지원활동에 있어 브랜드 지침 적용을 고려해야 함.</li> </ul>

기본지침(양자)	다자협력 지침
Rule 13: 디지털 방식(문자, 온라인 현금 이체 등) 활용 시 FCDO 디지털 서비스 팀에서 먼저 검토해야 하며, 내부 Digital Spend Panel의 지출승인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협력의 경우 rule 13은 적용되지 않음</li> </ul>
Rule 16: FCDO는 시행기관이 자금을 관리하고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소지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적절하고 문서화 된 평가를 요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간 핵심 자금 조달을 위한 중앙보증평가(Central Assurance Assessment, CAA): FCDO 기관장은 사업수행 중인 다자기구의 역량과 리스크를 평가하는 CAA를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다자사업 수행 경우 CAA 결과를 고려해야 함</li> <li>• 사업 조달 맵(Delivery Chain Mapping)은 다자기구에서의 핵심 자금 및 지원약정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에서 설계해야 함</li> </ul>
Rule 19: FCDO 주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기, 테러 자금조달, 자금세탁, 뇌물, 부패, 성적착취, 학대 등에 대한 모든 의혹과 혐의는 FCDO 사기 및 안전조사팀, 내부감사팀에 즉시 보고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자금 약정의 경우, 다자기구는 이사회와 합의된 절차에 따라 회원국에 보고해야 하나, 대부분 정기보고서에 기재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FCDO 프로그램팀은 위 내용을 받는 즉시 FCDO 사기 및 안전조사팀과 공유해야 함.</li> </ul>
Rule 20: 모든 프로젝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는 적절한 수준에서 성과 및 재무 감독, 위험관리,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기관 등 핵심 자금의 경우 해당 없음</li> </ul>
Rule 24: 자금은 지정된 수령인에게만 지급되어야 하며, 공식적으로 합의된 목적에서만 사용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기구는 조직 전체의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별 팀의 프로그램 수준이 아닌 핵심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FCDO 중앙 팀 수준에서 검토함</li> </ul>
Rule 25: 예산은 계약일 이전 필요에 따라 미리 지급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B와 UN 기관은 종종 일부 적십자 긴급항소와 마찬가지로 6개월 전에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프로그램팀은 해당 기관에 선지급할 수 없으며 적격성조사(Value For Money) 고려사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함.</li> </ul>
Rule 27: FCDO가 소유한 모든 프로그램자산은 완전하고, 정확하며, 최신상태를 유지해야 함. 이러한 보증서는 의사결정의 명확한 기록과 적절한 이전승인과 함께 금전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또는 다자간협력(다자공여 신탁기금포함) 중 구매한 자산은 FCDO 소유가 아니므로, 사업 시행 측 절차에 따라 구매, 관리 및 폐기함</li> <li>• 실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프로그램팀은 파트너가 강력한 자산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li> <li>• 비핵심(non-core funding)/다자성양자 자금 지원일 경우, 프로그램팀은 FCDO 책임자와 협의해야 하며, 자산관리계약에 대한 상세내용은 MOU 또는 프레임워크 협약 등을 확인해야 함</li> </ul>
Rule 28: 손실, 도난, 자산의 손상, 무익한 지급 등의 비용 상각은 적절한 수준에서 승인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규칙은 FCDO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다자간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핵심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음(파트너는 자금의 어떠한 오용 및 손실에 대해 적절한 채널을 통해 알려야 함).</li> <li>• 공동개발기금 프로그램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무회계 팀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재무회계 팀은 적절한 보고 및 요구사항을 결정해야 함.</li> </ul>
Rule 29: 모든 프로그램은 종료 이전까지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마무리되어야 함. 사업 수행팀은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부채 등 미결제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한 지출은 FCDO에 반환해야 함. 사업 전체기간 내 모든 필수 감사 계정 및 재무제표는 사업 종료 및 기록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협력 감사조항은 다자기구와의 모든 공식교환에 명시됨.</li> <li>• 다자협력의 경우, FCDO는 UN 단일 감사 프레임워크와 같이 충분한 수준의 일반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및 조직 수준의 감사 프레임워크를 요구함</li> <li>• 다자 신탁기금 원조의 경우, FCDO 자금이 지출, 약정, 지출 및 회계처리되는 사이에 긴 격차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담당팀은 종료 날짜, 보고 요구사항, 결과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때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li> </ul>

자료: FCDO(2021)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사업수행기관 실사 가이드(Due Diligence Guide)<sup>11)</sup>

○ 실사 평가 가이드는 FCDO(구 DFID)의 원조사업을 수행하는 파트너기관의 능력을 △ 거버넌스 및 통제, △조달 능력, △재정 안정성, △하위 파트너 등 네 가지 영역으로 평가하여 원조효과성을 높이고 사업수행 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임.

- FCDO와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기관, 혹은 실사 평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기관을 대상으로 실사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포함하여 영국이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됨.

- 실사 평가는 사업 설계 절차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FCDO(구 DFID)와 이전에 협력관계가 없던 기관일 경우 필수적으로 실사 평가를 진행함.

○ 다자사업의 경우 다자기구에 대한 재정적 안정성, 윤리지침 및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하는 현지사무소를 기준으로 실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다자사업 실사 평가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해당 과에서 실시하며, 중앙접근조사와 사업 실사 평가 등 2단계로 이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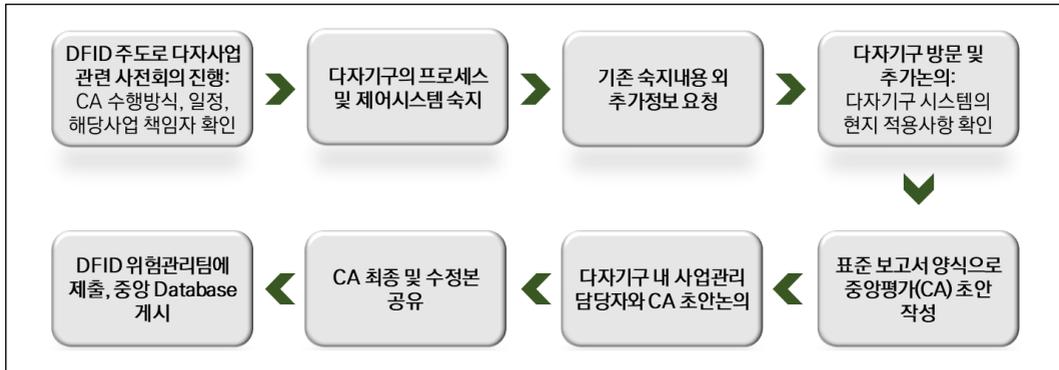
○ **(중앙평가, Central Assessment)** 다자기구의 설립목적, 핵심 정책 및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수행되며 다자기구 지역사무소의 실사 평가의 참고문헌으로 사용됨. 다자기구 내 중대한 변화로 인한 조기 개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단위로 조사함.

- 중앙접근조사는 문헌조사와 다자기구 대표와의 토론을 통하여 진행하며, 주요 조사 내용은 △다자기구가 수원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위임받은 권한 및 권한 체계, △재정 정책 및 재정 운영 절차, △인력 및 고용, △위험관리, △보고 및 모니터링 체계, △내·외부 감사 및 리뷰, △부적절 행위 대응 정책 및 절차, △IT 시스템 통합 및 호환성 등임. 중앙접근조사 수행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음.

---

<sup>11)</sup> 본 절은 DFID(2013: 28-42)를 요약 정리한 것임.

〈그림 5-1〉 FCDO의 중앙접근평가 절차 과정



자료: DFID(2013: 42)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실사 평가)** 다자사업의 사업 실사 평가는 지역사무소가 본부의 공통 사업수행 절차를 사업수행지역 및 프로그램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원조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별 위험 통제 및 관리능력이 충분한지 검토하기 위해 수행하며, 사업 조달 능력 및 하위 파트너 역량이 주요 평가대상임.

〈표 5-8〉 FCDO의 다자사업 협력 기관 유형별 사업 실사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세부 항목	협력 기관 유형			
		UN 기구	WB 또는 MDBs	기타 다자기구	기타 공여 및 신탁기금
거버넌스 및 통제	거버넌스	-	-	-	0
	사기, 뇌물수수, 부패	-	0	0	0
	내부통제	-	-	-	-
	위험관리	0	0	0	-
	윤리지침	-	0	0	-
조달 능력	이전실적	0	0	0	-
	직원역량 및 능력	0	0	0	-
	프로그램 관리	0	0	0	-
재정 안정성	재정 자립성	-	-	-	-
	재정관리	0	0	0	-
	재정감사 수준	0	0	0	-
	적격성	0	0	0	-
	정책, 절차 및 시스템	-	0	0	-
하위 파트너	기관 실사	0	0	0	0
	프레임워크/계약관리	0	0	0	0
	모니터링 및 관리	0	0	0	0
	사기, 뇌물수수, 부패	0	0	0	0

자료: DFID(2013 : 8-9)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평가 세부 항목 중 거버넌스, 윤리지침, 재정 자립성의 경우 영국 외무부와 UN 기구 간 프레임워크 협정(Framework Arrangement) 시 이미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장과 직접 소통하여 해결해야 함.

○ 국제금융기관, UN 산하 외의 지역 기반 다자기구, 신탁기금의 경우 현지 특정 요인이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금 구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시 FCDO 내 사업 담당팀과 Senior Responsible Owner(SRO)가 실사 평가를 수행함. 실사 평가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다자기구 중앙평가 및 지역사무소 실사 평가수행을 위한 예시 질문은 아래와 같음.

〈표 5-9〉 다자기구 실사 평가 예시 질문(FCDO, 영국)

구분		예시 질문	평가대상 및 유형	
평가 기준	평가 세부 항목		중앙평가	현지사무소 실사평가
거버넌스 및 통제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가 현지사무소에 위탁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 정도 및 위임방식은 무엇인가?</li> <li>• 본부는 어떤 방식으로 현지사무소의 정책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사무소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거버넌스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여금의 각 요소를 감독하는 책임자는 누구인가?</li> <li>- 현지에 기반이 없을 시, 사업수행에 대한 원격감독을 제공할 수 있는가?</li> <li>- 수혜자와 사업 수행팀 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무엇인가?</li> <li>- 사업이 예상 궤도를 벗어날 경우, 이를 수습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예산은 무엇인가?</li> </ul>		○
	사기, 뇌물수수, 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사기, 뇌물수수, 부패 등)는 어떻게 관리하는가?</li> <li>• 지역사무소 직원은 내부고발 정책 및 핫라인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가?</li> <li>• 다자기구 직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가?</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무소 및 본부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및 강력 보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li> <li>• 지역사무소 및 사업 내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가?</li> </ul>		○
	내부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등의 내부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발견된 현지사무소의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li> <li>• 감사를 통해 발견한 현지사무소 및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취약점은 무엇인가?</li> <li>• 권장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li> </ul>	○	○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기구의 위험관리 방식은 무엇인가?</li> <li>• 현지사무소의 위험관리 방식 및 절차는 무엇인가?</li> </ul>	○	

구분		예시 질문	평가대상 및 유형	
평가 기준	평가 세부 항목		중앙평가	현지사무소 실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사무소에서 위험관리 기록을 하고 있는가? 또한 본부에 얼마나 자주 보고되는가?</li> <li>• 지역 내 위험관리 기록부가 있는가?</li> <li>•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한 위험관리 오차범위는 무엇인가?</li> <li>• 증여금(Grant) 책정 시 위험평가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포함되었는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내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li> <li>• 지역 이해 충돌과 관련하여 기록된 것이 있는가?</li> <li>• 현지 선물 수령 및 접대 기록부가 있는가?</li> </ul>		○
조달 능력	이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에 수행한 사업은 무엇인가?</li> <li>• 성과 관련 다자간 원조 검토 결과는 어떠하였는가?</li> <li>• 최근 DFID에서 지원한 프로그램과 성과는 무엇인가?</li> <li>• 다른 공여국/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프로그램에서 관련 실적이 있는가?</li> <li>• 현지사무소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결과를 본부에 제공하고 있는가?</li> <li>• 현지사무소에서 지난 3년 내 심각한 사기나 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사무소 및 프로그램 관리팀은 DFID가 지원하는 사업 규모와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관리한 경험이 있는가?</li> <li>• 타 공여국 및 기관이 우려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사무소/부서가 본부의 비교우위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li> <li>• 본부가 개입하는 부분이 비교우위 영역과 일치하는가?</li> </ul>		○
	직원역량 및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 및 채용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앙정책이 있는가?</li> <li>• 본부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무실 및 사업팀 내 공석이 있는가? 공석 보충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li> <li>• 기술 자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있는가?</li> <li>• 현지사무소 및 부서에 사업관리팀이 마련되어 있는가?</li> <li>•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 수 및 직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사무소와 사업 관련 기관은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li> <li>• 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 보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가?</li> </ul>		○
프로그램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한 목표체계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는 DFID 로그프레임과 완전히 일치하는가?</li> <li>•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은 무엇인가?</li> <li>• 현지에서 사업 결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은 충분한가?</li> <li>• 사업 위험은 어떻게 관리 및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가?</li> <li>• 사업수행과정에서 특정 위험 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시행하였는가?</li> </ul>		○	
재정 안정성	재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FID에 공유하는 재정 데이터는 무엇이며, 몇 회 보고하고 있는가?</li> </ul>		○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 또는 부패 혐의 발생 시 공개정책은 무엇인가?</li> </ul>	○	

구분		예시 질문	평가대상 및 유형	
평가 기준	평가 세부 항목		중앙평가	현지사무소 실사평가
	적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사무소의 효율적 재정 사용을 위한 노력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 (수수료 기준, 가격비교표 등)</li> <li>• 간접비로 처리된 프로젝트 비용은 합리적인가?</li> </ul>		
	정책, 절차 및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재무 관리 및 조달정책이 면제되는 예외 사항은 무엇인가?</li> <li>• 과거 해당 지역사무소 및 팀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가?</li> </ul>		○
하위 파트너	기관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기구 본부는 수혜국 정부에 대한 자체 역량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절차를 갖는가?</li> <li>• 수혜국 정부의 대출 또는 기여금의 적절한 사용을 보고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li> <li>• 사업예산 사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정 수단은 무엇인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사무소는 하위 파트너 선정 및 평가를 위한 강력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었는가?</li> <li>• 하위 파트너는 이전에 해당 다자기구와 협력한 경험이 있는가?</li> <li>• 하위 파트너의 실사 평가 결과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공여국과 논의하였는가?</li> <li>• 하위 파트너의 이행 능력이 예상보다 저조한 경우, 대처방안이 있는가?</li> </ul>		○
	수행체계, 계약,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사무소 내 하위 파트너의 재무 및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량 및 제도는 무엇인가?</li> <li>• 외부 감사 보장조치는 무엇인가?</li> </ul>	○	○
	사기, 뇌물수수, 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 뇌물, 및 부패 대응 정책을 하위 파트너에게 전달한 기록이 있습니까? 또한 대응 정책의 실행방안은 무엇인가?</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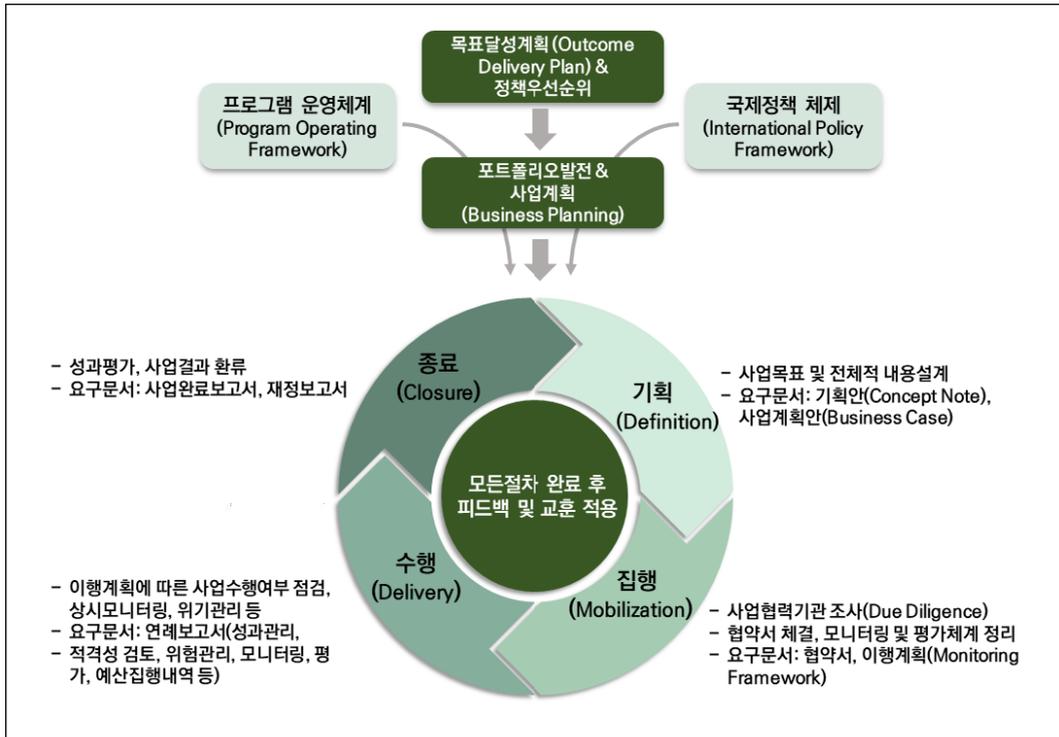
자료: DFID(2013)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1.2.2. 다자성양자 협력사업 수행 절차<sup>12)</sup>

○ 영국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 수행 절차는 차원규 외(2020)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양자사업의 수행 절차와 같으며, 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자사업에서의 유의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함.

<sup>12)</sup> 본 절은 FCDO(2021)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그림 5-2〉 FCDO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절차



자료: FCDO(2021), DFID(2020) 토대로 저자 정리.

### 가) 기획(Definition)

○ ‘기획(Definition)’은 FCDO 및 영국의 주요 정책 및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사업주제를 선정하고 목표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FCDO에 협력을 요청한 국제기구와 함께 사업수행의 근거, 사업수행 방법 등을 마련함.

- 특히 FCDO는 구체적인 기대효과 및 목표치 설정을 위해 기초선조사(Baseline)와 논리 모형(Logframe) 작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음.

○ 본 단계에서 협력기구가 제출해야 할 문서는 기획안(Concept Note), 사업계획안(Business Case)임. 기획안은 사업내용, 예산에 따른 사업 집행계획, 목표 달성 및 위험관리 방안 등 사업 전 과정 집행방안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사업계획안에서는 사업 내 활동별 목표 달성 방안 및 전략 등 세부 사항을 작성함.

- POF에서 명시했듯이 다자사업 중 핵심 기금 형태의 협력사업의 경우 논리 모형과 기획안 작성이 필수가 아님. 단, 기획안의 경우 협의의사록으로 대체가능 하나, FCDO가 사업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다자기구 측에서 제출하기도 함.

나) 집행(Mobilization)

- ‘집행(Mobilization)’은 협력대상 다자기구의 실사를 평가하고 각 협의체의 책임과 명확한 사업수행방식,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대상 사업에의 영국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책임 명시 등에 관한 내용을 협의 후 약정을 체결하는 단계임.

- 다자기구 실사 평가는 위 기술한 실사 평가 가이드(Due Diligence Guide)에 따라 진행되며, 과거 사업참여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 본 단계에서 작성될 문서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또는 기여 약정(Contribution Arrangement)과 모니터링 수행체계(Monitoring Framework)임. UN 산하 기구 및 국제개발은행과 협력하는 경우, 영국 정부 차원에서 해당 기구 본부와 이미 기본 약정(Framework Arrangement)을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별 기여 약정만 체결.

〈표 5-10〉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협력기구별 협의서 형식

협력기구	협의 형식
다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기본 약정(Organizational Framework Arrangement)에 근거한 ‘기여 약정(Contribution Arrangement)’</li> <li>• 기여금과 관련 없을 때는 FCDO 양식의 MOU 체결</li> </ul>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CDO 기금으로 EU가 사업수행 시: EU 이관협정(Transfer Agreement)</li> <li>• EU 기금으로 FCDO가 사업수행 시: 위임협정(Delegated Agreement)</li> </ul>
UN 다 공여국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행정 약정(Standard Administrative Arrangement)(UN)</li> </ul>

자료: DFID(2019: 79-80).

- 기여 약정은 기구별 조직 기본 약정과 POF 규정을 근거로 FCDO에서 양식을 작성하며, 세부 내용은 다자기구와 협의하여 결정함.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또는 FCDO 데이터베이스에서 열람 가능한 5~6개 사업의 약정문을 토대로 영국의 다자협력 기여 약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함.

- 영국 약정문은 △사업 개요 외에 △기여금 지급방식 및 조건, △약정 근거, △재정 및 위험관리방안, △계약변경 및 해지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함. FCDO는 약정문 내 영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서 공여국의 개입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과 관련하여 협력대상 국제기구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있음.
  - 기여금은 영국 파운드(£)로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되, 협력대상으로부터 지출명세, 미집행금액, 지급신청액, 성과지표 달성도 등의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구함.
- 또한 영국은 수혜자에게 사업성과를 최대한 전달하고 사업수행 중 위험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다자협력사업에서도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협력기구의 사업 수행도가 저조하거나, 담당 직원의 재정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할 것을 국제법 근거로 명시함.
  - 특히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동일한 국제기구에 도움 요청이 어려울 상황을 대비하여 영국 측의 긴급통신망을 별도로 알림.
- 다자사업과 달리 다자성양자 사업일 경우, 협력기구는 ‘조직 기본 약정’에 따라 수원국에서 사업 홍보 시 영국 FCDO를 언급하고 로고를 사용할 것을 요청함.
- 이외 제출보고서의 내용, 기한 등 세부 과업 내용은 ‘Fund proposal’로 작성하거나, 참조문서로 붙임. FCDO의 약정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됨.

〈표 5-11〉 FCDO의 다자성양자 사업 기여 약정 주요 내용 정리

구분	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예산, 사업 기간, 약정금액 지급계획, 계약 관련 행정 문의 연락처 등
2. 지급방식	• 다자기구와 협의 결과에 따라 분할 및 일괄 지급 • 영국 파운드(UK Pound)로 계좌이체되며, 다자기구의 사업에 대한 책임은 분담금 수령 후에 발효됨
3. 지급조건	• 분담금 지급 일정에 맞추어 지급신청서 제출: 1) 내용 약정에 따라 선지급 받은 금액 명세(영국 파운드 및 미국 달러 둘 다 기재), 2) 지출명세 및 미사용 금액 (USD), 3) 지급신청금액, 4) 합의된 성과지표 달성도 • 지급 일정은 FCDO와 다자기구의 상호 동의의 아래 수정될 수 있음 • FCDO는 다자기구의 사업 수행도에 따라 지급액을 증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4. 약정 근거	• FCDO와 다자기구 본부 사이 체결된 Framework Arrangement를 기반으로 하며, Framework Arrangement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협의함

구분	내용
5. 재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여금은 약정서 내 명시된 사업 종료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하며, 다자기구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미사용 기여금을 FCDO에 통지함</li> <li>미사용 기여금은 계약서 내 명시된 계좌로 FCDO에 전액 환수함</li> <li>만일 사업 종료 후 미사용 기여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다자기구는 미사용 기여금의 사용기한을 DFID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사용 기여금은 본 약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함</li> </ul>
6. 사업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정서는 약정 대상 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li> <li>다자기구는 본 약정서에 따라 FCDO가 기여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중대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FCDO 해당 담당자에게 알려야 함.</li> </ul>
7. 계약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약정은 어느 한 기관이 협의 대상 기관에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음</li> <li>서면 통지를 받은 협의기관은 사업수행을 절차대로 완료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모든 조치를 시행함</li> <li>FCDO가 다자기구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수행 중인 사업을 질서정연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미사용된 기여금을 활용할 수 있음. (최종보고서 작성, 인건비, 계약금 결산 등)</li> </ul>
8. 리스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적착취 학대,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강력한 조치 이행 및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처벌 약속</li> <li>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성폭력, 뇌물수수, 부패, 사기 등)가 본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UNDP의 관련 보고가 FCDO와의 협력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다자기구는 즉시 'reportingconcerns@FCDO.gov.uk'에 통보함</li> <li>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투쟁과 관련 활동 자금조달 방지를 확고히 함</li> </ul>

자료: 저자 작성.

#### 다) 사업수행(Delivery)

○ ‘사업수행(Delivery)’단계에서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수행기구와 상시 소통하여 모니터링 활동에 집중함(차원규, 2020). 사업수행기구는 △사업수행도 평가 및 진행 추이, △실행예산 적격성, △교훈 및 문제 발생에 대한 대안, △위험 및 재정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등을 포함하여 연간보고서를 FCDO에 전달해야 하며, FCDO의 사업담당자는 이를 검토 후 수행기구에 의견을 전달함.

○ 사업평가는 국제기구 측의 절차 및 형식에 따라 실시하되, 영국 독립 원조 평가위원회(ICAI)에서 자체적으로 다자성양자 사업을 종합하여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ICAI, 20113).

#### 라) 종료(Closure)

○ 약정한 일시에 맞춰 사업 종료 후, 사업수행기구는 사업 최종보고서를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최종 재무 보고서는 종료일로부터 18개월 이후까지 제출함. FCDO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사업 및 수행기구에 대한 종료평가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신규사업 수행 시 활용함.

## 2. 호주

### 2.1. 호주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 현황

#### 2.1.1. 호주 다자 개발협력 사업 개요

○ 호주의 개발원조는 2013년 개발원조 총괄기관인 AUSAID가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의 프로그램으로 통합된 이후 독립된 기능보다 외교 통상 정책 일부로서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차원규 외, 2020 : 47-50).

- 호주의 ODA 규모는 2016년 약 33억 달러에서 2020년 26달러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전체 ODA 규모에서 양자 비중은 2016년 70%에서 2020년 76%로 늘어난 추세임.

○ 다자성양자 원조는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함께 사업 가시성 확보, 국제기구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 활용, 행정비용 절감,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가지원, 양자원조 소외국가 지원 등을 위해 실시됨. 2018년에 5.9억 달러(19%)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금액을 달성했으며, 평균 약 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표 5-12〉 2016~2020년 호주 양자-다자별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지출총액, %

항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합계	금액	3,277.52	3,035.96	3,149.00	2,888.43	2,562.62
양자	금액	2,290.45	2,412.29	2,550.38	2,228.15	1,955.13
	비율	70%	79%	81%	77%	76%
다자	금액	987.07	623.67	598.62	660.27	607.49
	비율	30%	21%	19%	23%	24%
다자성 양자	금액	577.24	482.93	592.11	511.22	-
	비율	18%	16%	19%	18%	-

자료: 김종섭(2020), OECD Stats. [DAC 1](<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2. 01.31)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0년은 추정치(2020년 다자성양자 자료 없음).

○ 2019년 호주의 분야별 다자 개발협력 규모는 긴급구호가 1.2억 달러(25%)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 및 시민사회, 교육 등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기타 다분야, 식량원조 순으로 규모가 크게 나타남. 이는 전반적으로 영국과 유사하게 다자 개발협력이 효과적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임.

〈표 5-13〉 2019년 호주 분야별 다자 개발협력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지출총액, %

순위	분야	지출액	비중
	분야 전체	467.79	100%
1	긴급구호	119.08	25%
2	정부 및 시민사회 지원	75.91	16%
3	교육 인프라 및 서비스	37.87	8%
4	기타 다분야	35.54	8%
5	식량원조	34.49	7%

자료: OECD Stats. 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작성.

### 2.1.2. 농업 분야 다자 개발협력 사업 정책 및 현황

○ 농업은 호주 개발원조 정책의 우선순위 분야로, 호주 정부는 2015년에 ‘농업, 어업, 물 분야 원조 투자전략(DFAT, 2015)’을 수립함. 해당 전략의 목표는 △농업생산성 향상, △빈곤층 소득증대, △식량안보 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세 가지 중점분야를 설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5-14〉 호주의 농업 ODA 중점협력 분야 및 목표

중점분야	주요 목표
시장 강화 (Strengthening Mark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농 및 영세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li> <li>• 농산물 무역 규모 및 가치증대</li> <li>• 국내 농업 및 식량 가치사슬 개선</li> <li>• 농업 및 식량 분야 관련 여성 참여 및 경제력 강화</li> <li>• 다양하고 영양가 높은 식량 접근성 강화</li> <li>• 국내외 농산물 자유무역 강화</li> </ul>
생산성 및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Innovating for productivity and sustainable resource 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생산성 강화</li> <li>• 다양하고 영양가 높은 식량 생산시스템 구축</li> <li>• 토지, 물, 생물학적 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관리</li> <li>• 식량 낭비 방지</li> </ul>

중점분야	주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외부충격, 자연재해, 자원 부족,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li> <li>농업혁신을 통한 여성 참여 및 혜택 강화</li> </ul>
효과적인 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 (Promoting effective policy, governance and refo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분야 사업추진환경 개선</li> <li>식량 및 농업시장 개방</li> <li>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li> <li>농업생산성 및 시장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li> <li>공공투자를 통한 농업 및 시골 인프라 개선</li> </ul>

자료: DFAT(2015)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편, 호주는 농업 분야 별도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있진 않으나 지역이나 국제사회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기구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여 시장 확대, 정책 및 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ODA 중 농업 분야는 2009년 약 3.2% 수준에서 2018년 약 5.1%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농업 분야 다자성양자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5-15〉 2015~2019년 호주 ODA 농업 분야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Current Prices,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업 전체	126.10	115.90	158.32	158.86	140.21
양자	73.13	99.0	121.23	130.95	113.31
다자성양자	16.73	8.78	24.48	29.81	28.43
다자성양자(%)	13.3%	7.6%	15.5%	18.8%	20.3%

자료: OECD Stats. 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작성.

○ 호주는 매년 소수 특정 국제기관과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다자성양자 원조의 약 48.1%의 예산이 IBRD를 통해 집행되는 반면, 2017년부터 2019년에는 태평양공동체에 연평균 30%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이는 호주 정부의 농업 분야 관련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가 부족했다고 보기보단, 사업에 대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됨.
- 한편 기구별로 민간 및 농촌 분야 발전 기금(IBRD), 생계 및 식량안보 구축(UN)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도국 농업과 직접 연관된 활동보다는 인도주의적 지원, 민간분야 발전 및 무역 활동 지원 등을 많이 실시하고 있음.

〈표 5-16〉 2015~2019년 호주 농업 분야 다자성양자 원조 수행 상위 5개 기관

단위: 백만 달러, 지출총액, %

수행기구(농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농업 분야 전체	33.26	8.78	35.8	38.90	36.08	152.82
기타 다자기구	16.53	-	7.0	7.48	6.29	37.3
	50%	-	20%	19%	17%	24%
태평양공동체 (Pacific Community)	0.17	-	11.88	10.47	10.01	32.53
	1%	-	33%	27%	28%	21%
국제금융공사(IFC)	5.94	1.65	6.74	3.18	3.20	20.71
	18%	19%	19%	8%	9%	14%
국제개발부흥은행(IBRD)	5.86	3.12	2.68	4.86	2.09	18.61
	18%	36%	7%	12%	6%	12%
기타 세계은행그룹	-	-	-	9.56	8.55	18.11
	-	-	-	25%	24%	12%

자료: OECD Stats. 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작성.

○ 지원유형의 경우,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제기구의 특정 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도별로 다양한 지원유형을 활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체적인 사업수요발굴 및 기획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국제기구의 특정 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에 정책목표를 맞추기보다는, 먼저 지역 및 국가별로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 수요들을 파악하고, 이를 다시 어떠한 방식(유형)으로 지원 및 수행할지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표 5-17〉 2012~2019년 호주 농업 분야 지원유형별 다자성양자 협력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지출총액, %

지원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다자성양자 전체	37.36	66.85	19.16	16.73	8.76	24.48	29.81	28.43
국제기구의 특정 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B03)	29.23	46.79	19.15	11.50	3.79	18.75	24.42	22.63
	78.2%	70.0%	100%	68.8%	43.2%	76.6%	81.9%	79.6%
프로젝트 원조(C03)	7.96	20.06	0.00	5.23	4.98	4.50	5.39	5.81
	14.8%	30%	0%	31.2%	56.8%	18.4%	18.1%	20.4%
기타 기술지원(D02)	0.17	-	-	-	-	1.22	-	-
	-	-	-	-	-	5%	-	-

자료: OECD Stats. 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작성.

## 2.2. 다자 개발협력 사업 운영체계 분석<sup>13)</sup>

### 2.2.1. 운영 규정 및 지침

- 호주의 ODA 사업수행 절차는 ‘원조 프로그래밍 가이드(Aid Programming Guide, 2022)’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DFAT에서 수행하는 개발협력 사업 중 핵심 기금 형태의 다자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원조프로그램 가이드에 따라 진행됨. 그러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가이드 내 다자사업에 대한 예외 사항을 두고 있어, 이를 분석하여 호주의 다자개발 협력사업 운영방식을 이해하고자 함.
- 원조프로그램 가이드(APG)는 DFAT에서 수행하는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다자성양자 또한 APG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며, 주로 DFAT 지역사무소에서 양자사업과 같이 담당하고 있음.
  - APG는 개발협력 사업 절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 문서양식, 가이드라인 등은 APG 내 링크를 통해 접속 가능함.
- APG는 사업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시행기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 유지, 성과관리를 위한 보고,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대해 강조함.
- 관리체계는 사업 주체 기관 및 사업 규모에 따라 분류됨. 사업 주체 기관에 따른 분류는 ‘DFAT-led Design’과 ‘Partner-led Design’으로 나뉘며 일반양자는 DFAT 주관, 다자성양자를 포함한 모든 다자기구와 협력하는 사업은 협력기구 주관사업으로 나뉨.
  - 협력 기관 주관사업은 사업 설계 및 수행 시 DFAT 주관사업보다 제출 문서가 간략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나머지 절차 내 의무사항은 같음.
- 사업 주체 기관에 따라 나뉜 사업은 다시 예산 규모에 따라 나뉨. 호주는 DAC 공여국 중 다자협력에서도 엄격한 재정관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정관리 체계 수립, 적격성조사, 품질인증 절차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sup>13)</sup> 본 절은 DFAT(2022)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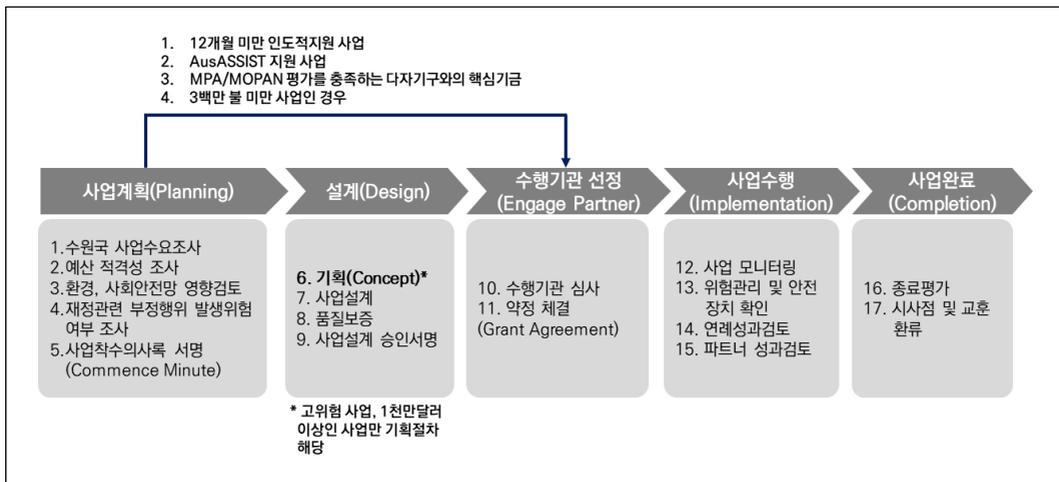
- 각 요구문서에 대한 기본양식은 DFAT 공식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되어있으며, APG 문서 내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함.

### 2.2.2. 다자성양자 협력사업 수행 절차

○ 호주의 개발협력 사업기획 및 수행 절차는 위 기술한 APG에 따라 수행되며, 사업 규모가 클수록 사업 수립 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세분되어있음. 기본적인 절차로는 ①기획(Planning), ②설계(Design), ③협력 기관 선정(Engage Partner), ④사업수행(Implementation), ⑤종료로 이뤄짐.

○ 단, 호주 재정복지부가 실행하는 12개월 미만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다자 수행평가 및 MOPAN에 적합한 다자기구와의 핵심 기금 프로그램, 행정지원 관련한 사업은 별도의 설계 절차 없이 약정을 체결함.

〈그림 5-3〉 원조 규모별 사업 설계 및 수행 절차(DFAT, 호주)



자료: DFAT(2022)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가) 사업계획(Planning)

○ 계획단계에서 DFAT은 신규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원국의 사업 수요, △예산 적격성조사, △환경, 사회안전망에의 영향, △재정 관련 부정행위 발생 여부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함. 사업의 위험 수준과 투자가치에 따라 협력 측에 요구할 품질보증 프로세스와 승인 요구사항을 결정한 후 사업 주체 기관을 결정하며, 다자성양자의 경우 다자기구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설계함.

- 호주의 사업계획 및 설계 과정은 DFAT 뿐만 아닌 UN, 다자기구 및 NGO 등 사업수행기관의 참여 및 제안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 타 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임.

○ DFAT의 현지사무소장은 본격적인 사업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 착수의사록(Commence Minute)에 서명함. 착수의사록은 사업 주체의 선정 및 계획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 설계가 시작됨.

## 나) 사업 설계 (Design)

○ 사업 설계는 △사업기획, △설계, △사업 품질보증, △약정체결의 순으로 진행됨. 기획(Concept)은 사업예산이 1천만 달러 이상 또는 위험 요소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됨.

○ 설계(Design) 단계에서 DFAT는 각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사업수행 측은 사업의 목표, 성과, 모니터링 측정 방법 등을 명시한 설계문서(Investment Design Summary)를 1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DFAT에 제출함. 설계문서 승인 후 DFAT는 해당 사업의 ODA 적격성을 재검토함.

○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은 사업수행 측이 설계한 품질보증의 내용, 즉 사업예산이 목적과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단계임. 규모가 클수록 독립평가, 동료평가, 개발원조 거버넌스 이사회(Aid Governance Board) 검토가 필요하며 품질보증 평가지침 및 매트릭스를 통해 점수를 산정함.

〈표 5-18〉 사업 규모에 따른 품질보증 평가

구분	천만 달러 이하	천만-5천만	5천만-1억	1억 이상	위험도 큼
비공식 QA	O	X	X	X	X
독립평가	선택	O	O	O	O
동료평가	선택	선택	O	O	O
AGB 검토	X	X	X	O	O

자료: DFAT(2022: 48)

- 평가는 각 항목당 6점을 만점으로 계산하며, △적절성(Relevance), △영향력(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모니터링 및 평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성평등 및 범 분야 이슈, △혁신 및 민간부문, △위험관리 및 안전장치 등 8개 부문을 기준으로 평가를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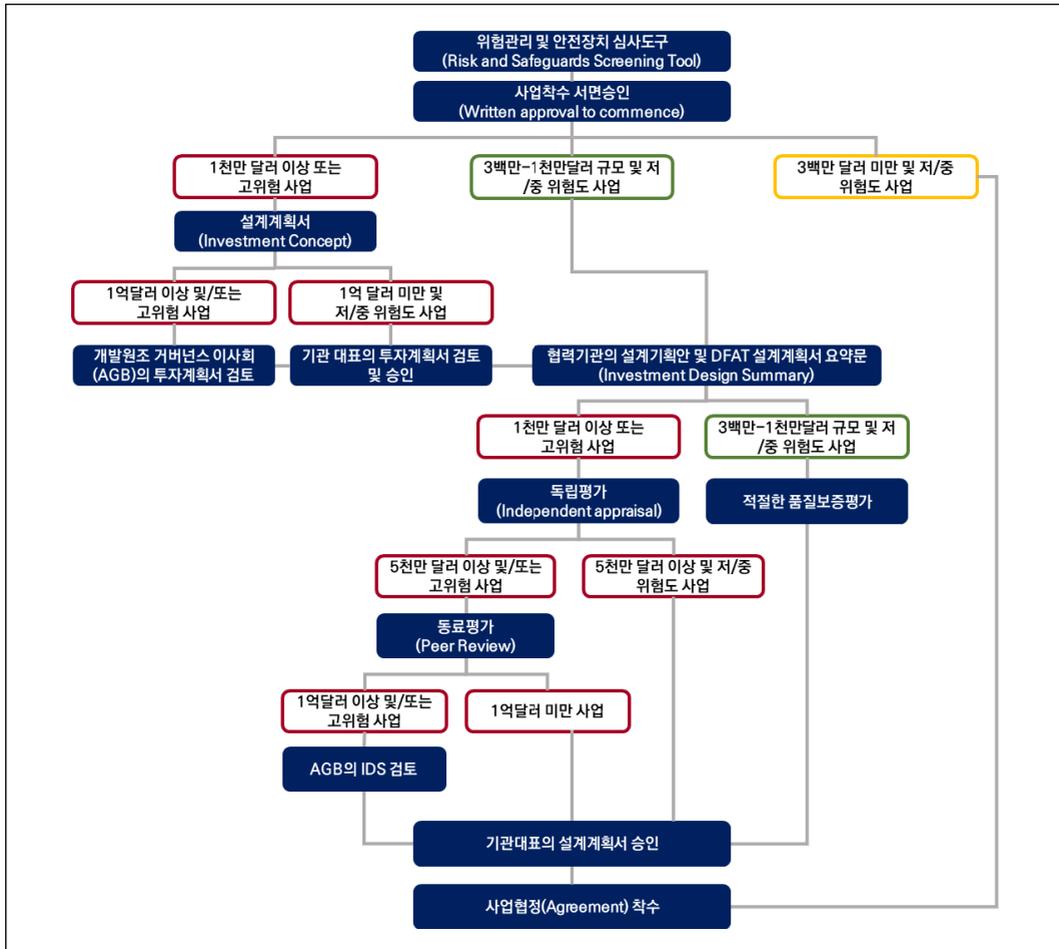
〈표 5-19〉 품질보증 평가 기준 및 내용

평가 기준	평가내용
적절성	• 사업설계문서는 왜 DFAT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
영향력	• 설계문서는 사업수행 절차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효율성	• 사업은 지원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호주 및 기타 파트너의 자원이 경제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용되는가? • 사업관리 장치 및 거버넌스는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모니터링 및 평가	• M&E 계획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과정을 검토하는데 적절한가?
지속가능성	• 사업성과가 오래 지속되며, 지역 시스템을 통해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성평등 및 범 분야 이슈	• 사업이 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의 권한 부여, 기후변화 등 범 분야 이슈에 대해 얼마나 잘 다루고 있는가?
혁신 및 민간부문	• 사업은 혁신적인 접근방식과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를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가?
위험관리 및 안전장치	• 설계문서는 사업수행 시 발생할 위험 및 대응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가?

자료: DFAT 웹사이트(<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investment-design-quality-scoring-matrix.pdf>, 검색일: 22.02.21).

- 위 단계가 모두 마무리되면 사업을 제안한 다자기구와 DFAT의 담당 대표가 사업 설계를 승인함. 사업의 규모별 발굴 및 계획절차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5-4〉 사업 규모에 따른 사업발굴 및 설계 절차도(DFAT, 호주)



자료: DFAT(2022: 50).

#### 다) 사업수행기관 선정(Engaging Partner)

○ 양자사업의 경우 사업 설계 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지만, 다자성양자는 사업을 설계한 기관이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약정을 체결함.

- DFAT의 다자성양자 사업 약정문 명은 ‘증여협정(Grant Agreement)’으로 양자사업과 동일한 양식으로 체결함. 약정문은 6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사업 규모별로 내용이 상이하나, 크게 △계약 배경, △계약 상세내용, △일반조건, △사업 활동 안 등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 호주는 다자성양자 사업도 회계 관리에서 지출 내역을 목적, 상세 내역, 영수증의 보관 및 제출 등, 엄격한 사업관리를 약정문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이 외 증여약정문 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5-20〉 DFAT의 다자성양자 사업 증여약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계약 상세	• DFAT 및 사업수행 다자기구 정보, 사업담당자, 예산, 계약일, 사업 기간, 윤리서약서, 보험, 특별조건 등	
2. 사업변경	• 사업 활동 및 목표 변경 시, 사업수행기구는 변경내용 및 근거, 효과적 사업수행 방법, 예산 변경 내역 및 변경 절차 등을 작성하여 DFAT에 제출	
3. 재정관리	예산 사용	• DFAT의 승인 없이 예산 비목 변경 불가 • 사업수행 측은 계좌 내 기금 수령 및 지출을 별도로 식별하여 재정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 • DFAT가 통지할 경우, 사업수행 측은 계정 사용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
	지급조건	• DFAT는 사업수행 측의 다른 권리 또는 구제책을 제한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측이 ①통지일 이전에 달성해야 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지급일 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제출한 보고서가 DFAT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④지출 일정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서면 통지로 자금 지출 통제를 지시할 수 있음.
	지급신청	• 수행 측은 약정 내 명시된 지급일 이전에 지급기준을 달성한 경우, DFAT에 해당 분할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함. 지급 청구는 ①계약번호 및 사업명, ②DFAT 통지 지급번호, ③ 입증자료 및 DFAT 청구 금액, ④DFAT 담당자명, ⑤사업수행 점검보고서(Milestone report), 연례보고서, 재정 지출 내역서, ⑥DFAT가 요구하는 기타정보 등을 포함함.
상환	• DFAT는 언제라도 잘못 사용된 모든 자금을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음. • 사업 종료일 30일 이전에 사업수행 측은 약정하지 않은 미사용 자금을 DFAT에 반환함. • DFAT는 사업수행 측에 회수 가능한 금액을 DFAT에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를 보낼 수 있으며, 수령 측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정금액을 전액 상환함.	
4. 사업관리	모니터링	• 사업수행 측은 DFAT와 협의 후 실제 일정을 결정하며, DFAT 담당자는 사업 활동에 관해 확인해야 함. 참석 비용은 DFAT 및 사업수행 측 각자 부담함. • DFAT는 언제든지 사업검토 및 평가수행을 위해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측은 DFAT에게 합당한 지원 제공하고 합리적 요청에 응답하며 요구하는 정보 제공을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행함.
	사업 보고	• DFAT는 사업수행 측이 보고서를 제출한 뒤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의사를 이유와 함께 통보함. 사업수행 측은 약정 내역에 따라 아래 보고서를 제출함. • 제출보고서: 점검보고서(Milestone reports), 연례보고서(매년 사업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정 보고 및 회계감사 완료 보고서(사업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종보고서(사업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시 보고(DFAT 요구 시)
5. 정보관리	지적 재산권	• 사업수행 측이 계약 후 생산한 지적재산은 모두 사업수행 측에 귀속됨. • 명시하지 않는 한 사업수행 측은 DFAT에 사용, 복제, 수정, 재생산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함.
	감사 및 평가 공여국 홍보	• DFAT는 사업수행 측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활동: 예산 사용, 자산, 사업 운영 및 절차, 보고서의 정확성, 기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여부, 아동 보호정책 준수 의무, 재정 관련 부정행위, 사업수행 측 소유자료 등 본 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DFAT가 간주하는 것에 대해 감사 및 평가할 권리가 있음. • 사업수행 측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간행물, 홍보, 공개발표, 이벤트 및 활동에서 DFAT로부터 받은 재정적 및 기타 지원을 DFAT가 승인한 방식을 활용하여 명시해야 함.
6. 위험관리	• 사업수행 측은 DFAT 직원의 재정손실, 상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한 재정적 청구를 면책함. • 이해 상충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DFAT에 통지하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국제범죄로 여기는 모든 행위, 어린이 보호, 환경과 관련한 규범을 준수함.	

자료: DFAT 웹사이트(<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stronger-systems-for-health-security-dfat-standard-agreement-template.pdf>, 검색일: 22.01.18).

라) 사업수행(Implementation)

- DFAT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하며 수행 측이 제출한 보고서인 ‘모니터링 및 평가 기준(Monitoring and Evaluation Standards)’을 참고하여 검토함. DFAT는 사업관리를 위해 △핵심 사업수행자들과 협력관계 유지, △전략적 목표와 수행과정의 일치 여부 확인, △사업수행 중 위험관리, △지원예산 및 지출 내역 검토, △정확한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증거의 문서화 등의 활동을 수행함.
- 또한 DFAT는 절차마다 수행해야 할 위험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을 검토함. 사업 실시 시 정기 위험관리 회의를 시행, 3개월 간격으로 Risk Register를 업데이트하여 평가 보고서 내 결과를 작성함. 특히 호주의 환경 및 사회안전망 정책에 따라 환경보호, 아동 및 사회적 약자, 난민 등에 대한 위험이 없는지 점검함.

〈표 5-21〉 DFAT의 사업수행단계별 위험관리 활동

단계	핵심 위험관리 활동	내용
계획(Planning)	• 위험 및 보호 장치 마련	• 사업 설계 서면 승인 시 위험 및 보호 장치 기구 및 심사 결과 첨부
설계(Design)	• 위험 및 보호 장치 업데이트 • 위험기록부 개발	• (1천만 달러 이상일 경우) 사업요청서(Concept Note)의 기관대표 서명 승인 필요 • (1천만 달러 이상일 경우) 관련 전문가를 통한 추가 위험평가 수행 • 절차 내 필요한 세부 위험평가 완료 • 사업설계문서 검토 및 승인
사업수행기관 선정(Engaging Partner)	• 위험기록부 내 사업수행자의 위험 행동 검토 결과 작성	• 기관 실사 평가(Due Diligence)
사업수행(Implementation)	• 최소 3개월마다 위험기록부 업데이트 • 필요시 개인 위험 검토	• 위험기록부 관리 및 필요시 위험 관련 확대 조사 요청 • 사업성과보고서 내 위험기록부 내용 작성(환경 및 사회 안전장치 관련 내용 포함)
사업 완료(Completion)	• 해당 없을 시 위험관리 활동 종료 • 교훈 및 시사점 확인	• 최종사업성과보고서(Final Investment Monitoring Report) 내 위험 관련 자료 모두 포함하여 작성

자료: DFAT(2022: 80).

- 모니터링 결과는 곧 평가문서인 사업성과 보고(Investment Performance Reporting) 작성에 활용됨. DFAT는 사업 동안 △연례성과검토보고서(Annual Investment Monitoring Reports, IMR), △최종예산검토보고서(Final Investment Monitoring Reports, FIMR), 파트너성과평가(Partner Performance Assessment, PPA) 등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함.

- IMR, PPA는 매년 작성하며 FIMR는 사업 종료 시 작성함. 파트너 성과평가는 수행 측이 약정 요건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다자기구가 사업수행 기관일 경우 별도로 다자기구평가(Australian Multilateral Assessment)를 함. 그러나 AUSAID가 DFAT로 통합된 이후로는 추가 활동은 없음.

#### 마) 종료(Completion)

- 사업 종료 후 DFAT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보고서 및 DFAT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종합하여 사업과 수행기관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교훈을 적용하여 신규 사업발굴 시 활용함. 사업 계획단계부터 종료까지 모든 사업 관련 문서는 호주의 ODA 관리 시스템인 AidWork에 등록해야 함.

## 3. 미국

### 3.1. 미국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 현황

#### 3.1.1. 미국 다자 개발협력 사업 개요

- 2018년에 발표된 공동전략계획(Joint Strategic Plan)에 따르면 △국가안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제사회 리더십 증진, △미국 시민들에 대한 원조효과성 및 책무성 강화를 개발원조의 방향으로 설정함. 즉, 최근 미국의 개발원조는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USAID는 개발도상국의 자조적 발전(Self-reliance)을 위한 국가 발전(Country Progress) 지원, 사업 영향력 강화(Invest for Impact)와 지속 가능한 결과(Sustain Results)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USAID, 2019). 국가별 발전 협력 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을 통해 구체화하여, 양자·다자원조 채널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

○ 미국의 다자성양자 원조의 경우, 2016년 약 61억 달러(18%)에서 2019년 75억 달러(23%)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표 5-22〉 2016~2020년 미국 양자-다자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지출총액, %

항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합계	금액	34,420.98	34,731.98	33,787.08	32,980.72	35,124.25
양자	금액	28,544.15	30,006.22	29,934.72	28,814.12	28,971.43
	비율	83%	86%	89%	87%	82%
다자	금액	5,876.84	4,725.76	3,852.36	4,166.60	6,152.82
	비율	17%	14%	11%	13%	18%
다자성양자	금액	6,092.99	6,406.55	6,379.64	7,468.35	-
	비율	18%	18%	19%	23%	-

자료: OECD Stats. [DAC 1](<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0년은 추정치 (2020년 다자성양자 자료 없음).

○ 최근 미국의 다자성양자 원조는 주로 긴급구호, 인구정책 및 모자보건, 정부 및 시민사회, 기초보건 분야 등에서 실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다른 공여국들에 비해 긴급구호에 다자성양자 원조가 집중되고 있음.

- 이는 다자성양자 원조에서 긴급구호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간주하기보다, 미국이 다자성양자 원조로 수행하기 적합한 긴급구호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5-23〉 2019년 미국 분야별 다자 개발협력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지출총액, %

순위	분야	지출액	비중
	분야 전체	6,802.93	100%
1	긴급구호	5,297.04	77.9%
2	인구정책/프로그램 및 모자보건	409.05	6.0%
3	정부 및 시민사회	231.31	3.4%
4	교육인프라 및 서비스	152.23	2.2%
5	기초보건	151.27	2.2%

자료: OECD Stats.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작성.

- 미국은 다른 공여국들에 비해 다자성양자 원조 예산 규모가 큰 만큼 많은 다자기구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총 28개의 다자기구가 미국의 농업 분야 다자성양자 원조사업을 수행함.
  - 이들 중 10개의 다자기구는 약 100만 달러 이하의 작은 규모의 지원을 받았으나 전체적으로 개별 원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따라 협력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UNICEF, UN WOMEN, UN 고등인권위원회, UN 마약 및 범죄위원회, ILO, IOM 등 범 분야 이슈를 다루는 다자기구를 통해 사업을 주로 수행함.
  - 한편 미국 농업 분야 다자성양자 원조 주요 사업으로는 소농 생산성 및 수익성 증진 기금(FAO), 농업보험 발전 프로그램(World Bank) 등이 있음.

### 3.1.2. 농업 분야 다자 개발협력 사업 정책 및 현황

- 2016년 미국 정부는 세계 식량안보 시행령(Global Food Security Act)과 세계 식량안보 전략(Global Food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식량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국의 농업 분야 개발원조 사업은 식량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차원규 외, 2020).
  - 전 세계적 식량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뿐만 아닌, 국제사회 안정 및 번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기반하였기 때문임.
- 미국 정부는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경제성장,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인간과 시스템의 회복성 강화, △충분한 영양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협력국 정부, 다자기구, 시민사회, 연구기관, 민간분야를 비롯한 모든 집단의 노력과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5-5〉 미국 정부의 세계 식량안보 전략 주요 목표 및 활동 결과



자료: U.S. Government(2021a: 25).

○ USAID는 미국 정부의 식량안보 목표를 바탕으로 전반적 사업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음(차원규 외, 2020).

- “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는 대표적 미국 농업 ODA 프로그램으로 △농업생산성 및 시장개선, △지역사회의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빈곤 감소 및 영양 개선, △기술, 상품 및 의견 교류 활성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농업 분야 양자원조는 2015년 14억 달러에서 2019년 9.2억 달러로 감소하는 추세임. 이는 당시 미국 정권에서 ODA 규모를 줄여 전체적 규모가 축소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다자성양자 또한 2015년 2.4억 달러에서 2019년 1.4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영국이나 호주와 비교해 농업 분야에서의 다자성양자 원조의 활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임.

〈표 5-24〉 2015~2019년 미국 ODA 농업 분야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지출총액,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업 양자	1,402.9	1,399.1	1,252.1	1,077.1	916.5
다자성양자	239.15	264.13	148.53	151.82	135.47
다자성양자(%)	17.0%	18.9%	11.9%	14.1%	14.8%

자료: OECD Stats. 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작성.

○ 최근 5년간 농업 분야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 중 약 39%가 CGIAR, 세계은행이 34.2% 비중을 차지하는 등, 미국은 주로 CGIAR 기금 및 세계은행과 다자성양자 원조를 시행하고 있음.

- 주로 국제기구의 특정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의 형식으로 다자성양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기존 국제기구의 농업 분야 프로그램이나 이니셔티브 중 미국의 농업 분야 정책목표와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음. 2015~2019년 미국의 농업 분야 다자 개발협력 사업 지원유형별 예산배정은 아래와 같음.

〈표 5-25〉 최근 5년간 미국 농업 분야 다자성양자 원조 수행 상위 5개 기관

단위: 백만 달러, 지출총액, %

#	수행기구(농업)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농업 분야 전체	249.0	289.2	147.8	151.1	135.9	973
1	CGIAR Fund	150.1	194.1	32.4	0	0	376.6
		60.3%	67.1%	21.9%	0	0	39%
2	세계은행그룹, 기타	60.1	30.4	43.4	107.3	91.5	332.7
		24.1%	10.5%	29.4%	71.0%	67.3%	34.2%
3	다자기구, 기타	15.0	26.3	5.0	6.0	8.2	60.5
		6.0%	9.1%	3.4%	4.0%	6.0%	6.2%
4	세계식량농업기구(FAO)	7.2	3.8	14.6	9.4	20.6	55.6
		2.9%	1.3%	9.9%	6.2%	15.2%	5.7%
5	세계식량계획(WFP)	3.5	6.1	11.7	3.0	0.3	24.6
		1.4%	2.1%	7.9%	2.0%	0.2%	2.5%

자료: OECD Stats. 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작성.

○ 미국은 최근 2017년 이후 프로젝트 원조를 늘리는 추세이나, 거의 모든 다자성양자 협력을 국제기구의 특정 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이는 미국이 농

업 분야의 다자성양자 사업을 위해 별도 신규프로젝트를 기획하기보다는 기존 국제기구의 농업 분야 프로그램이나 이니셔티브 중 미국 정책과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표 5-26〉 2012~2019년 미국 농업 분야 지원유형별 다자성양자 협력 추이

단위: 지출총액(백만 달러), %

지원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다자성양자 전체	181.8	134.1	269.2	239.2	264.1	148.5	151.8	135.5
국제기구의 특정 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B03)	178.7	123.9	263.48	234.01	262.89	142.83	145.15	127.66
	98.3%	92.4%	97.9%	97.9%	99.5%	96.2%	95.6%	94.2%
프로젝트 원조(C03)	3.13	10.14	5.75	5.14	1.25	5.7	6.67	7.81
	1.7%	7.6%	2.1%	2.1%	0.5%	3.8%	4.4%	5.8%

자료: OECD Stats. CRS Database(<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01.31) 바탕으로 작성.

## 3.2. 다자 개발협력 사업 운영체계 분석<sup>14)</sup>

### 3.2.1. 운영 규정 및 지침

○ USAID 운영정책(ADS)은 USAID의 개발협력과 관련한 정책으로 △USAID 조직 및 법무, △사업발굴, △지원, △인사관리, △사업관리, △예산 및 재무 관리 관련한 정책을 소개하는 문서로 총 200개 이상의 장으로 구성됨.

○ 이 중 ADS 308(2021)은 양자원조를 제외한 다자, 다자성양자 원조 수행에 관한 지침으로 다자기구의 정의, 약정체결 전 필요절차, 지원유형별 약정문 양식, 사업수행 시 고려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함.

- 비지정 기여 외 모든 다자 개발협력 사업은 ‘ADS 201: 프로그램 사이클 운영정책’에 따라 수행되며, 약정문 내 아래 사항을 첨부함:

-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활동, 구성요소, 자금조달 및 지출 메커니즘,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

<sup>14)</sup> 본 절은 USAID(2021b)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근거 법령 및 지원 목적
- 다자기구의 계약유형 및 선정 이유
- 사업 위험 완화 및 관리를 위한 특별조항 포함 여부

○ 또한 다자협력 시 USAID는 수행기구 선정 전 기구역량평가(Organizational Capacity Review, OCR)를 실시함. OCR는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5년마다 시행하나 USAID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시행하기도 함.

○ OCR는 해당 다자기구의 △과거 사업성과, △계약조건 준수, △사업의 효율 및 효과성, △다자기구 자체 및 미국 정부의 재정감사 및 평가 결과,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양자 개발파트너 검토 및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공통 성과 평가시스템(COMPAS) 등을 참고하여 진행함.

- 이 외 재정 관련 부정행위, 환경 및 사회 안전장치, 반인도적 행위, 테러리즘 등 범죄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음.

○ USAID의 다자협력 지원유형별 약정양식은 총 6가지로 △비용 유형 협정(Cost-Type Agreement),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원조(Project/Program Contribution), △일반기여(General Contribution), △지역개발목표협정(Regional Development Objective Agreement), △보조금협정(Fixed Amount Agreements), △단순 협정(Simple Agreement, 단기계약)임. 이 중 다자성양자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원조에 해당함.

○ USAID는 다자성양자 형태로 지원할 때 예산 세부 내역을 요구하지 않으며 품목별 지원이 필요할 경우 '비용 유형 협정'을 통해 지원함. 또한 기여금을 수표를 통한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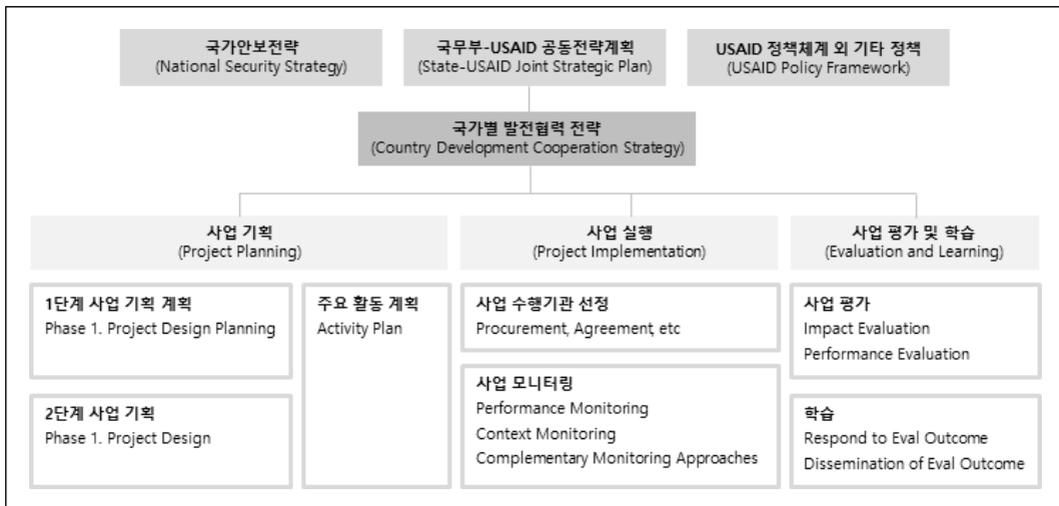
○ 프로젝트원조 협정문 내에는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빈도, 내용 등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형태일 경우 공동기금 거버넌스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수준에

서 모니터링을 시행함. 또한 ADS 308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지원 시 USAID의 기여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협정문을 통해 보장할 것을 강조함.

### 3.2.2. 다자성양자 협력사업 수행 절차

- 미국 USAID 원조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 적용 등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은 ‘ADS 201: 프로그램 사이클 운영정책’에 따라 수행되고 있음. 먼저 USAID는 국가안보 전략, 국무부-USAID 공동전략계획 등을 바탕으로 국가별로 발전 협력전략을 수립함.
  - 발전 협력전략에는 USAID가 주어진 자원과 시간 내에 사업목적, 발전목표, 수원국의 자조적 발전을 위한 접근방식 등을 어떻게 달성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국별 발전 협력전략은 통상 5년마다 갱신되고 있고, 대부분의 원조사업 기획과 활동의 기초로 활용함(긴급구호 등 제외)
- 한편 USAID는 국가별 발전 협력전략과 프로그램 단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통상 프로젝트 단위의 관리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공여국 및 다자기구들과 차별점이 있음. 구체적인 사업기획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됨.

〈그림 5-6〉 USAID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단계



출처 : 김중섭(2020).

- USAID의 사업계획은 프로젝트 디자인계획으로부터 시작함. 디자인계획은 기존 사업들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의 목적, 사업 조사계획,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예산 및 일정 등에 사항들을 정리하는 단계임
- 동 계획안이 승인되면, 다음으로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시작함. 사업계획은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에 기초하여야 하고,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작성되어야 함. 이는 약 10페이지 이내로 사업 배경, 목적, 개요,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평가 문서(PAD)에 맞춰 정리함.
  - 그러나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국별 사무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국별 사무소가 대부분의 결정 및 이행 절차를 추진하고, 본부는 국별 사무소가 작성한 협약서 등을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함.
  - 사업계획 이후, 구체적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이때 사업 집행 기간 등이 정해짐. 다자 개발협력 사업은 ADS 308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며, 약정서 또한 ADS 308 양식을 준수하되 사업 및 다자기구의 협의 내용에 따라 작성함.

〈표 5-27〉 USAID 표준약정서(Program contribution agreement) 내용

구분	내용
1.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및 구성요소, 자금조달 및 지출 메커니즘, 모니터링, 평가, 보고 절차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li> </ul>
2. 약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AID 원조 금액 및 약정 발효조건 명시 (“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is is met upon disbursement by USAID to the Recipient“)</li> </ul>
3. 약정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서 1부, 사업 개요(부록 1), 활동별 예산 (부록 2)</li> </ul>
4. 지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li> <li>• 전자 은행으로 이체, USD로 일괄 지급(계약 건에 따라 지급방식 상이)</li> </ul>
5. 보고 및 재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재무제표: 매년 6월 30일까지 회계 책임자(Head of Accounting)가 인증한 사업 산출물별 재무제표를 USAID에 제출</li> <li>• 재정은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내 재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관리함</li> <li>• 지출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따르며, 지출명세는 사업수행 국제기구의 표준감사 절차에 의해 지정된 계좌에 기록함</li> </ul>
6. 공여국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 대상 사업은 미국이 기여하는 것으로, 국제기구는 이에 대해 적절한 홍보를 해야 함</li> <li>• USAID 및 모든 공여 주체는 사업검토위원회(Project Review Board)의 자동 회원으로, 매년 12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연간 과업 계획(Annual Work Plan)을 승인할 권리를 가짐</li> </ul>

구분	내용
7. 계약 해지 및 기타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 대상 기관은 상대 기관에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완전히 해지할 수 있음. 또한 USAID는 당사자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후에도 기여금 수령자가 본 계약의 조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음</li> <li>• USAID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 종료통지서에 명시된 종료일 이전에 제삼자와 체결한 자금들을 포함하여 수령기관에 의해 성실히 이행된 자금에는 종료가 적용되지 않으며, 종료되지 않은 본 계약의 모든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함</li> <li>• 그러나 수령기관이 감소한 예산으로 인해 사업 활동 또는 그 일부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령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li> <li>• 본 계약에 따른 다른 구제책의 사용 가능성 또는 구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금액이 총기여금보다 낮은 경우, USAID는 사업수행기관(수령기관)에 기여금의 일정 금액을 환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li> <li>• 예상 완료일 기준 USAID에 귀속된 미집행금액이 본 계약 기여금의 2% 이하인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이 날짜 이후 프로그램의 지속 및 종료를 위한 활동에 잔액을 적용할 수 있음.</li> <li>• 사업수행기관은 잔액이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업 종료 2년 이내에 USAID에 보고하기로 동의함. 사업수행기관은 지출되지 않은 자금 및 미지급 자금이 있는 경우, 사업 예상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 USAID 해당 재무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함.</li> </ul>
8.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많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일관되도록 본 계약 대상자 모두 테러리즘, 특히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국제적 투쟁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음. USAID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테러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금이 사용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함. 이에 따라 수령기관은 본 계약으로 제공된 USAID 기여금이 테러리즘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로 지원되지 않도록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li> </ul>

자료: USAID(2020: 2021b)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사업 수행기관 선정 이후, 모니터링, 평가 및 학습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며, 사업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호주와 마찬가지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 등에 USAID가 지원한다는 것을 ‘ADS 320: 브랜딩과 마케팅’ 기준에 따라 표기함(차원규 2020 : 62)

○ 마지막으로 사업 결과를 신규사업 기획, 사업수행, 체계적 사업관리, 기관역량 강화에 활용함.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기획, 운영, 평가, 적용 과정은 다자성양자 원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실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됨.

## 4. 한국(KOICA)

### 4.1. KOICA의 다자협력사업 현황

- KOICA는 2006년 한-UNDP 기본협력 협정체결을 시작으로 2017년에 KOICA 국제기구협력 이행전략, 2019년 HDP Nexus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다자협력 인도지원실을 주축으로 체계적으로 수행 중임.
- 국제기구 협력사업은 크게 △다자 개발협력 사업, △지역별 다자성양자 사업, △분쟁 취약국 지원 프로그램, △국제질병 퇴치기금 프로그램 등 총 4가지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나, 2020년부터 다자협력 인도지원실에서 모두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다자 개발협력 사업(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은 HDP Nexus 분쟁 취약국과의 국제난민 또는 국내 난민의 재정착, 난민과 초청국 간의 사회적 통합강화 등 인도적 지원 관련 이슈에 대한 분야, Climate Actions를 중점으로 지원함. 지역별 다자성양자 사업(Regional Multi-bi Project)은 각 국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업을 형성하며,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중점으로 사업을 발굴함.

〈표 5-28〉 2016~2020년 KOICA의 국제기구 협력사업 결산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결산액	41,790	31,035	38,960	32,824	38,108	54,599

자료: KOICA 웹사이트([https://www.koica.go.kr/koica\\_kr/971/subview.do](https://www.koica.go.kr/koica_kr/971/subview.do)). 검색일: 2022.12.28.

- KOICA에서 농업과 관련하여 수행 중인 다자협력사업은 아래와 같음.

〈표 5-29〉 KOICA 농업 분야 국제기구 다자협력사업 현황 (2020년 기준)

수행기구	사업명
WFP	니제르 기후변화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식량안보 지원사업 ('18-'21/300만 불)
	한-WFP 식량안보 프로그램('15-'20/2,000만 불)
	니카라과 취약지역 학교급식을 통한 기후변화 복원력 구축 지원사업 ('18-'21/300만 불)
	방글라데시 취약계층 복원력 구축 및 지속 가능 식량 시스템 강화사업 ('18-'22/460만 불)
	부탄 지역농산물 활용 학교급식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개발 및 영양교육 증진사업 ('19-'23/400만 불)
	에멘, 케냐, 우간다의 최하위 취약계층 구호를 위한 식량 지원사업 ('19-'21/818만 불)
	르완다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와 성 역할 변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시장 동맹과 자산 창출 사업(SMART Project)('20-'23/800만 불)
FAO	농촌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녹색 일자리 지원사업('19-'24/600만 불)
ITC	서부 아프리카 여성 농업인 경제역량향상 지원사업('19-'23/554만 불)

자료: KOICA 웹사이트([https://www.koica.go.kr/koica\\_kr/971/subview.do](https://www.koica.go.kr/koica_kr/971/subview.do), 검색일: 2022.12.28.).

## 4.2. KOICA의 다자협력사업 수행체계<sup>15)</sup>

○ KOICA는 2014년 12월에 다자협력 인도지원실 주관으로 「국제기구협력사업 시행 세부 지침」을 수립,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기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본 장에서는 KOICA의 다자협력 수행체계를 사업 시행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농식품부의 다자협력사업 사업체계 설립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사업 시행 단계는 크게 총 네 단계: ①사업발굴, ②사업착수, ③사업관리, ④사업 종료로 분류하여 단계별 수행 내용을 정리함.

### 4.2.1. 사업발굴

○ 사업발굴단계에서는 시행 일정별로 △형성지침 수립 및 배포 △사업제안서 접수 △제안서 예비검토 순으로 이뤄짐. KOICA는 다자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 'N-2'

<sup>15)</sup> KOICA의 다자협력사업 수행체계는 KOICA 내부규정인 『국제기구사업 규정(2021.1.27. 개정)』과 KOICA 다자협력 인도지원실의 다자협력사업 수행 절차 면담 조사(2022.1.17.)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발굴은 N-2 년에서 N-1 연 1/4분기에 실시함. 사업발굴의 단계별 시행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5-30〉 KOICA 다자성양자 사업 발굴단계 절차 및 내용

단계	일정	내용
형성지침 수립 및 배포	N-2 년 상반기	1. 다자실에서 사업형성 가이드라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 수립 2. 외교부 본부, 공관 통해 국제기구 본부와 지역사무소로 송부하여 사업발굴 협조 요청 3. KOICA 현지사무소-국제기구 현지사무소, 다자실에서 파견한 조사단과 수요조사 시행 4. 수요조사 결과보고서를 다자실에 전달, KOICA 현지사무소-국제기구 현지사무소의 현장 협의 시행 후 사전협의록 작성
사업제안서 (PCP) 접수	N-2 년 하반기	5. 재외공관 혹은 해외사무소 통해 PCP 접수 6. 다자 실장 주관으로 PCP 검토위원회 개최, 국제기구사업 PCP 심사기준표를 바탕으로 검토 진행 7. 지원 대상 사업 중에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 확인 필요할 때 해외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통하여 조사 시행 또는 조사단 파견
제안서 예비검토	N-1 년 1분기	8. 예비사업 선정을 목적으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자료: KOICA(2021), KOICA 다자협력 인도지원실 면담(2022.1.17.)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형성지침 수립 및 배포) 다자협력 인도지원실은 국제기구 신규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매년 국제기구 협력사업 형성지침을 국제기구에 배포하고 있음.

- 형성지침은 정부의 △다자협력전략,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KOICA의 국제기구 협력전략,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협력 대상국의 국가개발목표 등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성지침 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5-31〉 KOICA의 국제기구 다자사업 형성지침 주요 내용

분류	내용
사업구성 권장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대상: 단일대상국</li> <li>• 사업 기간: 24개월 이상</li> <li>• 사업예산: 600만 불 이하의 프로젝트 성 사업</li> </ul>
공여국의 개입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 전반에 있어 KOICA 현지 사무소 및 본부의 개입(사전협의 등)을 협약서 내 공고화</li> <li>• 사업수행을 위해 인력 채용 시, 한국 다자협력 전문가(KMCO) 외 한국 국적자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UN 상주 조정관 인건비는 사업비 내에 포함해야 함</li> <li>• 한국 NGO의 참여계획을 포함한 사업을 우선 고려 요망</li> <li>• 대상 기구 측의 수행사무소 역량 검증 확인 필요</li> <li>• 예비조사는 KOICA 본부와 사무소가 실시하며, 기획조사는 필요할 때 국제기구가 실시함</li> <li>• 제안서 양식을 필수적으로 준수하며, 사업대상지 및 수혜자 분석을 구체화하여 작성 바람</li> </ul>

자료: KOICA(2021), KOICA 다자협력 인도지원실 면담(2022.1.17.)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자실은 지원하고자 하는 기구 및 사업 선정을 위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외공관장 혹은 국제기구 현지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KOICA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함.
- 현지에 파견된 조사단은 KOICA 현지사무소, 국제기구 현지사무소, 수원국 정부와 함께 수요조사 후 결과보고서를 다자실에 전달함. 수요조사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5-32〉 다자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보고서 내용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명, 협력 국제기구명, 지원요청액, 사업 기간, 수혜자 등
세부 내용	요청 배경, 수혜자, 사업목표, 운영체계, 투입내용, 예산 계획, 사업성과, 사업추진 일정,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기대효과 등
	특기사항 및 참고자료
	기타 이사장이 지원 대상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형성지침에 반영한 사항

자료: KOICA(2021), KOICA 다자협력 인도지원실 면담(2022.1.17.)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이후 KOICA와 국제기구의 현지사무소 간의 사전협의를 시행하며, 사전협의록은 공문 형태로 전달함.

○ (사업요청서 접수) 수요조사 및 사전협의록을 토대로 국제기구는 사업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 PCP)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 혹은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해 접수함.

- 단,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의 경우, 외교부 장관 또는 협력단 본부에 직접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음

○ (PCP 예비검토) 다자실은 접수된 제안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PCP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검토를 수행함. PCP 검토위원회는 다자실, 사업전략기획실, 현지사무소, 관련 지역실 등으로 구성함.

- PCP 심사기준은 △정책/전략 연계성, △사업 설계의 타당성, △기구 적정성이며, 이외 △KOICA 현지사무소와 관련 부서 의견, △형성지침 내 권고사항 및 기타 고려사항 등 총 다섯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PCP 심사를 진행함.

-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을 시 국제기구에 PCP 보완을 요청함. PCP 상세기준별 심사 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음.

〈표 5-33〉 KOICA 국제기구사업 (PCP) 예비검토 및 사업심사 기준표

구분	심사 항목	배점
정책/전략 연계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ICA 국제기구협력 체계 부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채널별 차별화 조건 준수 여부 / 타 채널 사업과의 중복 여부</li> <li>- (글로벌, 국별) 기구의 한국인 채용, 한국 NGO와의 협력 계획반영 여부</li> </ul> </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및 전략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의 부합도, KOICA 분야별 전략 부합도</li> <li>- (글로벌) 글로벌 주제 부합도</li> <li>- (국별) 정부 ODA 전략 부합도, 지역 전략 부합도, 국가지원계획 부합도</li> <li>- (분쟁 취약) 취약국 전략(중기 이행전략) 부합도</li> </ul> </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 대상국의 경제사회 개발 전략상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수원국 국가개발정책 및 전략의 부합도</li> </ul> </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의 추진전략 부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SDG 연계성, 기구별 전문분야, 국가지원계획 부합도</li> </ul> </li> </ul>	5
사업 설계의 타당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 여건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수요분석 및 해결방안이 적절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li> <li>- 수원국과의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는가?</li> </ul> </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자 선정 및 이해관계자 분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된 수혜자가 구체적인가? 인원수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가?</li> <li>- 수혜자 선정이 적절한가? 수혜자가 사업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가?</li> <li>- 사업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잠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 및 긍정-부정 방향, 사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존재 여부가 검토되었는가?</li> <li>- 이해관계자(사업참여자) 간 의사결정 체계, 업무 분장 및 역할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li> </ul> </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활동, 기간, 예산 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이 적절한가(국제기구명 표기 여부)</li> <li>- 문제 해결 과정(투입 활동 - 산출물 - 사업 효과 - 사업목표)의 논리성</li> <li>- 활동별 예산 및 기간 산출 근거의 적절성</li> <li>- 공동 펀딩 및 한국인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가?</li> <li>- 활동별 추진계획의 효과성 및 효율성</li> <li>* (국별) 국제기구 활용계획의 적절성</li> <li>- 사업수행자로서 국제기구 활용의 필요성, 효과성 및 효율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li> </ul> </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운용체계 조직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ICA 사무소-국제기구 사무소 간의 협력 및 보고 체계가 잘 이루어졌는가?</li> </ul> </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logframe)</li> <li>- 위험 요소 분석 및 위험 대응/관리방안의 적절성</li> </ul> </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ICA가 학습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li> </ul> </li> </ul>	5

구분	심사 항목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ICA의 가시성이 반영되었는가(홍보방안)</li> <li>- 사업 종료 후 관리방안이 마련되었는가?</li> <li>• 범 분야(젠더, 환경 등) 요소 반영의 적절성</li> </ul>	
기구 적정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구 내 한국 정부의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정부 및 KOICA와 전략적 관계가 있는가(2점)</li> </ul> </li> <li>• 기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ICA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기구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 및 현장 사무소의 적정인력 보유 여부 및 사업 보고, MOPAN 기구 평가 결과, 관리 감독체계의 적정성(3점)</li> <li>* KOICA 사업수행 결과, 협조도 및 제재(경고 등) 이력 등 기구 평가 결과(3점)</li> </ul> </li> <li>- KOICA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신규기구일 경우, 본부 및 현장 사무소의 적정인력 보유 여부 및 사업 보고, MOPAN 기구 평가 결과, 관리 감독체계의 적정성(2점)</li> </ul> </li> </ul>	10
<b>합계</b>		<b>100</b>

자료: KOICA(2021)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예비조사 시행)** 다자실은 예비검토 심사 결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시행함. 예비조사는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여건 확인,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등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함임.

- 예비조사는 KOICA 해외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실시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자실에서 외부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수원국 요청사항 및 조사계획 등 조사개요
  - 사업환경(전략, 거버넌스, 사업대상지 등)분석 및 요구분석 등 현황조사
  - 사업 효율성, 준비도, 지속가능성, 실현 가능성 등 부문별 사업형성 고려요인
  - 사업기획(효용성, 논리 모형, 성과관리방안, 사업 구성요소)
  - 사업실행방안(수행체계, 부문별 지원계획, 일정·예산·품질관리, 위험관리 등)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등
- 조사단은 KOICA 현지사무소, 국제기구 현지사무소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후 재외공관에 MOU, MM을 포함하여 전달함.
- 재외공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과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KOICA 이사장 및 지역실, 다자실에도 예비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공문 형태로 결과보고서와 함께 발송함.

○ (사업제안서 심사)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수신이 완료되면, 다자실은 최종적으로 예비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사업심사위원회를 조직함. 예비사업 선정기준은 예비검토 심사기준표와 동일하게 적용하나, △다자원조 정책 및 외교 전략, 협력단 국제기구 협력전략과의 연계성, △PD 내 사업 설계의 타당성, △사업 시행 국제기구 적정성을 포함하여 지원 사업을 선정함.

- 사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다자실에서 먼저 사업제안서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행하여 긍정 검토 및 불승인으로 사업을 분류하며, 긍정 검토에 해당하는 사업에 보완사항을 요청함.
- 국제기구 측은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사업제안서를 접수, 이후 사업심사위원회의 본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심사위원회는 사업별 사업발굴, 예비검토,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총 80점 이상 득점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사업 등록 여부 결정하며, 심사위원회의 사업선정기준 세부 사항은 다자실 관련 예산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선정함.
- 사업심사위원회장은 KOICA 내 담당 소관 이사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내·외부 심사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심사위원이 위원회의 과반으로 구성함.

#### 4.2.2. 사업착수

○ 사업착수는 사업발굴 단계를 모두 거친 사업을 이듬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으로, 세부적으로는 총 5단계: 사업협의를, 기획조사, 집행계획 수립, 사업 약정체결, 사업비 송금 등으로 이뤄짐.

〈표 5-34〉 사업착수 세부 단계별 일정 및 주요 내용

단계	일정	내용
사업협의를	N-1년 하반기	9. KOICA 이사장이 사업심사가 완료된 예비사업 중에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별도 기준 및 절차로 선정하여 대상 기구와 사업 약정체결을 위한 협의 시행
기획조사		10. 사업추진 관련 협의를 위해 기획조사를 시행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M&E 방법, 약정안 등을 협의함

단계	일정	내용
집행계획 수립	N 년 상반기	11.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다자실이 집행계획을 수립
사업 약정체결		12. 신규사업의 경우 KOICA 다자협력사업 표준 약정안을 기반으로 KOICA 현지사무소 - 국제기구 현지사무소 - 다자실 협의 후 약정체결
사업비 송금		13. 사업 약정에 따라 사업비 송금하며, 연간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함

자료: KOICA(2021), KOICA 다자협력 인도지원실 면담(2022.1.17.)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사업협의)** 본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최종적으로 외교부 및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함. 외교부는 다자협력분과협의회 및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을 의결함.

- 이후 기재부와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KOICA 이사회의 의결 및 외교부 장관 승인을 얻으면 사업 약정체결을 할 수 있음.
- 정부 예산안 확정된 이후에는 신규사업으로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해당 국제기구와 사업추진 관련 협의 시행이 가능함.

○ **(기획조사)** 기획조사 및 기초선조사는 ‘다자사업 형성지침’에 명시된 대로, 국제기구 측의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며, 필요할 때 협력단 측에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음.

- 기획조사 시 수행 내용은 △사업 추진계획 최종 확인, △추진 관련 협력단의 파트너십 관리계획(정례협의, 모니터링, 평가 등), △사업 약정(안) 협의,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 및 기초선 조사 등으로 구성됨.

○ **(집행계획 수립)** 다자실은 기획조사 및 국제기구와 협의로 집행계획(Project Document, PD)을 수립하며, 집행계획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사업추진 배경
- 협력 대상국의 해당 지원 분야 주요 정책
- 사업추진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해결과제 및 유사 사업 교훈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지원 방법 및 주요 활동 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추진계획
- 부문별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 사업평가 방법 및 기타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중점 관리사항
- 기타 범 분야 해당 여부 등
- 사업평가 방법 및 관리사항에는 우리 측 기대효과와 평가 주체에 KOICA 및 외교부를 적시하여 사업 개입허용을 확인함.

○ (사업 약정체결) 국제기구에서 다자실이 작성한 집행계획수립에 동의한 후에 사업 약정을 체결함. 사업약정서 양식은 ‘협력단 국제기구 협력사업 표준약정안’ 최신양식을 기준으로 각 국제기구와 최종 합의된 양식을 활용함.

- 사업 약정 서명 주체는 KOICA 이사장과 국제기구 본부장이나, 서명 권한을 사업 소관 임원, 부서장 또는 해외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KOICA의 국제기구협력사업 표준약정안 내 명시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5-35〉 KOICA 국제기구 협력사업 표준 약정안 세부 내용

명시 사항	내용
1. 사업수행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체결 대상 사업의 수행계획서 내용 요약</li> </ul>
2. 사업비 집행계획 및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지급원칙: 사업비는 사업 기간에 걸쳐 연간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일괄 지급함</li> <li>• 사업비 지급조건: 연간사업비는 국제기구에서 제출한 연례/반기보고서 접수 및 협력단 검토 후 연 1회 또는 2회 분할지급</li> <li>• 환율: 기준통화는 미 달러화이나, 협력단의 예산 편성, 결산 등을 위해 원화를 보조통화로 활용하며, 연도별 약정 달러 액의 정부 예산편성환율을 적용함</li> </ul>
3. 사업 진행 상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양식을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li> <li>1) 월간 보고</li> <li>2) 반기별 보고서</li> <li>3) 연례보고서</li> <li>4) 활동별 예산집행 잠정재정보고서</li> <li>5) 종합보고서(잠정 재무 보고 및 사업평가 포함)</li> </ul>

명시 사항	내용
	6) 연차재무제표, 프로젝트 최종재무제표 • 보고서 제출기한: 제출 해당 기간에서 1개월 내로 제출하되, 종합보고서는 프로젝트 종료 180일 이내에 제출
4.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 사업관리: 사업점검 및 관리는 보고서 접수 및 검토, 현장 협의 및 운영위원회 등 참여,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함 • 사업평가: 사업계획, 국제기구의 평가지침에 따라 국제기구 주도하에 평가단 구성, 평가수행 및 후속 조치 시행 • 사후관리: 협력단은 사업 종료 후 당해 사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국제기구와 협의로 기술 자문, 추가시설 및 물자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후관리비: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적정규모의 예산을 협력단에서 책정 및 운영 가능
5. 분쟁 해결	• 국제기구협력사업 관리위원회: 다자협력 사업관리 방안에 따라 국제기구협력사업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분쟁 해결
6. 기타사항	• 사업 기간 변경: 국제기구가 약정액 증액 없이 사업 기간을 연장할 경우, 당초 사업 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지 관할 KOICA 현지사무소를 통하여 공식요청 • 계약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따름 • 자문단 운영: 사업수행 및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기타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관련 사항에 관한 기술 자문을 의뢰할 수 있음

자료: KOICA(2021)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사업비 송금) 사업비는 다인실에서 약정내용에 근거하여 연 1회 지급함.

#### 4.2.3. 사업관리

○ 사업관리는 국제기구의 사업 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단계로, 주로 사업수행기구가 KOICA 측에 제출하는 보고서 검토를 통해 이뤄짐.

- 이 단계에서 다자실은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직접 소통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사업 현장실사 및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하는 KOICA 현지사무소를 통해 전달받음. KOICA의 다자사업 관리방안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5-36〉 KOICA의 다자사업 관리방안 및 내용

관리방안	내용
사업수행 보고서 접수 및 검토	• 사업 약정에 명시된 반기보고서, 연례보고서, 재정보고서, 종합보고서 등을 지정 기간별로 접수하여 「국제기구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양식 및 검토 방법을 활용하여 점검
사업수행 모니터링	• 사업 모니터링: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KOICA 현지사무소에서 최소 반기별 모니터링 수행. • 모니터링 출장비: 다자실의 예산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사무소 모니터링 출장 지원

관리방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과 보고: 착수 회의, 현장 워크숍, 보고회, 사업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개최 등, 사업의 주요 행사 개최 경우 현지 국제기구 사무소와 협의하여 행사 참석 및 결과 보고를 다자실에 공유</li> </ul>
사업계획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변경: 국제기구 측에서 사업계획변경을 원할 경우, 사업 종료일 3개월 이내에 KOICA 현지 사무소로 요청, 다자실 및 KOICA 현지사무소 논의 후 승인</li> </ul>

자료: KOICA(2021), KOICA 다자협력 인도지원실 면담(2022.1.17.)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보고서 접수 및 검토) KOICA는 사업수행기구에 정기적으로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출기한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 내로 제출하되, 종합보고서는 프로젝트 종료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각 보고서의 목적, 제출 횟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5-37〉 사업관리를 위한 보고서별 목적 및 구성 내용

보고서 명	제출횟수	목적	구성 내용
월간보고	매월 1회	KOICA 현지사무소에서 사업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진행 상황 업데이트 방식, 보고 횟수, 보고방식 등은 KOICA 현지사무소와 협의하여 결정</li> </ul>
반기보고서	6개월	KOICA 본부에서 연중 사업 현황 및 성과달성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물 및 산출물 명, 사업 주체, 사업 진척도, 예산 계획 대비 지출 작성(엑셀 파일형태, 1장 내외)</li> </ul>
연례보고서	연 1회	KOICA 본부에서 연도별 사업 현황 및 성과달성도 파악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 달성 및 예산 지출 진척 사항 점검을 중심으로 기술</li> <li>리스크관리 및 대응 방안, 모니터링과 평가계획</li> </ul>
재정보고서	총 1회	사업 결과 및 활동별 예산지출내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활동별 예산 대비 지출내용(영수증 등의 별도 증빙 없음)</li> </ul>
종합보고서	총 1회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 결과 보고	<p>〈보고서 목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개요 및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경</li> <li>운영개요</li> <li>로그 프레임워크</li> </ol> </li> <li>성과검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정 리뷰 (개발아젠다 달성, 사업수혜자 영향, 파급효과, 성 주류화, 환경 스크리닝 등)</li> <li>이행전략 리뷰(지속가능성, 참여/협의 프로세스,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품질, 책무성,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li> <li>관리 효과성 리뷰(프로젝트 설계, 산출물 시의적절성, 사업관리 및 평가, 기술 역량, 투입비용의 효과적 사용)</li> </ol> </li> </ol> </li> <li>시사점</li> </ol>

자료: KOICA(2021)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월간 보고를 제외한 모든 보고서는 다자실에 공유하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지역사무소에 보고서 제출 협조문을 전달하며 작성된 보고서는 KOICA 지역사무소를 통하여 다자실로 전달함.

- 다자실은 신청받은 보고서를 검토 후 사무소의 의견까지 취합하여 기구 측에 전달하여 사업수행에 해당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종합보고서는 KOICA 지역사무소, SDG 성과관리팀, 다자실에서 검토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국제기구에 전달하며, 국제기구는 종합보고서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종료평가 및 종료 보고를 시행함.
- 재정보고서는 종합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며, 사업 활동별로 예산지출명세를 작성함. 사업예산은 「국제기구사업 규정」의 ‘제3장 총사업비 산출 및 관리’에 따라 운용함.

#### 〈글상자 1〉 국제기구 사업 규정 제3장 - 총사업비 산출 및 관리

##### 제18조(사업예산 전용 및 조정)

- ① 연간 사업예산의 전용 및 조정은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전용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산을 전용하기 이전에 총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 ② 국제기구가 약정액의 집행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약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다.
  1. 당초 예산 목적에 부합하면서 총약정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예산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
  2. 당초 예산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이 필요하거나 총약정액의 10% 이상 범위의 예산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변경할 수 있다.

##### 제19조(잔액 활용)

- ① 국제기구 약정액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 협력단과 국제기구가 협의하여 용도를 결정한다.
- ②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 잔액을 활용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별도 약정체결 없이 기구 측으로부터 잔액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공한 교환으로 잔액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는 잔액 집행 후 협력단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20조(이자 활용)

국제기구 약정액의 이자는 사업비에 편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기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약정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다.

##### 제21조(총사업비 조정 및 시기)

- ① 총사업비는 사업내용의 변경 등에 의해 총사업비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협력단 시행령 제11조 및 「사업시행지침」 제12조에 따른다.
- ② 사업내용 변경 등에 의한 총사업비 조정은 사업 기간 내 변경이 필요한 시기에 시행한다.

##### 제22조(총사업비 조정 시 적용환율)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 기구 측에 전달하는 약정액의 증액과 감액은 미 달러화 기준으로 산출하여 조정하되, 협력단 직접 집행액의 경우 증액은 증액이 이뤄지는 해당연도 정부 예산편성환율을, 감액은 당초 총사업비 기준 환율을 각각 적용한다.

자료: KOICA(2021).

○ **(사업수행 모니터링)** 사업수행 모니터링은 현지사무소에서 주로 시행하며 모니터링 출장계획 수립 시 업무일 기준 10일 전 다자실의 사전협의를 요청함. 국제기구 측은 표준 약정안에 따라 지역사무소에 모니터링을 협조함. 필요한 경우, 현지사무소는 사업점검 및 현장관리를 위해 전담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음.

- 사업점검 결과 국제기구가 「국제기구 협력사업 규정」 제 24조의 약정내용을 위반할 경우, 협력단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업수행기구에 주의, 경고 및 사업 취소를 검토할 수 있음. 경고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국제기구협력사업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함.

**<글상자 2> 국제기구협력사업 관리위원회**

- ① 협력단은 다자협력사업 사업관리 방안에 의거, 국제기구협력사업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사업 취소 여부
  - 2. 경고 2회 이상 부과 여부
  - 3. 기타 예산 조정 여부(삭감, 이월 등)
  - 4. 향후 2년간 협력단 내 모든 채널에 대한 해당 국제기구의 사업발굴 제한 여부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이사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내·외부 심사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 심사위원은 위원회 구성의 과반이 되어야 하며, 외부위원은 타인이 대리 참석할 수 없다.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제시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항응·뇌물수수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패행위 및 징계 사항에 대한 과거 전력을 검토하여 이에 해당 없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위촉된 심사위원은 별지 제1 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업무태만 및 업무수행 능력 부족, 부패행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⑥ 외부위원 본인, 외부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친족이 관련 사업과 이해관계자일 경우, 해당 외부위원은 그 해당 위원회 활동에서 제척된다.
- ⑦ 외부위원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협력단 임직원인 내부위원이 관련 직무 중 항응·뇌물수수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패행위를 할 경우, 협력단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 ⑨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일을 단축할 수 있다.
- ⑩ 해당 국제기구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경고 내역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제기구 담당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기구의 한국사무소가 주재할 때는, 한국사무소가 참석 자격을 위임받아 대리 출석할 수 있다.
- ⑪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1.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 3. 심의 대상, 발언 요지, 의결 내용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1.1.27.]

자료: KOICA(2021).

- 그러나 위 사항은 국제기구와의 신뢰 관계에 대한 문제로 표준약정서에 명시하지 않으며 국제기구와 사업협의 과정에서 별도로 공지하며, 관리위원회 소집 등, 경고받을 경우, 향후 해당 기구와의 신규사업 선정에 참고하고 있음.

○ **(사업계획 관리)** 국제기구 측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다자협력 인도지원실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음.

- 1) 국제기구의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KOICA 현지사무소에 제출
  - 2) 지역사무소에서 검토하여 의견을 다자실에 송부
  - 3) 다자실 검토 후 내부 결재로 최종승인
  - 4) 전문, 협조문을 통하여 재외공관과 KOICA 사무소로 사업변경 안내 통보
  - 5) KOICA 현지사무소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 결과를 국제기구 사무소에 알림
- 단, 사업 기간 변경 시 연도가 계획과 같거나 사업비 내에서의 계획변경의 경우 KOICA 현지사무소 차원에서 승인 가능하며, 다자실은 병렬협조로 검토함.

#### 4.2.4. 사업 종료

○ 사업 종료 단계에서는 종합보고서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다자실에서 종료평가 출장을 시행함. 종료평가는 KOICA 사업평가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예비조사, 기획조사 등과 마찬가지로 KOICA 측에서 외부전문가와 전문업체를 고용하여 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음

- 국제기구는 협조 차원에서 종료평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KOICA의 종료평가를 ‘사업 리뷰’로 간주함. 대부분 국제기구는 기구 자체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평가를 진행함.
- KOICA의 다자사업 관리체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5-38〉 KOICA의 다자사업 관리체계 요약

구분		KOICA
다자사업 총괄기관		다자협력 인도지원실
다자사업 관리기관		KOICA 현지사무소
다자사업 규모(예산)		54,599 백만 원 ('20년 기준)
사업수행 단계별 절차	사업발굴	1. 사업형성 가이드라인 수립 2. 사업 수요조사 시행(다자실, KOICA 현지사무소, 국제기구 현지사무소) 3. 현지사무소 간 현장 협의 시행 후 사전협의록 작성 4. 재외공관 혹은 해외사무소 통해 PCP 접수 5. PCP 심사기준표 바탕으로 검토 진행 (PCP 검토위원회) 6. 예비사업 선정 (사업심사위원회)
	사업착수	7. 사업 약정체결 협의 (이사장) 8. 기획조사 시행 9. 집행계획(PD) 수립(다자실) 10. 사업 약정체결 11. 사업비 송금
	사업수행	12. 사업수행 보고서 접수 및 검토(현지사무소, 다자실) 13. 사업 모니터링(현지사무소) 14. 사업계획관리(현지사무소, 다자실)
	사업 종료	15. 종료평가(다자실)
사업문서	표준약정안	1. 사업수행계획서 2. 사업비 집행계획 및 관련 내용 3. 사업 진행 상황 파악을 위한 보고서 제출 4.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사항 5. 분쟁 해결 6. 기타
	반기 보고	• 반기별 1회 • 성과물 및 산출물 명, 사업 주체, 사업 진척도, 예산 계획 대비 지출 작성 (엑셀 파일형태, 1장 내외)
	연례 보고	• 연 1회 • 성과 달성 및 예산 지출 진척 사항 점검을 중심으로 기술 • 리스크관리 및 대응 방안, 모니터링과 평가계획
	재정 보고	• 총 1회 • 사업 활동별 예산 대비 지출명세 (영수증 등의 별도 증빙 없음)
	종합 보고	• 총 1회 • 과정 리뷰: 개발아젠다 달성, 사업수혜자 영향, 파급효과, 성 주류화, 환경 스크리닝 • 이행전략 리뷰: 지속가능성, 참여 및 협의 프로세스,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품질, 책무성,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 관리 효과성 리뷰: 프로젝트 설계, 산출물 시의적절성, 사업관리 및 평가, 기술 역량, 투입비용의 효과적 사용 • 시사점
	사업 리스크관리	• 국제기구협력사업 관리위원회

자료: KOICA(2021), KOICA 다자협력 인도지원실 면담(2022.1.17.)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5. 요약 및 시사점

- 본 장에서는 한국, 영국, 호주, 미국 등 주요 공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체계 및 절차를 검토하였음.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한국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영국, 미국, 호주 등과 비슷한 수준의 사업 및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 관리체계 구축에 참고가 될 것임. 사업단계별로 주요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사업발굴 단계에서 국제기구에 사업제안서를 요청할 때 농식품부의 사업 제안 지침을 공지할 필요가 있음.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및 전략 방향, 중점 추진 분야, 한국기업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한국인 채용 등 사업 내용적 측면과 아울러 적정 예산, 기간, 대상 국가 등 사업 형식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 예산 당국의 승인을 거쳐 사업착수 단계에 이룸. 착수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계획, 성과관리를 위한 M&E 방법 등 협정체결을 위한 협정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시행함. 협정내용에는 사업 보고 주기, 평가, 감사와 개입 등에 대한 공여국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협의는 통상 예산 당국의 승인이 난 직후인 N-1 년 하반기에 실시하며 N 년 상반기에는 협정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송금함. 이처럼 N-1 년 하반기에 기금협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사업 시작 연도에는 최대한 빨리 사업비를 송금하여, 국제기구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추진 절차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사업관리는 기본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역사무소를 통해 월별,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착수보고회, 워크숍, 콘퍼런스 등에는 한국국제협력단 본부 차원에서도 참여하고 있음. 연차별 사업보고서는 지역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며, 이에 대한 제출 여부 및 평가를 통해 차년도 사업비를 송금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사무소가 없고,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관리자

가 제한적이라 적극적으로 월별, 반기별 모니터링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그러므로 협정문 내 국제기구의 사업 보고의 의무 및 책임을 명시하여 연차보고서를 토대로 한 예산집행 현황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사업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종료 단계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은 필요시 한국 측의 전문가와 사업수행기구 측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종료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다자성양자는 사업수행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국제기구에 일임하는 형태이며 국제기구는 자체적으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 그러나 공여국 차원에서 지원 목적의 달성 여부, 지속 사업에 대한 효과성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기금협정문에 이와 같은 권리를 명시하여 종료평가를 추진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영국, 호주, 미국 등의 다자 개발협력 추진체계 및 사례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영국, 호주, 미국 등 선진 공여국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 추진체계에서 공통된 특징은 공여국의 브랜딩, 즉 국제기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여국의 기여 명시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임. 다자 개발협력 사업은 공여국이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전문성이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 외에도 국제기구를 통해 공여국의 원조가시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한국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모든 문서, 시설물, 기자재 등에 한국의 로고 및 문구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협정문 내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선진 공여국에서는 사업비의 횡령, 계약위반, 불이행 등 국제기구의 책임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 또한 향후 유사시 대처할 수 있도록 협정서 내 계약위반 및 해지에 관한 조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양자 사업뿐만 아니라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구에 대해 독자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평가시스템은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기구별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향후 협력이나 지원에 반영하고 있음. 농식

품부는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이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과 조직이 없으므로, 이러한 기구별 평가의 데이터베이스화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임. 특히, 기구별 사업수행 태도, 상호 협력 의지, 소통 및 협조체계,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 정도, 계약조건 준수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축적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또한 2020년부터 기구역량평가를 도입하여 5년 또는 수시로 기구의 과거 성과, 사업의 효율 및 효과성, 계약준수 조건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함.
- 호주는 다자 개발협력 사업에도 성과관리, 재정관리, 공여국이 감사 및 평가할 권리 등 매우 엄격한 기준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특히, 사업착수 이후 3개월마다 사업의 위험관리기록부를 작성하며 기여금의 지출명세 증빙을 요구함.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재정보고서는 사업의 종료 단계에서만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활동에 대한 영수증 및 지출 증빙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년 재정보고서를 기여금의 지출명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아래 표에서 사업 보고, 재정관리, 사업평가, 위험관리, 기여 명시 등 각국의 추진체계를 요약하여 비교하였음.

〈표 5-39〉 국별 기금협정문 구성 내용 요약

분류		국별 기금협정문 내용			
기금협정문 구성		KOICA	영국(FCDO)	미국(USAID)	호주(DFAT)
영문명		• Grant Arrangement	• Contribution Arrangement	• Program Contribution Agreement	• Grant Agreement
지급 방식	회수	• 연간 분할지급	• 연간 분할지급	• 일괄 지급	• 연간 분할지급
	통화	• 미국 달러(USD)	• 영국 파운드(GBP)	• 미국 달러(USD)	• 호주 달러(AUD)
	조건	• 연례 및 반기보고서 제출	• 지급신청서 제출	• 없음	• 분할지급청구서 제출
사업 보고		• 월간 보고, 반기보고서, 연례보고서, 종합보고서, 연례재무제표, 최종재무제표 • 보고서는 제출 해당 기간에서 1개월 내로 제출하되, 종합보고서는 사업 종료 180일 이내 제출	• 연례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재무 종료보고서(Financial closure report) • 사업종료보고서는 사업 종료 90일 이내 제출	• 연례재정보고서. 반기 또는 연례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사업 종료 6개월 이내)	• 사업수행 점검보고서 (Milestone report), 연례보고서. 사업 종료 보고서(사업 종료 30일 이내), 재무감사 완료 보고서(Acquittal reports), 비정기 보고서(요구 시)
사업관리		• KOICA 현지사무소: 보고서 검토, 현장 협의, 운영위원회 참여, 사업 실시	• 보고서 검토 및 사업 실시 • 세부 사항 명시하지 않음 * FCDO 규정에 따르면	• USAID는 계약기간 내 언제든지 자금조달 활동을 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음	• 국제기구는 DFAT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 활동, 기여금 사용 모니터링,

분류	국별 기금협정문 내용			
기금협정문 구성	KOICA	영국(FCDO)	미국(USAID)	호주(DF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ICA 본부: 보고서 검토, 사업 실사(필요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개월 이상 사업의 경우 매년 보고서 및 실사를 통해 검토, 보고서 점수가 연속으로 C, B등급을 받을 경우, 프로그램 개선 및 지속 여부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는 USAID의 사업 검토에 동의해야 하며 해당 정책 및 절차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 제공해야 함</li> <li>• 사업관리를 위한 비용은 USAID 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수행 및 개입을 허용해야 함</li> </ul>
재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국제기구 규정 및 지침에 따름</li> <li>• 국제기구에서 감사 시행</li> <li>• 사업 종료 후 미집행 분담금은 동일 기관의 후속 사업 없을 시 잔액 KOICA로 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국제기구 규정 및 지침에 따름</li> <li>• 국제기구에서 감사 시행</li> <li>• 미집행 분담금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FCDO에 통지하며 사업 종료 후 잔액 환수</li> <li>• 종료 후에 미집행 분담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사용기한을 승인받아 사업목적에 맞게 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국제기구 규정 및 지침에 따름</li> <li>• 국제기구에서 감사 시행</li> <li>• 미집행 분담금이 총분담금의 2% 이하인 경우, 사업 종료 후에도 프로그램의 지속을 위해 잔액 사용 가능. 국제기구는 사업 종료 2년 이내에 USAID에 잔액 지출 내용 보고</li> <li>• 이 외 잔액 발생 시 일정 금액 환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는 회계기록에서 자금의 수령 및 지출을 별도로 식별하여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국제기구는 기여금 사용 시 지출목적, 상세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함.</li> <li>• 미집행 분담금은 재무감사 완료 보고서와 함께 반환</li> </ul>
사업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종료일 3개월 전까지 KOICA 현지사무소에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 대상 간 협의를 통하여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문 내 명시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 대상 간 협의를 통하여 변경</li> </ul>
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의 사업평가지침에 따라 평가수행 및 평가보고서 작성</li> <li>• 국제기구는 KOICA 담당 직원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음</li> <li>• KOICA는 국제기구 협력하에 자체적으로 중간, 종료, 사후평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CDO-국제기구 본부의 'Framework Arrangement' 내에서 자체 성과 검토약정 체결</li> <li>•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일정에 맞춰 연례 검토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경우 USAID는 국제기구의 공공재정 관리 시스템, 기술적 능력, 모니터링 및 평가능력에 대한 검토 및 참여 가능 (협의 후 적절한 수준에서 실사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는 DFAT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 활동, 기여금 사용 모니터링 및 평가 및 관련 기록 감사를 허용해야 함</li> </ul>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협력사업 관리위원회 소집하여 분쟁 해결(세부 사항 명시하지 않음)</li> <li>• 부정행위 적발 시 국제법에 따라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폭력 방지 조치 및 무관용 처벌 명시</li> <li>• 부정행위(뇌물수수, 부패, 사기 등)가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FCDO 위험관리팀으로 통보</li> <li>•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테러리즘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테러리즘 방지</li> <li>• 내부통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USAID가 기여한 금액 사용과 관련하여 부패, 사기, 공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 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는 사업 관련 활동에 관련하여 체결된 모든 하도급 계약에 사기, 불법 거래, 반부패, 아동보호, 환경 및 사회적 보호 장치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해야 함</li> <li>• 협정문에 서명한 각 측은 법률이나 의회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가되지 않는 한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서로의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동의함</li> </ul>
기여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는 사업 관련 문서, 공공정보, 제3자의 적법한 통지를 통해 KOICA의 프로젝트 기여도를 인정받을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ramework Arrangement' 내 가시성 협조 관련 내용에 따라 사업 보고, 홍보 시 FCDO 언급 및 로고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는 미국이 기여한 사업에 적절한 홍보를 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없음</li> </ul>

분류	국별 기금협정문 내용			
	KOICA	영국(FCDO)	미국(USAID)	호주(DFAT)
기금협정문 구성				
계약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 대상 중 한 기관이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지 가능</li> <li>• 서면 통지를 받은 기관은 사업수행 절차를 최대한 완료</li> <li>• FCDO가 다자기구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수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미사용 기여금을 활용하게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 대상 중 한 기관이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지 가능</li> <li>• USAID는 양측의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가 본 계약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서면 통지로 계약 전체 또는 일부 종료 가능</li> <li>• USAID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 종료일 이전에 사업수행을 위해 성실히 이행된 자금은 종료가 적용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FAT는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사업을 종료할 수 있음: △사업수행기관이 DFAT의 허용기준에 따라 더는 활동할 수 없을 경우. △사업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해 협의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계약조항을 위반하고 DFAT의 서면 요청에 명시된 일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부정 거래법 위반 등</li> <li>• 해지 시 국제기구는 가능한 한 빨리 기금 사용을 중단하고 사업 해지로 인한 모든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즉시 수행함</li> <li>• 종료 후 30일 이내 재정감사 완료 보고서 및 미집행 분담금을 DFAT에 반환</li> </ul>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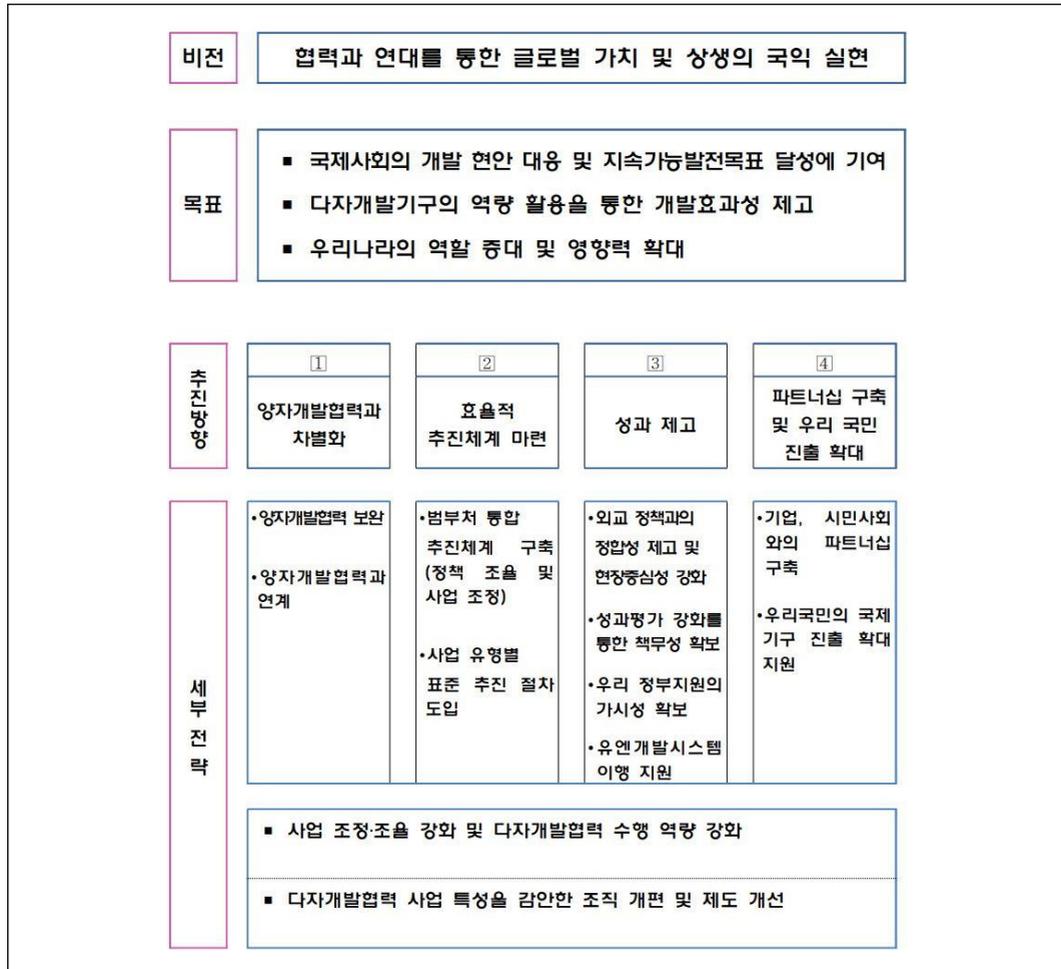
# 6

## 농림축산식품부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발전방안

-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의 비교적 후발주자로 그간 수원국과 공여국이 직접 협력하는 직접 양자 사업의 개발효과성 제고와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에 집중해왔음. 이로 인해 다자 개발협력 사업은 개발효과성의 객관적인 증거 기반의 성과관리와 효율적인 사업수행 체계가 미흡하였음.
  - 특히, 정규재원, 보충 재원 등 의무적 또는 자발적 기여금과 같은 다자사업과 달리 공여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다자성양자 사업 또한 적절한 성과관리 없이 분담금 형태로 지원되었음.
- 다자성양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에 들어 비교적 활발해졌고, 현재에도 국제사회 및 학계에서 여전히 다자성양자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그럼에도, 앞 장의 국제사회의 ODA 지원 동향에서도 보았듯이 최근 주요 공여국을 위주로 다자 개발협력, 특히 다자성양자의 확대와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이는 공여국 차원에서 다자성양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분명한 장점과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우리나라 또한 최근 다자 개발협력 사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2022년 다자 개발협력의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다자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동 전략에서 다자 개발협력의 목표를 국제사회의 현안 대응 및 SDGs 달성에 기여, 다자기구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및 영향력 증대로 설정하였음.
  - 추진 방향으로는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① 양자 개발협력과 차별화 및 보완성, ②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③ 성과제고, ④ 파트너십 구축 및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 확대를 제시하였음.
  - 세부 추진전략으로, 추진 방향별로 ① 양자 개발협력과 보완 및 연계, ② 통합추진체계 구축 및 표준 추진 절차 마련, ③ 성과평가 강화 및 지원 가시성 제고, ④ 우리 기업, 시민사회, 국민의 진출 확대 지원 등을 강조하였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기구 농업협력사업은 정부의 다자 개발협력 전략에 부합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ODA 전략 방향, 농업 분야의 ODA 특성, 국제기구의 특성 등과도 잘 조화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부(관계부처 합동, 2021)의 다자 개발협력 추진 방향의 큰 틀에서 농업 관련 주요 다자기구별 현황과 특징, 농업 ODA 다자성양자의 중점 추진 분야, UN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실천계획과의 적합성 검토, 주요 공여국의 다자협력체계 검토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세부 전략을 제시함.

〈그림 6-1〉 정부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 비전 및 목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 다자 개발협력 사업은 정규재원 기여인 다자원조와 프로그램, 프로젝트 형태로 기여하는 다자성양자로 구분됨. 국제기구의 전략적 활용 측면에서 다자원조는 공여국의 개입이 거의 불가능함.

- 정규재원에 대한 기여는 순수 다자로 용처를 특정하지 않는 非 지정기여금, 핵심 기여금임. 농식품부의 다자원조는 FAO, IFAD, WFP 등 UN 산하 농업 전문기구에 지원하는 분담금으로 매년 150~16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음.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분담금 등 재원(핵심 기여금)의 활용과 운용에 있어 전적으로 국제기구의 자율성이 보장되므로, 공여국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없음.

- 그러나 이러한 핵심 기여금의 확대는 해당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총회, 연례회 등 국제기구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여국의 영향력을 높여 국제기구를 공여국의 의도와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음.

〈표 6-1〉 다자 개발협력 분류

유형	분류	지정강도
정규재원	순수다자	비지정
프로그램	다자성양자	약한 지정
프로젝트		강한 지정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을 바탕으로 재구성.

○ 한편, 다자성양자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는 지정기여금으로 불리고 있는데, 다자기구에 기여금을 지원하면서도 다자와 달리 수혜국 또는 수혜지역, 사업주제, 사업목적 등을 지정하기 때문임.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재원의 활용과 용처에 공여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비핵심기여금으로 불리기도 함.

- 다자성양자는 지정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로 나누어지는데, 프로그램은 비교적 지정강도가 약한 주제별 기금, 기구 간 공동기금 등 사업대상국의 지정 없이 기여 분야 정도만 특정함.
-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사업대상국, 지역, 협력주제 등 강한 지정과 함께 사업수행을 국제기구에 일임하는 형태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부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에서 사업의 효과성 및 원조가시성 제고 등 전략적 접근이 가능한 다자성양자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함.

- 정부의 다자 개발협력 추진전략(관계부처 합동, 2021)의 추진 방향 및 세부 전략을 보면 다자사업보다는 다자성양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다자 개발협력 사업에서 (순수) 다자사업보다는 다자성양자 사업이 양자 개발협력의 보완 및 연계, 성과평가, 우리 국민의 진출 지원 확대 등 전략적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임.

## 1. 추진 방향 및 중점협력 분야

○ 다자성양자는 공여국이 달성하기 힘든 목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국가 및 지역 등에서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그 의의가 있음. 이는 기존 농식품부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 ODA 사업과는 차별화되는 동시에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즉,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자성양자로 수행하기 적합한 유형의 사업과 정치적 이해 및 현장 접근성 등으로 인해 사업관리 측면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1.1. 양자 개발협력과의 차별성 및 보완성

○ 정부의 다자개발협력 추진 전략(관계부처 합동, 2021)에서는 ‘국제사회의 현안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기여’를 다자개발협력의 목표로 삼고 있음. 허장 외(2020)는 한국국제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기관에서 추진한 농업 분야 ODA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한국 농업 ODA의 두 가지 목적을 도출하였음. 이에 따르면 한국의 농업 ODA는 크게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두 가지 목표로 귀결됨.

-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에는 농촌종합개발을 통한 농촌의 생활 여건 및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통한 기아 탈피 및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을 프로젝트, 정책건설형, 기타 기술협력 등의 직접양자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가 농업생산 기반, 영농기술, 영농 기계화, 가치사슬 향상 등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임.

〈표 6-2〉 농식품부 ODA 사업구성

구분	ODA 자원 유형	ODA 지원유형	사업 유형
농식품부 ODA	양자원조	기획 협력	프로젝트
			연수
			기타 기술협력
		건설팅	정책건설팅
	다자성 양자	프로젝트	
다자원조	분담금		

자료: 저자 작성

○ 차원규 외(2020)는 우리나라 농업 ODA가 지닌 전문성과 비교우위(한국형 농업 ODA 프로그램 목록)를 바탕으로 총 11개의 농업 ODA 분야를 구성하였음(〈표 4-2〉 참조).

○ 11가지의 농업 ODA 분야 중 다자기구와의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분야를 선정하였음. 이러한 다자성양자의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서 ① 원조의 필요성(개도국 농업농촌에 먼저 필요한 유형의 사업인가? ② 국제기구의 전문성(한국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가? ③ 직접 양자와의 연계 및 보완성(한국의 단독 지원보다 국제기구와 협력 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가? ④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사업수행과정이나 종료 후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중요한가? 등 4가지 기준을 고려하였음.

- 차원규 외(2020)에서 선정한 농업 ODA 다자성양자의 중점 추진 분야는 정부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 추진전략에서 제시하는 방향성과 매우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선정과정에서 직접 양자와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보완 및 연계, 사업 분야별 특성에 의한 기구 전문성 및 사업관리도 고려하여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두루 고려하고 있음.

○ 한국의 농업 ODA에서 다자성양자에 적합한 분야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농식품 안전,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 농업정책 개발, 농촌종합개발, 농산물가공 등 5개 분야였음.

- 선정된 중점협력 분야를 보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 생산과 소비의 연결을 지원하는 마케팅 및 수요처 발굴 등 유통체계 구축지원, 식품위생, 식생활 및 영양교

육 등을 포함하는 농식품 안전, 농업인력육성, 농업기술 개발 등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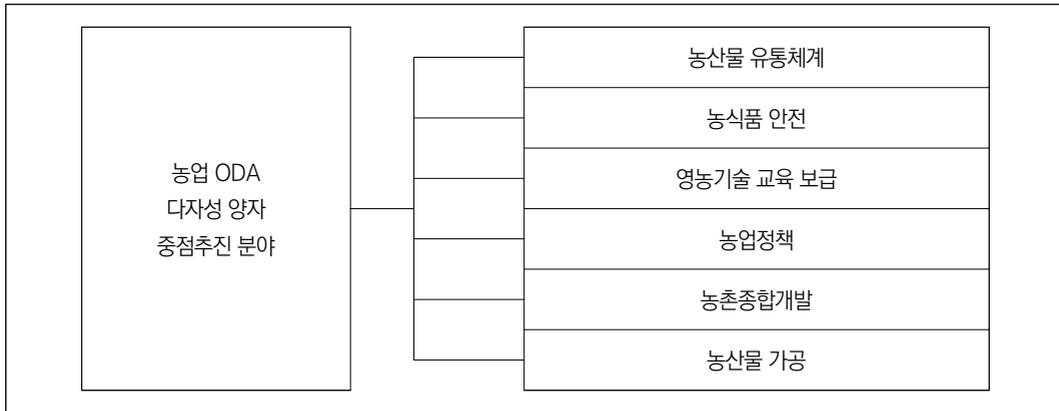
- 이러한 분야의 공통된 특성은 개도국 농민 또는 공무원의 인적 역량 제고 및 인식개선이 중요한 요소의 사업으로 장기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사업효과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사업임. 따라서 해당 분야에 지역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이 수행 및 관리에 적합한 유형의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기존의 식량 생산 증대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기아 탈피와 그간 달성하기 어려웠던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기아 탈피를 위해서 차원규 외(2020)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확보 및 기아 탈피를 지원함과 동시에 전쟁, 분쟁, 테러 지역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긴급구호와 같은 인도적 식량원조로 단기적 식량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 또한 식수 개발, 전기시설, 도로 건설, 마을 정비, 농외소득원 개발 등과 같은 생활환경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농업생산 기반 구축, 영농 기계화, 농업협동조합육성 등의 분야는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되지 못했음. 이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농식품부 ODA 사업에서 비교적 독자적인 전문성과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농업 협동조합 부문은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직접 양자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 농업 ODA 다자성양자의 중점 추진 분야



자료: 차원규 외(2020).

## 1.2. UN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실천계획과 중점 추진 분야의 연계

○ 앞에서 살펴본 농업 부문 다자성양자 중점 추진 분야의 SDGs 달성 기여도 및 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UN 푸드시스템 실천계획과 중점 추진 분야의 연계성을 분석함.

- 연계성은 농업 ODA 중점 추진 분야의 UN 푸드시스템 실천계획에의 직·간접적 기여도를 표시하고 이를 실천계획별로 점수화하였음. 연관성과 점수화는 농업 분야 국제협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6-3〉과 같음.

〈표 6-3〉 농업 ODA 추진 분야와 UN 푸드시스템 실천계획과의 연계성

농업 ODA 관련 실천계획	중점 추진 분야	농산물 유통	농식품 안전	영농기술 교육	농업정책	농촌종합 개발	농산물 가공	합계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								
기아 종식		◎	◎	○	△		○	11
건강한 식생활		○	◎		○	○	○	11
보편적 학교급식		○	◎		○	△	◎	11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축		○		◎	◎		○	10
원 헬스 접근법			△	○	◎	△		7

농업 ODA 관련 실천계획	중점 추진 분야	농산물 유통	농식품 안전	영농기술 교육	농업정책	농촌종합 개발	농산물 가공	합계
<b>자연 기반 생산슬루션 촉진</b>								
	농생태학 및 재생적 농업	.	.	○	◎	△	.	6
	지속가능한 축산	.	.	◎	○	.	.	5
	환경에 긍정적인 생산 혁신	.	.	○	○	.	.	4
	글로벌 토양 허브	.	△	◎	◎	.	.	7
	환경과 생물다양성	.	.	○	◎	.	.	5
<b>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b>								
	로컬푸드공급망	◎	○	.	○	.	○	9
	기후회복력 개발 경로	.	.	○	◎	.	.	5

자료: 저자 작성.

주: 합계는 '◎'는 3점, '○'는 2점, '△'는 1점으로 환산하여 집계한 점수임.

○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 실천 연합은 농업 ODA의 궁극적인 목표인 농업생산성 증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거의 모든 농업 ODA 중점 추진 분야에서 고른 점수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실천계획별로 보면, △기아 종식, △건강한 식생활, △보편적 학교급식, △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축 등이 매우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으며 △원 헬스 접근법은 비교적 낮은 연관성을 보임.

○ “자연 기반 생산슬루션 촉진”은 농생태학, 재생적 농업, 토양관리, 생물 다양성 등 농업 생산의 자연 및 자원 활용을 최소화, 최적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의 실천 연합보다는 연관성이 낮으며, 실천계획별로는 △ 글로벌 토양 허브, △농생태학 및 재생적 농업이 그중 높은 연관성이 있었음.

- 중점 추진 분야별로 보면, 영농기술 교육, 농업정책의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취약성,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 실천 연합은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자연재해의 빈번 등의 대응을 위한 분야로, 농업생산의 특성상 기후변화 및 환경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특히, △로컬푸드 공급망은 농산물 가치사슬, 유통체계 등과 매우 밀접하였음.

○ 종합해보면,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푸드시스템 전환의 실천계획 중 △기아 종식, △건강한 식생활, △보편적 학교급식,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축, △로컬푸드 공급망, △원 헬스 접근법, △글로벌 토양 허브 등의 실천계획 달성 및 기여를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선정한 중점 지원이 필요한 실천계획은 다자성양자의 특성, 농식품부 및 농업 분야 ODA 유형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시 다른 실천 계획보다 비교적 적합성이 높은 분야를 뜻함. 따라서 반드시 중점 지원으로 선정된 실천계획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님.

○ <표 6-4>는 UN 푸드시스템의 중점 지원 실천계획과 전문성 및 사업 분야가 부합한 기구를 제시하고 있음.

- 기아 종식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ODA의 궁극적인 목표로 FAO, WFP, IFAD, CGIAR 등의 농업 분야에 특화된 기구들로 구성함.

- 건강한 식생활은 농업생산, 가공, 유통, 농식품 정책 등 농업 관련 전문적 기구인 FAO, WFP, CGIAR 등으로 분류함.

- 보편적 학교급식은 기존 식량원조, 학교급식 등 식량 확보 및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WFP가 가장 적합할 것임. FAO, WFP, IFAD 등 타 농업 관련 기구 또한 기아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오랜 기간 활동하였지만, FAO는 농업의 생산단계, WFP는 생산 이후의 보편적 접근성, IFAD는 소농의 금융 및 경제적 접근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임.

-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축은 FAO, UNDP, WB, ADB가 수행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본 실천계획의 범위는 농업·농촌·농민에 국한되지 않고 개도국 전 국민과 전 지역을 포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협력 전반에서 활동하는 UNDP, WB, ADB 등이 적합함.

- 원 헬스 접근법은 인간, 동물,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축산 관련 개발협력

을 추진하고 있는 FAO와 CGIAR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함. 특히, CGIAR에는 축산 생산성,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축산연구소(ILRI)가 소속되어 있어 더욱 적합함.

- 글로벌 토양 허브 실천계획은 IFAD, WB, ADB, CGIAR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본 실천계획은 농업 활동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영양 불균형, 기후변화로 인한 토양침식, 개발행위로 인한 토양유실 등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함.
- 로컬푸드 공급망 실천계획은 FAO, WFP, IFAD 등 농업 전문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본 실천계획은 지역 내 농업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내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공고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표 6-4〉 중점 지원 실천계획별 수행 적합 기구

중점 지원 실천계획 \ 다자기구	FAO	WFP	IFAD	UNDP	WB	ADB	CGIAR
기아 종식	○	○	○				○
건강한 식생활	○	○					○
보편적 학교급식		○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축	○			○	○	○	
원 헬스 접근법	○						○
글로벌 토양 허브			○		○	○	○
로컬푸드공급망	○	○	○				

자료: 저자 작성.

### 1.3. 중점 추진지역<sup>16)</sup>

○ 다자성양자는 정치적 또는 지리적으로 공여국 차원에서 사업수행 및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다자기구의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음.

<sup>16)</sup> 차원규 외(2020)의 일부를 요약 및 정리함.

- 따라서 다자성양자의 우선지원 지역 및 국가를 선정함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 또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본 연구에서는 수시로 변하는 정치적 상황보다는 물리적, 지역적 접근성 등 사업수행 및 관리 측면의 어려움을 고려하였음.

○ 허장 외(2020)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농림축산식품부의 프로젝트형 ODA 사업의 대상 지역별 비중을 분석하였음. 아래 표와 같이 2010~2020년 기간 동안 수행한 65개 사업의 사업비 전체의 54%와 39%가 각각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음.

-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들 두 지역의 사업비 비중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 등 일부 국가에 사업이 매우 편중되어 있음.
- 반면, 중남미, 중동·CIS 지역에는 각각 3.4%, 5.4% 정도의 매우 낮은 사업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표 6-5〉 농림축산식품부 프로젝트형 ODA 사업의 지역별 사업비 및 비율

단위: 백만 원, %

구분	계	아시아	중동·CIS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미
사업비	122,761	66,676	6,576	47,351	232	4,126
비율(%)	100.0	54.3	5.4	38.6	0.2	3.4

자료: 차원규 외(2020) 재인용.

○ 중동 및 CIS 등의 지역은 잦은 분쟁, 테러 등으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려우며, 중남미 지역은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낮아 사업관리가 어려움. 따라서 두 지역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표 6-6〉과 같이 국제기구는 전 세계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으므로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 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의 재외공관 및 현지사무소가 부재한 지역에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이 유용할 것임.

〈표 6-6〉 농업 관련 주요 다자기구별 지역별 사무소 현황

기구명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IFAD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세네갈, 가나(7)	-	페루, 볼리비아
FAO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파키스탄, 스리랑카, 몽골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
WFP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가나, 세네갈,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CGIAR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가나, 르완다, 세네갈, 우간다, 모잠비크, 탄자니아	-	-
WB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가나, 모잠비크, 세네갈,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ADB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	-	-
UNDP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주 1: 국제기구 사무소는 지역, 국가, 연락사무소를 모두 포함(2020년 기준).

2: CGIAR는 IFPRI, ILRI, IRRI의 지역사무소만 나타냄.

자료: 차원규 외(2020)를 바탕으로 재구성.

## 2.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

○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목표 및 방향성 설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행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그간 다자성양자는 직접 양자와 비교해 수행 및 성과관리 시스템이 다소 부실하였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개발 협력사업을 관장하는 상위기관에서도 범부처 통합적 추진체계, 사업유형별 표준절차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이후 WFP를 통한 식량원조를 계기로 전체 ODA 사업비 중 다자성양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직접 양자를 상회하게 되었음.
  - 2022년 확정액 기준 다자사업과 다자성양자 사업을 포함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비중은 전체 ODA 사업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개발효과성 미흡 및 성과관리의 부재는 농식품부 ODA 사업 전체의 개발 효과 및 성과 저조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성과관리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사업수행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개선방안은 한국국제협력단을 포함한 영국, 미국, 호주 등 주요 공여국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의 검토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의 ODA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사업수행체계는 크게 사업발굴 및 기획, 사업 집행, 종료 및 사후관리 등으로 구분함.

## 2.1. 사업단계별 개선방안

- 기존 농식품부의 다자성양자 사업은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활동하는 기구의 총회, 이사회, 연례회 등 비정기 또는 비공식적 고위급, 실무급 회담을 통해 발굴되는 등, 공식적 사업발굴 및 기획 절차가 부재하였음. 기획 또한 다자성양자를 통한 한국의 전략적 접근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의식 없이 제안하는 기구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음.
  - 이러한 방식은 발굴된 사업의 공정성, 객관성,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었음. 따라서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글로벌 ODA 포럼’을 개최하여 공식적으로 다자성양자 사업을 제안받았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 및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부 도입함.
  - 그러나, 현재 사업발굴 및 평가시스템은 농식품부 차원의 사업 심의과정 및 절차, 평가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절차가 정책담당자에 따라 생략, 중복되는 등 일관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 집행단계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함.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표적인 직접 양자 사업인 기획 협력(프로젝트형) ODA 사업은 사업관리기관(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업수행 기관(PMC) 등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기금협정문체결 이후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및 계획실행 여부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임.
- 체계적이지 못한 성과관리는 사업 종료 단계에서 한국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사업 종료 이후에도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후관리 및 후속 사업, 연계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농식품부의 다자성 양자 사업은 단편적 지원에 그치고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은 다자협력 인도지원실에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수행에 대한 공여국의 개입 및 권리보장 수준, 기구의 협조체계 등 수년간 국제기구와의 합의를 통해 절차와 체계를 구축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자 개발협력 사업 수행체계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수행체계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의 상황에 적합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1.1. 발굴 및 기획 단계

- 사업수행 전반을 수행기구에 일임하는 형태의 다자성양자 사업은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 사업 내 상호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사업의 발굴 및 기획은 N-2 년부터 N-1 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음.
  - (N-2 년도 상반기) 사업형성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외교부 본부, 공관, 지역사무소로 송부하여 사업발굴 협조를 요청함.
  - (N-2 년도 하반기) 기구로부터 요청된 사업제안서를 다자협력 인도지원실(이하 다자

실) 주관하에 심사 및 검토함. 다자성양자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역사무소 또는 다자실에서 파견한 조사단과 국제기구 현지사무소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굴됨.

- (N-1 년도 1분기) 사업심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예비사업을 확정하고, 외교부에 무상원조 시행계획서를 제출함.
- (N-1 년도 하반기) 사업추진 관련 협의를 위해 기획조사를 시행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성과관리를 위한 M&E 방안, 약정안 등을 협의함.

○ 이처럼 농식품부 또한 N-2 년에 사업발굴 및 기획, 심사, N-1 년에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한 협정안 협의를 완료하여 N 년에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구 측의 사업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평가 기준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침은 사업대상국, 기간, 예산, 공여국의 개입허용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사업대상국(단일국가), 사업 기간(2년 이상), 예산(60억 달러 이하)
- 사업수행 전반에 있어 KOICA 현지사무소와 본부의 개입(사전협의 등)권리 등을 협약서 내 공고화
- 사업수행을 위해 인력 채용 시, 한국 다자협력전문가(KMCO) 외 한국 국적자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UN 상주 조정관 인건비는 사업비 내에 포함해야 함.
- 한국 NGO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 요망
- 대상 기구 측의 수행사무소 역량 검증 확인 필요
- 예비조사는 KOICA 본부와 지역사무소가 실시하며, 기획조사는 필요시 국제기구가 실시함.
- 제안서 양식을 필수적으로 준수하며, 사업대상지 및 수혜자 분석을 구체화하여 작성 요망

○ 위와 같은 내용을 농식품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의 프로젝트형 사업 기간은 약 3~4년이며 예산은 약 40억 달러로 책정
- 한국의 농업 기업, 관련 기관,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고려
- 예비조사와 기획조사는 국제기구 측에서 실시함. 농식품부의 경우 지역사무소가 없으므로 사업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기구 측에서 제출한 제안서 및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제안서 작성 시, 사업대상지의 문제 및 현황 등 사업 배경, 사업목표, 성과지표, 수혜자, 사업 일정,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사업성과의 홍보 및 확산 방안, 예산 활용계획 등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는 기구 측에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또 처음부터 지원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대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기구 측과의 신뢰 구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1차로 협력 가능한 다양한 국제기구에 간단한 개요서 형태의 PCP로 제안서를 접수, 사전심사를 통해 농식품부의 전략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 사업계획서와 자료를 받아 검토 및 심사할 필요가 있음.
- <표 6-8>은 다자 개발협력 사업제안서의 예시 평가 기준으로, 사업의 객관성, 공정성, 효과성 확보를 위해 정책/전략 연계성, 사업 설계의 타당성, 기구 적절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함.

<표 6-7> 다자성양자 사업의 심사 및 평가 기준 예시

구분	심사 항목
정책/전략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부 ODA 추진 방향과의 부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농업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해외 진출 지원</li> <li>- 일회성 하드웨어 지원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업</li> <li>- ICT, 농업통계, 농업 지식 전수 등 직접 양자 원조와 연계 및 융합 가능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 대상국의 경제 및 농업·농촌 개발 전략상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국의 개발전략 및 프로그램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가?</li> <li>- 해당 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동의 및 협력이 있는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뉴딜/디지털 뉴딜 등 정책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경제구조, 기후변화대응 등 환경 및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li> <li>- ICT, IoT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등</li> </ul> </li> </ul>
사업 설계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점 분석 및 해결과제 규명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상황과 문제에 대한 분석</li> </ul> </li> </ul>

구분	심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및 개입 필요성</li> <li>- 사업의 목적 및 해결과제가 명확한가?</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 분석 및 수혜자 선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관계자, 대상 지역 주민 등 사업이해관계자의 이해 여부 확인 및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li> <li>- 사업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수혜자의 식별 및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li> <li>-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li> </ul> </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활동, 기간, 예산 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해결 과정(투입 활동 - 산출물 - 사업 효과 - 사업목표)의 논리성</li> <li>- 활동별 예산 및 기간 산출 근거의 적절성</li> <li>- 활동별 추진계획의 효과성 및 효율성</li> </ul> </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운용체계 조직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관리 체계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구축 가능 여부</li> </ul> </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li> <li>- 위험 요소 분석 및 대응 방안의 적절성</li> </ul> </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의 적절성</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 분야(젠더, 환경 등) 요소 반영의 적절성</li> </ul>
기구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 및 현장 사무소의 적정인력 보유 여부 및 관리 감독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국 현지에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상시 관리할 상주인력이나 사무소(혹은 현지 인력)가 있는가?</li> <li>- 사업의 효과·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및 계획이 적정한가?</li> </ul> </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여 기관에 대한 보고 및 홍보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여 기관(농식품부, 농경연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계획(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연차별 보고서 등)을 가지고 있는가?</li> <li>- 농식품부 공여 마크(로고) 삽입, 홈페이지 홍보 및 브로셔 제작 등 공여국에 대한 홍보계획(원조가사성)이 적절한가?</li> </ul> </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 태세 및 지원 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과정에 공여국의 의도 및 지시를 충실히 반영하는가?</li> <li>- 사업추진을 위해 공여국과의 소통 및 협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li> <li>- 연속 지원, 과다 지원 등 기구별 지원 형평성에 부합하는가?</li> </ul> </li> </ul>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농식품부의 사업심의회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의견, 수정·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N-2 년 하반기 또는 늦어도 N-1 년도 1분기에 글로벌 농림협력위원회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무상원조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이후 외교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검토과정을 통해 다양한 수정 및 보완의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기구 측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또한 N-1 년 하반기에 기획재정부 등 예산작업이 마무리될 무렵에 지원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사업협정체결을 위한 협정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1.2. 사업 집행

- 사업 집행은 공여국과 수행기구 간의 사업 약정, 기금협정 체결로 시작됨. 약정 및 기금협정은 향후 추진될 사업의 공여국과 수행기구의 상호 역할 및 기능, 성과 관리방안, 분쟁, 위험관리 등 사업 전반의 책임과 의무를 약속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함.
  
- 한국국제협력단의 협정문과 주요 공여국의 협정 수준을 참고하여, 농식품부의 기존 기금협정문에서 추가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사업비 집행) 사업비는 연간 분할하여 지급하되, 필요시 일괄 지급이 가능, 연간사업비는 전년도 사업의 연례, 반기보고서 등 문서를 통해 목표한 활동의 달성 등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차년도 사업비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시 지원 철회 가능성 명시
  - (사업 보고) 연차보고서, 반기별 보고서(필요시), 종합보고서(사업 종료 시), 연차별 재정보고서 및 최종 재정보고서 등의 제출을 명시하고, 차년도 사업비 송금 전 농식품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명시 및 엄수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매년 공여국 측 점검단의 현장 방문 및 점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워크숍, 컨퍼런스, 보고회 등 한국 측 인사 참여, 사업관리를 위한 한국 측 공무원 파견(가능 시) 등에 관한 내용 명시
  - (공여국 브랜딩) 사업을 통해 생산 또는 지원되는 모든 건축물, 기자재, 문서 등에 한국 및 농식품부의 로고 및 마크 부착, 홍보 의무 명시
  -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필요시 종료평가(국제기구 및 한국 측 전문가 공동평가단 구성), 사업 종료 후 사업 효과의 지속을 위해 국제기구의 역할, 공여국의 기술 자문, 추가지원 등
  - (사업변경 및 철회) 사업변경을 위한 협의 절차 및 기한, 비리, 횡령, 재난, 분쟁 등 위험 대처방안, 사업추진의 미흡으로 목표 달성할 수 없을 시 지원 철회 가능성 명시 등
  
- 다자성양자는 사업의 수행, 관리, 평가를 모두 수행기구에 일임하는 형태로 공여국 차원에서는 협정문 체결 이후 사업이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연간 성과 점검을 해야 함.

-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월별 모니터링 및 수시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의 개발효과성뿐만 아니라 원조의 가시성도 확보하고 있음. 또한 수행기구로부터 반기별, 연간보고서의 제출 여부,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검토의견을 본부(다자협력지원실)에 송부.
  - 한국국제협력단 본부(다자협력 인도지원실)는 지역사무소의 협조하에 반기보고서, 연례보고서, 재정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 진척도, 성과의 달성 정도, 예산 지출 내역을 검토 및 평가하여 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함.
-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이 지역사무소가 없는 농식품부의 경우 월별 모니터링, 수시 현장 방문 등의 관리는 현실상 매우 어려움. 그럼에도 반기별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수행기구의 협조하에 사업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연 1회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1.3. 종료 및 사후관리

- 사업 종료 시 그간의 모든 성과와 추진 실적을 망라하는 종합보고서 및 재정정보보고서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종합보고서는 개발목표 달성, 수혜자의 영향 및 변화, 파급효과 등 과정 검토, 지속가능성, 파트너십, 책무성, 홍보 등 이행전략의 리뷰, 프로젝트의 설계, 산출물 실적, 관리 및 기술 역량 등 효과성 리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농식품부 차원에서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에 강력한 의지가 있거나, 사업 효과의 입증을 위해 증거 기반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행기구와의 협력하에 종료 또는 사후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는 자체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공여국이 자체적으로 종료 및 사후평가 시 상호 간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금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리 협의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한국국제협력단은 다자성양자 사업에서도 종료평가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와 전문업체를 고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행기구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종료평가를 협조 차원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평가보다는 '사업리뷰'로 간주하고 있음.
- 농식품부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다자기구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추후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훈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아울러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전파를 위한 연계사업 기획 등 후속 조치 이행방안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기구에 대한 평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이는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업수행 기구의 협력 태도, 사업의 효과성, 공여국과의 협조체계 및 의사소통 등 기구에 대한 평가자료 축적을 의미함.

- 물론 MOPAN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으나, MOPAN은 규모와 전통 있는 대형 국제기구의 전체 역량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어 농업 분야에 전문성 있는 다양한 기구에 대한 평가가 없을뿐더러, 국제기구의 지역사무소와 직접 협력하는 다자성양자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음.
- 영국은 MOPAN과 유사한 평가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다자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구에 대해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향후 협력이나 지원에 반영하고 있음. 미국 또한 2020년부터 기구역량평가를 도입하여 5년마다 과거 사업의 성과, 효율 및 효과성, 계약준수 조건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이러한 기구별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사업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은 사업성과 달성도, 우리 정책과의 부합성, 사업관리 및 수행역량, 효율적 예산집행, 책임 및 투명성, 업무협조 태도 및 의사소통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3. 성과제고 방안

-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농식품부 다자성양자의 추진 방향 및 중점 지원 분야, 효율적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외에도 사업 추진방식의 변경 및 다변화를 통한 성과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3.1. 사업기획 고도화 방안

- 다자성양자는 기구에 사업 집행의 대부분을 위탁하는 만큼, 사업발굴 및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함. 명확한 목표 의식과 이에 대한 충분한 달성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의 고도화가 필요함.
- 특히, 다자성양자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지원할 필요는 있으나 지역 접근성이 좋지 않아 사업수행 및 관리가 어렵거나, 국제기구의 사업수행 역량이 공여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 위주로 추진됨.
  - 농식품부는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이 개도국 현지의 지역사무소를 통해 사업대상지 농업·농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 따라서 기구에서 제안한 문서에 의존하여 단기간에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음. 이는 곧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농식품부에서 직접 양자 사업에만 추진하고 있는 정책컨설팅(KAPEX) 사업을 다자성양자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KAPEX 사업은 개도국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컨설팅으로, 정책개선에서 더 나아가 농식품부의 프로젝트 사업을 형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개도국 정책담당자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한국 선진 농업 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도국 농업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ODA 사업의 기획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개발 컨설팅사업을 다자성양자로 활용하고 있음. 특히, 수출입은행은 IDB, ADB, EBRD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개발 컨설팅사업을 토대로 장기적인 유상원조 사업을 기획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 농식품부 또한 국제기구와 KAPEX 등 정책 및 개발 컨설팅사업을 통해 사전에 면밀한 사업분석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협력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3.2. 지원 방식의 다변화

- 다자성양자의 사업수행유형은 크게 프로그램과 프로젝트형으로 구분되어 있음. 현재 농식품부의 다자성양자 사업은 모두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음. 프로그램 지원은 기금 설립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재원과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형태임.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재부 또는 외교부 같이 유무상원조의 주무 부처가 아닌 시행기관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음.
- 그러나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기아 탈피에 기여와 우리나라의 원조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단년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우리 쌀을 이용한 식량원조 사업”을 프로그램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원조 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FAC)에 가입하여 WFP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매년 우리 쌀 5만 톤을 개발도상국의 식량부족 해소 및 기아 탈피를 위해 지원하고 있음(김정호 외, 2018).

- 회원국은 연간 최소 의무기여(Minimum Annual Commitment) 물량을 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최소 연간 기여를 460억 원으로 시작하였음. 이는 식량원조 규모로 볼 때,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호주에 이어 6번째임.
- 최소 연간 기여의 의무 물량 및 금액은 없으나 최소기여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은 차년도 기여에 합산하여 충당해야 함. 또한 FAC 가입을 통한 최소 연간 기여는 지속적인 상시 기여로 간주하여 의무기여 수준을 감축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임.

○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지속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소한 현재의 수준의 식량원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실제로 기여 금액은 2018년 460억 원에서 2022년 520억 원 수준으로 증가<sup>17)</sup>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지속적인 식량원조는 프로젝트보다는 프로그램화를 통해 사업성과의 가시성과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WFP뿐만 아닌 타 기구를 통한 직접 현물 및 현금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지원한 WFP의 사업수행방식과 성과를 평가하여 WFP의 수행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존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프로젝트형 다자성양자 사업을 직접 양자 사업과 연계, 후속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 사업모델을 다른 지역에 확산하는 등, 사업 효과의 지속성과 파급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3.3. 다자 개발협력 사업 전담 기관의 운영

○ 다자성양자에 대한 업무는 담당자의 기존 업무 외 부수적인 일로 치부되어 사업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좌우되고 있음. 더욱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단절화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전문성 축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17) WFP 식량원조 기여 금액에는 쌀 구매비용, 가공, 유통, 운송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기여금의 증가가 반드시 최소 연간 기여의 증가는 아님.

- 특히, 농식품부 다자성양자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2018년 이전, 연간 2~3개의 사업이 추진될 때와 비교해 현재는 다자성양자가 직접 양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다자성양자의 규모는 630억 원으로, 사업비가 가장 큰 WFP를 제외하더라도 10개 이상의 프로젝트형 다자성양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소수의 담당자가 수많은 사업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임.
  
-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관리 인력 및 전문성의 부재는 농림축산식품부 ODA 사업 전체의 개발효과성 저조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사업 전담 기관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개발협력 사업은 사업착수 전 준비기간이 최소 2년, 사업착수 후 종료까지 통상 4년 정도의 매우 긴 사업주기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발굴 및 기획부터 집행, 모니터링, 종료, 평가, 모니터링 등 성과관리를 위한 큰 노력과 시간이 수반됨.
  - 따라서 안정적인 조직과 개발협력 및 농업 전문성을 갖춘 전담 기관에 일정 역할을 위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각 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연도 표기 시 해당연도 종합 시행계획을 말함)
- 관계부처 합동. 2021.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
- 권영중. 2019. “ADB STRATEGY 2030의 비전과 전략.” 『월간교통』. 한국교통연구원.
- 김정호·박문호·이경해. 2018. 『식량원조사업 추진 효율화 방안』. (사)환경농업연구원.
- 김중섭. 2013. 『KOICA 주요 다자협력 기구 적정성 평가 및 다자협력 운영체계 조사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김중섭. 2020. 『주요 공여국의 다자성 양자원조 추진체계 및 시사점』. 위탁연구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중섭·김태균·이은석·김희연·이기석·홍민희. 2013. 『KOICA 주요 다자협력 기구 적정성 평가 및 다자협력 운영체계 조사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김중섭·김태균·이은석·박소희·김보경·김대엽. 2015.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 주요 문헌 분석 및 자문』. 한국국제협력단.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9. 27.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전환 추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다자개발은행 재원 조달 방법과 절차』.
- 박재영. 2008. “한국의 다자원조 현황과 과제.” 『국제개발협력』 2008(3): 23-44. 한국국제협력단.
- 손혁상·안도경·박종희. 2013. “주요국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경수. 2016. “세계은행그룹의 발전과정과 사업분석.” 『산은조사월보』 제729호. KDB 미래전략연구소.
- 이대섭·허장·이윤정·김윤정. 2015. 『「한국형 ODA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프로그램의 심화 연구(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대섭·허장·최정만·원지은. 2018. 『SDGs 달성을 위한 농림분야 ODA 중장기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현주·박건우·김은미·지명근. 2017. “정부 부처별 공적개발원조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분석: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5(3): 175-199.
- 주동주·차문주·권율. 2012. 『한국형 ODA 모델 수립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지성태. 2014.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사업 추진체계와 전략.” 『세계농업』. 166(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차원규·박차미·윤동진·이후석·이창흠·임형준·오준석·IRRI·FAO. 2020. 『농업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다자성 양자원조 현황 및 특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차원규·허장·박차미·원지은. 2020.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의 효과적 추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국제협력단. 2021.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기구사업 규정』.
- 허장·김종선·차원규·이효정·조선미·유현주. 2020.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DB. 2014. “Project Classification System: Final Report.”
- ADB. 2019. *Strategy 2030 Operational Plans Overview*. ADB: Philippines.
- ADB. 2020. “2019 Annual Report.” ADB: Philippines.
- ADB. 2021. “2020 Annual Report.” ADB: Philippines.
- CGIAR. 2021a. *CGIAR 2030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y – Transforming food, land, and water systems in a climate crisis*. CGIAR: Montpellier.
- CGIAR. 2021b. *CGIAR 2022-24 Investment Prospectus: Pooling funds for research and innovation to transform food, land and water systems*. CGIAR: Montpellier.
- DFAT. 2015. “Strategy for Australia’s aid investments in agriculture, fisheries and water.”
- DFAT. 2022. “Aid Programming Guide.”
- DFID. 2013. “Due Diligence Guide.”
- DFID. 2019. “Smart Rules.”
- Eichenauer, Vera Z. and Bernhard Reinsberg. 2017. “What determines earmarked funding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s? Evidence from the new multi-bi aid data.”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2(2), 171-197.
- Eichenauer, Vera Z. and Bernhard Reinsberg. 2017. “What determines earmarked funding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s? Evidence from the new multi-bi aid data.”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2(2), 171-197.
- FAO. 2009. *Strategic Framework 2010-2019*. FAO: Rome.
- FAO. 2021a. “The Director-General’s Medium Term Plan 2022-25 and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2022-23.” FAO: Rome.
- FAO. 2021b. “Strategic Framework 2022-2031.” FAO: Rome.
- FCDO. 2021. “Program Operation Framework.”
- IFAD. 2016. “IFAD Strategic Framework 2016-2025 – Enabl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rural transformation.” IFAD: Rome.
- IFAD. 2020a. “IFAD’s 2021 result-based programme of work and regular and capital budgets.” IFAD: Rome.
- IFAD. 2020b. “the IOE results-based work programme and budget for 2021 and indicative plan for 2022-2023.” IFAD: Rome.
- IFAD. 2020c. “the HIPC and PBAS progress reports.” IFAD: Rome.
- IFAD. 2021. “IFAD Annual Report 2020.” IFAD: Rome.
- 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ICAI). 2015. “How DFID works with multilateral agencies to achieve impact.”

- Jarvis A, Rosenstock T, Koo J, Thornton P, Loboguerrero A, Govaerts B, Ramírez-Villegas J, Prager S D, Ghosh A, Fuglie K. 2021. “Climate-informed priorities for One CGIAR Regional Integrated Initiatives.” *CGIAR Research Program on Climate Chang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CCAFS).
- MOPAN. 2017. “MOPAN 2015-2016 Assessments – The World Bank: Institutional Assessment Report.”
- MOPAN. 2019a. “MOPAN 2017-2018 Assessments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 MOPAN. 2019b. “MOPAN 2017-2018 Assessments – World Food Programme (WFP).”
- MOPAN. 2019c. “MOPAN 2017-2018 Assessments –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 MOPAN. 2019d. “MOPAN 2017-18 Assessments – Asian Development Bank (ADB).”
- MOPAN. 2020. “MOPAN 2019 Assessments – CGIAR.”
- MOPAN. 2021. “MOPAN Assessment Report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 Reinsberg, Bernhard, Katharina Michaelowa, and Vera Z. Eichenauer. 2015. “The rise of multi-bi aid and the proliferation of trust funds.”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Foreign Aid edited by B. Mak Arvin and Byron Lew*, 527-554pp. Edward Elgar Publishing.
- Tortora, Piera and Suzanne Steensen. 2014. “Making earmarked funding more effective: current practices and a way forward.”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 Report No. 1*. OECD: Paris.
- UNDP. 2021. “Strategic Plan 2022-2025.” UNDP: New York.
- USAID. 2020. “ADS Chapter 201: Program Cycle Operational Policy, Key Requirements.” USAID. PPL.
- USAID. 2021a. “U.S. Government Global Food Security Strategy 2022-2026.”
- USAID. 2021b. “ADS Chapter 308: Agreements with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SAID. GC/A&A and PPL/DC.
- WFP. 2019. Audited annual accounts 2018. WFP: Rome.
- WFP. 2020. Audited annual accounts 2019. WFP: Rome.
- WFP. 2021a. WFP strategic plan (2022-2025). WFP: Rome.
- WFP. 2021b. Audited annual accounts 2020. WFP: Rome.
- World Bank. 2021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https://thedocs.worldbank.org/en/doc/c30b4b3fcc87ccc4002f3ba7fae24b1c-0410012021/original/IDA-Brochure-2021.pdf>>. 검색일: 2022.01.10.

World Bank. 2021b. “Annual Report 2021 – From Crisis to Green, Resilient, and Inclusive Recovery.” World Bank: Washington D.C.

World Bank. 2021c. “IDA20: An Overview – Building Back Better from the Crisis: Toward a Green, Resilient, and Inclusive Future.” World Bank: Washington D.C.

〈참고 인터넷 사이트〉

ADB 홈페이지. 〈<https://www.adb.org/>〉. 검색일: 2022. 1. 10.

AIDmonitor 홈페이지. 〈<https://www.fao.org/aid-monitor/en/>〉. 검색일: 2022. 1. 10.

CGIAR Financial Report Dashboards 홈페이지. 〈<https://www.cgiar.org/food-security-impact/finance-reports/dashboard/>〉. 검색일: 2022. 2. 10.

IFAD 홈페이지. 〈<https://www.ifad.org/en/>〉. 검색일: 2022. 1. 10.

OECD. Stat [DAC 1]. 〈<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 1. 31.

OECD. Stat CRS Database. 〈<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 1. 31.

UNDP 홈페이지. 〈<https://www.undp.org/>〉. 검색일: 2022. 2. 1.

UN Global Compact 공식 웹사이트. 〈<http://unglobalcompact.kr>〉. 검색일: 2022. 1. 10.

WFP 홈페이지. 〈<https://www.wfp.org/>〉. 검색일: 2022. 2. 1.

World Bank 홈페이지. 〈<https://www.worldbank.org/en/home>〉. 검색일: 2022. 2. 1.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Office) 웹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foreign-commonwealth-development-office>〉. 검색일: 2022. 1. 21.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mofa.go.kr/www/brd/m\\_3861/view.do?seq=2990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titleNm=](https://www.mofa.go.kr/www/brd/m_3861/view.do?seq=2990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titleNm=)〉. 검색일: 2022. 2. 10.

한국국제협력단 웹페이지. 〈[https://www.koica.go.kr/koica\\_kr/971/subview.do](https://www.koica.go.kr/koica_kr/971/subview.do)〉. 검색일: 2022. 1. 31.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웹페이지.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stronger-systems-for-health-security-dfat-standard-agreement-template.pdf>〉. 검색일: 2022. 1. 18.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웹페이지.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investment-design-quality-scoring-matrix.pdf>〉. 검색일: 2022. 2. 21.